研究論文集 96－01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韓國租稅硏究院

序 言

高度 經濟成長期를 거쳐온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經濟의 效率性을 강조한 반면 分配의 衡平性에 대해서는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진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에서도 분배의 형평성에 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 분야의 기초연구인 우리나라의 分配 不平等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현실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자체가 어려운 정도이다.

分配 不均衡을 완화하는 정부정책으로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租稅政策은 가장 유효한 정책 중의 하나이다. 조세가 추구하는 기본원칙 중의 하나가 衡平性이며, 세제개혁 때마다 세부담의 衡平性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分配 不均衡 程度와 租稅政策의 再分配 效果는 조세정책을 평가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연구분야이다. 그러나 자료사용에 한계가 많았던 그간의 사정으로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는 극히 드물었고, 따라서 租稅政策의 효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은 어려웠다.

본 논문집은 租稅政策이 所得 및 富의 分配에 미치는 影響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 논문들을 모아 편집한 것이다. 여기에 수록된 논문들의 특징은 모두 微視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이며, 이는 조세정책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이들 논문들은 각 세목들이 분배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어느 정도 유효한가를 보여줄 것이며, 이러한 자료들은 향후 稅制改革에 대한 논의를 보다 과학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

본 논문집은 많은 저자들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다. 本院 玄鎭權 박사의 논문을 중심으로 魯英勳 박사, 林周瑩 박사, 全瑛俊 박사, 翰林大 羅城麟 교수의 발표논문들을 본 논문집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본 논문집은 정책입안자 및 관련분야에서 이론 및 실증연구를 시도하는 연구자에게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논문집의 원고정리에 수고한

李起鏞 연구원과 李賢暎 연구조원에게 깊은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논문집의 내용은 저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6年 4月

韓國租稅研究院

院長 崔 洸

目 次

表 目 次

圖 目 次

附表目次

序 章

세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일반적으로 稅收規模, 效率性, 衡平性을 들고 있다. 稅制의 衡平性은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이 어떻게 부담되는가를 의미하며, 세제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稅法改正이 있을 때마다 국회나 언론에서는 항상 세제의 형평성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하지만, 논의의 수준이 매우 直觀的이거나 概略的인 分析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선진국의 경우 형평성 관점에서 租稅政策을 평가할 때 정책을 입안하는 단계에서부터 매우 분석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 특히 미국의 경우 행정부 및 입법부에서 세부담이 소득계층별로 분포되어 있는 실태를 독자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논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관에 바탕을 둔 논쟁에 비해 훨씬 과학적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직관에 머무는 주된 이유는 이 분야의 實證的 硏究가 매우 부진하기 때문이며, 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개인 및 가구별 세부담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미시자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2]. 조세의 형평성을 분석하는 데 미시자료가 꼭 필요한 이유는 個人 및 家口의 特性을 정확히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법개정시 租稅의 衡平性을 좀 더 진지하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며, 조세관련 미시자료가 다양하게 개발되어야 한다.

本 論文集은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분석한 8편의 논문과 기존의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문헌고찰을 시도한 1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시자료

---

1) Joint Committee on Taxation(1993)은 미국 의회에서 조세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OECD의 경우는 OECD(1988)를 참조하기 바란다.

2) 미국의 경우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활발하며, 대표적인 연구가 Pechman(1985), Pechman and Okner(1974)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羅城麟・玄鎭權(1993)을 들 수 있다.

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8편의 논문들은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제공될 것이다. 이들 연구논문들에서 사용한 미시자료를 出處, 分析時期, 分析對象, 分析稅目으로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收錄 論文에 使用된 資料 및 分析 稅目

	자료명	출처	분석연도	분석대상	분 석 세 목
제2장	도시가계자료	통계청	1987	도시가계	소득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사회부조
제3장	도시가계자료	통계청	1987	도시가계	소득세, 부가가치세
제4장	도시가계자료 농촌가계자료	통계청 농림수산부	1991	도시 및 농촌가계	소득세
제5장	대우패널자료	대우	1993	전체가계	소득세
제6장	도시가계자료 농촌가계자료	통계청 농림수산부	1991	도시 및 농촌가계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제7장	대우패널자료	대우	1993	전체가계	자동차관련 세제
제8장	종합토지세 자료	내무부	1993	종합토지세 대상자	종합토지세
제9장	재산세 자료	내무부	1993	건물분 재산세 대상자	건물분 재산세

제1장은 우리나라의 所得 및 富 分配의 歷史的 推移를 살펴보고, 租稅政策이 分配不平等에 미치는 效果를 기존의 실증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하였다. 타분야에 비해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연구가 매우 부진한 현실에서 제한된 연구결과를 통해 비판적인 결론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소득분배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이므로 관련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는 향후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제2장, 제3장, 제4장, 제6장은 사용한 資料의 年度, 分析對象, 分析稅目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지만, 資料處理에 있어서는 같은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논문들이다. 이들 논문들이 사용한 자료는 「都市家計資料」와 「農村家計資料」이며, 제4장과 제6장은 두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조세의 형평성을 측정하는 데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모형 중에서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erliant－Strauss지수를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제2장은 사용한 표본자료가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때 標本資料를 母集團化시키는 통계적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고려가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결과에 얼마나 민감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었다. 즉 표본에 대해 모집단화를 시도하지 않을 경우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과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제3장은 근로자가구와 자영업가구 간의 稅負擔 衡平性에 대해서 所得稅와 附加價値稅를 통하여 분석한 논문이다. 근로자의 과세소득은 세무당국에 의해 정확히 포착되지만,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에 따라 같은 소득수준을 가지는 두 계층이 서로 다른 세부담을 가지므로 水平的 非衡平性을 야기하게 되며, 이는 우리나라 세제의 가장 큰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로자가구가 보고한 소득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자영업가구의 실질소득을 支出形態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근로자가구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은 3.35%인 반면, 자영업가구는 2.67%로 나타났으며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이러한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다.

제4장은 「都市家計資料」와 「農村家計資料」를 합산한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의 형평성을 분석한 논문으로, 도시가계만을 사용하여 분석한 기존의 연구를 보충하였다. 이 논문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累進度가 높으나, 水平的 衡平性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과세대상소득이나 농촌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가계의 소득세부담이 농촌가계에 비해 높은 것을 보여주었다.

제5장은 1993년 「대우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특징은 均等犧牲假說(equal sacrifice hypothesis)을 바탕으로 한 세부담과 실질 세부담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均等犧牲假說을 만족시키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최고 및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실질 세부담 수준이 이론적 세부담 수준보다 높은 것을 보여 주었다. 타논문이 소득세의 세부담 실태를 단순히 측정하는 반면, 이 논문은 균등희생가설을 통한 規範的인 價値를 설정하고

현실과 비교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제6장은 제4장에서와 같은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酒稅의 세부담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間接稅 負擔은 여전히 逆進的 특성을 보여주며, 도시에 비해 농촌가계의 세부담이 더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제7장은 제5장과 같은 「대우자료」를 사용하여 자동차 관련세제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분석하였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자동차 관련세제의 개정안들이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특징은 세법개정으로 인해 야기되는 자동차 및 유류가격의 변화로 인해 타부문의 상품가격이 변하게 되고, 이에 따른 所得階層別 支出構造의 變化를 고려하여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측정하였다. 대부분의 연구가 세법개정으로 인한 직접적인 세부담의 변화만을 측정한 반면, 이 연구는 간접효과까지 고려하여 더욱 정교하게 세부담의 형평성을 측정하였다.

제8장은 내무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별로 구분한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土地保有의 偏重實態와 綜合土地稅의 稅負擔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토지편중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여, 향후 관련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토지보유의 편중실태는 최고계층 1%, 5%가 전체의 28%, 51%를 차지하고 있는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누진적 구조를 하고 있지만 토지가격에 비해 세부담 수준이 미미하여 재분배 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은 내무부의 市道別 建物分 財産稅 과세자료를 통해 개발된 세대별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住宅所有 偏重實態와 建物分 財産稅의 負擔을 측정하였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과세자료를 토대로 개발된 자료이므로 주택소유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분석결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수가 전체의 9%를 차지하고 있으며, 건물분 재산세부담 수준이 매우 낮음을 보여 주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는 세대별 다주택 보유내역을 보여주므로 소득재분배 관련 연구와 여러 가지 주택관련 정책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연구는 미시자료의 뒷받침이 있어야 활발히 진행될 수 있다. 미시자료가 공개되지 않았던 과거와는 달리, 실증연구에 귀중한 미시자료가

점차 개발되고 있으므로, 향후 이 분야의 연구는 매우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8편의 논문에서 사용한 자료가 이 분야의 실증연구에 公共財로서 활용될 때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는 한 차원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조세관련 연구에 사용되는 자료가 대부분 국세청에서 소장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 신고자료이다. 설문조사를 통한 개인별 소득과 세액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정확하지 않아, 현실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반면 國稅廳의 申告資料는 소득과 세액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므로,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결과는 조세정책 입안의 직접적인 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다[3]. 우리나라에서 조세의 형평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점차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보다 나은 조세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신고자료가 표본자료로 개발되어 실증연구에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3) Office of Tax Analysis(1978)는 미국에서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여러 가지 기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參 考 文 獻

羅城麟·玄鎭權,『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 Tax-Benefit 模型을 中心으로』, 研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研究院, 1993.

Joint Committee on Taxation, *Methodology and Issues in Measuring Changes in the Distribution of Tax Burdens*, Government Printing Office, Washington, D.C., 1993.

OECD, *A Comparative Study of Personal Income Tax Models*, a Report by the Committee on Fiscal Affairs, 1988.

Office of Tax Analysis, *Compendium of Tax Research, Department of Treasury*, Washington, D.C., 1978.

Pechman, Joseph, *Who Paid the Taxes, 1966~85*,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echman, Joseph and Benjamin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分配 不均等 推移와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 文獻考察을 中心으로 —

崔　洸 · 玄 鎭 權[1)]

目 次

1) 本院 院長, 本院 研究委員.

Ⅰ. 序　　論

分配의 형평문제는 우리나라가 당면한 중요한 政策課題의 하나이다. 所得分配가 改善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최근 통계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가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실제로 所得分配가 악화되고 있든, 아니면 악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보편화되어 있든 간에 所得分配問題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政策課題이다.

國民經濟 成長의 결과로서 얻어진 國民所得을 社會構成員들에게 어떻게 分配하느냐 하는 것은 經濟問題의 기본적 과제 중의 하나이다. 특히 低所得階層들이 「자기몫」을 충분히 할애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낄 때에는 노사분규 등 社會的 갈등이 야기된다.

「피구」(Pigou)는 그의 『厚生經濟學』(The Economics of Welfare)에서 다른 조건이 같다면 厚生分配의 평등화가 社會全體의 福祉를 높인다는 유명한 命題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所得에 있어서도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이 작용하고 개인간의 효용함수가 같다고 한다면 所得分配의 改善이 社會全體의 效用을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所得分配를 改善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異論의 여지가 별로 없으나, 어느 정도까지 改善하는 것이 만족할 만한 공정배분인가에 대해서는, 能力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과 必要에 따라 배분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國家에서는 國民의 최저생활에 관해서는 필요배분원칙을 적용하고 그 이상의 所得水準에서는 능력배분원칙을 적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國民의 최저생활수준에 관해서는 國家와 時代에 따라 상이하다.

공정한 所得分配를 구현하기 위한 政策手段으로는 所得形成過程에서의 分配政策, 決定所得의 再分配政策, 所得源泉의 平等化政策 등 크게 세 가지 政策手段으로 나누어진다. 소득형성과정에서의 공정배분을 위해서 한편으로는 시장독점적 요소를 배제하여 경쟁을 촉진시켜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높여야 한다.

決定所得의 再分配로는 일단 소득형성과정에서 결정된 소득을 정부가 財政政策을 통하여 再分配하는 것으로서 累進的 課稅와 社會保障 支出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끝으로 所得源泉의 平等化政策은 공정한 재산의 分配 없이는 分配改善에 한계가 있으므로 재산의 공유화 및 평등화를 통하여 소득발생원천에서부터 형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相續課稅 勤勞者財産形成政策 등이 핵심을 이룬다.

所得分配는 經濟政策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이나, 經濟政策과 관련한 所得分配에 대한 논의는 매우 초보적인 단계이다. 이는 우리나라 經濟政策이 주로 經濟成長에 역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으며 所得再分配에 대한 정책관심은 오래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학계에서도 타분야에 비해 所得分配 분야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진한 상태였다. 所得分配가 매우 중요한 政策目標임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저조한 이유는 각종 經濟政策에서 所得分配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었고, 所得分配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所得分配에 대한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각종 經濟政策이 所得再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다. 정부의 여러 가지 經濟政策 중에서 所得再分配 역할을 가장 유효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정책으로 대표적인 것이 租稅制度이다. 전통적으로 정책들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정책이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지 못하였다.

本 論文은 지금까지 진행된 所得 및 富의 分配와 관련된 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所得과 富의 分配 不平等 실태를 파악하고 不平等이 야기하게 된 원인을 규명해 본다[2]. 또한 우리나라의 租稅政策이 所得 및 富의 再分配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기존의 實證硏究結果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2) 우리나라에서 타분야에 비해 소득분배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실태이다. 그러므로 소득불균등에 관한 실증적 고찰은 개별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하다. 특히 조세의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실증적 고찰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대개 문헌고찰에 관한 논문은 기존의 연구를 중심으로 비판적인 시각에서 결론을 유도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나, 이는 향후 개별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가능할 것이다.

Ⅱ. 所得 및 富의 分配實態

1. 所得分配의 歷史的 推移

우리나라의 所得分配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된 것은 所得分配狀態 파악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社會統計調査를 실시한 1980年 이후부터이다.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가 제시되기 이전에도 「都市家計調査」 자료와 「農家經濟調査」 자료를 이용하여 所得分配狀態의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우리는 이들 연구를 종합함으로써 韓國 所得分配의 歷史的 추이를 살펴볼 수 있다.

朱鶴中(1979)은 韓國의 所得分配에 관한 외국학자의 초기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都市家計調査」와 「農家經濟調査」에서 누락된 勤勞者 外 가구의 所得을 勤勞者 家口에 대한 저축을 기준으로 간접추계하여 1965年, 1970年 및 1976年의 所得分配狀態를 제시했다. 또한 1980年, 1985年, 1988年의 所得分配狀態는 經濟企劃院이 「社會統計調査」를 바탕으로 全國 및 市部와 郡部로 나누어 보여주고 있다. 한편 金大模·安國臣(1987)은 1980年代의 所得分配狀態에 대한 정부 발표와 다소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權純源 外(1992)는 독자적인 가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988年의 所得分配狀態를 추산한 바 있다.

이들 연구결과는 〈表 1-1〉에 요약된 바와 같다. 이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所得分配의 추이는 歷史的으로 3개 국면으로 구분된다. 첫째 단계는 1960年代 후반으로 所得分配狀態가 改善되는 시기이다. 둘째 단계는 본격적인 經濟開發時期인 1970年代로 所得分配狀態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이다. 셋째 단계는 1980年代로 所得分配狀態가 다시 改善되는 시기이다.

먼저, 첫째 단계인 1960年代 후반은 지니(Gini)계수가 0.3439에서 0.3322로 낮아지고, 10分位 分配率은 0.4626에서 0.4716으로 높아져 所得分配狀態가 改善되었다. 이러한 所得分配의 改善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실업과 불완전고용이 만연

되어 있었고, 절대빈곤이 주요 문제였던 1960年代 초기 開發段階에 정부가 채택한 대외지향적 開發戰略은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육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이 전략은 財産所得에 비하여 賃金 및 俸給所得을 더욱 빨리 증가시켰다. 財産所得에 비해 勤勞所得이 더욱 공정하게 分配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開發戰略이 이 기간의 所得分配 改善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表 1-1〉 韓國의 所得階層別 所得分布 推移

분 위	1965	1970	1976	1980	1985	1988
1	1.32	2.78	1.84	1.56	2.59	2.81
2	4.43	4.56	3.86	3.52	4.37	4.58
3	6.47	5.81	4.93	4.86	5.48	5.65
4	7.12	6.48	6.22	6.11	6.47	6.64
5	7.21	7.63	7.07	7.33	7.57	7.60
6	8.32	8.71	8.34	8.63	8.73	8.67
7	11.31	10.24	9.91	10.21	10.10	10.01
8	12.00	12.17	12.49	12.38	11.97	11.80
9	16.03	16.21	17.84	15.93	15.10	14.62
10	25.78	25.41	27.50	29.46	27.62	27.62
하위 40%	19.34	19.63	16.85	16.06	17.71	19.68
상위 20%	41.81	41.62	45.34	45.39	43.71	42.24
10분위 배율	0.4626	0.4716	0.3716	0.3538	0.4052	0.4659
지니계수(1)	0.3439	0.3322	0.3908	0.3891	0.3450	0.3360
지니계수(2)	0.37	0.35	0.40	0.39	0.41	0.40

註 : 지니계수(1)은 朱鶴中, 경제기획원, 지니계수(2)는 金大模・安國臣, 權純源 外의 결과임.
資料 : 朱鶴中(1979), 經濟企劃院(1987, 1990), 金大模・安國臣(1987), 權純源 外(1992).

1970年代는 상황이 크게 달라져 所得分配狀態가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시기이다. 지니계수는 1976年 0.3908로 급격히 높아졌고, 1980年에도 0.3891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0分位 分配率도 1976年 0.3716, 1980年 0.3538로 낮아져 所得分配狀態가 不平等 심화방향으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 시기는 重化學工業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자원을 동원하여 배분하던 시기로서 중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稅制支援, 實質利子率이 마이너스인 政策金融, 특정 산업부문 및 기업에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信用割當 등 각종 새로운 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所得分配를 악화시키는 데 기여한 요인이다. 더욱이 이 기간에는 인플레가 가속화되어 所得分配를 더욱 악화시켰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62~1973年間 연평균 약 10%였으나, 1974~1979年間에는 연평균 20%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隔差의 증대, 부동산가격의 상승 등에 따른 賃金所得者의 상대적 위축도 소득분배를 악화시킨 요인이다.

한편 朱鶴中(1979)은 農村家口와 都市 勤勞者家口, 그리고 자영업자/사업자 가구의 所得不平等을 각각 살펴봄으로써 1970年代 所得不平等 증가원인을 해명하고 있다. 그의 추산에 따르면 자영업자/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니계수는 1970年 0.353에서 1976年 0.449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農村家口와 都市 勤勞者家口의 1976年 지니계수 0.327, 0.355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따라서 도시화로 인해 전문직업인, 경영자, 자본소유자로 구성된 都市 高所得 집단이 발전했고 이에 따라 所得分配가 악화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도시가 농촌보다 不平等하다면 도시화는 不平等의 심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Leipziger et al.(1992)은 1960年代의 경우 아직 도시부문의 비중이 작고, 이농현상이 농촌 내부의 不平等을 감소시켜 전반적인 所得不平等이 감소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농촌의 잠재적 과잉인구가 고갈되고 도시 및 산업부문의 비중이 커지는 1970年代 이후 不平等이 심화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설명된다.

정부발표에 따르면 1980年代에 所得分配狀態가 점차 改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社會統計調査」의 결과를 바탕으로 계산된 지니계수는 1985年 0.3450, 1988年 0.3360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10分位 分配率도 1985年 0.4052, 1988年 0.4659로 높아졌다. 1990年代 이후 전국적 범위의 所得分配推移에 대한 공식발표자료는 아직 제시되지 않고 있다. 1980년대 이후의 전국민의 소득분배를 시계열 분석할 수 있는 자료는 없으므로,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전국민이 아닌 도시근로자들의 소득계층별 소득분배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1979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발표하므로 소득분포의 시계열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일부 계

층만의 소득분포라는 단점이 있지만 소득종류별로 소득분포를 규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소득분배의 실증적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3].

〈表 1－2〉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의 소득계층별 소득분포 자료를 사용하여 최고소득계층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소득불균등 정도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보여준다[4]. 전체소득에서 소득 종류별로 근로소득과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분포를 살펴보고,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서 소비지출을 사용하여 분배실태를 살펴본다. [圖 1－1]은 〈表 1－2〉의 지니계수를 소득종류별로 나눈 추세를 보여준다. 전체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에서 1979년 이후 소득불균형이 감소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소득종류별로 소득불균형의 정도를 살피면 이자 및 배당소득의 불균등 분포가 가장 큰 반면, 근로소득의 경우는 소득불균형의 정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 사용한 소비지출의 경우는 소득불균등의 정도가 가장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1980年代 이후 所得分配 악화경향이 역전된 데는 몇 가지 계기가 있다. 먼저 정부는 여러 가지 租稅支援과 특혜적인 政策金融의 축소 내지 폐지, 그리고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들을 취한 바 있다. 이러한 조치는 1970年代에 악화되었던 所得分配狀態를 점차 改善되는 방향으로 반전시킬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 기간 동안에 저학력의 생산직 勤勞者들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 학력간 賃金隔差도 줄어들어 특히 도시가구의 所得分配가 改善되었다.

이러한 뚜렷한 所得分配의 改善에도 불구하고, 所得分配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끊임 없이 제기되고 있다. 오히려 1980年代 후반 이후 不平等의 심화에 대한 문제제기와 상대적 박탈감의 호소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것은 실제 所得分配와 國民들의 인식간의 격차 또는 통계수치상의 所得分配와 所得分配 現實의 隔差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다.

3) 도시가계자료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포함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통계청에서는 1991년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가구소비실태조사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 조사자료는 5년 단위로 시행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분석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향후 일정시간이 흐른 뒤에는 5년 단위로 시계열적 분석이 가능하므로 도시가계자료보다 모집단을 더 정확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4) 소득계층별 소득규모에 대한 통계는 1979년부터 발표하였으므로 이후의 소득분배 실태를 파악할 수 있다.

〈表 1-2〉 勤勞者 家口의 所得不均衡 實態

(單位 : %)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및 배당		소비지출	
	비율	지니계수	비율	지니계수	비율	지니계수	비율	지니계수
1979	24	0.3057	23	0.2942	37	0.5200	20	0.2174
1980	24	0.3065	23	0.2903	41	0.5733	20	0.2218
1981	24	0.3060	22	0.2822	43	0.5938	21	0.2288
1982	25	0.3092	24	0.2955	39	0.5509	20	0.2145
1983	25	0.3094	24	0.2941	40	0.5782	20	0.2229
1984	25	0.3111	23	0.2955	45	0.6019	20	0.2179
1985	25	0.3115	24	0.2941	41	0.5629	21	0.2298
1986	24	0.3069	23	0.2901	40	0.5615	20	0.2215
1987	24	0.3065	23	0.2890	66	0.6041	19	0.2152
1988	24	0.3006	23	0.2842	38	0.5672	20	0.2236
1989	25	0.3039	23	0.2880	33	0.4781	20	0.2268
1990	24	0.2948	22	0.2773	41	0.4964	20	0.2226
1991	23	0.2870	23	0.2752	35	0.4962	20	0.2102
1992	23	0.2836	20	0.2579	41	0.5331	19	0.2071
1993	25	0.2798	23	0.2769	35	0.4625	19	0.1980
1994	23	0.2608	20	0.2608	38	0.4774	19	0.1968

註 : 비율은 최고소득계층 10%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함.

[圖 1-1] 지니係數를 使用한 勤勞者 家口 所得分布의 趨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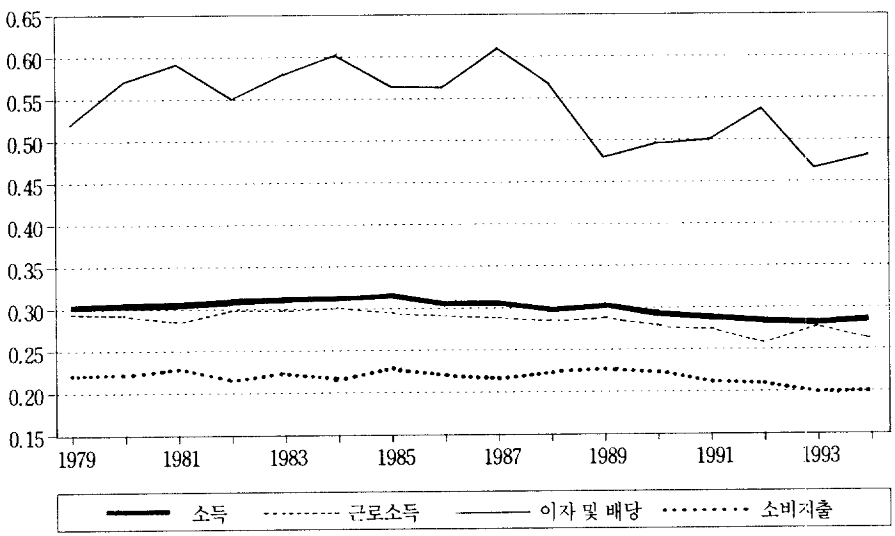

우리나라 所得分配의 統計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수치상의 所得分配와 대중적인 인식의 괴리에서 비롯되는 당혹감은 더욱 커진다. 階層別 家口所得分配를 국제적으로 비교해 볼 경우 선진국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所得分配는 매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5]. 우리나라의 지니계수는 지난 20年간 0.4 이하로서 체너리 교수의 구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所得分配의 不平等 정도가 매우 낮은 國家이다.

우리나라의 所得分配를 均等化시킨 요인으로 첫째,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알려진 1947~50年간에 실시된 土地改革, 둘째, 모든 것은 파괴하고 모든 사람을 헐벗고 가난하게 만들어 평등한 입장에서 새출발하도록 만든 1950~53年의 6·25동란, 셋째, 문화와 지역의 同質性에 의한 社會階層間 또는 지역안의 높은 이동성, 넷째, 韓國人의 높은 敎育熱과 敎育의 기회균등, 다섯째,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높은 經濟成長, 여섯째, 다양한 종류의 平準化 指向的 政策의 추진 등이 지적될 수 있다[6].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分配狀態가 나쁜 정도가 아니고, 더구나 1980年代 이후 꾸준히 分配狀態의 改善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소외감은 점증하고 平等分配에 대한 요구는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가지 觀點에서 설명·논의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공식적인 통계상에 나타난 所得分配 관련 지표가 실제 所得分配를 올바르게 나타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대부분의 所得分配 관련 지표는 가계조사자료에 근거하여 계산된 것이다. 그런데 1977年까지의 도시가계조사자료는 일정수준 이상의 高所得層뿐 아니라 법적으로 低所得層인 公的扶助 대상자를 標本에서 제외하고 있다. 1980年代 이후 조사에서는 이들 가계도 조사대상에 포함되어 조사대상의 포괄범위는 넓어졌으나 아직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

5) Leipziger, et al.(1992)는 우리나라와 외국의 소득분배에 관한 연구의 결과치를 단순비교하였다. 소득분배에 관한 국제간 비교는 매우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즉 사용한 자료, 분석대상, 분석방법이 서로 다르므로 단순한 비교는 현실을 오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국제간 비교를 시도한 연구는 없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소득분배에 관한 국제간 비교에 대한 연구가 1983년부터 Luxemboug Income Study Project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Smeeding, O'Higgins, and Rainwater(1990) 등 상당한 수준의 국제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 연구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나, 향후 자료제공이 이루어진 후에는 정확한 소득분배의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6) 이러한 요인들이 우리나라의 소득분배를 균등화시켰는가에 대한 실증 연구결과는 없으므로 반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요인으로 설명한 것이다. 균등화한 소득분배의 요인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매우 광범위한 연구대상이므로, 심층적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과제이다.

또한 金大模·安國臣(1987)은 朱鶴中의 연구와 정부발표의 시계열적 일관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독자적인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과와 權純源 外(1992)의 결과를 연결해 보면 1980年代에도 所得分配狀態가 거의 改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독자적인 가계조사자료를 바탕으로 1988年의 家計所得 分配狀態를 추정한 權純源 外(1992)의 연구결과 1988年 지니계수는 0.40으로서 공식적인 발표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통계수치상의 所得不平等과 일반 國民이 체감하는 不平等의 괴리가 심각한 또 다른 이유는 分配的 正義의 문제에 있다. 위에서 언급한 지니계수나 10分位 分配率은 所得分配의 상태를 개략적으로 나타낼 뿐 分配的 정의의 구성요소로 불리는 公正性, 정당한 권리, 받을 만한 자격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현재 韓國의 所得分配狀態가 과연 공정한 게임의 결과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외국인들은 韓國의 分配의 형평도가 비교적 높다고 하나 많은 韓國人들은 이러한 결론에 동의하지 않는다. 外國人들과 韓國人들의 견해가 다른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견해가 다른 데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중 중요한 하나는 西歐人과 韓國人 間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설명될 수도 있다. 즉, 韓國人은 공동체주의 또는 공동체적 평준화 사상을 남달리 갖고 있다. 따라서 서구인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不平等 分配도 우리 韓國人의 감정에는 매우 불평한 分配로 인식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7].

마지막으로 우리는 所得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여 分配問題를 이해하는 방법의 한계를 이해해야 한다. 經濟的 支配力과 보다 큰 연관을 가지며 잠재적 소비능력의 차이를 나타내는 經濟的 富(wealth) 또는 資產의 不平等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流量(flow)인 所得概念만을 통한 分配趨勢의 보고는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 이것은 특히 자가주택의 보유여부가 가구의 소비능력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우리나라 現實을 감안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발생한 1989~1990年 分配問題에 대한 갈등이 우리 社會에 첨예화 되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7) 한국인의 분배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실증결과가 없으므로 논의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러나 형평, 균등분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經濟的 富에 대한 연구를 통해 分配問題의 現實에 대한 이해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2. 資產 및 富의 分配實態

韓國 社會의 不平等問題에 대한 이해를 위해 所得分配에 관한 연구는 經濟的 富 또는 資產의 不平等에 관한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經濟的 富 또는 資產의 不平等에 대한 연구는 所得分配에 관한 연구보다 훨씬 더 척박한 상황이며 거의 불모의 영역이다. 實物資產과 金融資產을 포괄하는 總資產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KDI의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한 權純源 外(1992)가 대표적이다. 토지재산의 분포상태에 관한 연구는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에 의해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한 분포가 밝혀졌고, 玄鎭權(1995)은 토지가격을 기준으로 한 토지소유의 不平等을 밝히고 있다. 金融資產의 분포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다.

먼저, 부동산보유의 편재는 매우 잘 알려진 현상인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 1－3〉과 〈表 1－4〉에 정리된 바와 같다. 우리나라 전체 사유지의 65.2%를 상위

〈表 1－3〉 主要 大都市地域의 土地所有集中度(1988年 6月 基準)

(單位 :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상위 5%	65.2	57.7	72.3	72.6	64.2	55.7	65.1
상위 10%	76.9	65.9	81.4	82.4	77.8	69.4	76.4

資料 : 國土開發硏究院, 土地公槪念硏究委員會, 1989.

〈表 1－4〉 大都市 家口別 土地所有集中度(지니係數)

(單位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토지보유가구비율	28.1	33.1	38.3	30.1	69.7
지니계수					
전체가구기준	0.911	0.946	0.944	0.937	0.838
토지소유자기준	0.709	0.846	0.867	0.812	0.808

資料 : 國土開發硏究院, 土地公槪念硏究委員會, 1989.

5%의 階層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의 76.9%를 보유하고 있어 매우 심한 편중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로 측정된 토지소유집중도는 0.838~0.946(전체가구기준)과 0.709~0.867(토지소유자기준)로 土地資産의 소유집중도가 金融貯蓄資産이나 所得分配의 집중보다 훨씬 큰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土地財産의 분포에 관한 위 자료는 土地面積을 기준으로 偏重度를 분석한 것이다. 그러나 土地面積 기준의 편중도는 지역에 따라 토지의 가격이 크게 다른 점을 감안할 때 現實을 왜곡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예컨대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土地所有의 실태를 분석할 경우 농촌에 있는 土地와 都市에 있는 토지의 면적이 같을 경우 같은 수준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土地偏重의 現實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土地價格을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玄鎭權(1995)은 1993年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標本抽出資料를 이용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한 토지소유 편중의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表 1--5〉는 개인보유토지의 편중실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위 1%의 계층이 27.9%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상위 5% 階層이 50.6%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土地面積基準의 보유비율과 공시지가기준의 보유비율을 비교해 보면 상위 階層일수록 대체로 단위가격이 높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1-5〉 土地偏重의 實態 : 土地 未保有 個人包含(1993年)

(單位 : 천원, %)

공시지가대비 계 층	공 시 지 가		
	평균치	비 율	누적비율
상위 1%	1,855,988	27.9	27.9
2%	575,572	8.7	36.6
3%	389,602	5.9	42.4
4%	298,710	4.5	46.9
5%	247,198	3.7	50.6
6 ~ 10%	170,781	12.8	63.4
11 ~ 20%	100,660	15.1	78.6
21 ~ 30%	59,305	8.9	87.5
31 ~ 40%	39,270	5.9	93.4
41 ~ 50%	26,791	4.0	97.4
51 ~ 60%	14,366	2.2	99.6
61 ~ 67%	3,758	0.4	100.0
68 ~100%	0	0.0	100.0

資料 : 玄鎭權(1995).

Leipziger, et al.(1992)의 추정에 의하면 개인보유 經濟的 富의 구성요소 중 토지재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추정할 경우 38.6%이며 높게 추정할 경우 70%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토지재산의 극심한 편중이 우리나라 經濟的 富의 不平等을 초래하는 주요인이라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으로 金融資産의 소유집중도를 살펴보자. 〈表 1－6〉에는 金融貯蓄資産 보유에 관한 분포상황을 연구한 康奉均의 연구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상위 10%의 階層이 총金融貯蓄資産의 41%를 보유하고 있으며 지니계수는 0.5610으로 所得不平等度(지니계수 0.3206)보다 훨씬 높아 金融資産所有의 不平等度가 所得不平等度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表 1－7〉은 金融資産의 10분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表 1－6〉 所得集中度와 金融貯蓄集中度와 比較

	조사연도	지니계수	하위 40% / 상위 20% 점유비율
소　　득	1984	0.3567	0.45
금융자산보유	1988	0.5610	0.13

註 : 소득집중도는 朱鶴中의 추계치(전국가구)이며, 금융자산보유집중도는 한국은행의 『저축시장조사』(표본수 : 2,500가구)에 의한 추계치임.
資料 : 康奉均(1989).

〈表 1－7〉 우리나라 金融資産의 分布

분위	한국은행		국민은행	康奉均 (1988)
	1986	1988		
1	0.2	0.2	0.4	0.1
2	0.9	1.4	1.2	1.4
3	1.9	2.4	2.0	2.5
4	2.8	3.3	2.9	3.9
5	3.8	4.9	4.3	5.3
6	5.5	6.7	6.0	7.0
7	7.9	8.8	8.1	9.2
8	10.8	11.7	10.1	12.0
9	16.0	17.0	17.2	17.6
10	52.0	43.6	46.8	41.0

資料 : Leipziger et al.(1992).

다음으로 〈表 1-8〉과 〈表 1-9〉에는 韓國開發硏究院이 실시한 설문조사자료를 근거로 權純源 外(1992)가 추정한 所得 및 資産分布에 관한 지니계수를 資産別로 그리고 지역별로 요약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所得分配보다는 資産分配가 더 不平等하고 資産 중에서는 實物資産보다 金融資産의 不平等度가 더 크다.

〈表 1-9〉에서 總資産 10분위 分配와 所得 10분위 分配를 비교해 보면 1988年의 경우 상위 20% 階層과 하위 40% 階層의 資産占有率은 각각 60.1%와 7.4%인 것에 비하여 이들 두 階層의 所得占有率은 45.5%와 15.6%로 나타나 資産分配가 所得分配보다 훨씬 더 不平等함을 알 수 있다.

〈表 1-8〉 所得 및 資産分布에 關한 지니係數(1988년)

	소득	자산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시부	0.373	0.738	0.604	0.584
군부	0.445	0.835	0.557	0.549
전체	0.404	0.770	0.596	0.579

資料 : 權純源 外(1992).

〈表 1-9〉 韓國의 所得階層別 富의 分配(1988年)

(單位 : %)

분위	금융자산	실물자산	총자산	소득
1	-	0.3	0.5	1.4
2	-	1.0	1.3	3.5
3	-	1.9	2.2	4.6
4	0.1	3.2	3.4	6.1
5	1.6	4.6	4.9	7.5
6	3.6	6.6	6.6	8.7
7	5.8	9.0	9.0	10.1
8	10.1	12.1	12.0	12.5
9	17.4	17.2	17.0	15.6
10	61.4	44.1	43.1	29.9
지니계수	0.77	0.60	0.58	0.40

資料 : 權純源 外(1992).

3. 機能別 集團別 所得分配

所得分配의 現實을 이해하는 또 다른 유력한 방법은 機能的 所得分配에 대한 파악을 통해 所得分配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機能的 所得分配란 전체의 所得이 勞動·資本·土地 등 각각의 생산요소에 分配되어 가는 과정을 말한다. 전체 所得의 生產要素別 귀속이라는 機能的 所得分配論의 관점을 통해 우리는 階層別 所得分配狀態를 추론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 經濟成長과 所得分配狀態의 변화의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전체적인 所得分配뿐 아니라 우리는 특정 집단 사이의 所得隔差, 가령 學力別·職種別·性別 賃金隔差, 都市와 農村間의 所得隔差, 지역간 所得隔差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주로 학력차별, 지역차별, 성차별 등 부당한 '차별'에 주목할 때 제기되는 문제인데, 分配的 正義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전체적인 所得分配에 대한 파악보다 더욱 중요한 事案이다. 왜냐하면 不平等에 대한 불만은 주로 결과에 대한 不平等이라기보다는 과정에 대한 不平等의 문제로서 특정 집단의 부당한 차별에 대한 항의의 성격이 크기 때문이다.

가. 機能別 所得分配

機能別 所得分配의 現實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勞動所得分配率이다. 勞動所得分配率이란 純生產物－國民計定에서는 國民純生產(NNP) 또는 國內純生產(NDP)－에 대한 勞動所得(賃金, 俸給, 그리고 비법인기업에서의 歸屬賃金 및 俸給의 合計)의 비율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생산요소를 勞動과 資本으로 대별할 때 한 國民經濟가 1年 동안 생산해 낸 附加價値 가운데 노동에 귀속되는 부분의 비율을 말한다.

國民所得統計에 의한 勞動所得分配率은 자영업자 등의 所得을 勞動所得과 財產所得으로 분할하는 방식, 정부피용자 보수 부분 및 海外純受取要素所得 부분의 포함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여기서는 每年 발표되는 國民計定上의 勞動所得分配率로부터 우리나라에서의 歷史的 추이를 살펴보자. 國民計定上의 勞動

所得分配率은 피용자보수와 대외순수취피용자보수를 합한 금액을 요소비용 國民所得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이다.

〈表 1－10〉은 1953年부터 1993年까지 40年間에 걸친 우리나라 勞動所得分配率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勞動所得分配率의 단기적인 순환과 함께 점차 증가해가는 장기적인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1953年에 25.8%에 머물고 있던 勞動所得分配率은 1993年에는 60.6%를 기록하여 40年 동안 우리나라 勞動所得分配率은 상당한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 勞動所得分配率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朴東雲·金愛實(1982)은 국제적으로 勞動所得分配率이 낮은 원인에 대해 賃金과 勞動生産性의 관계를 통해 분석하였는데, 그들에 따르면 초기의 高度成長期間中의 勞動所得分配率이 전반적으로 낮고 또 정체한 이유는 대기업의 빠른 성장 때문이다. 즉 대기업의 勞動所得分配率은 모든 규모 가운데 가장 낮기 때문에 대기업 부문의 빠른 성장이 제조업 평균 勞動所得 分配率의 증가에 사실상 負(－)의 효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한편 裵震漢(1992)은 1970年代 후반 이후 勞動所得分配率의 급격한 상승추세를 轉換點理論을 원용하여 해석하고 있다. 즉, 韓國經濟의 전환점으로 불리는 1970年代 중·후반 이전에는 무제한적인 노동력 공급에 주로 기인하여 勞動所得分配率이 낮았으나 그 이후에는 제한적인 노동력 공급과 그에 따라 상대적으로 빨라진 賃金上昇, 그리고 낮은 투입요소간 대체탄력성 때문에 勞動所得分配率이 상승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전환점을 앞당기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하는 요인으로 이 시기의 미숙련 노동력에 대해 가장 강력한 흡수력을 발휘하였던 輸出産業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 集團間 地域間 所得分配

所得分配에 관한 논의에서 특정 집단간 所得의 불균형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公正한 競技規則 또는 過程의 正當性 문제와 관련하여 分配的 正義와 직접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차별이란 원래 학력이나 경력, 생산성 등 다른

〈表 1-10〉 勞動所得分配率 推移

(單位 : %)

	피용자보수율	노동소득분배율
1953	22.5	25.8
1954	27.1	31.4
1955	26.0	30.1
1956	23.5	28.6
1957	25.0	30.3
1958	27.9	34.1
1959	31.4	38.6
1960	30.0	37.4
1961	27.9	34.5
1962	28.9	36.1
1963	25.5	30.7
1964	23.9	28.1
1965	26.3	31.8
1966	27.3	33.0
1967	30.2	36.7
1968	30.5	37.5
1969	31.6	38.7
1970	34.0	41.4
1971	34.2	41.5
1972	33.9	40.8
1973	34.1	41.2
1974	32.6	39.5
1975	33.1	40.6
1976	33.6	42.0
1977	35.2	44.2
1978	36.9	46.5
1979	38.6	48.9
1980	40.2	52.1
1981	39.8	51.9
1982	40.0	53.2
1983	41.3	54.7
1984	41.3	54.4
1985	41.4	53.9
1986	40.5	52.6
1987	41.1	53.5
1988	42.2	54.7
1989	45.0	57.5
1990	45.9	59.0
1991	47.4	60.2
1992	47.8	61.0
1993	47.3	60.6

資料 : 韓國銀行, 『國民計定』, 1994.

조건으로는 차이가 없는 노동자 사이에 인종이나 성별의 이유로 고용 또는 賃金에서 차등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차별은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社會的·個人的 편견으로부터 유래하므로 정당화될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이 일반화된 經濟社會의 경우 집단간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계급의식은 급속히 확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年代 이후 특정 집단 사이의 所得隔差 또는 차별은 점점 해소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학력에 따른 賃金隔差를 살펴보면 〈表 1－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0年 이후 생산직 失業率의 하락과 勤勞者의 부족사태에 따라 상당히 축소되었다. 高卒 勤勞者를 100으로 할 경우 大卒 勤勞者의 賃金水準은 1980年에 228.5로서 2배가 넘는 수준이었으나 1994年에는 155.7로 상당히 줄어들었다.

〈表 1－11〉 敎育程度別 賃金水準

연　도	중졸 이하	고졸	초대졸	대졸 이상
1975	57.2	100.0	136.2	214.4
1980	68.8	100.0	146.3	228.5
1985	74.7	100.0	129.8	226.5
1986	77.6	100.0	129.0	222.0
1987	80.3	100.0	127.2	224.0
1988	82.1	100.0	121.1	202.7
1989	83.1	100.0	119.1	191.0
1990	83.8	100.0	117.4	185.5
1991	84.6	100.0	117.4	179.3
1992	87.3	100.0	113.8	168.8
1993	88.1	100.0	109.5	161.3
1994	86.9	100.0	107.4	155.7

資料：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5.

다음으로 성별 賃金隔差를 살펴보면 1975年 女性勤勞者의 賃金은 男性勤勞者의 42.2%에 불과하였으나 1994年에는 56.8%로 상승하여 性別 賃金隔差는 많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表 1－12〉 참조).

〈表 1-12〉 性別 賃金水準의 比較

연 도	여/남
1975	42.2
1976	43.9
1977	43.9
1978	43.4
1979	42.3
1980	42.9
1981	44.5
1982	44.0
1983	45.2
1984	45.9
1985	46.7
1986	48.0
1987	49.2
1988	50.4
1989	52.8
1990	53.4
1991	54.1
1992	53.8
1993	54.6
1994	56.8

資料 : 統計廳, 『韓國의 社會指標』, 1995.

도시와 농촌간 所得隔差의 추이는 〈表 1-13〉에 정리된 바와 같다. 도·농간 所得隔差는 뚜렷한 추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며 순환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1970年 都市勤勞者 가구 月所得에 대한 農家月所得의 비율이 75.6%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하면 1994年에는 99.5%에 이르고 있다.

4. 所得 및 富의 分配에 대한 評價

공식적인 통계수치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所得不平等은 1980年代 이후 지속적으로 改善되고 있다. 또한 所得分配狀態는 물론 經濟的 富의 分配狀態도 외국과 비교하여 훨씬 더 不平等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통계상에 잡힌 분배결과가 국제적으로 양호한 편에 속한다면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불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통계뿐 아니라 다른 측면에도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表 1－13〉 都市・農村家口의 平均所得比率

연 도	농가월소득/도시근로자가구월소득
1965	99.7
1970	75.6
1975	111.0
1976	109.2
1977	112.7
1978	108.7
1979	95.3
1980	95.9
1981	109.4
1982	118.7
1983	119.0
1984	116.9
1985	112.8
1986	105.5
1987	98.5
1988	104.8
1989	97.7
1990	97.4
1991	94.3
1992	89.1
1993	95.5
1994	99.5

資料：統計廳,『韓國의 社會指標』, 1995.

所得分配 관련 통계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료의 문제점과 함께 分配正義의 차원에서 본 所得分配 통계의 한계성은 이미 지적되었고 널리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체감하는 不平等과 통계수치에 나타난 不平等의 괴리를 좁히는 하나의 계기로서 經濟的 富의 分配의 不平等에 주목할 필요성도 지적되었다. 우리나라 經濟的 富의 不平等은 所得의 不平等에 비해 훨씬 심각하며 이로부터 우리는 일반 國民이 체감하는 不平等 정도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經濟的 富의 不平等에 대한 통계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가계조사자료에 입각한 總資産, 金融資産, 實物資産의 不平等은 조사자료의 기본적인 한계인 過少報告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가계조사자료의 경우 階層別로는 최상층의 과소보고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資産別로는 부유층이 많

이 소유하고 있는 資産인 주식과 채권의 과소보고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프랑스의 경우 표본조사를 이용하여 조사한 결과 주식은 전체의 15%, 채권은 10% 정도만이 보고되고 있다(D. Kesseler and A. Masson, 1987).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韓國銀行의 調査이든 KDI의 조사이든 高所得層의 金融資産의 분포는 매우 과소평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토지재산 집중도의 경우에도 가계가 아닌 개인을 분석단위로 한 결과이므로 現實의 토지편중도를 과소평가할 위험이 있다. 한 가구 내의 가구원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소유는 같은 단위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經濟的 富를 가구원이 분산소유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現實의 토지재산 不平等度는 위의 통계결과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다.

체감하는 不平等과 통계상의 不平等의 괴리를 論議할 때 또 하나의 설명요인은 租稅의 再分配機能이다. 형평성, 효율성, 세수확보라는 租稅의 3대 기능 중 일반 國民이 특히 주목하는 것은 형평성, 즉 租稅의 所得再分配 기능이다. 우리나라의 租稅가 所得再分配에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 못한 채 稅負擔의 불공평성을 야기한다면 一般國民의 分配에 대한 認識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所得을 가진 納稅者가 상이한 세금을 부담하여 수평적 공평성의 원리가 지켜지지 못한다든가, 高所得者의 稅負擔率이 보다 높아야 한다는 누진과세의 원리에 우리나라 세제가 충실하지 못할 경우 分配上의 不平等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질 것이다.

Ⅲ. 租稅政策과 所得再分配

租稅의 第1次的 목적은 國家活動을 위한 재원조달이다. 재원의 조달과정에서 租稅는 國民經濟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稅負擔의 衡平 또는 租稅의 所得再分配 效果는 分配政策이든 福祉政策이든 우리 모두의 관심사이다. 이하에서는 租稅가 所得再分配에 얼마나 기여하여 왔는지 소득세, 소비과세, 재산과세로

나누어 실증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8].

1. 所得稅와 稅負擔의 衡平性

1965年에서 1991年 사이 우리나라의 所得稅 부담분포에 대한 연구는 韓昇洙(1982), 李載殷(1984), 그리고 玄鎭權·羅城麟(1993) 등에 의해 이루어져 왔는데 이 중 대표적인 연구인 韓昇洙(1982)와 玄鎭權·羅城麟(1993)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階層別 所得稅 負擔의 추세를 요약하면 〈表 1-14〉와 같다.

〈表 1-14〉 階層別 所得稅 負擔의 推移 : 有效稅率

(單位 : %)

	1970	1976	1978	1980	1991
1분위	2.24	0.00	0.00	0.00	0.91
2분위	2.06	0.00	0.00	0.06	1.58
3분위	2.40	0.19	0.59	0.74	2.14
4분위	2.07	0.71	0.84	1.21	2.44
5분위	2.17	1.20	1.25	1.56	2.86
6분위	5.29	1.73	1.62	1.90	3.85
7분위	6.18	2.40	2.07	2.32	4.87
8분위	5.71	3.42	2.69	2.89	5.77
9분위	7.50	6.07	3.89	3.79	7.14
10분위	7.74	7.30	6.29	5.20	10.26
평균	3.90	3.11	2.63	2.49	5.79

資料 : 韓昇洙(1982), 玄鎭權·羅城麟(1993).

전체적으로 보아 所得稅의 부담이 1970年~1980年 사이에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런데 階層別 稅負擔率을 살펴보면 1970年의 경우 1분위의 所得稅 負擔率이 2.24%로서 2분위, 4분위, 5분위보다 높다. 또한 7분위의 所得稅 負擔率이 6.18%로서 8분위의 5.71%보다 높다. 9분위, 10분위와 같은 高所得階層의 所得稅 負擔率이

8) 법인세제의 세부담에 대한 실증연구는 없으므로 제외한다. 법인세제의 세부담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이유는 법인세의 귀착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실증적으로 고려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7.50%와 7.74%로 높게 나타나므로 전체적으로는 약간 累進的인 특징을 보이지만 所得稅가 일관된 누진성을 보이지 못하고 역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所得稅가 1974年 이전에는 6개의 分類所得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체제였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976年 이후의 階層別 所得稅 부담률을 살펴보면 所得稅가 이제 분명하게 누진적인 세제로서 기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綜合所得稅 制度의 도입으로 누진성이 확보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所得稅의 전체적인 부담은 감소하였으며 1991年의 결과와 비교하면 所得稅 누진도는 미약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玄鎭權·羅城麟(1993)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階層別 所得稅 부담을 분석하였는데, 이 연구결과는 미시자료의 풍부성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所得稅의 再分配效果를 포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 〈表 1-15〉이다.

〈表 1-15〉 所得稅 負擔率의 比較(1991年)

(單位 : %)

所得階層	都市家計	農村家計	모든 家計
1분위	1.10	1.04	0.91
2분위	1.85	0.31	1.58
3분위	2.49	0.41	2.14
4분위	2.75	0.41	2.44
5분위	3.24	0.53	2.86
6분위	4.36	0.44	3.85
7분위	5.60	1.72	4.87
8분위	6.67	1.13	5.77
9분위	8.32	2.07	7.14
10분위	11.75	3.68	10.26
平均負擔率	6.64	1.74	5.79
지니계수	0.2907	0.3241	0.2974
變化率	-6.3	-1.7	-5.2
Atkinson 指數			
$\varepsilon = 0.5$	0.0725	0.0851	0.0749
變化率	-11.2	-3.3	-9.5
$\varepsilon = 0.9$	0.1269	0.1472	0.1307
變化率	-10.4	-3.0	-8.8
B-S 指數			
累進度	0.9158	0.7328	0.8509
比例度	0.0173	0.0810	0.0182
逆進度	0.0669	0.1862	0.1308
水平的 衡平度	0.1336	0.1523	0.0878

資料 : 玄鎭權·羅城麟(1993).

〈表 1－15〉를 보면 우리나라 所得稅制가 누진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음이 분명하다. 都市家計의 경우 1분위의 所得稅 負擔率 1.10%에서 10분위의 所得稅 負擔率 11.75%까지 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稅負擔이 일관하여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農村家計의 稅負擔은 비교적 所得이 높을수록 稅負擔이 높은 누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1분위, 6분위, 8분위 階層은 누진적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所得稅 負擔率이 낮은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農家所得의 대부분이 所得稅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利子 및 配當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所得稅만을 고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할 경우 所得稅負擔이 누진적으로 증가하여 지니계수는 5.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所得稅制가 수행하는 所得再分配 기능은 지니계수와 앳킨슨지수의 변화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所得稅 後의 所得을 사용하여 所得階層間 형평성을 측정해 보면 도시가계의 경우 지니계수는 0.2907이고, 앳킨슨지수는 사회가 불균등을 싫어하는 정도(ε의 값)에 따라 각각 0.0725와 0.1269로 나타난다. 이것을 所得稅 前 所得을 사용한 지수와 비교해보면 지니계수로 측정할 때 6.3%의 형평성 증가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우리는 綜合所得稅制의 도입 이전 所得稅는 누진적인 특징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1974年 綜合所得稅 도입 이후에는 누진적인 성격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1991年 所得稅 부담에 대한 연구결과는 도시가계의 경우 뚜렷하게 所得稅가 所得再分配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B－S지수를 통해 누진도를 살펴보면 도시가계가 0.9158, 농촌가계가 0.7328로 높은 누진적 특성을 알 수 있다[9]. 그러므로 1974年 이후 우리나라 所得稅制는 일단 수직적 형평성의 원리에 부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의 수직적 형평성은 비교적 높은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비교적 낮다고 할 수 있다. B－S지수를 사용한 결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도시가계가 0.1336, 농촌가계가 0.1523, 전체가계가 0.0878로 수직적 형평성에 비해 매우 낮음을

9) Berliant－Strauss(B－S)지수는 모든 납세자를 서로 비교한 후 누진적 관계를 가지는 비율을 구한 것으로 개념이 간단하고 적용하기가 비교적 쉬운 형평성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알 수 있다[10].

稅負擔의 수평적 형평성의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勤勞所得者와 事業所得者에 대한 稅負擔을 분석할 수 있다. 동일한 所得을 가지는 階層이 制度的으로 또는 稅務行政의 미비로 인해 서로 다른 稅負擔을 지고 있다면 수평적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勤勞所得은 과세당국에 의해 비교적 정확히 포착되지만 事業所得者의 實質所得은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11]. 이에 따라 같은 所得을 가진 두 階層이 서로 다른 稅負擔을 지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玄鎭權 · 羅城麟(1994)의 연구가 지금까지 유일한 결과인데, 이들의 분석결과는 다음 〈表 1－16〉에 나타나고 있다.

〈表 1－16〉 勤勞者家口와 勤勞者外家口의 階層別 所得稅負擔率

(單位 : %)

소득계층 (하위)	근로자 가구		자영업 가구	
	분포	부담률	분포	부담률
1분위	0.02	0.02	0.00	－
2분위	0.46	0.21	0.01	0.37
3분위	2.01	0.71	0.00	0.00
4분위	3.54	1.16	0.05	0.18
5분위	5.90	1.71	0.86	1.46
6분위	9.37	2.42	1.81	1.84
7분위	15.09	3.42	2.51	1.79
8분위	21.35	5.01	5.99	2.00
9분위	25.04	8.00	13.86	2.09
10분위	17.22	12.98	74.92	3.14
평균부담률		3.35		2.67

資料 : 玄鎭權 · 羅城麟(1994).

10) B－S지수의 수평적 형평도는 같은 소득에 있는 납세자들이 같은 세부담을 가지는가를 측정하는 지수로 수평적 형평성에 대한 고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개발되었다. 그러므로 0.1336이 의미하는 것은 소득수준이 같은 전체 납세자를 서로 비교한 결과 13.36%만이 같은 세부담을 가짐을 뜻한다.

11) 한국조세연구원의 비공식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탈루규모는 전체 세액의 약 1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탈루세액을 계산하면(1993년 기준) 부가가치세가 1조 2천억원, 소득세가 1조원 규모이다. 이러한 탈루세액으로 인해 사업소득의 세부담이 근로소득에 비해 매우 낮은 결과를 보여준다.

평균적으로 보면 勤勞者家口의 所得稅 負擔率은 3.35%인 데 반해 自營業家口의 所得稅 負擔率은 2.67%로 나타나고 있다. 所得이 높은 階層일수록 稅負擔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는데, 勤勞者家口 10분위 階層의 경우 12.98%의 稅負擔率을 나타내는 반면 自營業家口의 경우 3.14%의 稅負擔率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勤勞者家口의 경우 일관된 누진적 稅負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自營業 家口의 경우 누진도가 勤勞者家口보다 미약하고 3분위와 4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이 2분위보다 낮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과세대상이 되는 所得의 정확한 파악여부에 따라 所得稅 부담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玄鎭權・羅城麟(1994)은 勤勞者家口와 自營業家口의 水平的 非衡平度를 계산하여 보여주고 있는데, 勤勞者家口의 경우 0.5721, 自營業家口의 경우 0.898로서 自營業 家口의 수평적 비형평도가 훨씬 높다. 이것은 自營業家口의 實質所得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고하는 所得은 서로 다르며 이에 따라 稅負擔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근로자가구의 경우 控除制度를 통해 특정 階層이 稅負擔을 줄이더라도 所得은 비교적 정확하므로 수평적 비형평도는 높게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稅負擔의 분석을 우리는 勤勞者家口와 自營業家口間 그리고 自營業家口 내부에서 水平的 衡平性 원칙이 상당히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우리의 租稅制度를 살펴보면 水平的 衡平性의 원칙에 어긋나는 制度가 존재하고 있으므로 위의 분석결과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저축증대를 목적으로 시행되었고, 1990年代에도 유지되고 있는 利子・配當所得의 分離課稅制度는 동일한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과 金融所得에 대해 서로 다른 세금을 부과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所得稅 면세자도 利子·配當所得에 대해서는 20%의 所得稅를 납부해야 하며 綜合所得稅 최고세율의 적용을 받는 高所得者의 경우 利子·配當所得에 대한 20% 원천분리과세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勤勞所得 또는 事業所得金額이 많을수록 金融所得도 많은 現實에서 분리과세체제는 水平的・垂直的 衡平性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사실상 비과세는 高所得層의 많은 所得部分에 대해 혜택을 준다.

2. 消費課稅와 所得再分配

우리나라에서 間接稅 稅負擔에 관한 연구는 다른 세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활발하다[12]. 대부분의 연구가 도시가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실증분석인데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車軿權(1966), 韓昇洙(1982), 徐邉鎬(1984), 재무부(1983), Heller (1981) 등을 들 수 있고,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李啓植 · 裵埈晧(1986), 玄鎭權 · 羅城麟(1995)을 들 수 있다[13]. 〈表 1-17〉은 이상의 연구결과를 모두 요약하여 보여준다. 각 연구는 분석연도, 분석대상, 자료처리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호비교하는 데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 소비세의 부담이 역진적이란 결론을 유도하는 데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가구별 소비형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미시자료의 사용을 통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세목별로 살펴본다. 李啓植과 裵埈晧(1986)는 1984년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여 附加價値稅 및 여타 주요 개별소비세의 所得階層別 稅負擔分布를 總所得, 假處分所得,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14]. 연구결과에 의하면 附加價値稅의 부담이 總所得基準의 경우 1~2분위에서 급격히 하락한 이후 완만한 역진적 稅負擔 경향을 보이고 있다. 特別消費稅의 경우 總所得을 기준으로 하면 1~5분위 사이에서는 완만한 누진성을 보이고 있다. 항상소득의 대리변수인 소비지출기준의 경우에는 1~4분위와 5~10분위 사이에서 상당한 누진성을 시현하고 있다. 재화 및 용역에 대한 稅負擔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전매익금, 주세 그리고 재화 및 용역세에 부가되는 教育稅는 대체로 역진적인 경향을 보이며 재화 및 용역세분 방위세는 비례적인 구조를, 그리고 전화세는 완만하다가 대체로 누진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

12) 도시가계연보자료는 소득계층별로 소비지출 형태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타분야에 비해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해 연구가 활발하다.

13)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가 집계된 자료를 사용한 연구보다 가구별 소비특성을 더욱 정밀하게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로 李啓植 · 裵埈晧의 연구는 도시가계자료만을 사용한 데 반해, 玄鎭權 · 羅城麟의 연구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14) 항상소득에 따른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항상소득의 대리변수로 소비지출을 사용하였다.

〈表 1－17〉 우리나라의 消費稅 負擔分析

(單位 : %)

연구자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가. 車軒權(1966) : 1965년 결과											
물품세	0.108	0.023	0.028	0.051	0.064	0.098	0.105	0.106	0.164	0.262	
주세	0.083	–	0.043	0.054	0.067	0.058	0.072	0.061	0.101	0.044	
연초전매익금	2.460	3.967	2.487	2.186	2.147	1.909	1.909	2.052	1.538	1.353	
소계	2.651	3.990	2.558	2.291	2.278	2.065	2.166	2.219	1.803	1.659	
나. Heller(1981) : 1976년 결과											
부가가치세	5.55	5.19	4.19	5.00	4.67	4.84	4.79	4.04	4.11	3.91	
특별소비세	1.02	1.19	0.86	0.98	1.03	1.05	1.01	0.89	0.86	1.67	
주세	0.84	0.93	0.90	0.86	0.80	0.90	0.61	0.83	0.70	0.67	
전매익금	0.00	1.67	1.59	2.41	2.09	1.91	1.60	1.69	1.35	0.90	
소계	7.41	8.98	7.54	9.25	8.59	8.70	8.01	7.45	7.02	7.15	
다. 韓昇洙(1982) : 1970년 결과											
영업세	1.85	1.71	1.69	1.67	1.66	1.65	1.65	1.65	1.67	1.77	1.45
물품세	1.21	1.27	1.29	1.31	1.35	1.37	1.41	1.47	1.56	1.79	1.25
석유류세	1.04	1.07	1.09	1.10	1.12	1.13	1.16	1.19	1.24	1.34	0.99
전기가스세	0.43	0.39	0.38	0.37	0.37	0.36	0.36	0.36	0.36	0.36	0.33
직물류세	0.46	0.48	0.49	0.50	0.51	0.52	0.53	0.54	0.56	0.59	0.48
통행세	0.61	0.67	0.69	0.71	0.73	0.74	0.76	0.78	0.82	0.89	0.63
주세	1.44	1.23	1.18	1.13	1.08	1.05	1.00	0.95	0.88	0.77	1.01
입장세	0.23	0.25	0.25	0.26	0.26	0.27	0.27	0.28	0.29	0.31	0.22
소계	7.27	7.07	7.06	7.05	7.08	7.09	6.87	7.22	7.38	7.82	6.36
라. 韓昇洙(1982) : 1978년 결과											
부가가치세	9.38	7.50	6.70	6.40	5.99	5.69	5.38	5.06	4.67	3.82	4.88
특별소비세	3.12	2.81	2.81	2.48	2.36	2.26	2.16	2.06	1.92	1.62	1.90
주세	2.34	1.83	1.83	1.52	1.41	1.32	1.23	1.14	1.02	0.78	1.12
전화세	0.25	0.21	0.21	0.18	0.17	0.16	0.15	0.14	0.13	0.11	0.13
전매익금	5.33	3.45	3.45	2.49	2.16	1.93	1.71	1.49	1.23	0.75	1.62
소계	20.42	15.80	15.80	13.07	12.09	11.36	10.63	9.89	8.97	7.08	9.65
마. 財務部(1983) : 1976년 결과											
특별소비세	0.19	0.21	0.30	0.35	0.33	0.31	0.45	0.25	0.41	0.70	0.43
주세	0.26	0.27	0.26	0.25	0.26	0.24	0.24	0.26	0.25	0.22	0.25
바. 財務部(1983) : 1978년 결과											
특별소비세	0.82	0.48	0.42	0.58	0.78	0.58	0.77	0.60	0.87	0.93	0.75
주세	0.39	0.32	0.37	0.37	0.36	0.34	0.35	0.31	0.32	0.32	0.33

〈表 1-17〉의 계속

연구자	소득분위										
	1	2	3	4	5	6	7	8	9	10	평균
사. 財務部(1983) : 1980년 결과											
특별소비세	0.62	0.50	0.48	0.47	0.41	0.50	0.48	0.41	0.45	0.45	0.46
주세	0.61	0.41	0.46	0.42	0.42	0.46	0.45	0.44	0.45	0.37	0.42
아. Oh(1982) : 1978년 결과											
부가가치세	5.36	3.10	3.07	3.05	3.05	2.99	2.91	2.86	2.77	2.60	2.87
특별소비세	2.15	1.88	1.90	1.91	1.88	1.85	1.85	1.82	1.85	1.74	1.84
자. 徐遵鎬(1984) : 1982년 결과											
부가가치세	5.74	4.40	4.30	3.95	3.82	3.71	3.75	3.60	3.58	2.63	3.72
차. 李啓植·裵埈晧(1986) : 1984년 총소득기준											
부가가치세	4.31	2.46	2.30	2.27	2.16	2.10	2.05	2.02	1.97	1.88	2.10
특별소비세	0.61	0.36	0.36	0.42	0.34	0.36	0.39	0.37	0.38	0.42	0.39
주세	0.25	0.13	0.12	0.11	0.12	0.10	0.10	0.09	0.08	0.07	0.10
전화세	0.25	0.11	0.13	0.14	0.15	0.15	0.15	0.15	0.14	0.11	0.14
전매익금	1.31	0.85	0.70	0.62	0.51	0.46	0.39	0.33	0.26	0.15	0.39
방위세	0.40	0.21	0.22	0.24	0.23	0.23	0.24	0.23	0.23	0.21	0.23
교육세	0.21	0.14	0.11	0.10	0.09	0.08	0.07	0.06	0.05	0.03	0.07
소계	7.34	4.27	3.95	3.89	3.59	3.47	3.37	3.25	3.10	2.85	3.41
카. 李啓植·裵埈晧(1986) : 1984년 소비지출기준											
부가가치세	2.47	2.51	2.55	2.63	2.64	2.63	2.60	2.64	2.67	2.76	2.64
특별소비세	0.35	0.37	0.40	0.49	0.42	0.45	0.49	0.49	0.52	0.61	0.49
주세	0.14	0.13	0.14	0.13	0.14	0.13	0.13	0.11	0.11	0.10	0.12
전화세	0.14	0.11	0.15	0.16	0.18	0.19	0.19	0.20	0.19	0.16	0.17
전매익금	0.75	0.87	0.77	0.72	0.63	0.57	0.49	0.44	0.35	0.21	0.49
방위세	0.23	0.21	0.25	0.28	0.27	0.28	0.30	0.30	0.31	0.31	0.29
교육세	0.12	0.14	0.13	0.12	0.12	0.10	0.08	0.08	0.06	0.04	0.08
소계	4.20	4.33	4.38	4.52	4.38	4.34	4.27	4.25	4.23	4.18	4.28
타. 玄鎭權·羅城麟(1995) : 1991년 결과											
부가가치세	3.77	3.20	3.05	3.07	3.21	3.31	3.23	3.39	3.45	2.72	3.15
특별소비세	0.37	0.32	0.34	0.44	0.55	0.73	0.66	0.79	0.97	0.78	0.69
주세	0.24	0.21	0.20	0.18	0.15	0.15	0.13	0.12	0.09	0.17	0.13
소계	4.39	3.71	3.64	3.68	3.91	4.19	4.02	4.17	4.52	3.57	3.95

資料 : 李啓植·裵埈晧(1986), 玄鎭權·羅城麟(1995), 車幷權(1966), 韓昇洙(1982), 李啓植(1987), 徐遵鎬(1984), 財務部(1983), Peter S. Heller(1981), Oh(1982).

우리나라 間接稅의 稅負擔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피기 위해서는 사용한 자료와 분석대상이 일치하는 연구를 중심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李啓植·裵埈晧(1986)와 같은 미시자료이며, 1991년 자료를 사용한 玄鎭權·羅城麟(1995)을 비교하여 시계열적 특성을 살펴보면 〈表 1－18〉과 같다.

〈表 1－18〉 間接稅 負擔率의 比較

(單位 : %)

所得階層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간접세	
	1984	1991	1984	1991	1984	1991	1984	1991
1분위	0.61	0.37	0.25	0.24	4.31	3.77	7.34	4.39
2분위	0.36	0.32	0.13	0.21	2.46	3.20	4.27	3.71
3분위	0.36	0.34	0.12	0.20	2.30	3.05	3.95	3.64
4분위	0.42	0.44	0.11	0.18	2.27	3.07	3.89	3.68
5분위	0.34	0.55	0.12	0.15	2.16	3.21	3.59	3.91
6분위	0.36	0.73	0.10	0.15	2.10	3.31	3.47	4.19
7분위	0.39	0.66	0.10	0.13	2.05	3.23	3.37	4.02
8분위	0.37	0.79	0.09	0.12	2.02	3.39	3.25	4.17
9분위	0.38	0.97	0.08	0.09	1.97	3.45	3.10	4.52
10분위	0.41	0.78	0.07	0.07	1.88	2.72	2.85	3.57
평균	0.39	0.69	0.10	0.13	2.10	3.15	3.41	3.95

資料 : 李啓植·裵埈晧(1986) 및 玄鎭權·羅城麟(1995).

간접세 전체적으로 보면 平均 負擔率은 1984年 3.41%에서 1991年 3.95%로 증가하였다[15]. 所得階層別 間接稅率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4年에는 所得이 높은 階層이 稅負擔이 낮은 역진적 구조를 보이나, 1991年에는 所得의 증가에 따른 稅負擔率의 변화가 적어 비례적인 구조를 나타낸다. 最下位 所得階層인 1, 2, 3, 4분위의 경우, 1991年이 1984年에 비해 稅負擔率이 낮고, 5분위 이상의 階層은 1991年이 1984年에 비해 稅負擔率이 높게 나타났다. 간접세의 역진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15) 玄鎭權·羅城麟(1995)에서는 도시가계자료에 있는 소득자료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금융소득은 모집단화를 시도한 후 합산하였다. 즉 금융소득은 비교적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계정에 있는 전체액수와 비교하여 일률적으로 모집단화하였다. 그러므로 玄鎭權·羅城麟에서 사용한 소득은 조사자료에서 보여주는 소득액보다 크게 나타난다. 반면 李啓植·裵埈晧(1986)는 조사자료의 소득금액을 그대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두 결과의 비교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즉 1991년의 세부담이 1984년과 차이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있으며, 1984年에는 이러한 역진적 구조를 잘 나타낸다. 특히 最下位 所得階層인 1분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稅負擔率(7.34%)을 보여주어, 역진도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1年에는 間接稅의 역진적 구조가 매우 달라졌다. 모든 階層의 間接稅 負擔率이 3.5%에서 4.5% 내에 있으므로 역진적 구조가 매우 완화되었다. 間接稅의 역진적 구조는 세제의 所得 再分配 기능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간접세 구조는 1991年이 1984年에 비해 역진도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財產稅와 所得再分配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토지소유의 不平等度가 심각하고 또한 부동산투기를 통해 엄청난 규모의 資本利得이 일부 階層에 귀속되었던 우리나라의 現實에서 재산세에 대하여는 일반 國民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재산과세의 부담이 土地所有階層別로 어떻게 분포되었는지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없다. 관련 연구로서 金明淑(1987, 1988, 1994)과 李性旭 外(1993)는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재산관련 세제를 분석하였고, 玄鎭權(1995)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종합토지세 부담을 분석하였다.

총량적인 재산과세를 사용하여 재산과세가 토지소유에서 발생한 자본이득을 얼마나 환수해왔는지, 토지소유의 不平等을 완화할 수 있는 적절한 기능을 해왔는지를 추측할 수 있다. 〈表 1-19〉에 의하면 1991年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토지보유에 따른 稅負擔은 7,131억원으로서 전 국토의 66%에 해당하는 1991年 綜合土地稅 과세대상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지가총액 추정액 867조원의 0.08%에 해당한다. 부동산과 관련된 總稅負擔額 약 6조 6천억원은 1991年 지가총액 추정액의 0.73%이고 지가상승으로 발생된 자본이득 추정액 83조 8천억원의 7.5%에 불과하다. 이것은 부동산관련 租稅制度가 지가상승으로 발생된 자본이득을 환수하는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表 1-19〉 不動產關聯 稅負擔의 比重

(單位 : 억원, %)

	1988	1989	1990	1991
총세액	225,842	261,949	332,148	383,550
토지보유과세	2,416(1.07)	2,991(1.14)	5,934(1.78)	7,131(1.86)
건축물 보유과세	2,883(1.28)	3,653(1.39)	4,204(1.27)	5,072(1.32)
토지초과이득세	-	-	-	4,630(1.20)
부동산보유 세부담	5,299(2.35)	6,644(2.53)	10,138(3.05)	16,833(4.38)
취득·등록세(부동산)	11,516(5.10)	14,182(5.41)	19,091(5.75)	25,799(6.73)
부동산자본이득과세	5,917(2.62)	10,681(4.08)	17,733(5.34)	23,737(6.19)
부동산관련 세부담	22,737(10.07)	31,507(12.02)	46,962(14.14)	66,369(17.30)

註 : ( ) 안은 총세액 대비 비율임.
資料 : 李性旭 外(1993).

한편 부동산관련 세수의 총세수에 대한 비중을 살펴보면 1991年의 경우 부동산관련 세수 6조 6,369억원은 총세수 38조 3,550억원의 17.3%를 차지한다. 부동산보유과세인 綜合土地稅, 建物分 財產稅, 都市計劃稅 그리고 登錄稅에 부과되는 敎育稅와 讓渡所得稅에 부과되는 住民稅를 합하면 부동산관련 세수는 총세수의 18.7%로서 매우 높은 편이다. 그러나 토지보유에 대한 稅負擔은 7,131억원으로서 총세수의 1.9%에 해당하며 토지초과이득세를 포함하면 3.1%에 달한다. 建物分 財產稅 및 都市計劃稅를 포함한 부동산보유에 대한 稅負擔은 1조 6,833억원으로서 총세수의 4.4%이다. 부동산이전과 관련된 稅負擔은 2조 5,799억원으로서 총세수의 6.7%이고 不動產資本利得課稅는 2조 3,737억원으로서 총세수의 6.2%를 차지한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경우 不動產保有에 관한 稅負擔은 낮고 부동산이전에 관한 稅負擔이 높은 비정상적인 稅負擔構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우리나라 재산과세의 이러한 특징은 국제비교를 통해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 〈表 1-20〉은 선진 각국의 부동산보유세, 부동산이전세 및 상속 증여세가 총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나라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부동산보유과세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할 수 있다.

〈表 1-20〉 不動産關聯 稅負擔의 國際比較(1990年)

(單位 : %)

	한국 (1991)	대만 (1991)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부동산보유세부담	3.2	7.5	5.2	9.7	6.8	1.0	2.3
부동산이전세부담	6.7	1.3	0.4	-	-	0.5	0.0
상속 및 증여세	1.4	0.9	1.4	1.0	0.7	0.3	1.0
기타	1.2	-	0.4	-	0.0	1.3	0.6
재산과세	12.5	9.7	7.4	10.7	7.5	3.1	3.8

資料 : 李性旭 外(1993).

財產稅制의 所得再分配 효과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金明淑(1987, 1988, 1994)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도시가계연보』의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여 토지분 재산세와 건물분 재산세의 所得階層別 稅負擔을 보여주었다. 토지의 경우는 토지세가 전부 토지소유자에게로 귀착되고, 토지소유가 所得에 비해 高所得層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累進的 所得分配 效果를 가짐을 유추하였다.

玄鎭權(1995)은 종합토지세 대상토지를 대상으로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특징은 개인별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며 토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세부담을 측정하였다. 기존의 연구가 대부분 집계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으나 공시지가를 사용한 개인별 미시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므로 토지분 재산세의 부담 실태에 대해 보완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表 1-21〉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가지고 있는 개인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계층별 세부담 실태를 보여 준다. 전체 계층의 평균 세부담률은 0.062%를 보여주고,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1%가 0.114%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이 낮아질수록 세부담률도 떨어지는 누진적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상위 60% 이후로는 세부담률이 오히려 높아져 역진적 특성을 가미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지분 재산세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을 종합해 볼 때, 토지분 재산세 부담은 비교적 누진적 특성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반면 건물분 재산세는 稅負擔이 누구에게 귀착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결론을 보여주었다. 즉 건물분 재산세가 전부 사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전통적 견해에서는 역진적 특성을 보여준 반면, 건물분 재산세가 재산소유자에게 부담지워진다는 새로운

〈表 1-21〉 綜合土地稅의 階層別 稅負擔 實態

(單位 : %)

공시지가대비 계층	종합토지세 /공시지가
상위 1%	0.114
2%	0.071
3%	0.063
4%	0.056
5%	0.054
6 ~ 10%	0.049
11 ~ 20%	0.045
21 ~ 30%	0.041
31 ~ 40%	0.040
41 ~ 50%	0.040
51 ~ 60%	0.039
61 ~ 70%	0.041
71 ~ 80%	0.043
81 ~ 90%	0.045
91 ~100%	0.058
평균 세부담률	0.062

資料 : 玄鎭權(1995).

〈表 1-22〉 建物分 財産稅의 稅負擔(1991年)

(單位 : %)

분위	전통적 견해			새로운 견해
	합계	주택	비주택	
1	0.28	0.17	0.11	0.10
2	0.20	0.12	0.09	0.07
3	0.19	0.11	0.08	0.08
4	0.20	0.11	0.08	0.09
5	0.19	0.11	0.08	0.11
6	0.18	0.10	0.08	0.15
7	0.17	0.10	0.08	0.16
8	0.17	0.10	0.08	0.17
9	0.16	0.09	0.07	0.19
10	0.13	0.07	0.07	0.29
평균	0.17	0.10	0.08	0.17

資料 : 金明淑(1994).

견해에서는 누진적 특성을 보여준다. 〈表 1-22〉는 所得階層別 건물분 재산세의 稅負擔 실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전통적 견해에 따르면 대체로 세부담이 역진적인 것으로 그리고 새로운 견해에 따르면 누진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건물분 재산세에 대한 두 가지 理論은 서로 보완적이기 때문에 한 가지 理論을 바탕으로 한 실증결과에 의존할 수 없다. 건물분 재산세의 귀착문제는 더욱 정밀한 자료를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4. 分配의 觀點에서 본 租稅政策의 問題點

所得과 富의 공평한 分配達成에 租稅政策이 기여한다는 것은 福祉 및 社會開發의 수요증대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財政收入이 확보되고 또한 所得과 富의 再分配가 달성되도록 세제가 확립되고 이를 세정이 뒷받침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租稅政策이 所得과 富의 再分配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政策手段임에도 불구하고 財政收入의 확보에만 성공했을 뿐 所得과 富의 不平等狀態를 改善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16].

물론 세제의 운용과 관련하여 공평성 또는 所得과 富의 再分配 目標가 지나치게 강조될 경우 여타 經濟目標의 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각종 부작용이 초래될 여지가 크다. 分配正義 또는 所得再分配 문제를 租稅가 전부 떠맡을 수는 없지만, 누진적인 所得課稅의 원리에 대해 일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租稅가 일정 정도 所得再分配 效果를 발휘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分配正義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은 높은 間接稅 比重, 綜合所得稅制의 未定着, 재산세 기능의 미약, 財產 및 事業所得에 대한 租稅減免의 집중,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시정하지 못하는 特別消費稅 등 여러 가지 세제에 걸쳐 존재하고 있다.

---

16) 지금까지 살펴본 조세의 소득재분배에 관한 실증연구는 모두 연간 세부담을 근거로 이루어졌다. 평생 세부담(lifetime tax burden)을 통한 세부담의 형평성에 대한 논의가 Fullerton and Rogers(1993) 등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부담 형평성에 대한 분석도 평생기간을 토대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 중 가장 큰 문제점은 所得稅 기능이 미약하고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 所得稅는 1974年 綜合所得稅 체제의 도입 이후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갖추고 있고 실제 階層別 稅負擔分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정도 所得再分配 效果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租稅收入에서 所得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며 租稅體系 전체의 所得再分配 효과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所得稅機能이 미약한 또 다른 이유는 利子·配當所得 등 많은 所得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분리과세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4年 綜合所得稅制의 도입 이후에도 金融所得은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金融資産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高所得層의 稅負擔이 경감됨으로써 누진적인 所得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천분리과세 체제는 所得稅 면세자의 金融所得에 대해서도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함으로써 低所得層의 稅負擔을 높이고, 所得種類間 稅負擔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등 수평적 공평성의 원리에도 어긋나고 있다.

金融資産의 자본이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도 所得稅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증권시장의 안정과 금융저축의 증대를 이유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막대한 규모의 자본이득이 일부 資産階層에게 집중적으로 귀속됨으로써 세제에 대한 불공평감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또한 事業所得의 課標陽性化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事業所得에 대한 누진적인 과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우리나라 租稅體系가 적극적인 所得再分配 기능을 발휘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엄청난 규모의 地下經濟의 존재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所得稅의 누진성은 통계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일 것이다.

Ⅳ. 結 論

우리나라의 분배 불균형 실태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관련 실증적 연구가 활발하지 않아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소득계층별 所得과 富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도시가계조사자료」, 농수산부의 「농촌경제조사자료」 등을 통한 여러 가지 실증적 연구들은 분석기간이 짧거나, 분석대상 범위가 전체 국민이 아니므로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특히 富의 不均等 實態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는 더욱 적어 所得과 富를 포함한 分配의 不均等에 관한 분석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우리나라의 소득불균등 추이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시기는 1960년대 후반부터 소득분배상태가 개선되는 시기이다. 1960년대 초기 개발단계에 정부의 경제정책은 對外支向的이었으며 勞動集約的 製造業을 육성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재산소득에 비해 임금소득의 성장수준이 빨라져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둘째 시기는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을 하던 1970년대로 所得分配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기이다. 이때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주축이 되어 자원을 배분하는 시기로서 高度成長의 費用으로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셋째 시기는 1980년대로 소득분배가 다시 개선되는 시기이다. 정부는 여러 가지 租稅支援과 특혜적인 政策金融을 축소 내지 폐지하였고, 물가안정을 위한 제반 조치를 취함에 따라 所得分配가 개선되었다.

1980년대 이후 소득분배가 개선되어 가는 분석결과와는 달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소득분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는 富의 不均等 實態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富의 不均等 程度는 소득불균등에 비해 훨씬 높아, 소득분배가 개선되었다고 해도 부의 불균등으로 인해 체감하는 불균등 정도는 더욱 높게 나타났다. 대표적인 富의 分配로서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分配 不均等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5%가 전체 토지의 약 51%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所得 및 富의 不均等뿐 아니라 특정 집단 사이의 소득격차는 분배정의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학력별, 직종별, 성별 임금격차와 지역간 소득격차는 비교적 크게 나타나 특정집단에 대해 상대적인 소외감을 조성하게 되므로 불평등의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所得再分配 觀點에서 우리나라 세제의 문제점은 所得稅 기능이 미약하고 간접세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다. 또한 재산관련 세제의 경우 부동산보유에 관한 세부담은 낮고, 이전에 관한 세부담이 높아 부동산 소유편중을 시정할 수 있는 적극적

인 기능을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所得稅는 1974年 綜合所得稅 체제의 도입 이후 누진적인 세율체계를 갖추고 있고 실제 階層別 稅負擔分布에서 볼 수 있듯이 일정 정도 所得再分配 效果를 발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租稅收入에서 所得稅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약하며 租稅體系 전체의 所得再分配 효과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所得稅機能이 미약한 또 다른 이유는 利子·配當所得 등 많은 所得이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원천분리과세되고 있다는 점이다. 1974年 綜合所得稅制의 도입 이후에도 많은 所得이 金融所得은 분리과세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金融資產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高所得層의 稅負擔이 경감됨으로써 누진적인 所得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17]. 金融資產의 자본이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도 所得稅 기능을 약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또한 사업소득에 대한 과표양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근로소득자와 세부담에 있어서 수평적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소득세제의 누진과세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所得分配와 租稅의 所得再分配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부진한 상태이므로 문헌고찰을 통한 비판적 논리의 전개는 매우 어렵다. 기존의 실증연구들이 사용한 자료와 분석대상이 서로 상이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유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향후 所得分配와 租稅의 所得再分配에 관한 실증적 분석이 매우 심도 있게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후에 비판적 시각을 바탕으로 문헌고찰을 통한 연구는 다시 이루어져야 하겠다.

17) 19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는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수 있으나, 종합과세 대상의 기준금액이 4,000만원으로 너무 높게 책정되어 이 제도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얼마나 유효할 것인가는 매우 의심스럽다.

參 考 文 獻

康奉均, 『韓國의 經濟開發戰略과 所得分配』, 韓國開發硏究院, 1989.

經濟企劃院, 『韓國의 社會指標』, 1987, 1990.

權純源 外, 『分配不均等의 實態와 主要 政策課題』, 韓國開發硏究院, 1992.

金大模 · 安國臣, 「韓國의 所得分配 및 그 決定要因과 分配問題에 대한 國民의 意識構造」, 文敎部支援 學術硏究論文, 1987.

金明淑, 「財産稅의 所得分配效果」, 『韓國開發硏究』, 第9卷 第4號, 韓國開發硏究院, 1987. 12.

______, 『우리나라 財産稅負擔 分析』, 政策硏究資料 88-02, 韓國開發硏究院, 1988. 3.

______, 『財産保有稅의 歸着』, 政策硏究資料 94-04, 韓國租稅硏究院, 1994. 5.

羅城麟 · 玄鎭權, 「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硏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硏究院, 1993.

朴東雲 · 金愛實, 「韓國經濟와 勞動所得分配率 變化」, 『經濟學硏究』, 1982.

裵震漢, 「韓國의 勞動所得 分配率 變動」, 『經濟學 硏究』, 第40輯 第2號, 韓國經濟學會, 1992.

保健社會部, 『韓國의 社會指標』, 1994.

徐遵鎬, 「現行 附加價値稅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效果」, 『經商論叢』, 1984.

李啓植, 「우리나라 間接稅負擔分布 分析」, 『財政論集』, 1987.

李啓植 · 裵埈晧,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郭泰元 · 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租稅發展』, 韓國開發硏究院, 1986.

李性旭 · 韓相國·崔明根, 『土地稅制의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韓國租稅硏究院, 1993.

財務部, 「年度別 · 品目別 間接稅負擔率 및 消費支出分析」, 1983.

朱鶴中,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______, 『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硏究院, 1982.

______, 『韓國經濟의 理論과 現實』, 서울大學校 出版部, 1987.

車粹權, 「우리나라의 租稅負擔에 관한 考察」, 『經濟論集』, 第5卷 第4號, 1966.

土地公概念硏究委員會, 『土地公概念 硏究委員會 報告書』, 1989.

韓國銀行, 『國民計定』, 1994.

韓昇洙,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관한 硏究』, 韓國經濟硏究院, 1982.

玄鎭權, 「土地所有의 偏重實態와 綜合土地稅의 所得再分配 效果」, 韓國租稅學會 發表論文, 1995.

玄鎭權 · 羅城麟, 「間接稅 負擔分析」, 『財政論集』, 第9輯, 1995.

______, 「우리나라 稅制의 衡平性 測定 :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 家口의 稅負擔의 差異를 中心으로」, 『經濟學硏究』, 第41卷 第3號, 1994.

______,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稅負擔分析」, 『經濟學硏究』, 第42卷 第1號, 1994.

Fullerton, D. and D. Rogers, ***Who Bears the Lifetim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3.

Heller, Peter S., "Testing Impact of Value-Added and Global Income Tax Reforms on Korean Tax Incidence in 1976 : An Input-output and Sensitivity Analysis", *IMF Staff Papers*, Vol. 28, No. 2, June 1981.

Leipziger, D., et al.,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World Bank, 1992.

Oh, Yeon Cheon, "An Evaluation of the Tax Reform for a Value-Added Tax in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Export," A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ew York University, February 1982.

Smeeding, T., M. O'Higgins and L. Rainwater, *Poverty,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in Comparative Perspective*, Harvester Wheatsheaf, 1990.

母集團化 適用을 通한 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所得再分配 效果 測定

羅 城 麟·玄 鎭 權[1)]

目 次

---

* 본 논문은 한국재정학회, 『財政論集』, 제7집(1993년)에 게재한 논문임.

1) 翰林大 經濟學科 敎授, 本院 硏究委員.

Ⅰ. 序 論

租稅 및 社會扶助 政策이 우리나라 각 가구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實證的 分析의 중요성은 널리 인식되어 있으나, 이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의 접근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증적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所得階層間의 分配效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각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을 나타내는 미시자료의 사용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현재 이러한 미시자료는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都市家計年報』의 標本資料가 대표적인 것으로, 자료사용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의 분배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李啓植과 裵埈晧(1986)의 연구는 1984년 「都市家計資料」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間接稅의 所得分配效果를 분석하였고, 羅城麟(1991)의 연구는 1987년 「都市家計資料」를 사용하여 조세 및 사회부조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社會扶助模型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사용한 표본 도시가구가 모집단의 도시가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다. 사용한 표본의 도시가구가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는 無作爲 資料(random sample)가 아닌 특정 소득계층이나 인구계층에 偏倚(bias)되어 있을 때는 이들 자료의 단순한 사용은 재정정책의 소득분배 효과를 왜곡시키는 결론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표본가구가 모집단 가구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할 때, 표본가구를 모집단 가구에 근접시키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분석한 조세 및 사회부조 정책의 소득분배 효과가 모집단에 근접시키지 않은 기존의 연구방법을 통한 결과와 비교하여 母集團化의 重要性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羅城麟(1991)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硏究에서 분석한 1987년 표본 도시가구이며, 이 자료는 특히 소득계층의 분포에 있어 모집단의 소득분포와는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모집단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부조 정책의 소득분배에 미치는 분석 결과가 모집단화를 통하지 않은 분석 결과와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다 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재 개발중인 한국의 조세－사회부조 모형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뿐 아니라, 마이크로 標本資料를 사용하는 所得分配 및 租稅歸着에 대한 실증적 연구분야에 있어서 자료사용에 대한 하나의 警鐘으로 인식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가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개발의 범주에 속하므로 이 모형의 개괄적인 소개와 자료의 분석과정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둘째, 표본 도시가구를 모집단 도시가구에 근접시키는 母集團化 模型을 설명하고 이러한 모집단화를 통한 결과를 검증한다. 셋째, 모집단화를 통한 租稅 및 社會扶助의 歸着分析 結果를 均等 加重値를 사용한 단순한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여 母集團化의 感應度를 분석한다. 넷째, 모집단화를 통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母集團化의 重要性과 우리나라의 租稅 및 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를 논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 짓는다.

Ⅱ. 租稅 － 社會扶助 模型

본 연구는 조세－사회부조 모형 개발의 범주에서 제기된 하나의 문제점을 심도있게 분석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다. 그러므로 이 節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인 羅城麟(1991)의 租稅－社會扶助 模型을 간단히 소개하고, 都市家計 調査資料를 사용하여 연간자료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문제점을 통하여 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의 자세한 계산과정과 설명은 羅城麟 (1991)을 참조하기 바란다.

조세－사회부조 모형은 政府의 財政政策의 變化가 표본가구에 미치는 효과를 계산함으로써 정책변화가 인구 전체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와 특정계층에 미치는 효과를 추론하는 것이다. 이러한 모형의 부재시에는 재정정책의 변화가 미치는 효과는 典型的 家口에 대해 분석하거나 總體的 資料를 바탕으로 계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은 個別家口의 人口 및 所得特性을 無視함으로써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상당한 오류를 범할 소지가 있다. 租稅－社會扶助 模型은 각 가구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며 동시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는 미시 가구의 자료에 의거하여 財政政策의 變化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 모형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이 모형이 마이크로 컴퓨터에서 작동되고 메뉴에 의해 實行(menu-driven)되므로 광범위한 부류의 사용자에게 접근이 용이하고, 무엇보다 빠른 시간(IBM 386 PC에서 30초 이내)에 그 모형의 결과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현재의 조세－사회부조 모형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도시가계 조사자료」이다. 이 조사자료는 매년 통계청에 의해 발간되는데 1988년까지는 조사대상가구가 매달 약 1/12씩 바뀌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체 가구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2]. 1987년 도시가계조사는 4,308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호시설, 군대막사에서 거주하거나 타지방에 유학하는 학생들과 가구원 수가 1인인 도시가구는 제외하였다[3]. 이 조사자료는 기본적으로 消費者 物價指數를 계산하기 위함이 목적이므로 조세－사회부조 모형의 사용에 있어서 약간의 한계점이 있으나 所得 및 支出에 대한 細分化된 項目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서 사용되고 있다.

조세－사회부조 모형의 개발에 「都市家計資料」를 사용하는 데 몇가지 조정을 시도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自營業者의 事業所得은 일반적으로 過少報告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자영업자의 實際所得을 消費函數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4]. 그러므로 자영업자의 경우는 調査所得과 實際所得 모두를 사용하여 각 소득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둘째, 각 가구의 조세 및 사회부조액은 조사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各 家口의 所得과 支出資料를 바탕으로 계산하였다. 그 이유는 조사된 조세 및 사회부조액은 總體的으로 나타나 있어, 勤勞所得稅, 利子所得稅, 間接稅 등 項目別 租稅 및 社會扶助額을 가려내기가 불가능하고, 또한 보고된 조세 및 사회

2) 1989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3) 財政政策에서 가구원 수가 1인인 가구는 매우 중요하나 「都市家計資料」는 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財政政策 評價模型을 개발하는 데에 「都市家計資料」 사용은 한계점이 있다.
4) 자영업자의 실제소득의 추정방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Yoo & Na(1991)를 참조하기 바란다.

부조액은 실제액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지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부조액의 경우 推定額과 實際額은 일치하지 않을 것이나, 재정정책의 효과분석이 模型開發의 目的이므로 주어진 소득과 지출 수준에서 모든 가구가 정확하게 조세의무를 다하고 사회부조의 혜택을 받는다는 가정하에 조세 및 사회부조액을 계산한다. 여기서 각 家口單位를 課稅單位로 가정한다.

조세 및 사회부조의 계산은 각 가구의 年間所得 및 支出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가계자료를 연간자료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7년 「도시가계자료」의 경우 12개월을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1987년 1/4분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기간 동안 매월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各 家口의 分期別 所得 및 支出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가구 수는 2,016 가구로서 1987년 원래의 도시가계가구 수의 반만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에 1987년을 중심으로 5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各 項目別 分期別 季節指數를 구하고 이 지수를 각 항목에 곱하여 연간 자료를 환산하였다. 이 추정방법의 문제점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표본 도시가구는 저소득층을 실제보다 적게 대표하게 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가구일수록 자주 이사할 가능성이 높아 1/4분기의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한 도시가구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5]. 그러므로 새롭게 抽出된 都市家口의 標本은 年間資料로 환산된 장점을 가진 반면, 모집단의 소득계층에 따른 代表性을 喪失하게 된다. 특정 소득계층에 偏倚된 이 도시가구 표본자료의 단순한 사용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가져다 주므로 모집단화 방법을 통한 표본의 교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조세-사회부조 모형 개발의 과정에서 제기된 이 문제점을 다음 節에서 보여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해결한다.

---

5) 1989년부터는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동일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Ⅲ. 母集團化(grossing－up)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都市家計資料」가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구를 대표하지 못할 때 분석한 결과치는 올바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료가 어떤 특정한 특성에 의해 偏倚(bias)되어 있을 때는 표본자료가 전체 모집단에 가까울 수 있도록 母集團化(grossing-up)를 할 필요가 있다. 이 節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시가계자료」의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계의 특성과 비교하여 본다. 또한 調査標本을 母集團化시킬 수 있는 모형에 대해 설명한 후, 이러한 방법론에 의해 유도한 결과와 모집단화 없이 이루어진 결과를 비교한다.

1. 標本 都市家口의 特性

본 연구의 표본 도시가구를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구와 비교하기 위해 198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사용한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의 가구 수는 957만 1,361가구이며, 도시 가구수는 이 중 약 66%를 차지하는 633만 798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자료는 가구원 수가 1인인 가구는 조사대상에서 제외하였기 때문에 「인구 센서스 자료」에서 1人 家口를 제외한다. 1人 가구원의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도시가구의 6.8%를 차지하므로 이를 제외한 2인 가구원 이상의 도시가구수는 590만 3,224가구를 이루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母集團은 2人 以上의 家口員 數를 가지는 都市家口를 말한다[6].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 도시가구를 모집단 도시가구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여

6) 현재 「도시가계조사」는 1인 가구를 제외하고 있으며 이것은 표본의 유용성에 중요한 결함이 되고 있다. 그러한 가구를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도시가계조사」 표본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1인 가구에 대한 정보는 노동부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조사한 자료에서 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시키는 작업이 앞으로의 연구에 요청된다.

러가지 특성 중에서 연구에 적합한 특성에 따라 비교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가구원의 人口特性을 나타내는 變數로는 家口員 數, 家口主의 年齡 등을 들 수 있고, 所得特性을 나타내는 變數로 家口員別 所得, 支出의 程度, 住宅所有의 形態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표된 자료에 의해 모집단의 특성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 家口員 數와 消費支出의 水準을 사용하여 표본가구와 모집단 가구를 비교한다. 가구원 수에 따른 모집단의 분포는 1985년 「인구 센서스 자료」를 사용하고, 소비지출을 포함한 소득에 대한 분포는 「인구 센서스 자료」에서 구할 수 없으므로 1987년 「도시가계연보 자료」를 사용한다[7]. 「都市家計年報」에서 보여주는 월 평균 가계지출의 자료는 모집단을 사용하지 않고, 4,308가구의 표본을 사용한 결과이므로, 이들 가구들이 각 지출그룹에 차지하는 비율을 구하여 「인구 센서스 자료」의 전체 가구수로 환산하여 모집단의 소비지출에 따른 특성을 구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연보」에서 사용한 도시가구의 표본이 모집단의 소득특성을 정확히 반영한다고 가정한다.

〈表 2-1〉은 모집단 가구와 표본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른 분포의 차이를 나타낸다. 모집단과 표본에서 각 가구원 수에 따른 분포가 비교적 차이가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人 家口와 6人 以上 家口에서 표본이 모집단에 비해 낮은 구성을 이루고 있는 반면, 4人 家口는 표본이 모집단에 비해 높은 구성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2〉는 모집단과 표본가구의 月 平均 消費支出에 따른 分布의 差異를 나타낸다. 월 평균 소비지출그룹에 따른 분포가 모집단 가구와 표본가구에서 상당한 차이점을 볼 수 있다. 표본가구의 저소득 계층이 모집단 가구의 저소득계층에 비해 매우 낮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반대로 고소득 계층은 표본가구가 모집단 가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월평균 소비지출이 30만원 미만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표본가구가 모집단 가구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주고, 특히 월 평균 소비지출이 10만원 미만인 가구수는 표본의 경우 1가구뿐으로 모집단 가구의 1.9%에 비해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반

7) 1987년 총 가구수에 대한 자료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1985년 인구 센서스에서 발표된 총 가구수를 사용하나, 1985년과 1990년 인구 센서스의 총 가구수 자료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시점에서는 1990년 「인구 센서스 자료」가 유용하지 않으므로 향후 과제로 남겨 놓는다.

면 월 평균 소비지출이 55만원 이상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표본가구가 모집단 가구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저소득 계층이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표본가구의 사용은 실지 도시가구의 소득특성을 올바르게 반영하지 못하고 社會的 不平等度를 실제보다 낮게 나타낼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表 2-1〉 家口員 數 分布의 差異

(單位 : 가구, %)

가구원수	모집단		표 본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2인	733,142	12.4	198	9.8
3인	1,064,387	18.0	398	19.7
4인	1,735,233	29.4	686	34.0
5인	1,288,825	21.5	438	21.7
6인 이상	1,101,637	18.7	296	14.7
합계	5,903,224		2,016	

〈表 2-2〉 支出分布의 差異

(單位 : 가구, %)

지출수준	모집단		표본집단	
	가구수	비율	가구수	비율
100,000원 미만	113,932	1.9	1	0.0
100,000~149,999원	432,116	7.3	24	1.2
150,000~199,999원	737,313	12.5	77	3.8
200,000~249,999원	815,235	13.8	140	6.9
250,000~299,999원	769,780	13.0	178	8.8
300,000~349,999원	631,645	10.7	248	12.3
350,000~399,999원	525,977	8.9	203	10.1
400,000~449,999원	452,187	7.7	187	9.3
450,000~499,999원	299,293	5.1	174	8.6
500,000~549,999원	237,902	4.0	118	5.9
550,000~599,999원	173,555	2.9	106	5.3
600,000~699,999원	134,003	2.3	185	9.2
700,000~799,999원	104,487	1.8	122	6.1
800,000~899,999원	80,874	1.4	83	4.1
900,000원 이상	394,925	6.7	170	8.4
합 계	5,903,224	100.0	2,016	100.0

社會的 不平等度나 稅收推計를 정확히 구하기 위해서는 표본을 모집단에 近似化시키는 작업, 즉 母集團化(grossing-up)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가장 간단한 형태의 모집단화 방법은 한 개의 특성에 대해 모집단 가구와 표본가구의 분포를 비교하여 표본의 각각의 가구들에 가중치를 곱하여 모집단에 근접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한 개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모집단에 근접시킬 수 있지만, 두 개 이상의 특성에 의해 모집단에 더욱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두 개 이상의 특성에 대한 모집단의 結合分布(joint distribution)를 알 수 있어야 모집단화가 가능하다. 모집단의 결합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두 개 이상의 특성들에 의해 표본가구를 모집단화시키는 방법론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표본가구를 모집단화시킨다. 모집단의 분포에 최대한 近似化시키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많은 특성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발표된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본 연구의 표본자료를 위에서 언급한 家口員 數와 月平均 消費支出의 두 가지 특성에 의해 모집단화를 시도한다.

2. 母集團化(grossing-up) 模型

여기서 설명하는 母集團化(grossing-up) 模型은 특정한 특성에 따른 모집단의 獨立的인 分布를 알고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특성들에 대한 모집단의 結合分布(joint distribution)를 알 수 없을 때, 이들 두 가지 이상 특성들에 의해 표본을 모집단에 근접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집단 가구의 가구원 수와 월평균 소비지출에 따른 獨立分布는 발표된 자료를 통하여 각각 알 수 있으나, 가구원 수와 소비지출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모집단 가구에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두 특성에 따른 母集團의 結合分布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모집단의 이들 두 특성들에 의한 결합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결합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표본가구를 모집단 가구에 접근시키는 加重値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Atkinson, Gomulka, Sutherland(1988)가 영국의 「家計支出調査」(Family Expenditures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영국 국민전체를 모집단화한 방법이다.

표본 도시가구를 월 평균 소비지출액에 따른 그룹($i=1, \cdots, 15$)과 가구원 수에 따른 그룹($j=1, \cdots, 5$)으로 나누어, i번째와 j번째 그룹에 속하는 가구수를 S_{ij}로 표시한다. 모집단의 i와 j에 대한 결합분포는 알 수 없고 각 i그룹에 속한 모집단의 가구 수를 $N_{i.}$로 표시하고 각 j그룹에 속한 모집단의 가구 수를 $N_{.j}$로 표시할 때, 전체 모집단의 가구 수, N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sum_{i=1}^{15} N_{i.} = \sum_{j=1}^{15} N_{.j} = N \cdots\cdots (1)$$

標本家口의 i번째 및 j번째 그룹에 속하는 가구들을 母集團化시킬 수 있는 加重値를 P_{ij}로 표시할 때, 표본가구의 i번째 j번째 가구수(S_{ij})와 i그룹의 모집단 가구수($N_{i.}$)와 j그룹의 모집단 가구수($N_{.j}$)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um_{j=1}^{15} S_{ij}\, P_{ij} = N_{.j} \cdots\cdots (2)$$

$$\sum_{j=1}^{5} S_{ij}\, P_{ij} = N_{i.} \cdots\cdots (3)$$

여기서 P_{ij}는 본 연구에서 구해야 하는 가중치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며, 먼저 P_{ij}에 가장 근접하는 初期値, Q_{ij}를 우리가 안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P_{ij}는 가능한 Q_{ij}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가져야 하며, 이를 수식으로 설명하면 P_{ij}와 Q_{ij}의 차이를 나타내는 距離函數 d(P, Q)를 最小化시켜야 한다. 거리함수 d(P, Q)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다른 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흔히 二次函數(quadratic function)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8]. 본 연구에서 P_{ij}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차함수 형태의 거리함수를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제약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그함수 형태의 거리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9].

---

8) 이차 거리함수를 사용한 예로는 Hollenbeck (1976)을 들 수 있다.

9) 이차함수와 로그함수를 포함한 일반 거리함수의 형태를 Atkinson, Gomulka, Sutherland (1988)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d(P, Q) = \sum \sum P_{ij} \log(P_{ij} / Q_{ij}) \cdots\cdots (4)$$

그러므로 표본도시가구를 모집단 도시가구로 모집단화시키는 것은 거리함수, 식 (4)를 최소화시키며, 조건식 (2)와 (3)을 만족시키는 P_{ij}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적치를 구하기 위한 必要條件(necessary condition)은 식 (2), (3)과 다음의 식 (5)로 표시할 수 있다.

$$\log(P_{ij} / Q_{ij}) - S_{ij}(\lambda_{i.} + \lambda_{.j}) + 1 = 0 \cdots\cdots (5)$$

여기서 λ는 라그랑즈 승수(Lagrangian multiplier)이며, 초기치 Q_{ij}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어야 한다.

$$\sum \sum S_{ij} Q_{ij} = N \cdots\cdots (6)$$

본 연구에서 초기치 Q_{ij}는 표본의 모든 가구(2,016 가구)가 모집단 가구(590만 3,224가구)를 균등히 대표할 때 가지는 값인 2,928.2를 사용한다. 식 (2), (3), (5)는 95개의 변수와 95개의 수식을 나타내므로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가중치를 구할 수 있다[10].

이상에서 보여준 방법은 표본가구의 두 가지 특성들에 의해 모집단화시키는 것으로 한 개 특성에 의해 표본가구를 모집단화시키는 것보다 모집단에 더욱 근접시킬 수 있다[11]. 본 연구는 두 가지 특성들에 의한 모집단화가 보다 더 단순한 모집단화에 비해 얼마나 다른 분석결과를 나타내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다른 모집단화 방법에 의한 분석결과를 함께 비교한다. 첫째 방법은 月平均 消費支出額(i그룹)만을 고려한 가중치 P_i를 통한 母集團化 方法(WI)으로 이는 각 i그룹에 속한 모집단의 가구수를 표본 가구수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 둘째 방법은 家口員 數(j그룹)만을 고려한

10)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해 Gams를 사용하였다.
11) 한 개의 특성을 사용하여 모집단화를 한 연구로는 玄鎭權(1991)을 들 수 있다.

加重値 P_j를 통한 母集團化 方法(WJ)으로 각 j그룹에 속한 모집단의 가구수를 표본가구수로 나누어서 구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均等한 加重値를 통한 母集團化 方法(W)으로 이는 모집단의 전체 가구수를 표본의 전체 가구수로 나누어서 구하며 이 가중치 값은 2,928.2이다.

〈表 2-3〉은 두가지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한 加重値(WIJ)와 한 개의 특성만을 고려한 加重値(WI, WJ)의 결과를 보여준다. 표본가구의 월 평균 소비지출의 분포에서 알 수 있듯이 저소득층이 적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계층에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표본에서 적게 대표하고 있는 가구원수가 2인 가구와 6인 이상인 가구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2-4〉는 네 가지 방법들에 의한 모집단화 가중치들의 분포를 보여준다. 두 가지 특성들에 의한 가중치는 각 특성을 모두 고려하였기 때문에 加重値의 標準偏差가 다른 방법들에 비해 큼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성에 의한 가중치 중에서도 소비지출에 의한 가중치는 15개 그룹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므로 가구원 수에 의한 5개 그룹의 가중치에 비해 표준편차가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表 2-3〉 加重値 結果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가중치(WI)
100,000원 미만	113,932	0	0	0	0	113,932
100,000~149,999	9,172.9	29,603.3	7,044.9	0	0	18,004.8
150,000~199,999	10,203.5	11,885.9	8,070.1	1,596.3	1,773.5	9,575.5
200,000~249,999	4,300.6	3,931.2	9,226.1	5,141.3	1,897.6	5,823.1
250,000~299,999	1,890.2	1,845.2	6,807	4,501.5	1,411.5	4,324.6
300,000~349,999	1,109.8	841.8	2,144.3	6,046.3	4,342.5	2,547
350,000~399,999	1,155.2	1,012.6	2,575.9	5,314.5	2,682.3	2,591
400,000~449,999	953.9	630.4	887.9	4,335.6	5,457.1	2,418.1
450,000~499,999	932.1	651.8	696.6	2,845.3	4,479.9	1,720.1
500,000~549,999	1,033.3	849.9	1,080.7	2,689.6	4,271.8	2,016.1
550,000~599,999	1,006	-847	705.2	1,865.2	3,647.2	1,637.3
600,000~699,999	722	295.4	39.4	461.3	2,185.8	724.3
700,000~799,999	965.2	440.1	257.6	517.6	1,963.1	856.5
800,000~899,999	934.4	467.6	637.1	798.7	1,826	974.4
900,000원 이상	985	400.4	189.6	793.1	5,715.2	2,323.1
가중치(WJ)	3,702.7	2,674.3	2,529.5	2,896.9	3,721.7	

〈表 2-4〉 加重値의 特性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중치(WIJ)	2,928.2	4,121	39.4	113,932
가중치(WI)	2,928.2	3,532	724.3	113,932
가중치(WJ)	2,928.2	467	2,529.5	3721.7
가중치(W)	2,928.2	0	2,928.2	2,928.2

3. 結果의 檢證

이제 모집단화의 결과를·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검증은 모집단화된 표본으로부터 계산된 各 所得 및 稅收의 結果를 實際所得 및 稅收와 비교해 봄으로써 가능해진다. 〈表 2-5〉는 네 가지 방법에 의한 가중치를 사용하여 母集團의 所得額과 租稅額의 規模를 추정한 결과이다. 두 가지 특성에 의한 가중치 방법(WIJ)을 사용한 추정액이 다른 방법들(WI, WJ, W)에 의한 추정액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다른 방법에 의한 추정액이 低所得層을 실제보다 적은 비율로 고려했고, 中流 및 上流 所得階層을 실지보다 높은 비율로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全體 所得額과 附加價値稅額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성에 의한 방법(WIJ)이 소득세액은 1조 3,960억원, 부가가치세액은 1조 8,550억원으로 다른 방법에 의한 추정액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表 2-5〉 加重値의 變化에 따른 統計値의 變化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합계 (10억원)	평균 (천원)	합계 (10억원)	평균 (천원)	합계 (10억원)	평균 (천원)	합계 (10억원)	평균 (천원)
조사소득	29,546	5,005	29,502	4,998	37,961	6,431	37,688	6,384
실제소득	49,782	8,433	49,531	8,390	68,280	11,567	67,083	11,364
소득세액	1,396	236	1,404	238	2,161	366	2,123	360
공적부조액	128	22	110	19	69	12	68	12
부가가치세액	1,855	314	1,850	313	2,496	423	2,469	418
국세통계 결과치	소득세		2조 1,590억원					
	부가가치세		3조 6,500억원					

『國稅統計年報』에서 발표하는 1987년도 전체 소득세액은 2조 1,590억원, 전체 부가가치세액은 3조 6,500억원이다. 이 수치는 人口 및 所得特性의 加重値(WIJ)에 의한 추정치와는 많은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는 이유는 標本家口에서 저소득층이 非正常的으로 過少 代表됨으로써 모집단화를 위해 매우 높은 加重値를 가지게 되어 저소득층의 분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國稅統計年報』에서 보여주는 수치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구한 결과인 반면, 가중치에 의한 결과치는 농촌가구를 제외하고, 도시가구 중에서도 가구원 수가 1인의 가구는 제외한 계층을 통한 수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事業所得이나 資本所得은 過少報告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그를 근거한 源泉徵收 稅額은 實際 源泉徵收 稅額보다 적을 수 있다. 그러므로 모집단을 所得階層別로 정확히 반영하고 농촌가구와 가구원 수가 1인의 도시가구를 포함하는 표본가구의 사용이 가능하고 또한 과소 보고된 소득이 實際所得으로 대체가 가능할 때 이러한 문제점은 해결될 수 있으며 따라서 보다 만족스러운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Ⅳ. 分析結果

본 연구는 租稅 및 社會扶助 前의 所得分配와 租稅 및 社會扶助 後의 所得分配를 비교하여 조세 및 사회부조의 所得階層別 歸着을 分析한다. 조세 및 사회부조 각각의 소득분배 효과를 살피기 위해 다음 6가지의 所得分布를 구하여 비교한다.

(1) 조세 및 사회부조 전 소득분포

(2) 소득세 후의 소득분포

(3) 사회부조 후의 소득분포

(4) 부가가치세(VAT) 후의 소득분포

(5) 소득세 및 사회부조 후의 소득분포

(6) 소득세, 사회부조, 및 부가가치세(VAT) 후의 소득분포

조세 및 사회부조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가구소득은 각 가구들이 조사 당시 응답한 소득인 調査所得과 自營業者의 事業所得은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勤勞者의 支出資料를 사용하여 間接的으로 推定한 實際所得을 모두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네 가지 모집단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이러한 稅負擔 分析結果가 어떻게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본다.

각 계층별 소득분배를 분석하기 위해 소득크기의 순위별로 10분위로 나누어 각 계층의 총 소득액, 평균 소득액 및 전체 소득액에서 각 소득계층의 총 소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또한 所得分布의 程度를 측정하기 위해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인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측정하였다[12].

1. 加重値의 變化에 따른 租稅－社會扶助 歸着分析

부록의 〈附表 2－1〉부터 〈附表 2－6〉까지는 조사소득을 이용하여 위의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네 가지 다른 가중치에 대해 비교한 결과이며, 〈附表 2－7〉부터 〈附表 2－12〉까지는 실제소득을 이용하여 각각의 가중치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계층별 소득분포를 10분위로 나누어 각 계층의 全體所得, 家口當 平均所得, 전체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비율과 전체 소득계층간의 소득분포의 不平等度를 지니계수로 보여준다. 이러한 12개의 표가 가지는 결과를 지니계수를 중심으로 간단히 요약하면 [圖 2－1]과 [圖 2－2]와 같다. [圖 2－1]은 조사소득을 사용하여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를, [圖 2－2]는 실제소득을 사용하여 가중치의 변화에 따른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여준다. 네 가지 다른 가중치를 사용하여 구한 결과를 비교하면 여섯 가지 항목에 대해 각각의 소득분배에 대한 효과의 정도가 같은 형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에 대해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서로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한 加重値(WIJ)의 사용 결과가 가장 높은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消費支出만을 고려한 加重値(WI)의 사용 결과가 다음으로 높은

12) 가중치를 사용하여 지니계수를 포함한 여러가지의 형평성 계수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Berliant and Strauss (1985)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家口員 數만을 고려한 加重値(WJ)의 사용 결과와 均等한 加重値(W)의 사용 결과가 차례로 다음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두 가지 특성을 고려한 가중치(WIJ)는 가구원 수에 따른 低所得層의 分布를 정확하게 반영하였기 때문에 계층간의 분포가 이러한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다른 가중치 방법들에 비해 가장 不平等한 所得分布를 나타내는 것이다. 소비지출만을 고려한 가중치(WI)의 사용은 저소득층을 잘 고려하였지만 가구원 수에 따른 저소득층의 분포가 균등하지 않으므로 이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저소득층에서도 가구원 수가 2인 가구와 6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표본 수로 인해 높은 가중치를 가지므로 가구원 수를 고려하지 않은 가중치(WI)가 상대적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한 가중치(WIJ)를 사용한 결과보다 소득분포의 불평등도가 낮게 나타난다. 저소득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가구원 수만을 고려한 가중치(WJ)의 사용은 저소득층을 고려한 가중치(WIJ와 WI)에 비해 월등히 낮은 소득분포의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본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균등한 가중치(W)를 사용한 결과는 소득분포의 불균형도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의 분포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사용한 모집단화 방법은 실제와는 다른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圖 2-1] 調査所得을 利用한 지니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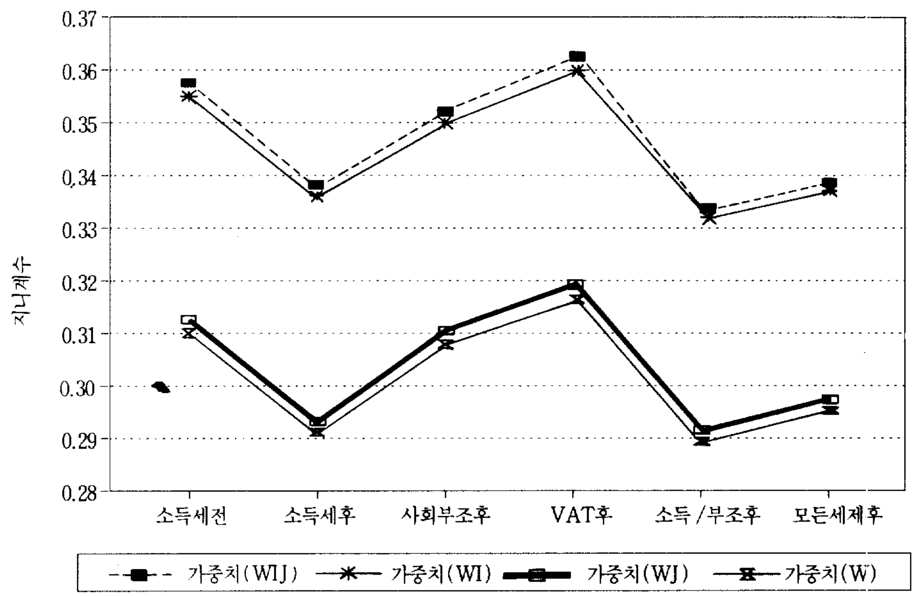

[圖 2-2] 實際所得을 利用한 지니係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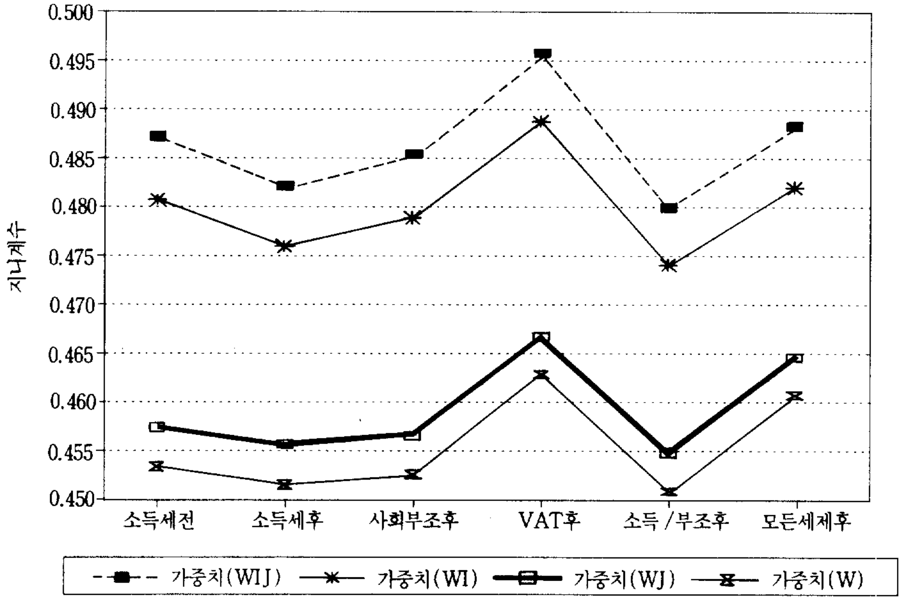

2. 租稅 및 社會扶助 歸着分析

표본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가중치(WIJ)를 사용하여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분배 효과를 지니계수를 통하여 살펴본다. 所得稅는 계층간 소득분포에서 衡平性을 높인 반면, 사회부조는 수혜계층이 低所得層에 局限되어 있는 만큼 형평성의 효과가 소득세가 가지는 효과만큼은 아니지만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약간 높인 결과를 보여준다. 附加價値稅(VAT)는 이미 알려져 있듯이 稅負擔의 逆進性이 반영되어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저하시킨다. 所得稅와 社會扶助 後의 所得은 假處分 所得(disposable income)을 나타내며 이의 소득계층간의 분포는 다른 조세형태의 효과보다 衡平性을 가장 높여주는 결과를 보인다. 모든 세제와 사회부조를 고려한 소득계층간의 분포를 살펴보면 조사소득을 사용할 때와 실제소득을 사용할 때가 서로 다른데 調査所得의 경우는 모든 세제 및 사회부조 후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많이 향상된 반면, 實際所得의 경우는 소득계층간 형평성에 변화가 없음을 보여준다. 또한 실제소득을 사용한 결과가 조사소득을 사용한 결과보다 모든 면에서 형평성이 낮게 나타난

다. 그 이유는 羅城麟(1991)에서 밝혔듯이 소득계층별로 구분할 때 상위 10%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이 조사소득에서 상당히 과소보고되고 있고, 그들의 조세부담액은 신고된 소득에 의거해서 계산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事業所得의 過少報告의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것과 實際所得의 推定이 所得分配의 測定, 租稅 및 社會扶助의 歸着效果의 分析에 매우 중요함을 보여준다.

V. 結　論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기여는 標本家口가 母集團 家口를 정확하게 대표하지 못할 때, 그러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人口特性 및 所得特性을 고려한 母集團化 方法을 시도하였고, 모집단화 없이 단순히 표본가구를 사용한 소득분배 및 조세귀착의 분석결과가 오류를 범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이 연구는 기존의 한국의 조세-사회부조 모형을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서도 중요하지만, 소득분배 및 조세의 귀착분석을 시도하고자 하는 實證的 分析 硏究들에 대한 자료 사용상의 警鐘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다른 방법의 母集團化 方法을 사용하여 1987년도 도시가구의 所得稅, 社會扶助, 및 附加價値稅의 歸着 分析을 시도하였다. 흔히 사용되는 均等 加重値를 통한 모집단화 방법과 하나의 특성 만을 고려한 모집단화 방법은 母集團 都市家口 분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 두 개 이상의 특성을 고려한 모집단화 방법은 모집단의 이들 특성에 대한 結合分布를 알 수 없으므로 間接的으로 推定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의 결합분포에 대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모집단화하는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구한 가중치와 단지 하나의 특성만을 고려하여 구한 가중치, 균등한 가중치 각각을 사용하여 1987년 세제의 소득분배 효과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구 표본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료수가 비정상적으로 작게 대표됨으로써 所得階層間의 衡平性이 실제보다 높게 나타

났다.

1987년 도시가구가 부담하는 세제 및 사회부조의 계층별 형태를 살펴보면 所得稅는 所得階層間의 衡平性을 높인 반면, 附加價値稅는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회부조는 소득세처럼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였지만, 受惠階層이 低所得層에 局限된 만큼 형평성의 향상 정도는 소득세보다 낮게 나타났다. 세제 및 사회부조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調査所得과 實際所得을 모두 사용한 결과, 조사소득을 사용한 稅負擔 分析이 실제소득을 사용한 것보다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계층별로 구분할 때 상위층에 자영업자가 많이 속해 있는 자영업자의 소득이 조사소득에서 과소보고되어 있는 반면, 그들의 조세부담은 신고된 소득에 의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관한 자료는 정확도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다.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단순히 보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분석할 경우 그 결과는 실제보다 소득계층간 형평성이 높게 나타난다. 實際所得을 사용한 소득계층간의 稅負擔 分析이 매우 理想的이나, 실제소득의 추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標本家口의 人口 및 所得特性을 고려하여 加重値를 구하여 모집단에 근접시켰지만 자료의 문제로 인해 연구의 한계를 가졌다. 母集團化를 시도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중요한 특성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家口員 數, 支出 이외에도 家口主의 職業, 住宅 所有形態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이지만 모집단에 관한 정보의 한계와 계산의 복잡성으로 인해 두 가지 특성만을 고려하였다. 또한 소득계층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 母集團의 所得分布를 사용하여야 하나, 母集團의 所得資料는 구할 수 없었으므로, 대신『都市家計年報』에서 발표한 月平均 消費支出 資料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자료의 사용이 가능하면 즉시 해결될 수 있는 과제들이다.

본 연구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모집단은 2人 家口員 以上의 도시가구이므로 전체 도시가구를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현재 통계청이 실시하는 都市家計調査는 1人 家口를 제외하므로 1인 가구를 포함한 전체 도시가구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른 형태의 도시가계조사의 자료가 필요하거나, 1인 가구를 고려하기 위한 방법론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

에서 궁극적으로 분석해야 할 대상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인 만큼 農村家計에 대한 資料가 포함되어야 한다. 농촌가구에 대한 자료는 현재 農林水産部에서 매년 농촌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므로, 이 자료가 사용 가능한 시기에 포함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所得種類別 調査所得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나, 일반적으로 利子 및 配當金과 같은 資本所得과 自營業者의 事業所得은 過少報告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종류별로 國民所得計定에서 나타난 국민전체의 소득종류별 소득과 비교하여 각 도시가구에 가중치를 부가하여 各 所得額을 母集團化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제소득은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는 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을 消費函數를 이용하여 實際値로 추정하려고 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모집단화 방법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參 考 文 獻

羅城麟,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1』, 政策硏究資料 91−41, 韓國開發硏究院, 1991.

李啓植・裵埈晧,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硏究院, 1986.

玄鎭權, 「美國 所得稅制度의 衡平性 測定에 關한 硏究」, 『財政論集』, 第5輯, 1991.

Atkinson, A. B., J. Gomulka and H. Sutherland, "Grossing−Up FES Data for Tax−Benefit Models," in A. B. Atkinson and H. Sutherland(eds.), *Tax−Benefit Models*, 1988.

Berliant, M. C. and R. P. Strauss,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in David and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Hollenbeck, K., "An Algorithm for Adjusting n−dimensional Tabular Data to Conform to General Linear Constraints," *Proceedings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976.

Yoo, J. G. and S. Na, "An Estimation of the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Korean Urban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Summer 1991.

〈附表 2-1〉 調査所得을 使用한 所得稅前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598,779	1,032,069	2.03	625,735	1,062,439	2.12	949,106	1,616,747	2.50	955,616	1,623,629	2.54
2분위	1,161,720	1,952,142	3.93	1,144,068	1,958,962	3.88	1,827,424	3,081,457	4.81	1,828,213	3,090,828	4.85
3분위	1,610,482	2,718,273	5.45	1,611,011	2,713,832	5.46	2,278,966	3,872,456	6.00	2,279,062	3,872,215	6.05
4분위	1,992,653	3,359,783	6.74	2,005,065	3,377,412	6.80	2,662,479	4,507,705	7.01	2,661,163	4,499,036	7.06
5분위	2,292,340	3,888,176	7.76	2,317,535	3,924,399	7.86	3,110,001	5,261,138	8.19	3,081,752	5,236,016	8.18
6분위	2,620,063	4,471,280	8.87	2,623,826	4,453,406	8.89	3,564,520	6,032,615	9.39	3,547,132	5,996,879	9.41
7분위	3,141,572	5,277,024	10.63	3,101,863	5,237,898	10.51	4,081,716	6,915,575	10.75	4,059,342	6,862,835	10.77
8분위	3,651,027	6,237,005	12.36	3,672,993	6,240,919	12.45	4,826,791	8,173,189	12.71	4,767,730	8,100,557	12.65
9분위	4,633,376	7,798,855	15.68	4,623,639	7,837,785	15.67	5,783,344	9,804,189	15.23	5,743,910	9,710,812	15.24
10분위	7,843,657	13,248,737	26.55	7,776,421	13,122,872	26.36	8,877,133	15,013,072	23.38	8,763,874	12,352,548	23.25
계 /평균	29,545,669	4,998,334		29,502,156	4,992,992		37,961,480	6,427,814		37,687,794	6,134,535	
지니계수	0.3569			0.3545			0.3126			0.3101		

〈附表 2-2〉 調査所得을 使用한 所得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598,106	1,030,908	2.12	624,650	1,060,597	2.37	943,469	1,607,145	2.64	950,166	1,614,369	2.67
2분위	1,156,211	1,942,884	4.11	1,137,969	1,948,518	4.32	1,811,369	3,054,385	5.06	1,812,560	3,064,364	5.10
3분위	1,610,482	2,699,726	5.72	1,599,406	2,694,284	6.08	2,241,534	3,808,851	6.26	2,242,280	3,809,721	6.30
4분위	1,975,242	3,330,428	7.01	198,388	3,341,738	0.75	2,603,186	4,407,319	7.27	2,601,248	4,397,742	7.31
5분위	2,255,394	3,825,509	8.01	2,276,328	3,854,622	8.65	3,021,528	5,111,470	8.44	2,994,633	5,087,998	8.42
6분위	2,562,702	4,373,390	9.10	2,564,452	4,352,630	9.75	3,446,924	5,833,596	9.63	3,430,167	5,799,135	9.64
7분위	3,055,376	5,132,236	10.85	3,015,642	5,092,303	11.46	3,913,536	6,630,631	10.93	3,891,739	6,579,481	10.94
8분위	3,523,801	6,019,666	12.51	3,538,165	6,011,827	13.45	4,560,185	7,721,746	12.74	4,505,946	7,655,775	12.67
9분위	4,405,071	7,414,574	15.64	4,382,604	7,429,192	16.66	5,394,236	9,144,557	15.07	5,357,972	9,058,335	15.07
10분위	7,018,587	11,855,109	24.92	6,974,930	11,770,340	26.51	7,864,051	13,299,741	21.97	7,778,150	13,149,954	21.87
계 /평균	28,160,972	4,762,443		26,312,534	4,755,605		35,800,018	6,061,944		35,564,861	6,021,688	
지니계수	0.3386			0.3367			0.2938			0.2916		

〈附表 2-3〉 調査所得을 使用한 社會扶助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651,993	1,123,789	2.20	673,505	1,143,546	2.27	997,961	1,699,970	2.62	1,006,694	1,710,413	2.67
2분위	1,202,445	2,020,576	4.05	1,179,079	2,018,911	3.98	1,843,137	3,107,953	4.85	1,842,105	3,114,313	4.88
3분위	1,635,477	2,760,462	5.51	1,631,520	2,748,281	5.51	2,281,513	3,876,795	6.00	2,281,071	3,875,629	6.04
4분위	1,997,282	3,367,589	6.73	2,008,976	3,383,999	6.78	2,664,369	4,510,904	7.01	2,662,328	4,501,006	7.05
5분위	2,295,182	3,892,996	7.73	2,319,106	3,927,061	7.83	3,110,001	5,261,138	8.18	3,082,074	5,236,562	8.16
6분위	2,621,224	4,473,260	8.83	2,624,766	4,455,001	8.86	3,564,520	6,032,615	9.37	3,547,132	5,996,879	9.39
7분위	3,142,171	5,278,030	10.59	3,102,128	5,238,346	10.48	4,081,716	6,915,575	10.73	4,059,342	6,862,835	10.75
8분위	3,651,027	6,237,006	12.30	3,672,993	6,240,919	12.40	4,826,791	8,173,189	12.69	4,767,730	8,100,557	12.63
9분위	4,633,376	7,798,855	15.61	4,623,639	7,837,785	15.61	5,783,344	9,804,189	15.21	5,743,910	9,710,812	15.21
10분위	7,843,657	13,248,737	26.43	7,776,421	13,122,872	26.26	8,877,133	15,013,072	23.34	8,763,874	14,816,447	23.21
계 /평균	29,673,834	5,020,130		29,612,133	5,011,672		38,030,485	6,439,540		37,756,260	6,392,545	
지니계수	0.3523			0.3505			0.3105			0.308		

〈附表 2－4〉 調査所得을 使用한 附加價値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하위)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1분위	504,355	869,317	1.82	535,097	908,544	1.94	798,603	1,360,374	2.25	805,567	1,368,690	2.30
2분위	1,062,442	1,785,316	3.84	1,045,346	1,789,923	3.78	1,681,636	2,835,625	4.74	1,682,687	2,844,797	4.81
3분위	1,490,433	2,515,647	5.38	1,493,381	2,515,679	5.40	2,114,001	3,592,146	5.96	2,113,190	3,590,392	6.05
4분위	1,869,528	3,152,185	6.75	1,881,301	3,168,938	6.80	2,482,884	4,203,642	7.00	2,482,240	4,196,544	7.10
5분위	2,148,289	3,643,842	7.76	2,170,767	3,675,870	7.85	2,893,438	4,894,783	8.16	2,867,290	4,871,636	8.20
6분위	2,472,924	4,220,179	8.93	2,473,552	4,198,347	8.95	3,326,896	5,630,460	9.38	3,313,455	5,601,818	9.48
7분위	2,954,609	4,962,974	10.67	2,914,352	4,921,261	10.54	3,812,340	6,459,176	10.75	3,791,447	6,409,925	10.85
8분위	3,431,639	5,862,229	12.39	3,457,894	5,875,436	12.51	4,519,914	7,653,556	12.74	4,205,328	7,145,015	12.03
9분위	4,360,494	7,339,544	15.75	4,349,963	7,373,861	15.73	5,435,155	9,213,924	15.33	5,403,527	9,135,351	15.46
10분위	7,395,950	12,492,514	26.71	7,330,389	12,370,184	26.51	8,400,935	14,207,722	23.69	8,292,212	14,019,041	23.72
계/평균	27,690,663	4,684,375		27,652,042	4,679,804		35,465,802	6,005,141		34,956,943	5,918,321	
지니계수	0.3625			0.3598			0.3195			0.3171		

〈附表 2-5〉 調査所得을 使用한 所得稅 社會扶助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651,320	1,122,628	2.30	672,420	1,141,704	2.38	992,325	1,690,368	2.77	1,001,244	1,701,152	2.81
2분위	1,196,937	2,011,318	4.23	1,172,980	2,008,467	4.16	1,827,082	3,080,881	5.09	1,826,452	3,087,849	5.13
3분위	1,624,490	2,741,916	5.74	1,619,916	2,728,834	5.74	2,244,088	3,813,190	6.26	2,244,290	3,813,134	6.30
4분위	1,979,872	3,338,234	7.00	1,987,798	3,348,325	7.05	2,605,076	4,410,519	7.26	2,602,414	4,399,713	7.30
5분위	2,258,236	3,830,330	7.99	2,277,900	3,857,283	8.08	3,021,529	5,111,470	8.42	2,994,955	5,088,544	8.40
6분위	2,563,863	4,375,371	9.07	2,565,392	4,354,226	9.09	3,446,925	5,833,596	9.61	3,430,167	5,799,135	9.63
7분위	3,055,975	5,133,243	10.81	3,015,908	5,092,751	10.69	3,913,536	6,630,631	10.91	3,891,740	6,579,481	10.92
8분위	3,523,801	6,019,667	12.46	3,538,165	6,011,827	12.54	4,560,185	7,721,746	12.71	4,505,946	7,655,775	12.65
9분위	4,405,071	7,414,574	15.58	4,382,604	7,429,192	15.54	5,394,237	9,144,557	15.04	5,357,973	9,058,335	15.04
10분위	7,018,587	11,855,120	24.82	6,974,931	11,770,340	24.73	7,864,052	13,299,741	21.92	7,778,150	13,149,954	21.83
계/평균	28,278,152	4,784,240		28,208,014	4,774,295		35,869,035	6,073,670		35,633,331	6,033,307	
지니계수	0.3339			0.3326			0.2917			0.2894		

〈附表 2-6〉 調査所得을 使用한 所得稅, 社會扶助, 附加價値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하위)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1분위	556,895	959,876	2.10	581,782	987,810	2.21	841,821	1,433,994	2.52	851,194	1,446,213	2.57
2분위	1,097,658	1,844,492	4.13	1,074,258	1,839,428	4.08	1,681,294	2,835,049	5.04	1,680,925	2,841,818	5.07
3분위	1,504,441	2,539,291	5.66	1,502,286	2,530,680	5.70	2,079,123	3,532,880	6.23	2,078,417	3,531,311	6.27
4분위	1,992,653	3,130,636	7.50	1,864,033	3,139,852	7.07	2,425,481	4,106,455	7.27	2,423,491	4,097,221	7.31
5분위	2,114,184	3,585,995	7.96	2,131,132	3,608,757	8.09	2,804,965	4,745,115	8.40	2,780,492	4,724,164	8.38
6분위	2,416,723	4,124,269	9.10	2,415,118	4,099,166	9.16	3,209,301	5,431,441	9.62	3,196,490	5,404,073	9.64
7분위	2,869,012	4,819,194	10.80	2,828,396	4,776,115	10.73	3,644,160	6,174,232	10.92	3,623,844	6,126,571	10.93
8분위	3,304,413	5,644,890	12.44	3,323,065	5,646,343	12.61	4,253,309	7,202,114	12.74	4,205,328	7,145,015	12.68
9분위	4,132,189	6,955,262	15.56	4,108,927	6,965,269	15.59	5,046,048	8,554,292	15.12	5,017,589	8,482,875	15.13
10분위	6,570,881	11,098,888	24.74	6,528,898	11,017,652	24.77	7,387,853	12,494,391	22.14	7,306,487	12,352,548	22.03
계/평균	26,559,049	44,702,791		26,357,895	4,461,107		33,373,355	5,650,996		33,164,257	5,615,181	
지니계수	0.3382			0.3367			0.2976			0.2953		

〈附表 2-7〉 實際所得을 使用한 所得稅前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872,713	1,479,695	1.75	883,788	1,502,120	1.78	1,406,166	2,387,325	2.06	1,401,344	2,380,937	2.09
2분위	1,580,649	2,676,519	3.18	1,582,227	2,682,242	3.19	2,212,071	3,742,577	3.24	2,205,622	3,728,885	3.29
3분위	2,002,141	3,392,753	4.02	2,012,895	3,406,471	4.06	2,733,865	4,639,453	4.00	2,717,372	4,616,919	4.05
4분위	2,342,893	3,981,339	4.71	2,351,644	4,032,002	4.75	3,372,361	5,699,804	4.94	3,345,781	5,656,469	4.99
5분위	2,789,347	4,722,068	5.60	2,806,312	4,733,027	5.67	3,986,420	6,755,095	5.84	3,946,720	6,705,630	5.88
6분위	3,373,909	5,733,176	6.78	3,427,876	5,768,522	6.92	4,894,515	8,298,478	7.17	4,852,002	8,202,927	7.23
7분위	4,067,148	6,890,847	8.17	4,123,724	6,963,770	8.33	6,106,984	10,338,020	8.94	6,062,307	10,249,101	9.04
8분위	5,321,957	8,969,512	10.69	5,378,659	9,128,304	10.86	7,972,823	13,535,457	11.68	7,835,083	13,312,107	11.68
9분위	7,555,260	12,900,747	15.18	7,674,008	12,964,114	15.49	11,404,937	19,336,324	16.70	11,146,128	18,843,948	16.62
10분위	19,875,642	33,355,214	39.93	19,289,576	32,675,782	38.94	24,189,729	40,813,700	35.43	23,570,447	39,848,842	35.14
계/평균	49,781,659	8,424,110		49,530,709	8,383,276		68,279,871	11,554,623		67,082,806	11,354,577	
지니계수	0.4874			0.481			0.4574			0.4534		

〈附表 2-8〉 實際所得을 使用한 所得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하위)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1분위	872,566	1,479,444	1.80	883,645	1,501,877	1.84	1,402,490	2,381,085	2.12	1,397,909	2,375,101	2.15
2분위	1,577,618	2,671,386	3.26	1,578,596	2,676,087	3.28	2,189,743	3,704,802	3.31	2,184,246	3,692,746	3.36
3분위	1,989,006	3,370,495	4.11	1,998,524	3,382,151	4.15	2,688,055	4,561,711	4.07	2,671,973	4,539,784	4.11
4분위	2,342,893	3,981,339	4.84	2,322,508	3,982,048	4.83	3,293,311	5,566,197	4.98	3,267,539	5,524,190	5.03
5분위	2,744,421	4,646,013	5.67	2,758,144	4,651,789	5.73	3,858,980	6,539,145	5.84	3,820,990	6,492,010	5.88
6분위	3,299,276	5,606,354	6.82	3,347,426	5,633,138	6.96	4,704,066	7,975,580	7.11	4,660,930	7,879,895	7.18
7분위	3,949,867	6,692,142	8.16	4,000,979	6,756,488	8.31	5,839,914	9,885,920	8.83	5,798,908	9,803,792	8.93
8분위	5,137,946	8,659,384	10.61	5,185,300	8,800,149	10.77	7,606,464	12,913,490	11.50	7,470,561	12,692,771	11.50
9분위	7,288,774	12,445,719	15.06	7,384,701	12,475,373	15.34	11,043,831	18,724,093	16.70	10,786,053	18,235,196	16.60
10분위	19,207,144	32,233,345	39.68	18,666,762	31,620,759	38.79	23,491,556	39,635,719	35.53	22,900,763	38,716,656	35.25
계/평균	48,409,511	8,189,219		48,126,585	8,146,120		66,118,410	11,188,774		64,959,872	10,995,214	
지니계수	0.4823			0.4763			0.4557			0.4516		

〈附表 2－9〉 實際所得을 使用한 社會扶助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911,931	1,546,188	1.83	918,646	1,561,368	1.85	1,441,339	2,447,040	2.11	1,436,108	2,440,002	2.14
2분위	1,613,422	2,732,013	3.23	1,611,801	2,732,377	3.25	2,215,172	3,747,823	3.24	2,208,590	3,733,903	3.29
3분위	2,008,256	3,403,115	4.02	2,019,482	3,417,618	4.07	2,735,914	4,642,931	4.00	2,719,378	4,620,328	4.05
4분위	2,352,817	3,998,204	4.71	2,357,903	4,042,734	4.75	3,373,060	5,700,986	4.94	3,346,547	5,657,763	4.98
5분위	2,792,899	4,728,081	5.60	2,810,224	4,739,624	5.66	3,987,214	6,756,442	5.83	3,947,641	6,707,193	5.88
6분위	3,375,845	5,736,466	6.76	3,429,827	5,771,805	6.91	4,902,342	8,311,749	7.17	4,860,003	8,216,453	7.24
7분위	4,070,968	6,897,321	8.16	4,128,943	6,972,582	8.32	6,109,130	10,341,653	8.94	6,064,284	10,252,445	9.03
8분위	5,337,224	8,995,243	10.69	5,388,281	9,144,634	10.85	7,979,920	13,547,505	11.68	7,842,266	13,324,312	11.68
9분위	7,564,913	12,917,230	15.16	7,680,856	12,975,684	15.47	11,410,395	19,345,578	16.69	11,150,752	18,851,767	16.61
10분위	19,881,549	33,365,128	39.83	19,294,724	32,684,502	38.87	24,194,396	40,821,574	35.40	23,575,702	39,857,726	35.11
계 /평균	49,909,824	8,431,899		49,640,687	8,404,293		68,348,882	11,566,328		67,151,271	11,366,189	
지니계수	0.4853			0.4791			0.4566			0.4526		

〈附表 2－10〉 實際所得을 使用한 附加價値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790,758	1,340,737	1.65	805,750	1,369,484	1.69	1,278,020	2,169,764	1.94	1,273,503	2,163,730	1.97
2분위	1,471,422	2,491,565	3.07	1,475,846	2,501,852	3.10	2,059,858	3,485,049	3.13	2,052,074	3,469,292	3.18
3분위	1,892,488	3,206,939	3.95	1,899,485	3,214,544	3.98	2,566,857	4,356,035	3.90	2,549,817	4,332,238	3.95
4분위	2,212,692	3,760,086	4.62	2,223,945	3,813,057	4.66	3,173,450	5,363,614	4.82	3,147,349	5,320,995	4.87
5분위	2,649,277	4,484,944	5.53	2,660,272	4,486,721	5.58	3,752,551	6,358,799	5.70	3,717,970	6,316,974	5.75
6분위	3,208,417	5,451,961	6.69	3,261,184	5,488,007	6.84	4,631,745	7,852,962	7.04	4,592,717	7,764,574	7.11
7분위	3,868,306	6,553,956	8.07	3,931,001	6,638,316	8.24	5,827,662	9,865,179	8.86	5,788,087	9,785,498	8.96
8분위	5,086,251	8,572,258	10.61	5,143,098	8,728,526	10.79	7,690,248	13,055,731	11.69	7,552,473	12,831,941	11.69
9분위	7,302,845	12,469,744	15.24	7,415,491	12,527,387	15.55	11,104,278	18,826,577	16.88	10,849,329	18,342,173	16.79
10분위	19,444,197	32,631,165	40.57	18,864,554	31,955,811	39.56	23,699,525	39,986,611	36.03	23,090,417	39,097,290	35.74
계 /평균	47,926,653	8,096,336		47,680,626	8,072,371		65,784,194	11,132,032		64,613,736	10,942,471	
지니계수	0.4957			0.489			0.4669			0.4629		

〈附表 2-11〉 實際所得을 使用한 所得稅 社會扶助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 (하위)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총액 (백만원)	평균 (원)	비율 (%)
1분위	911,783	1,545,937	1.88	918,503	1,561,124	1.90	1,437,663	2,440,800	2.17	1,432,673	2,434,166	2.20
2분위	1,610,391	2,726,880	3.32	1,608,170	2,726,222	3.33	2,191,844	3,710,048	3.31	2,187,215	3,697,765	3.36
3분위	1,995,121	3,380,856	4.11	2,005,112	3,393,299	4.16	2,690,104	4,565,190	4.06	2,673,979	4,543,193	4.11
4분위	2,329,280	3,958,206	4.80	2,328,767	3,992,779	4.83	3,294,010	5,567,379	4.98	3,268,304	5,525,485	5.03
5분위	2,747,973	4,652,026	5.66	2,762,056	4,658,386	5.73	3,859,774	6,540,492	5.83	3,821,911	6,493,573	5.88
6분위	3,301,212	5,609,643	6.80	3,349,377	5,636,421	6.94	4,711,894	7,988,851	7.12	4,668,930	7,893,422	7.18
7분위	3,953,688	6,698,616	8.15	4,006,197	6,765,301	8.31	5,842,060	9,889,552	8.83	5,800,885	9,807,135	8.92
8분위	5,153,213	8,685,005	10.62	5,194,922	8,816,479	10.77	7,613,560	12,925,537	11.50	7,477,744	12,704,975	11.50
9분위	7,298,428	12,462,202	15.04	7,391,550	12,486,943	15.32	11,049,290	18,733,347	16.69	10,790,677	18,243,014	16.59
10분위	19,213,051	32,243,257	39.60	18,671,909	31,629,478	38.71	23,496,223	39,643,593	35.50	22,906,018	38,725,540	35.22
계 /평균	48,514,140	8,196,263		48,236,563	8,166,643		66,186,422	11,200,479		65,028,336	11,006,827	
지니계수	0.4802			0.4743			0.4549			0.4508		

〈附表 2－12〉 實際所得을 使用한 所得稅, 社會扶助, 附加價値稅後 分布

	가중치(WIJ)			가중치(WI)			가중치(WJ)			가중치(W)		
계층(하위)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총액(백만원)	평균(원)	비율(%)
1분위	829,827	1,406,980	1.75	840,465	1,428,488	1.81	1,309,517	2,223,239	2.05	1,304,832	2,216,959	2.07
2분위	1,501,164	2,541,926	3.17	1,501,759	2,545,831	3.24	2,040,631	3,452,521	3.19	2,033,667	3,438,173	3.23
3분위	1,885,467	3,195,042	3.98	1,891,702	3,201,372	4.08	2,523,096	4,281,772	3.94	2,506,425	4,258,512	3.98
4분위	2,199,079	3,736,953	4.64	2,201,068	3,773,833	4.75	3,095,099	5,231,190	4.84	3,069,873	5,190,011	4.87
5분위	2,607,903	4,414,903	5.51	2,616,016	4,412,080	5.64	3,625,906	6,144,195	5.67	3,593,160	6,104,917	5.70
6분위	3,135,720	5,328,428	6.62	3,182,685	5,355,907	6.86	4,449,124	7,543,335	6.95	4,409,646	7,455,068	7.00
7분위	3,754,847	6,361,725	7.93	3,813,474	6,439,847	8.22	5,562,738	9,416,710	8.69	5,526,666	9,343,532	8.77
8분위	4,917,507	8,287,862	10.39	4,959,362	8,416,701	10.69	7,330,986	12,445,811	11.46	7,195,134	12,224,809	11.41
9분위	7,298,428	12,462,202	15.42	7,133,033	12,050,216	15.38	11,049,290	18,223,600	17.27	10,493,879	17,741,239	16.65
10분위	19,213,051	32,243,257	40.58	18,246,886	30,909,507	39.34	23,006,018	38,816,504	35.95	22,906,018	38,725,540	36.34
계 /평균	47,342,993	7,997,928		46,386,450	7,853,378		63,992,405	10,777,888		63,039,300	10,669,876	
지니계수	0.4885			0.4824			0.4647			0.4607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測定

- 勤勞者家口와 自營業家口의 稅負擔 差異를 中心으로 -

玄 鎭 權·羅 城 麟[1)]

目 次

* 본 논문은 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제41집 제3호(1994)에 게재한 논문을 재구성하였음.

1) 本院 硏究委員, 翰林大 經濟學科 敎授

Ⅰ. 序 論

稅制의 衡平性은 크게 垂直的 衡平性(vertical equity)과 水平的 衡平性(horizontal equity)으로 나눌 수 있다. 垂直的 및 水平的 衡平性의 개념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다음의 원리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즉, 垂直的 衡平性이란 각 계층이 가진 능력에 따라 租稅負擔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가를 測定하는 것이고, 水平的 衡平性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조세부담을 하는 정도를 測定하는 것이다. 衡平性을 測定하는 대표적인 係數로는 지니係數와 Atkinson指數를 들 수 있으며, 이들 係數는 실증적 연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2]. 이 외에도 Berliant-Strauss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指數로서 미국 稅制의 분석에 몇 차례 적용되었다. 이러한 衡平性 測定係數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보완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참고로 그 내용을 보면 郭泰元(1987), 李啓植 · 裵埈晧(1986)의 연구는 間接稅의 稅負擔을 분석하였고, 羅城麟(1991), 羅城麟 · 玄鎭權(1993)은 直接稅 및 間接稅의 稅負擔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가 垂直的 衡平性에 대한 연구이고,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실증적 분석은 없다.

稅負擔의 水平的 衡平性은 勤勞者와 自營業者 간의 稅負擔의 行態에서 잘 나타난다. 근로자의 課稅所得은 비교적 정확히 세무당국에 의해 포착되지만, 自營業者의 실질소득은 정확히 파악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같은 소득수준을 가진 두 계층이 서로 다른 稅負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다. 실제로 근로자 계층과 自營業者 계층의 稅負擔의 정확한 차이에 대하여 관심이 많지만, 自營業者의 實際所

2) 지니계수와 사회후생함수에 의한 형평계수의 종합적 고찰은 Borooah(1991)와 Lambert(1989)를 참조하기 바란다.

得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증분석이 어렵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가 가지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의 특성을 보여주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이며,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지니係數, Atkinson指數, Berliant－Strauss指數(이하 B－S指數로 표시함) 모두를 사용하여 이들 係數들 간의 일치성을 비교하였다. 또한 전체 도시가구를 근로자 가구, 自營業者 가구인 근로자외 가구로 나누어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의 稅負擔 衡平性을 분석하였다[3].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은 알 수 없으므로 그들의 지출액을 사용하여 實際所得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였다.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自營業者 가구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 衡平性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衡平性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을 설명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 가지 係數를 차례로 보여준다. 둘째,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한 일반적 설명을 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87년 도시가계자료의 분석과정을 설명한다. 또한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셋째, 세 가지 衡平係數의 결과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의 衡平性을 평가하고,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을 보여준다. 넷째, 본 연구의 결론을 보여주고, 본 연구가 가지는 정책 시사성과 연구의 제약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본 연구를 마무리짓는다.

3) 근로자외 가구는 상인,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무직, 기타를 포함한다. 여기서 무직과 기타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으므로 근로자외 가구를 자영업가구로 해석해도 무리가 없다.

Ⅱ. 衡平性 測定係數

衡平性을 測定하는 係數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係數로서 로렌쯔 곡선(Lorenz curve)을 이용한 지니係數와 社會厚生函數(social welfare function)를 응용한 衡平性 係數로 Atkinson指數가 있다. 이러한 두 係數는 일반적으로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연구에서 많이 사용된다. 지니係數와 Atkinson指數는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係數이며,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여러 가지 係數들이 개발되어 있다. B－S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指數이다. 衡平性을 測定하는 이러한 係數들은 제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가지만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은 각 係數가 가지는 한계점으로 인해 사실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係數들을 모두 사용하여 衡平性을 測定하고 상호 비교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衡平性 係數들 간의 일치성(consistency)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의 衡平性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해 본다. 本節에서는 세 가지 係數를 중심으로 衡平性에 대한 문헌과 각 지수의 계산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한다.

1. 衡平性 係數의 文獻考察

租稅制度의 衡平性을 測定하는 많은 係數들이 개발되어 왔으며 이들 간에 衡平性의 개념과 원리에 대해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衡平性 測定係數들은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稅制의 衡平性을 실증분석하는 연구에서는 여러 가지 係數들이 함께 사용되어야 한다.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係數는 로렌쯔 곡선을 이용한 지니係數이다. 이 係數는 최적의 소득분포를 가정하고 실제의 소득분포가 최적의 분포와 어떠한 차이를 가지느냐를 보여준다. 지니係數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주로 최적의 소득분포에 대한 것이다. 예를 들면, Paglin(1975)은 최적

의 소득분포를 나타내는 선은 각 세대의 生涯週期(life cycle)에 따른 지출에 대한 수요를 무시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모든 가구는 시간에 관계없이 동등한 소득을 가지는 것을 최적의 상태로 가정함으로써 현실을 올바르게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로렌쯔 곡선을 사용한 모형은 가구들 간의 衡平性과 시간적인 衡平性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Atkinson(1971)은 이상적인 垂直的 衡平性은 같은 생애주기(life cycle)에 있는 가구들 간의 衡平性만을 고려해야 함을 주장하고, Paglin(1975)은 衡平性에 있어서 시간적 衡平性이 차지하는 비율이 1/3 정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다른 접근법으로 社會厚生函數를 이용한 測定法을 들 수 있다. Atkinson(1970)은 소득분포를 반영하는 垂直的 衡平指數는 잘 정의된 社會厚生函數로부터 유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자신이 개발한 社會厚生函數를 바탕으로 衡平性을 測定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접근법은 널리 사용되었으며 각기 다른 社會厚生函數를 바탕으로 개발되어 왔다(King(1983), Rosen(1978)).

Berliant와 Strauss(1983, 1985)가 개발한 衡平性 指數는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을 함께 測定하는 指數이다[4]. 그들의 指數는 租稅制度의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흔히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한다. 즉 소득이 높은 계층이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누진제도(progressive system), 소득의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을 부담하는 비례제도(proportional system), 소득이 높은 계층이 오히려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역진제도(regressive system)가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개념을 사용하여 垂直的 衡平性을 논의한 연구로는 Kiefer(1984), Suits(1977), Wertz(1978)를 들 수 있다.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租稅制度 자체에 대한 특성을 분석할 수 있다. 지니係數나 Atkinson指數가 조세 전과 조세 후의 소득만을 사용하여 租稅制度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효과를 測定하므로, 租稅制度 자체의 성격에 대하여 直接 測定할 수 없다. 그러므로 租稅制度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에는 B－S指數와 같은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租稅制度의 특성을 測定하는 데 나은 접근법이 될 수 있다.

---

4) B－S지수를 사용하여 형평성을 분석한 예로서 玄鎭權(1991)이 있다.

租稅制度의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분석은 같은 능력을 가진 계층이 같은 稅負擔을 하는 정도를 測定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때 '같은 능력'이란 Feldstein(1975)이 주장하는 것처럼 '같은 효용'으로 이해될 수 있으나, 실증분석에서는 각 개인의 效用函數를 모두 정확히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소득을 구하여 같은 능력의 계층을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垂直的 衡平性이 오랫동안 관심의 대상이었던 반면, 水平的 衡平性은 최근에 와서야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다(Atkinson(1983), Feldstein(1976), Plotnick(1985)). Nozick(1974)는 "올바른 분포는 현존하는 분포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분포를 이루게 한 과정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면서, 특히 水平的 衡平性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水平的 衡平性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은 명확하지가 않다. Musgrave(1959)에 따르면 水平的 衡平性이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같이 취급되어져야 한다(equal treatment of equal situation)"고 정의한다. 그러나 King(1983)은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전적 정의인 '같은 처지의 같은 취급'은 개념적으로 불완전하며, 소득을 순위별로 나누어 조세를 부과하기 전후의 순위를 비교하여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것이 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Plotnick(1982)은 Fields와 Fei(1978)의 접근법을 따라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係數가 반드시 가져야 할 특성들을 제시하고, 순위보전(rank preservation)은 가장 중요한 원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는 많은 係數들은 이러한 순위보전의 원리를 이용하여 개발되어 왔다(Feldstein(1976), Plotnick(1981, 1982, 1985)). Berliant와 Strauss(1985)는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원리가 서로 상충함을 보이고, 고전적 정의와 순위보전 원리는 서로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시한 水平的 衡平性 測定指數는 고전적 정의에 부응하는 指數이다.

衡平性의 관점에서 가장 이상적인 租稅制度란 같은 所得階層이 같은 稅負擔을 가지는 水平的 衡平性의 침해없이, 조세부과 후 垂直的 衡平性이 향상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의 관계에 대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명확한 이론은 없으나, Musgrave(1990)는 이들 두 衡平性이 상충관계(tradeoff relation)를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King(1983)은 垂直的 衡平性과 水

平的 衡平性으로 나뉠 수 있는 衡平係數를 社會厚生函數에서 개발하여 이들 두 衡平性들 간의 상충관계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계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두 가지 衡平性을 통한 조세개혁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두 衡平性 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지니係數

지니係數는 소득분포를 測定하는 대표적인 모형으로, 우리나라에 적용한 연구로는 로렌쯔 곡선(Lorenz curve)을 사용한다. 로렌쯔 곡선의 구성을 살펴보면 종축은 소득의 크기 순으로 인구의 누적분포(cumulative distribution)를 나타내고 횡축은 소득의 누적분포를 나타낸다. 이때 원점에서 45°는 완전히 평등한 소득분포를 나타내며 이상적인 상태임을 가정한다. 지니係數는 소득의 계층별 분포가 이 45°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낸다. 지니係數의 測定은 45°선에서 떨어져 있는 면적과 45°선이 이루는 삼각형 면적의 비율로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니係數는 소득의 계층간 집중도를 나타내며, 0은 완전한 평등도를 나타내고 1은 완전한 불평등도를 나타낸다.

지니係數는 각 所得階層의 소득의 비교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기 위해 다음의 기호를 사용한다. i와 j는 각 所得階層을 나타내고, 所得階層 i의 소득은 Y_i로, 所得階層 i의 加重値를 P_i로, N은 總標本數를 나타낸다고 가정하자. 이때 지니係數 (G)는 所得階層 간의 평균 차(mean difference)의 합과 평균소득(μ)과의 비율이며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G = \sum_i \sum_j \frac{|Y_i - Y_j|}{2N^2\mu} P_i \cdot P_i$$

3. Atkinson指數

社會厚生函數(Social Welfare Function)를 응용한 대표적인 衡平性 係數가

Atkinson(1970)指數이다. Atkinson은 社會厚生函數를 개인의 소득에 대해 합산형태로 분리가 가능한 대칭적 함수(additively separable and symmetric function)로 정의하였다. 또한 Atkinson指數를 유도하기 위해 동등 분포소득(equally distributed income), Y_{EDE}를 정의하였다. 동등 분포소득은 현재의 소득분포에서 얻을 수 있는 사회후생과 같은 수준의 사회후생을 가져다 주는 소득 수준을 의미한다. 동등 분포소득을 사용하여 Atkinson 指數 (I)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I = 1 - \frac{Y_{EDE}}{\mu}$$

$$\mu = \sum_i \frac{Y_i}{N}$$

여기서 μ는 그 사회 구성원의 평균소득을 나타내며, 위의 공식을 통해서 Atkinson 指數는 所得階層間 不平等度를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소득 Y에 따른 效用函數, U(Y)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U(Y) = \frac{A+B\,Y^{1-\varepsilon}}{(1-\varepsilon)}, \quad \varepsilon \neq 1$$

$$U(Y) = \log_e(Y), \qquad \varepsilon = 1$$

여기서 A와 B는 상수이며, ε은 그 사회가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the degree of aversion to inequality)를 나타낸다. 즉 ε이 큰 값을 가질수록 불평등을 싫어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Atkinson指數 (I)는 效用函數 형태에 대한 가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I = 1 - \left[\sum_i \left(\frac{Y_i}{\mu}\right)^{1-\varepsilon} \cdot \frac{P_i}{N} \right]^{\frac{1}{1-\varepsilon}}$$

여기서 N은 사회 구성원 수를 나타내고, P_i는 所得階層 i의 加重値를 나타낸다.

4. Berliant－Strauss指數

Berliant와 Strauss(1983, 1985)는 垂直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하여, 소득수준에 따른 租稅負擔의 정도를 설명한다. 즉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租稅負擔을 나타내는 累進的 制度,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한 租稅負擔을 나타내는 比例的 制度,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租稅負擔이 적은 逆進的 制度를 말한다. 水平的 衡平性을 測定하기 위해 "같은 처지에 있는 계층의 같은 취급"이란 고전적 정의에 따라 같은 소득수준의 두 가구가 같은 租稅負擔率을 가지는가를 비교해 본다. B－S指數는 모든 가구를 소득과 租稅負擔率에 따라 두 가구씩 서로 비교하여 垂直的 衡平性의 세 요소 및 水平的 衡平性의 어떠한 요소에 해당하는가를 測定한다.

B－S指數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유효세율(effective tax rate) i를 일정구간으로 순위에 따라 m계층($i = 1, \cdots, m$)으로 나눈다. 각 가구의 소득 j를 일정구간으로 순위에 따라 n계층으로 나누면 $j = 1, \cdots, n$으로 표시할 수 있다. B－S指數는 두 가구를 서로 비교하므로, 비교를 위한 또 하나의 가구를 나타내기 위해 비교 대상 가구의 유효세율 h를 $h = 1, \cdots, m$으로, 소득 k를 $k = 1, \cdots, n$으로 나타내면 자신과의 비교를 피하기 위해 $i \neq h$, $j \neq k$로 표시할 수 있다. N_{ij}가 i순위의 유효세율과 j순위의 소득에 해당되는 총 가구수를 나타낼 때, 이들 가구들과의 비교대상으로 N_{hk}를 정의하면 이는 h순위의 유효세율과 k순위의 소득에 해당되는 총 가구수를 나타낸다. 여기서 i, j, h, k는 높은 조세율과 소득을 나타낼 때 높은 숫자를 가지고 $i = j = h = k = 1$은 가장 낮은 세율과 소득수준을 나타낸다.

租稅負擔의 比例的 分布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에 관계없이 세율이 같은 경우를 말한다. 이는 모든 가능한 비교의 경우의 수(△)에서 소득수준은 다르나 ($j \neq k$), 세율은 같은 ($i = h$) 경우의 수의 비율(θ)로써 구할 수 있다. 이때 소득 1계층(Y_1)과 2계층(Y_2)의 소득격차($Y_2 - Y_1$)와 소득 1계층(Y_1)과 10계층(Y_{10})의 소득격차($Y_{10} - Y_1$)를 차등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비교 대상인 두 가구의 소득격차를 加重値로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heta = \frac{1}{\triangle} \sum_{i=1}^{m} \sum_{j=1}^{n} \sum_{\substack{k=1 \\ k \neq j}}^{n} [N_{ij} \cdot N_{ik} \cdot |Y_{ij} - Y_{ik}|]$$

租稅負擔의 累進的 分布를 따르는 비율(ψ)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높은 租稅負擔率을 가진 부분을 測定함으로써 구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h < i$, $k < j$인 경우, 혹은 $h > i$, $k > j$인 경우를 말한다. 비교대상에서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비교에서 세율의 차이만큼 加重値를 준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psi = \frac{1}{\triangle} \sum_{i=1}^{m} \sum_{j=1}^{n} \sum_{h<i}^{m} \sum_{k<j}^{n} [N_{ij} \cdot N_{hk} \cdot \frac{i}{h} \cdot |Y_{ij} - Y_{hk}|] + \frac{1}{\triangle} \sum_{i=1}^{m} \sum_{j=1}^{n} \sum_{h>i}^{m} \sum_{k>j}^{n} [N_{ij} \cdot N_{hk} \cdot \frac{h}{i} \cdot |Y_{ij} - Y_{hk}|]$$

租稅負擔의 逆進的 分布를 나타내는 비율(γ)은 두 가구간의 비교를 통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더 적은 租稅負擔率을 가진 부분을 測定함으로써 구해진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가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경우는 $h < i$, $k > j$인 경우, 혹은 $h > i$, $k < j$인 경우를 말한다. 비교 대상에서 세율의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각 비교에서 세율의 차이만큼 加重値를 준다. 逆進的 分布를 구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gamma = \frac{1}{\triangle} \sum_{i=1}^{m} \sum_{j=1}^{n} \sum_{h<i}^{m} \sum_{k<j}^{n} [N_{ij} \cdot N_{hk} \cdot \frac{i}{h} \cdot |Y_{ij} - Y_{hk}|] + \frac{1}{\triangle} \sum_{i=1}^{m} \sum_{j=1}^{n} \sum_{h>i}^{m} \sum_{k<j}^{n} [N_{ij} \cdot N_{hk} \cdot \frac{h}{i} \cdot |Y_{ij} - Y_{hk}|]$$

총 비교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triangle$는 위의 세 가지 식에서 $1/\triangle$을 제외한 부분들을 합산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triangle = \sum_{i=1}^{m} \sum_{j=1}^{n} \sum_{h=1}^{m} \sum_{\substack{k=1 \\ k \neq j}}^{n} [N_{ij} \cdot N_{hk} \cdot \max\{\frac{i}{h}, \frac{h}{i}\} \cdot |Y_{ij} - Y_{hk}|]$$

水平的 衡平性은 같은 소득수준을 가진 두 가구가 같은 수준의 租稅負擔率을 가지는가를 조사함으로써 구해진다. 이 경우 같은 소득수준에서 비교하므로 소득격차에 따른 加重値는 필요가 없게 된다. 水平的 非衡平性을 나타내는 비율 β는 같은 소득수준의 두 가구가 서로 다른 租稅負擔率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beta = \frac{1}{\delta} \sum_{i=1}^{m} \sum_{j=1}^{n} \sum_{\substack{h=1 \\ h \neq i}}^{m} [N_{ij} \cdot N_{hj} \cdot \max(\frac{i}{h}, \frac{h}{i})]$$

여기서 δ는 水平的 衡平性과 水平的 非衡平性을 합산한 경우의 수로서 이를 수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delta = \sum_{i=1}^{m} \sum_{j=1}^{n} \sum_{\substack{h=1 \\ h \neq i}}^{m} [N_{ij} \cdot N_{hi} \cdot \max(\frac{i}{h}, \frac{h}{i})] + \sum_{i=1}^{m} \sum_{j=1}^{n} [N_{ij} \cdot (N_{ij} - 1)]$$

위 식의 오른편 두번째 항은 租稅負擔率과 소득이 같은($i = h$, $j = k$) 경우의 수를 나타내는 것으로 총 N_{ij}^2 의 비교가 가능하나 자신과의 비교를 제외하면 경우의 수는 N_{ij} $(N_{ij} - 1)$이다.

Ⅲ. 資　料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衡平性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자료의 올바른 사용이 뒤따라야 한다. 정확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변수의 사용이나 특정 계층에 偏倚(bias)된 자료의 사용은 稅負擔에 대한 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稅負擔의 분석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를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의 성격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자료를 변형시키는 과정을 설명한다.

1. 微視資料의 現況

微視資料를 사용한 租稅政策의 評價模型은 현실을 설명하는 데 설득력이 크므로 租稅分野의 연구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 특히 稅負擔의 衡平性과 같은 개개인의 자료가 필요한 분야에서는 微視資料의 사용이 연구에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微視資料는 일반인의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衡平性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개인 혹은 가구의 소득 지출 및 납세한 세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세 관련 연구에 필요한 微視資料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 國稅廳이 보유한 勤勞者의 年末精算資料와 사업자 및 일부 근로자의 綜合所得稅 申告資料이다. 이들 자료는 소득과 실지 지불한 세액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므로 直接稅 관련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5]. 대부분의 소득 관련 조

5) 미국의 경우 직접세의 연구에 국세청의 신고자료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 신고자료는 비교적 표본조사에서 기대할 수 없는 소득 및 세액에 대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으므로 거의 모든 직접세 관련 연구가 국세청의 신고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미국의 국세청 신고자료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일반인에게 소정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판매되므로 자료의 어려움은 없다.

사자료들은 정보의 正確性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조세 연구에서 국세청 자료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國稅廳 관련 자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근로자나 개인사업자를 모집단으로 분석하기에 적합하다. 국세청 관련 자료가 조세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이지만, 현실적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므로 이들 자료를 사용하여 所得稅의 부담 분석은 향후 자료의 접근이 가능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둘째,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자료이다. 현재 도시가계는 統計廳에서 매년 5,000여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의 결과는 『都市家計年報』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농촌가계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조사는 農林水産部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農家經濟統計年報』를 통하여 매년 발표되고 있다. 이 자료는 가구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보가 세밀하게 포함되어 있고, 특히 지출은 700여 개 항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間接稅 관련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 또한 사용상의 제약이 있어 일반인의 접근이 어려우나 특별한 목적으로 몇 차례 조세관련 연구에 사용되었다[6]. 이 자료는 각 가구의 방문을 통해 얻은 자료이므로 소득에 관한 정보는 정확도를 기대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특히 自營業者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매우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2. 資料의 變形과 問題點

본 연구에서는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負擔의 衡平性 分析을 시도하는 데 1987년 도시가계의 소득 및 지출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자료에 대한 조사는 매년 統計廳에 의해 행해지는데 1988년까지는 조사대상가구가 매달 약 1/12씩 바뀌기 때문에 1년 동안 계속해서 조사대상이 되는 가구는 전체가구의 1/3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7].

---

6)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한 연구로는 郭泰元(1987), 羅城麟(1991), 羅城麟 · 玄鎭權(1993), 李啓植 · 裵埈晧(1986) 등을 들 수 있다.
7) 1989년부터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1987년 도시가계조사는 4,308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사회보호시설, 군대막사에서 거주하거나 他地方에 유학하는 학생들과 가구원 수가 1인인 도시가구는 제외하였다[8].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負擔은 각 가구의 연간소득 및 지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므로 도시가계자료를 연간자료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987년 도시가계 자료의 경우 12개월을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는 그리 많지 않으므로 1987년 1/4분기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 기간동안 매월 계속하여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하여 각 가구의 분기별 소득 및 지출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추출된 가구는 2,016가구로 1987년 원래의 표본도시가구의 반밖에 안된다. 다음에 1987년을 중심으로 5년 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각 항목별 분기별 季節指數를 구하고 이 指數를 각 항목에 곱하여 연간 자료를 환산하였다. 이 推定方法의 問題點은 이러한 방법에 의해 작성된 새로운 표본 도시가구는 低所得層을 실제보다 적게 대표하게 된다. 왜냐하면 低所得層 가구일수록 자주 이사할 가능성이 높아 1/4분기의 3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조사된 가구만을 추출한 도시가구 표본에 포함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9]. 그러므로 새롭게 추출된 도시가구의 표본은 연간자료로 환산된 장점을 가진 반면, 모집단의 所得階層에 따른 대표성을 상실하게 된다. 특정 所得階層에 偏倚된 이 도시가구 표본자료의 단순한 사용은 왜곡된 분석결과를 얻게 되므로 母集團化 방법을 통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人口特性과 所得特性에 따라 표본을 母集團化시켰다. 人口特性의 변수는 가구원 수를 사용하였고 所得特性의 경우는 월 평균지출액을 사용하여 모집단 약 590만 가구로 母集團化하는 加重値를 산정하였다[10]. 그러므로 각 가구는 인구와 소득의 특성에 따라 加重値를 가지고 있으므로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

8) 재정정책에서 가구원 수가 1人인 가구는 매우 중요하나 도시가계자료는 이 가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재정정책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에 도시가계자료 사용은 한계점이 있다.

9) 1989년부터는 12개월 동안 계속적으로 동일한 가구에 대해 조사를 시도하였으므로 이러한 문제는 해결된다.

10) 모집단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羅城麟 · 玄鎭權(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두 개 이상의 변수에 대해 모집단화시킬 때 이들 변수들에 대한 결합분포를 알고 있을 때의 가중치 산정은 간단하다. 그러나 모집단의 결합변수를 모를 때는 각각의 독립분포를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계산시 이러한 加重値가 고려되어야 한다[11].

3. 實際所得의 推定

資料의 變形과 問題點 표본조사에서 소득항목들은 대체로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다. 특히 自營業者들의 소득은 더욱 그러하다. 본 연구에서는 自營業者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과 소비행태가 근로자 가구와 같다는 가정하에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여 근로자외 가구의 調査所得 대신에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한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稅負擔을 계산할 때 근로자의 調査所得을 사용하는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을 계산할 때는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한다.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하기 위해 가정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과 소비행태가 같다는 가정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여러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이 기존의 연구들과 다른 점은 기존 연구들이 총체적 데이타를 사용한 데 비해, 본 연구는 도시가구의 微視資料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實際所得을 추정하는데 사용된 도시가계 자료는 1989년도의 계절에 따라 조정된 월별 소득과 지출자료이며, 總資料數는 1,226가구이다. 1989년 자료를 사용한 이유는 1989년부터 도시가계조사가 그 전과 달리, 같은 가구를 대상으로 일년 내내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하여 연간소득과 연간지출을 바탕으로 소비함수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자료가 1987년에 가깝기 때문에 가구들의 소비패턴이 비슷할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實際所得을 추정한 방법을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모든 가구는 가구의 특성(예를 들면 가구크기, 연령별 구성, 교육수준 등)이 각각 다르고, 이러한 가구특성은 그 가구의 지출행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근로자외 가구들의 소득을 추정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다음의 가정을 한다. 가구 소비(C)는 가구의 總所得(Y), 가구원 수(N)와 주택 소유형태에 의해 결정되며, 그들 간의 관계는 指數函數(expon-

11) 미국의 국세청 자료는 층화 무작위 표본(stratified random sample)이므로 각 자료는 모집단화시키는 가중치를 가지고 있다. 이 가중치는 세액 신고형태(filing status)와 조정 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결정된다.

ential function)로 나타낼 수 있다. 여기서 指數函數를 사용하는 이유는 한국 도시 가구의 소비행태는 가구원 수가 증가함에 따라 규모의 경제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Yoo and Choo(1987)). 지출함수를 추정하기 위해 독립변수인 주택 소유형태에 관한 변수는 연속변수가 아닌 가변수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回歸方程式을 사용하였다[12].

$$\ln C = \alpha + \alpha_2 D_2 + \alpha_3 D_3 + \beta \ln N + \beta_2 (D_2 \ln N) + \beta_3 (D_3 \ln N) + \gamma \ln Y + \gamma_2 (D_2 \ln Y) + \gamma_3 (D_3 \ln Y)$$

여기서 D_2, D_3는 각각 傳貰와 月貰를 위한 假變數이고 그 이외는 自家를 의미한다.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소비에 있어서 限界消費性向이 1보다 적은 값을 가지고, 가구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 그러나 주택소유형태의 차이는 규모의 경제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둘째, 주택소유형태는 소비패턴에 상당한 영향을 보인다. 이 결과로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소비형태를 분석할 때는, 가구원 수와 주택 소유형태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구한 근로자 가구의 消費函數를 1987년 근로자외 가구의 지출자료에 응용하여 實際所得을 추정하였다. 實際所得의 추정치가 實際所得과 얼마나 가까운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없지만, 自營業者를 비롯한 근로자외 가구의 調査所得은 實際所得과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調査所得과 支出構造를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 推定値의 사용이 調査所得의 사용보다 稅負擔 분석에 더욱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12) 상세한 내용은 Yoo and Na(1991)를 참조하기 바란다.

Ⅳ. 分析結果

여기에서는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계층별 부담과, 세 가지 종류의 衡平性 係數를 사용한 衡平性 效果를 測定한다. 먼저 도시가계 조사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여 주고, 도시가구 표본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자영업 가구를 포함한 근로자외 가구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 두 계층 간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부담 차이를 살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에 대한 자료는 소득자료를 기초로 하여 1987년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法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所得稅와 附加價値稅額을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가계 조사자료는 租稅額에 대한 항목이 있으나, 稅目別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비교적 정확도에 있어 신빙도가 낮으므로 조사한 세액을 사용하지 않았다[13].

1. 家口區分別 稅負擔의 差異

조사대상 표본 도시가구를 크게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두 집단으로 나누어 稅負擔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이 두 집단으로의 구분은 『도시가계연보』에서의 방법을 이용한다. 이에 따르면 근로자 가구는 공무원 및 공무원외 사무 종사자를 포함한 봉급자와 기능공 및 상용 노무자와 자유 노무자를 포함한 노무자로 이루어져 있다. 근로자외 가구는 自營業者, 個人 經營者, 法人 經營者, 自由業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階層別 稅負擔의 分析은 각 계층의 平均 負擔率을 사용하고, 이는 각 계층의 전체 세액을 전체 소득액으로 나누어 구한다.

13) 조사한 소득세액이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을 통한 소득세액보다 적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이자 및 배당 등과 같은 원천징수된 소득세액에 대해서 조사가구들은 고려를 하지 않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천징수 세액까지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이다. 朴宰完(1993)은 1989년 도시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 부담을 분석하는 데에 조사한 소득세액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와는 연구시점의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정 소득세 부담보다 朴宰完(1993)의 결과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 구분별 所得階層別 표본가구의 분포를 살피기 위해 표본가구를 所得階層과 가구 구분별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때 근로자 가구는 調査所得을 사용하였고, 근로자외 가구는 추정한 實際所得을 사용하였다. 〈表 3－1〉은 가구 구분별 所得階層의 標本分布를 보여준다. 먼저 전체 가구에서 각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근로자 가구가 전체의 68%, 근로자외 가구가 전체의 32%를 차지하고 있다. 1987년 統計廳에서 발표한 『經濟活動人口年報』에 의하면 被雇傭者와 自營業者의 비율이 각각 35.2%, 64.8%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가구의 가구 구분별 구성과 매우 근사한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14]. 전체 표본가구를 소득의 순위별로 10개 집단으로 나누어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저소득 계층을 나타내는 1분위, 2분위, 3분위에서 근로자 가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근로자외 가구는 1% 이내를 차지하고 있어 근로자 가구가 저소득 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고소득 계층으로 갈수록 근로자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줄고, 근로자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특히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경우 거의 모든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로 이루어지고 있다.

〈表 3－1〉 資料의 分布狀況

(單位 : %)

所得階層 (하위)	가구구분	
	근로자	근로자외
1분위	9.99	－
2분위	9.23	0.78
3분위	9.22	0.78
4분위	8.52	1.45
5분위	8.03	1.98
6분위	7.46	2.51
7분위	7.11	2.89
8분위	5.26	4.79
9분위	2.77	7.15
10분위	0.76	9.34
합 계	68.34	31.66

14)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본 자료는 인구 및 소득특성에 의해 모집단화하는 가중치를 구한 결과이므로 가구구분에 의한 분포 또한 모집단에 근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表 3-2〉는 도시가구의 所得과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부담을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로 나눈 결과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도시가구의 연평균소득은 843만원이며, 所得稅 負擔額은 24만 7천원, 附加價値稅 負擔額은 31만 4천원으로 나타났다. 각 稅制의 平均 負擔率을 살펴보면 所得稅가 2.94%이며, 附加價値稅가 3.73%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비교할 때,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483만 8천원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1,619만원으로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 소득의 3.3배로 나타났다.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은 3.35%인 데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은 2.67%로 근로자 가구보다 오히려 더 낮다. 附加價値稅의 稅負擔率을 비교하면 근로자 가구가 5.93%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2.31%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値稅 負擔率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3-2〉 家口區分別 稅負擔

(單位 : 원, %)

	전 체 가 구		근 로 자 가 구		근로자외가구	
	平均	負擔率	平均	負擔率	平均	負擔率
所得	8,432,959		4,838,555		16,191,574	
所得稅	247,594	2.94	161,998	3.35	432,354	2.67
附加價値稅	314,236	3.73	286,895	5.93	373,251	2.31

〈表 3-2〉의 결과는 도시가구 중에서 所得稅를 전혀 내지 않는 가구를 포함한 全體家口의 平均 稅負擔率이므로, 所得稅를 납부하는 가구들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 비교는 어렵다. 所得稅를 전혀 납부하지 않는 가구를 제외하고 所得稅를 납부하는 가구 중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평균소득과 平均所得稅 負擔率을 살펴보면 〈表 3-3〉과 같다. 근로자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575만원

〈表 3-3〉 免稅者를 除外한 家口區分別 稅負擔의 比較

(單位 : 원, %)

	전 체 가 구		근 로 자 가 구		근로자외가구	
	平均	負擔率	平均	負擔率	平均	負擔率
所得	9,785,689		5,751,770		17,835,764	
所得稅	321,339	3.28	215,684	3.75	532,185	2.98

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연평균소득은 1,783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자외 가구가 여전히 3배 이상 높다. 평균 所得稅 負擔率은 근로자 가구가 3.75%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2.98%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이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3-4〉는 전체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부담을 所得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전체 가구를 소득의 크기 순으로 10개 계층으로 나누어 전체 所得稅額 중에서 각 계층이 부담하는 所得稅額의 비율을 살펴본다. 최고 소득층인 10분위 계층이 전체 所得稅額의 48%, 9분위 계층이 19%를, 8분위 계층이 13%로, 이들 고소득층 30%가 전체 所得稅額의 80%를 납부하고 있다. 각 所得階層이 부담하는 所得稅의 負擔率을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 所得稅 制度가 累進稅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累進的 稅負擔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最下 所得階層인 1분위의 所得稅 負擔率은 0.02%이고, 소득이 높을수록 所得稅 負擔率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가장 높은 所得階層인 10분위 계층의 所得稅 負擔率은 3.57%로서, 소득이 낮은 8분위와 9분위의 所得稅 負擔率인 3.58%, 3.69%에 비해서 오히려 所得稅 負擔率이 낮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는 實際所得에 따른 稅負擔이 累進的으로 잘 반영됨에 반해, 근로자외 가구는 實際所得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소득을 근거로 累進課稅하기에는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다.

〈表 3-4〉 모든 家口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單位 : %)

所得階層 (하위)	所得稅		附加價値稅	
	分 布	負擔率	分 布	負擔率
1분위	0.01	0.02	4.42	9.39
2분위	0.22	0.22	5.89	6.91
3분위	0.94	0.66	5.91	5.48
4분위	1.69	1.01	7.02	5.56
5분위	3.22	1.66	7.55	5.02
6분위	5.35	2.28	8.92	4.91
7분위	8.40	2.95	10.72	4.89
8분위	13.18	3.58	12.71	4.43
9분위	19.09	3.69	13.61	3.34
10분위	47.90	3.57	23.26	2.17
平均負擔率		2.94		3.73

일반적으로 附加價值稅의 所得階層別 부담은 逆進的임이 널리 알려져 있다.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所得階層別 附加價值稅 負擔率을 〈表 3－4〉를 통해 살펴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이 9.39%로서 가장 높고, 상위 10분위 계층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10개 所得階層 간에는 所得階層의 순위와 附加價值稅 負擔率의 순위가 거의 반비례하는 현상을 보여, 우리나라 附加價值稅의 逆進的 稅負擔을 실증적으로 알 수 있다.

〈表 3－5〉와 〈表 3－6〉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 負擔을 所得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所得稅 負擔의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차이를 살펴본다. 전체 所得稅額 중에서 각 所得階層이 부담하는 정도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균등한 정도를 나타낸다. 즉 근로자 가구의 경우, 고소득 계층 30%(8, 9, 10분위)가 전체 所得稅額의 63%를 부담하는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고소득 계층 30%가 전체 所得稅額의 95%를 부담한다. 특히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가 부담하는 所得稅額은 근로자 가구가 17%, 근로자외 가구가 75%로 근로자외 가구의 稅負擔은 특정 所得階層에 편중되어 있다.

〈表 3－5〉 勤勞者 家口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單位 : %)

所得階層 (하위)	所得稅 分布	所得稅 負擔率	附加價值稅 分布	附加價值稅 負擔率
1분위	0.02	0.02	7.08	9.39
2분위	0.46	0.21	9.01	7.22
3분위	2.01	0.71	9.09	5.70
4분위	3.54	1.16	10.43	6.03
5분위	5.90	1.71	10.78	5.54
6분위	9.37	2.42	12.27	5.62
7분위	15.09	3.42	14.51	5.83
8분위	21.35	5.01	14.22	5.91
9분위	25.04	8.00	9.42	5.33
10분위	17.22	12.98	3.19	4.26
平均負擔率		3.35		5.93

〈表 3-6〉 勤勞者外 家口의 所得階層別 稅負擔

(單位 : %)

所得階層 (하위)	所得稅		附加價値稅	
	分 布	負擔率	分 布	負擔率
1분위	0.00	-	0.00	-
2분위	0.01	0.37	0.71	3.62
3분위	0.00	0.00	0.64	2.83
4분위	0.05	0.18	1.36	2.78
5분위	0.86	1.46	2.19	2.85
6분위	1.81	1.84	3.37	2.77
7분위	2.51	1.79	4.42	2.61
8분위	5.99	2.00	10.20	2.80
9분위	13.86	2.09	20.55	2.60
10분위	74.92	3.14	56.56	2.08
平均負擔率		2.67		2.31

[圖 3-1]은 이들 두 가구들의 所得稅 負擔의 所得階層別 差異를 전체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누진율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부담은 累進的 形態를 보여주나, 累進度에 있어서는 근로자 가구보다는 덜하다. 우리나라 所得稅 制度가 소득의 증가에 따라 所得稅의 負擔이 累進的으로 과세되나,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부담이 서로 다른 누진구조를 가진다. 이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의 정확한 파악 여부에 따라 다른 所得稅 부담의 결과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즉 근로자 가구는 비교적 과세대상인 소득이 정확히 세무당국에 의해 파악이 되나, 근로자외 가구의 소득은 파악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근로자외 가구의 과세대상 소득으로 사용하였고, 그들이 납부한 所得稅는 보고한 소득에 근거한 결과, 근로자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累進的 부담을 보여준다. 근로자외 가구의 과세대상인 實際所得의 파악이 행정적인 어려움이 따르므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負擔은 심한 격차를 보여준다. 이러한 격차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所得稅 負擔의 隔差는 더욱 심하다. 근로자 가구의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租稅負擔率은 12.98%인 데 반해, 근로자외 가구 10분위 계층의 租稅負擔率은 3.14%로서, 근로자 가구가 4배 이상 높다.

[圖 3-1] 所得稅 負擔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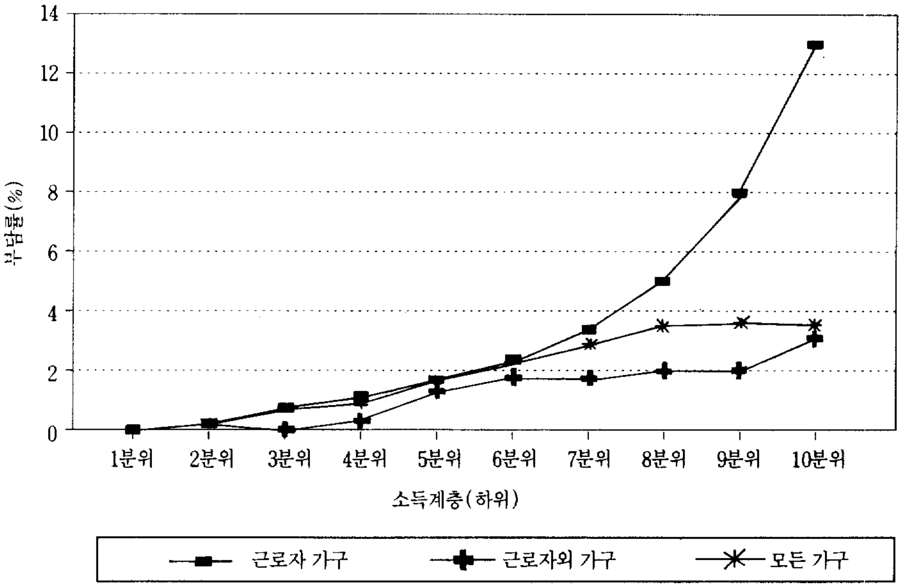

附加價値稅 부담에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차이점을 〈表 3-5〉와 〈表 3-6〉을 통해 비교해 보자. 전체 附加價値稅額에서 각 계층이 부담하는 附加價値稅額의 비율을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비교적 所得階層別로 부담하는 附加價値稅額이 전체 附加價値稅額의 10% 내외에서 심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의 각 계층별로 부담하는 附加價値稅額은 많은 격차를 보여준다.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가 56.56%를 차지하고, 다음 계층인 9분위가 20.55%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 20%가 전체 附加價値稅額의 약 77%를 부담하고 있다. 附加價値稅의 逆進的 성격을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외 가구의 계층별 부담이 심한 차이를 가지는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階層別 人口의 分布가 高所得 階層에 偏重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가구는 상대적으로 所得階層別로 인구가 균등히 분포되어 있어 附加價値稅의 부담도 근로자외 가구보다 균등하다.

[圖 3－2] 附加價値稅 負擔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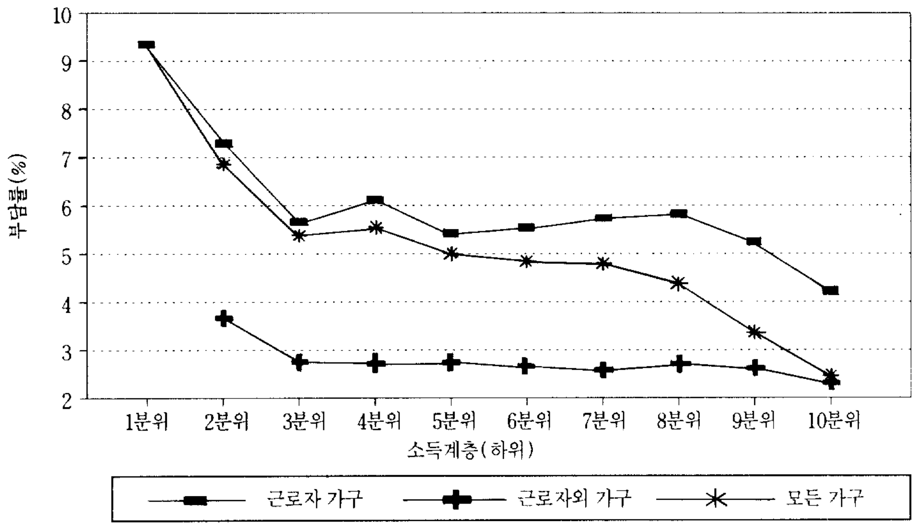

[圖 3－2]는 所得階層別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附加價値稅 負擔率의 차이를 보여준 것이다.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値稅 부담 세율이 근로자외 가구의 부담 세율보다 훨씬 높다. 근로자 가구의 경우, 附加價値稅 負擔率이 하위계층인 1분위가 9.39%로 가장 높고, 소득이 높은 상위계층일수록 附加價値稅率이 감소하여 逆進的 구조를 하고 있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저소득 2분위 계층이 3.62%로 가장 높은 세율을 보여 주고, 소득이 높은 계층으로 갈수록 세율이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근로자 가구처럼 뚜렷한 격차는 보여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근로자외 가구의 附加價値稅 負擔은 比例的 分布에 가깝다.

2.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效果分析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衡平性 效果를 세 가지 衡平性 係數를 사용하여 살펴본다. 〈表 3－7〉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지니係數를 통해 살펴보면,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가 부과되기 전에는 所得의 集中度를 나타내는 지니係數의 값은 0.4874이고, 所得稅 후에는 0.4819로 감소하여 소득 재분배의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所得稅制가 소득분포의 衡平性을 1.13% 증가시켰다. 附

加價值稅가 부과된 후에 지니係數의 값은 0.4957로서 소득분포의 衡平性을 1.7% 감소시켰다. Atkinson指數를 사용한 결과를 보면, 그 사회가 所得階層間의 不平等性을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가진다. 즉 所得階層間의 不平等性을 비교적 덜 싫어하는 사회에서는(ε = 0.5) 조세 전의 소득의 不平等度 係數가 0.1996으로 나타났다. 所得稅가 부과된 후에는 불평등도가 1.9% 향상된 0.1958로 나타났고, 附加價值稅 후에는 불평등도가 3.56% 감소된 0.2067을 보여준다. 반면 所得階層間의 不平等度를 비교적 싫어하는 사회에서는(ε = 2.5), 課稅 前의 불평등係數가 0.5856이다. 같은 소득분포에 대해서 그 사회가 계층 간의 불균형도를 얼마나 싫어하느냐에 따라 매우 상이한 Atkinson指數를 가짐을 알 수 있다. 所得稅 課稅 後에는 불평등도가 1.45% 향상된 0.5771이고, 附加價值稅 課稅 後에는 불균형도가 0.2% 감소한 0.5868이다. 두 가지 係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所得分配 효과의 결과를 살피면 이들 두 係數間에 일치하는 변화를 알 수 있다.

〈表 3-7〉 모든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租稅 前	所得稅 後		附加價值稅 後	
	係數	係數	變化率(%)	係數	變化率(%)
Gini 係數	0.4874	0.4819	1.13	0.4957	-1.70
Atkinson 指數 ε = 0.5	0.1996	0.1958	1.90	0.2067	-3.56
ε = 2.5	0.5856	0.5771	1.45	0.5868	-0.20
B-S 指數 累進度		0.8153		0.0684	
比例度		0.0411		0.0493	
逆進度		0.1436		0.8823	
水平的 非衡平度		0.7549		0.8837	

앞에서 〈表 3-4〉는 所得階層間에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의 부담의 정도를 비교한 바 있다. B-S指數는 이 표의 결과를 하나의 指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制의 특징을 보여준다. 즉 우리나라 所得稅制는 累進的이며 累進係數가 0.8153이다. 이 係數가 의미하는 바는 전체 가구들 간의 所得稅 부담을 비교할 때, 비교되는

총 경우의 수 중에서 81.53%가 累進的 구조를 보여준다. 반면 附加價値稅制는 逆進的이며 逆進係數는 0.8823이다. 이 값은 전체 가구들 간의 附加價値稅 부담을 서로 비교할 때, 비교한 총 경우의 수 중에서 88.23%가 소득이 높은 가구의 附加價値稅率이 오히려 낮은 逆進的인 관계를 보여줌을 의미한다.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가구가 같은 수준의 稅負擔을 가지는가를 보여주는 水平的 非衡平係數를 살펴보면, 所得稅制의 경우는 0.7549이고 附加價値稅의 경우는 0.8837이다. 이는 같은 수준의 소득을 가진 전체 가구 중에서 75.49%는 다른 수준의 所得稅率을 부담하고, 소득수준이 같은 전체 가구 중에서 88.37%는 다른 수준의 附加價値稅率을 부담함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水平的 衡平性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所得稅制가 동일 소득수준에 있는 계층에게 서로 다른 所得稅 부담을 가져다 주는 제도의 활용 때문이다. 또한 附加價値稅의 높은 水平的 非衡平性은 같은 所得階層의 지출형태가 매우 다양하며, 附加價値稅制는 이러한 다양한 지출형태에 서로 다른 附加價値稅額을 부담시킴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稅制의 衡平性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실증적 연구들이 垂直的 衡平性만을 고려하고,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所得稅制 및 附加價値稅의 낮은 水平的 衡平性를 고려할 때 衡平性의 한 부분인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고려가 다각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表 3-8〉과 〈表 3-9〉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表 3-8〉 勤勞者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課稅 前	所得稅 課稅 後		附加價値稅 課稅 後	
	係 數	係 數	變化率(%)	係 數	變化率(%)
Gini 係數	0.3227	0.3087	4.34	0.3268	-1.27
Atkinson 指數 ε = 0.5	0.0865	0.0794	8.21	0.0898	-3.82
ε = 2.5	0.4024	0.3873	3.75	0.3909	2.86
B-S 指數 累進度		0.9795		0.3103	
比例度		0.0123		0.0727	
逆進度		0.0081		0.6170	
水平的 非衡平度		0.5721		0.9092	

衡平性 效果를 비교한 결과이다. [圖 3-3], [圖 3-4], [圖 3-5]는 지니係數와 Atkinson指數를 사용하여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所得分配 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圖 3-3] 家口別 지니係數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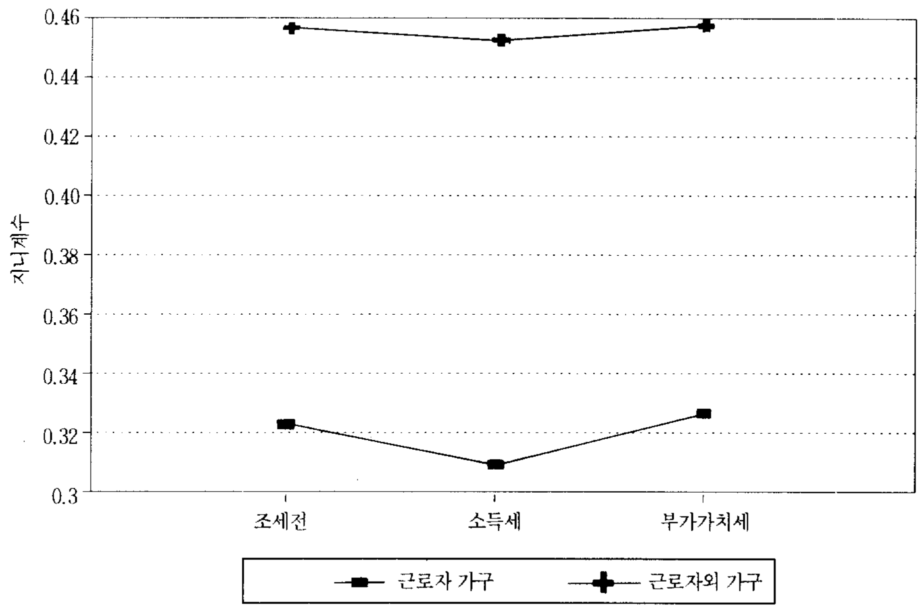

[圖 3-4] Atkinson 指數(1)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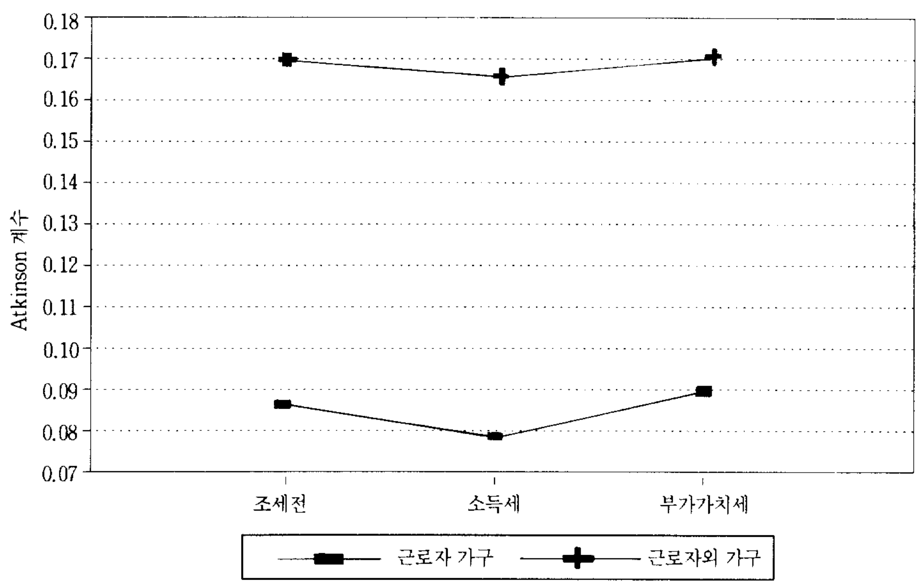

[圖 3-5] Atkinson指數(2)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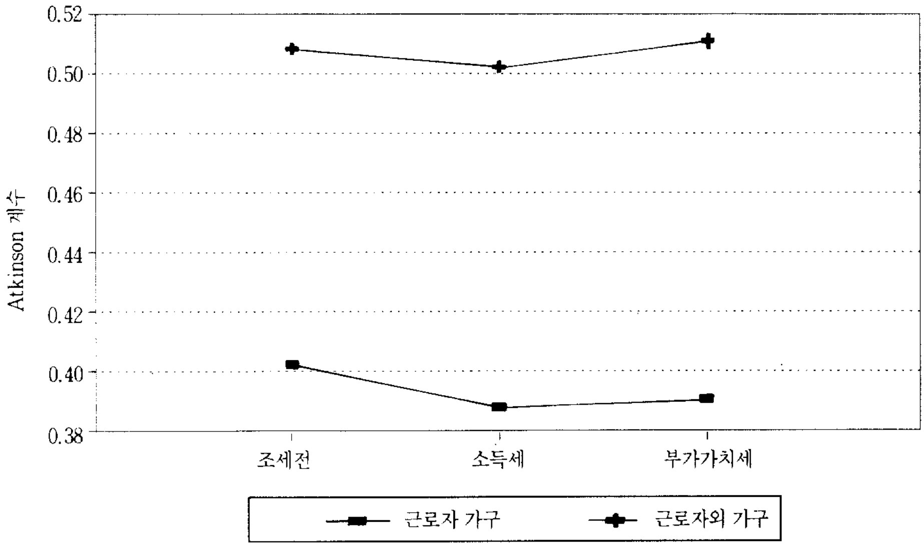

〈表 3-9〉 勤勞者外 家口의 衡平係數 變化

	課稅 前	所得稅 課稅 後		附加價値稅 課稅 後	
	係 數	係 數	變化率(%)	係 數	變化率(%)
Gini係數	0.4567	0.4528	0.85	0.4585	-0.39
Atkinson指數 ε = 0.5	0.1692	0.1662	1.77	0.1705	-0.77
ε = 2.5	0.5087	0.5019	1.34	0.5114	-0.53
B-S指數 累進度		0.7581		0.0642	
比例度		0.0497		0.2541	
逆進度		0.1922		0.6816	
水平的 非衡平度		0.8980		0.5290	

그림을 보면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과세 전 및 과세 후 모두에서 所得分配가 더 균등하다. 근로자 가구 계층은 비교적 소득의 분포가 균등한 반면, 근로자외 가구는 소득분포가 중소득층 이상에 치우쳐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소득분포의 차이점은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후에도 조세 전 所得分配의 차이에 별다른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所得稅의 所得分配 향상 효과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 가구는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높다. 이는 근로자 가구는 소득이 소득과세에 비교적 정확히 반영되는 것에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이 소득과세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

[圖 3-6] 家口別 特徵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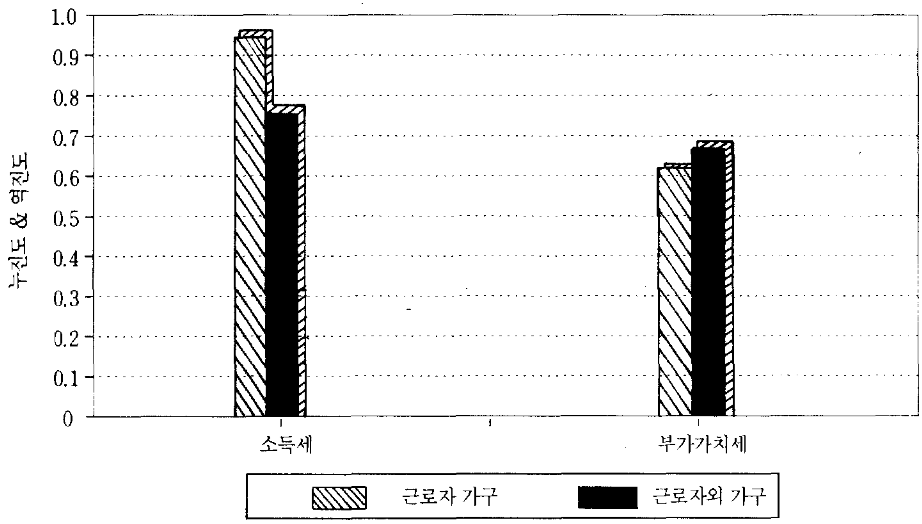

다. 그러므로 근로자 가구는 所得稅의 累進的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소득의 분포가 균등하게 향상됨을 의미한다. 附加價値稅가 所得分配에 미치는 향상 효과를 비교해 보면, 근로자 가구는 附加價値稅 후 所得分配의 衡平性이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으나, 심한 차이는 보여주지 않는다.

[圖 3-7] 水平的 非衡平度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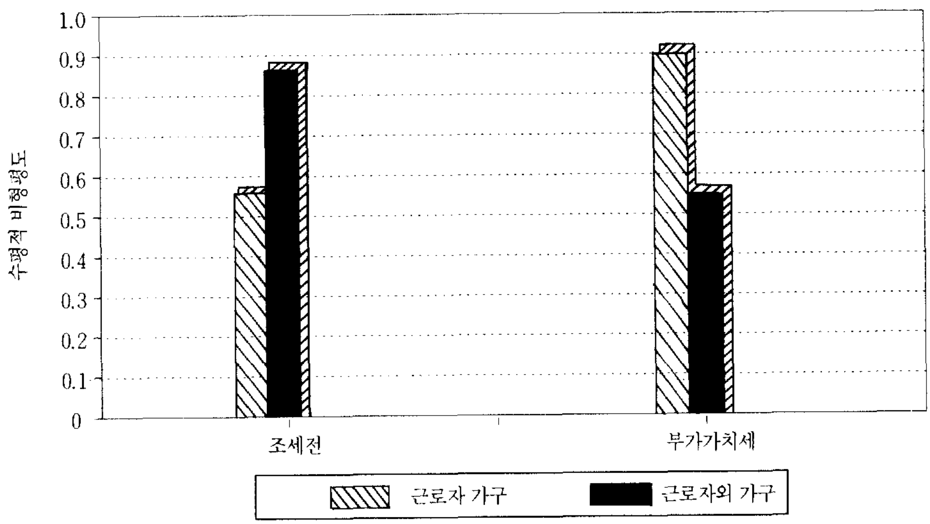

家口別 所得稅 및 附加價值稅制의 특징을 B−S 係數를 사용하여 비교한다. [圖 3−6]은 〈表 3−8〉과 〈表 3−9〉의 결과를 요약하여, 所得稅의 累進度와 附加價值稅의 逆進度를 가구별로 나누어 비교한 것이다.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累進度는 0.9795로 매우 높고,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累進度는 0.7581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의 課稅所得은 정확히 파악이 되어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累進的 구조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비해, 근로자외 가구의 課稅所得은 파악하기가 행정적으로 어려우므로 所得稅는 보고한 소득에 기초를 하기 때문이다. 附加價值稅의 逆進構造를 가구별로 비교하면, 근로자 가구는 0.617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6816으로, 근로자외 가구의 逆進度가 약간 높다. 가구별 水平的 非衡平度를 비교하기 위해 〈表 3−8〉과 〈表 3−9〉를 사용하여 요약하면 [圖 3−7]과 같다.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度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0.5721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898이다.

근로자외 가구의 水平的 非衡平度가 근로자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는 그들이 보고한 소득에 근거하나, 實際所得이 같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보고하는 소득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이를 바탕으로 부가한 所得稅額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비교적 정확하므로 공제제도와 같은 특별계층에 대한 所得稅의 감소효과로 인해 水平的 非衡平性이 나타나지만, 그 정도는 근로자외 가구처럼 심각하지는 않다. 附加價值稅의 水平的 非衡平度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는 0.909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529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水平的 비형평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所得階層에 있는 근로자 가구의 지출구조가 매우 다름을 의미하고, 또한 전체적으로 같은 수준의 지출을 하였다 해도 그들이 부담하는 附加價值稅의 수준은 다름을 의미한다. 현행 附加價值稅制는 특정 물품에 대해 免稅를 하고 있고, 이들 물품의 선정이 근로자 가구의 지출구조에 맞게 같은 所得階層이 같은 附加價值稅 負擔을 가지도록 작용하지 못함이 한 원인으로 해석될 수 있겠다.

V. 結 論

본 연구는 우리나라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의 垂直的 및 水平的 衡平性 효과를 지니係數, Atkinson指數, Berliant－Strauss指數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사용한 자료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이며, 전체 도시가구를 근로자 가구와 自營業者를 나타내는 근로자외 가구로 나누어, 이들 두 계층의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 부담의 차이점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실증적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전체 도시가구의 所得稅와 附加價値稅 平均 負擔率은 각각 2.94%, 3.73%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平均 負擔率은 각각 3.35%, 2.67%로서,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率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附加價値稅 平均 負擔率은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각각 5.93%, 2.31%로서, 근로자 가구가 2배 이상의 높은 附加價値稅 負擔率을 보여준다.

(2) 우리나라 所得稅는 累進制度이므로 所得階層別로 累進的 稅負擔을 보여준다. 최저 所得階層인 1분위의 所得稅 平均 負擔率은 0.02%이고, 소득이 높아지는 계층일수록 所得稅 平均 負擔率이 높아진다. 그러나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平均 負擔率은 3.57%로서 8분위 계층의 3.58%나 9분위 계층의 3.69%보다 낮은 負擔率을 보여준다. 附加價値稅의 稅負擔은 逆進的으로 나타나 하위 1분위 계층이 9.39%로서 가장 높고, 상위 10분위 계층이 2.1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3) 근로자 가구의 所得稅 負擔은 累進的 分布를 보여주고,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負擔 또한 累進的 분포를 보여주나, 累進度에 있어서 근로자 가구보다 매우 낮다. 그 이유는 근로자외 가구가 납부한 所得稅를 申告所得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격차는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더욱 심해, 최고 所得階層인 10분위의 경우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4배 이상의 높은 所得稅 負擔率을 보여준다. 근로자 가구의 附加價値稅 부담은 逆進的 분포를 나타내고 있으나, 근로자외 가구의 부담은 比例的 分布에 가깝다.

(4) 지니係數와 Atkinson指數를 사용하여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所得分配 效果를 살펴보면, 이들 두 係數의 변화가 서로 일치하게 나타났다. 所得稅制는 所得分配의 衡平性을 2% 이내로 향상시켰고, 附加價値稅는 所得分配의 衡平性을 4% 이내로 감소시켰다.

(5) B-S指數를 사용한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累進度는 0.8153이고, 附加價値稅制의 逆進度는 0.8823으로 나타났다. 또한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度는 0.7549이고, 附加價値稅制의 水平的 非衡平度는 0.8837로서, 所得稅制와 附加價値稅制의 水平的 衡平性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

(6) 所得稅制의 所得分配 向上效果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은 소득과세에 정확히 반영됨에 반해,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은 소득과세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附加價値稅制의 所得分配에 미치는 효과는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가 비슷한 수준의 감소를 보였다.

(7) B-S指數를 사용한 所得稅制의 累進度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0.9795이고, 근로자외 가구의 경우 0.7581로 나타났다. 이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所得稅 산정에 정확히 반영되므로 근로자 가구의 累進度가 높게 나타났다. 附加價値稅制의 逆進度는 근로자 가구의 경우 0.617이고, 근로자외 가구는 0.6816으로 나타나, 약간의 차이만을 보여준다. 所得稅制의 水平的 非衡平性을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가 0.5721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0.898로 나타나, 근로자 가구의 水平的 衡平性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稅負擔 衡平性 면에서는 근로자 가구가 근로자외 가구에

비해 垂直的 衡平性과 水平的 衡平性 모두에서 높게 나타났다. 附加價値稅의 水平的 非衡平度는 근로자 가구가 0.909이고, 근로자외 가구가 0.529로 나타났다.

1. 政策 示唆性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결과에서 정책 시사성을 살펴보면 첫째, 稅制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는 所得 再分配 向上이며, 이 효과를 測定하려는 많은 시도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가 垂直的 衡平性에만 치중하였고, 水平的 衡平性에는 관심이 덜하였다. 稅制의 衡平性은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所得稅와 附加價値稅의 水平的 衡平性이 매우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특히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所得稅 負擔의 衡平性 問題는 水平的 衡平性으로 일반의 관심이 되고 있다.

둘째, 근로자외 가구와 근로자 가구의 공평한 所得稅 부담을 위해서는 근로자외 가구의 정확한 實際所得의 추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특히 最高 所得階層에 있는 근로자외 가구 중에서 전혀 所得稅를 납부하지 않는 가구가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實際所得의 추정이 稅負擔의 衡平性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 되겠다. 이들 계층의 實際所得을 직접 조사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추정이 필요하다. 즉 소비를 통한 소득의 추정이 대표적인 방법으로서 이러한 방법론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와 조사가 뒤따라야 하겠다.

셋째, 附加價値稅의 逆進度가 매우 높은 현실을 감안할 때, 逆進度를 낮추는 방법 중의 하나는 免稅品目의 조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附加價値稅의 면세품목의 설정은 所得階層의 支出構造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아 所得分配의 효과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所得階層 간의 지출구조를 충분히 고려하여 附加價値稅 면세품목을 과학적으로 선정한다면, 附加價値稅의 逆進度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15].

15) 부가가치세의 역진도를 완화하기 위해 특별소비세제에 대해 논의하지만, 郭泰元(1987)에 따르면 특별소비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소득 재분배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간접세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겠다. 가구들의 소비형태를 최대한 반영한 부가가치세 면세품목의 설정과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품목의 선정을 통하여 간접세의 역진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2. 制約點 및 向後 硏究方向

본 연구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所得稅 및 附加價値稅의 稅負擔의 衡平性을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자료」는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조사자료로서 소득에 대한 정보는 정확성에 있어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가구의 지출에 대한 정보는 매우 풍부하여 間接稅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간간이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分析은 가구의 지출자료가 필요한 만큼, 도시가계자료가 이상적인 자료이다. 그러나 所得稅 分析에서는 근로자 가구의 소득에 대한 정보는 정확히 조사되었다는 가정하에서 시작하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조사자료는 신빙도가 낮으므로 미국에서는 國稅廳 申告資料를 사용하여 대부분의 所得稅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보여 준 所得稅 부담의 실증적 결과는 우리나라 국세청 연말정산자료와 綜合所得稅 申告資料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와 비교되어 도시가계자료의 소득에 대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세청 자료는 아직까지 일반인이 사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시기를 기다려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의 세부담의 차이점은 근로자외 가구의 實際所得을 추정한 기존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實際所得의 추정은 본 연구의 결과에 매우 중요하므로, 實際所得 추정을 위한 여러 가지 모형을 개발하고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어야 하겠다. 지출을 통한 소득추정의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지출항목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의 선정 등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가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參 考 文 獻

郭泰元,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再分配 效果」, 『韓國開發硏究』, 第9卷 第3號, 1987.

羅城麟, 『韓國의 租稅 社會扶助 模型 1』, 政策硏究資料 91－41, 韓國開發硏究院, 1991.

羅城麟・玄鎭權,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2 : 母集團化 適用을 通한 租稅－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 『財政論集』, 第7輯, 韓國財政學會, 1993.

朴宰完, 「適正稅務調査制度 : 理論模型과 納稅函數의 推定을 통한 檢證」, 『財政論集』, 第8輯, 韓國財政學會, 1992.

李啓植・裵埈晧,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 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硏究院, 1986.

玄鎭權, 「美國 所得稅制度의 衡平性 測定에 관한 硏究」, 『財政論集』, 第5輯, 1991.

Atkinson, A.B., "O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Journal of Economic Theory*, 1970.

______, "The Distribution of Wealth and Individual Life－Cycle," Oxford Economic Papers, 1971.

______, "Horizontal Equit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Tax Burden," H. Aaron and M.J. Boskin(eds.), *The Economics of Taxation*, Washington, D.C. : Brookings Institution, 1983.

Atkinson, A.B., J. Gomulka and H. Sutherland, "Grossing－Up FES Data for Tax－Benefit Models," A.B. Atkinson and H. Sutherland(eds.), *Tax－Benefit Models*, 1988.

Berliant, M.C. and R.P. Strauss, "Measuring the Distribution of Personal Taxes," R. Zeckhauser and D. Leebaert(eds.), *What Role for Government?*, Durham, ND : Duke University Press, 1983.

______, "The Vertical and Horizontal Equity Characteristics of the Federal

Individual Income Tax," David and Smeeding(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Borooah, V., "Problems in the Measurement of Inequality and Poverty : A Survey," *The Indian Economic Journal,* Vol. 38, No. 4, 1991.

Feldstein, M., "On the Theory of Tax Refor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76.

Fields, G.S. and C.H. Fei, "On Inequality Comparisions," *Econometrica 46,* March 1978.

Kiefer, D.W., "Distributional Tax Progressivity Indexes," *National Tax Journal,* 1984.

King, M.A., "An Index of Inequality : With Applications to Horizontal Equity and Social Mobility," *Econometrica 51,* January 1983.

Lambert, P.J., *The Distribution and Redistribution of Income,* Basil Blackwell, 1989.

Musgrave, R.A., "Horizontal Equity, Once More," *National Tax Journal,* June 1990.

＿＿＿, *The Theory of Public Finance,* New York : McGraw-Hill, 1959.

Nozick, R., *Anarchy, State and Utopia,* New York : Basic Books, 1974.

Paglin, M., "The Measurement and Trend of Inequality : A Basic Revision,"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5.

Plotnick, R., "A Measure of Horizontal Inequity,"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81.

＿＿＿, "The Concept and Measurement of Horizontal Inequ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1982.

＿＿＿, "A Comparison of Measures of Horizontal Inequity," David and Smeeding (eds.), *Horizontal Equity, Uncertainty, and Economic Wellbeing,* Durham, NC : Duke University Press, 1985.

Rosen, H.S., "An Approach to the Study of Income, Utility, and Horizontal Equit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978.

Suits, D.B., "Measurement of Tax Progressivity,"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1977.

Wertz, K.L., "A Method for Measuring the Relative Taxation of Families,"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1978.

Yoo, J.G. and S. Na, "An Estimation of the Income of Self-Employed Households in Korean Urban Area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Summer 1991.

都市 및 農村家計의 合算資料를 사용한 所得稅制의 稅負擔 分析

玄 鎭 權·羅 城 麟[1)]

目 次

* 본 논문은 韓國經濟學會,『경제학연구』, 제42집 제1호(1994)에 게재한 논문을 재구성하였음.

1) 本院 硏究委員, 翰林大 經濟學科 敎授

Ⅰ.序　論

소득세의 세부담 분석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간접세에 비해 더욱 뒤떨어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나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자료」가 비교적 지출조사는 상세하게 되어 있으나, 소득세에 관한 독립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소득세와 관련한 대표적인 실증적 연구로는 韓昇洙(1982)와 沈相達·朴仁元 (1989)을 들 수 있다. 韓昇洙(1982)는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통계』를 통하여 발표된 1976년, 1978년, 1980년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沈相達·朴仁元(1989)은 1984년과 1986년 『도시가계연보』의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를 포함한 직접세의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도시가계연보』의 미시자료는 소득세에 관한 독립적인 항목은 없고, 소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등을 포함한 세액에 관한 정보만 있으므로 소득세 부담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도시가계자료」만을 사용한 분석은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고려하지 못하므로 모집단의 대표성에 한계가 있다.

모집단의 대표성에 관한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를 각각 사용하여 소득분포를 분석한 연구는 朱鶴中(1979, 1982)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표본의 대표성 문제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기 위해 이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여 이용한 기존의 연구는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 형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미시자료로서 1991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조사자료」이다. 또한 이 두 가지 자료들은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합산되어 사용되었다. 이들 자료들은 소득세에 관한 독립항목이 없으므로 각 가구의 人口 및 所得의 特性에 따라 소득세액을 환산하여 구하였다.

본 연구가 기여한 부분은 우리나라 소득세의 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에 비교적 최근인 1991년 미시자료를 사용한 데 있다[2]. 또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하여 전체가계로 모집단을 확장하여 최초로 소득세 분석을 수행하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도시 및 농촌가계의 합산한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제의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형평성을 측정하는 여러가지 모형이 있지만 저자들이 玄鎭權·羅城麟(1994)을 통하여 사용한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erliant－Strauss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3].

본 연구에서 보여준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累進度가 높은 반면, 수평적 형평성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도시가계의 소득세 부담이 농촌가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부과대상이나 농촌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부과대상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및 농촌가계자료와 처리과정에 관해 설명하고, 제Ⅲ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결과를 보여준다.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중심으로 결론을 보여주고, 정책 시사성과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설명한다.

Ⅱ. 資料의 說明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1년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관한 자료이다. 도시가구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1년 「도시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고, 농촌가구에 대한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1991년 「농촌경제통

2) 미국의 경우 미시자료를 바탕으로 세부담 분석이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Pechman (1985), Pechman and Okner(1974)를 들 수 있다.
3) 세 가지 형평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미 발표된 玄鎭權·羅城麟(1994)을 참고하기 바란다.

계자료」를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이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정보의 파악에 있는 반면, 농촌가계 조사의 목적은 농촌가구의 經濟狀態 및 經營實態의 把握에 있다. 각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에서 조사되었으므로 각 항목을 서로 비교하고 合算(merge)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의 적용대상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이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는 도시가구 조사는 가구원 수가 2인 이상인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므로, 1인 도시가구는 제외되며, 또한 도시에서 농사짓는 계층도 조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촌가구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가구만을 대상으로 실시되므로, 농촌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는 조사에서 제외된다. 사용한 도시가구와 농촌가구들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表 4-1〉과 같다. 도시가구 자료는 해당되는 모집단이 816만 9,874가구로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8.2%를 차지한다. 또한 농촌가구 자료는 해당되는 모집단이 170만 2,302가구로 전체가구의 14.2%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두 자료의 사용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는 〈表 4-1〉에서 보여주는 모집단을 사용하여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4].

〈表 4-1〉 都市 및 農村家口의 家口數

(單位 : 가구, %)

전체가구수	도시가구(A)		농촌가구(B)		합계(A + B)	
	가구수	비 율	가구수	비 율	가구수	비 율
11,986,988	8,169,874	68.2	1,702,302	14.2	9,872,176	82.4

1. 都市家計資料

「都市家計資料」는 각 가구의 인구특성과 더불어 소득과 지출에 관한 항목이 매우

4) 모집단화에 관한 구체적 방법론은 羅城麟 · 玄鎭權(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에서는 1987년 도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1년 자료와 다르나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여 서로 다른 자료에 적용하여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

세밀하게 포함되어 있으므로, 財政政策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특히 지출에 관한 항목이 700여 개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間接稅의 실증적 분석에 매우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어진다. 소득에 관한 항목 또한 소득종류별로 細分化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세 연구 또는 소득분배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쓰이지만, 조사자료인 만큼 소득에 관한 항목의 신뢰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있다. 특히 自營業者의 所得이나 金融所得에 관한 사항은 매우 신빙도가 낮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정이 항상 필요하다.

「都市家計資料」는 조사가구를 대상으로 每月 所得 및 支出을 파악하므로, 각 가구의 월별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租稅 및 社會扶助 政策의 所得分配 效果 파악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연간소득과 지출에 의한 분석을 시도하므로, 월별 「都市家計資料」를 연간자료로 환산할 필요가 있다. 都市家計資料의 조사대상 가구는 1988년까지는 매달 약 1/12씩 바뀌기 때문에 1년간의 각 가구의 소득 및 지출 자료를 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그러나 1989년부터는 조사대상 가구는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되어 있으므로 월별 자료를 연간자료로 산정하는 데 상대적으로 쉽게 되었다. 1991년 「도시가계조사자료」는 1년 동안 한달도 빠짐없이 지속적으로 조사가 진행된 가구가 약 2,000가구이다. 그러나 12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조사가 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선 일정기간 이상 동안 조사된 가구만을 선정하여 연간자료에 대한 계산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개월 이상 조사된 가구(4,182가구)만을 선정하여 單純 加重値를 곱해 연간자료로 환산하였다[5].

즉, 6개월간의 자료를 가진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액수는 2를 곱하여 연간자료로 사용한다. 이러한 방법은 각 가구의 소득 및 지출의 계절적 혹은 월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있으나, 1988년 이전의 자료보다는 훨씬 더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5) 羅城麟·玄鎭權(1993)의 연구는 1/4분기 자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연간자료로 환산하는 데에 계절별 지수를 사용하여 연간자료로 환산하였다.

가. 母集團化(grossing-up)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都市家計資料」가 우리나라 전체 도시가구를 대표하지 못할 때 분석한 결과치는 올바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자료가 어떤 특정한 특성에 의해 偏倚(bias)되어 있을 때는 표본자료가 全體 母集團에 가까울 수 있도록 母集團化(grossing-up)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都市家計資料」의 特性을 母集團의 特性과 比較한 후, 표본가구를 母集團에 근접시키는 母集團化 方法論에 대해 설명한다.

〈表 4-2〉 年度別 2人 以上 家口의 變化

(單位 : 가구, %)

	1980년	1985년	1990년
가 구 수	4,449,888	5,903,224	7,738,822
증 가 율		32.7	31.1

資料 : 統計廳, 『人口住宅 總調査 報告書』.

統計廳에서 조사한 『都市家計年報』의 도시가구는 2人 이상의 家口員數를 대상으로 標本調査를 실시하였다. 그러므로 都市家計 標本資料의 母集團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하고, 시에 거주하고 있는 2人 이상 家口員數를 가진 가구를 대표한다. 家口員數와 지역별 특성에 따른 母集團의 分布는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센서스 조사에서 얻을 수 있다. 1990년 전국의 총가구수는 1,135만 4,540가구이며, 이 중에서 도시에 거주하는 가구수는 전체의 74.5%인 846만 2,417가구이다. 1人 가구원을 가진 가구수가 전체 도시가구의 약 8.6%를 차지하여 773만 8,822가구를 보여준다. 〈表 4-2〉는 1980년, 1985년, 1990년간의 2人 이상 家口員數를 가진 가구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1980년에 總 444만 9,888가구이고 1985년에는 32.7%가 증가하고, 1990년에 다시 31.1%가 증가하여 773만 8,822가구이다. 인구 센서스가 5년마다 실시되므로 본 연구의 시점인 1991년에 대한 가구수는 직접적으로 구할 수 없으므로, 가구수의 증가에 대한 과거의 趨勢를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즉 1985년에서 1990년 사이에 31.1%가 증가하였으므로 年平均 增加率은 5.57%가 된다.

1991년의 가구수는 1990년에 비해 5.57% 증가하였다는 가정하에 816만 9,874가구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標本都市家口의 母集團은 1991년 2人 이상 家口員數를 가진 816만 9,874가구이며, 이는 1991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인 1,198만 6,988가구의 68.2%이다. 그러므로 표본 도시가구의 사용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68.2%를 설명하므로 이에 따른 적절한 해석이 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2人 이상의 도시가구 조사의 標本數는 해당 母集團의 5.1%이다.

나. 標本 都市家口의 特性

표본 도시가구를 사용하여 분석할 때 母集團에 특성을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다. 母集團의 人口 및 所得特性을 표본가구와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때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표본가구를 母集團에 접근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인구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로 家口員數, 家口主의 年齡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고, 所得特性을 나타내는 變數로는 所得, 支出, 住宅所有 形態 등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母集團의 특성은 인구 센서스 자료를 통해서 구하므로, 인구 센서스 자료 중에서 인구 및 소득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를 사용한다. 인구변수로는 家口員數를 사용하고, 소득변수로는 주택소유 형태를 사용한다. 인구 센서스 자료에는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정보가 있다. 예를 들면 인구에 관한 사항으로 연령, 혼인상태, 교육정도가 있고, 가구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방수, 취사연료, 난방시설, 시설형태 등이 있으며, 주택에 관한 사항으로 延建坪, 垈地面積, 居處의 種類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家口員數와 주택소유형태의 두 가지 변수에 따라 표본가구를 母集團에 비교한 이유는 標本家口의 母集團이 인구 센서스에서처럼 우리나라 가구전체가 아니고, 도시의 2人 家口員數를 가진 가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적 母集團에 대한 情報를 구할 수 있는 變數만을 선정하였다. 인구 센서스의 여러 가지 변수 중에서 家口員數와 住宅所有形態에 대한 사항들이 部分的 母集團에 대한 情報를 가지고 있으며, 이 두 가지 변수들이 비교적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변수들로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표본 도시가구의 母集團에 대한 정보에 이러한 두 가지 변수 외에도 여러 가지 변수들을 포함시키면 더욱 정확히 표본가구를 母集團에 접근

시킬 수 있다.

인구 센서스 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므로 1990년 자료가 유용하며 1991년에 대한 자료는 간접적 推計가 필요하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1991년의 가구수는 1990년에 비해 5.57%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여, 1991년의 2人 이상 家口는 816만 9,874가구로 산정하였다. 家口員數와 住宅所有形態에 대한 分布는 1990년 분포형태와 같다는 가정하에 1991년 전체 가구수에서 1990년 각 항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1991년의 분포형태를 계산하였다. 이때, 주택소유형태의 분포는 1人 가구원 가구를 포함한 母集團의 정보만이 있으므로, 이 그룹을 제외한 母集團 分布를 간접적으로 산출하여야 한다. 1人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이 균등히 분포되어 있지 않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으므로, 주택소유형태도 자가보다는 임대형태가 많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1人 가구의 주택소유형태의 분포를 파악하여 이 그룹을 각 소유형태별로 제외하면 家口員이 2人인 도시가구의 母集團 정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1人 가구의 주택소유형태에 대한 정보는 현재 구할 수 없으므로, 가정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한다. 즉, 시에 거주하는 가구 중에서 가구주 연령이 20~29세 사이에 있는 가구의 주택점유형태가 1人 가구의 주택점유형태를 따른다는 가정을 한다. 1人 가구 중에서는 노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1人 가구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은 젊은 계층이 많이 차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이들 계층의 주택소유형태를 1人 가구의 주택소유형태로 가정하였다[6]. 이들 계층의 주택소유형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가 11%, 전세 48%, 보증부 월세 15.1%, 월세 22.4%, 무상 3%로 나타났다. 이들 계층은 거의 90%가 임대형태의 주택소유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분포를 도시의 母集團에서 제외하여 2人 이상 도시가구의 母集團 특성을 구한다.

〈表 4-3〉은 母集團 가구와 표본가구의 家口員數에 따른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4人 家口가 전체의 35%(母集團 기준)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3人 가구가 21.4%, 5人 가구가 20.9%로 다음으로 높은 비율을 보여준다. 母集團과 標本에서 각 家口員數에 따른 분포를 살펴보면, 비교적 표본의 분포가 母集團의 分布와

---

6) 보건사회연구원의 비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 1인 가구 중에서 60세 이상의 노인 단독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25%로 나타나므로 이러한 가정에는 커다란 무리는 없다.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4人과 5人 家口의 경우, 표본의 분포가 母集團의 分布에 비해 상대적으로 차이가 크며, 다른 가구의 경우는 차이가 1%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도시가구는 비교적 母集團의 家口員數에 따른 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4-3〉 家口員數에 따른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

(單位 : 가구, %)

가구원수	모집단		표 본	
	자료수	비 율	자료수	비 율
2인	1,094,763	13.4	520	12.4
3인	1,748,353	21.4	928	22.2
4인	2,851,286	34.9	1,582	37.8
5인	1,707,504	20.9	758	18.1
6인	482,023	5.9	269	6.4
7인	187,907	2.3	91	2.2
8인	65,359	0.8	24	0.6
9인 이상	32,679	0.4	10	0.3
합 계	8,169,874	100	4,182	100

〈表 4-4〉 住宅 所有形態別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

(單位 : 가구, %)

소유형태	모집단		표 본	
	자료수	비 율	자료수	비 율
자 가	3,529,386	43.2	1,727	41.3
전 세	2,720,568	33.3	1,468	35.1
보증월세	792,478	9.7	622	14.9
월 세	923,196	11.3	273	6.5
무 상	204,246	2.5	92	2.2
합 계	8,169,874	100	4,182	100

〈表 4-4〉는 母集團과 標本의 住宅所有形態에 따른 分布를 비교한 것이다. 標本分布는 母集團의 分布와 심한 차이가 없다. 自家와 專貰가 전체의 76% 정도(標本과 母集團 모두)인데, 표본의 분포가 母集團의 분포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증월세와 월세가 전체의 21% 정도(標本과 母集團 모두에서)이고, 母集團과 標本

의 分布는 조금의 차이가 있다. 즉, 보증월세의 경우는 標本(14.9%)이 母集團(9.7%)에 비해 구성비율이 높고, 월세의 경우는 標本(6.5%)이 母集團(11.3%)에 비해 낮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가구의 표본은 母集團의 家口員數를 통한 인구특성과 주택소유형태를 통한 소득특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변수에 대해서는 표본 도시가구에 대한 母集團의 代表性은 적절히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표본 도시가구(4,182가구)를 사용하여 母集團(816만 9,874가구)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만큼, 표본의 母集團에 대한 代表性은 가능한한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표본을 母集團에 근접시키는 방법으로는 각 특성에 대해 母集團의 分布를 표본 도시가구와 비교하여 母集團의 분포에 따라 加重値를 구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이러한 방법은 하나의 특성에 대해 加重値를 구하거나, 두 개 이상의 특성에 대해서는 母集團의 이들 두 개 이상의 특성에 대한 결합분포를 알 수 있을 때 加重値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母集團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으로 특성 하나에 대한 각각의 분포는 알 수 있으나, 센서스 자료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두 개 이상의 특성에 대한 母集團의 結合分布는 현실적으로 계산하기가 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도시가구를 母集團 도시가구에 최대한 접근시키기 위해, 母集團의 인구특성과 소득특성에 대한 獨立分布를 사용하여 이들 두 개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母集團의 加重値를 구한다. 표본 도시가구를 母集團에 더욱 접근시키기 위해서는 家口員數와 주택소유형태뿐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특성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母集團의 情報에 대한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특성에 의해 母集團化를 시도한다. 다른 특성들에 대한 母集團의 情報가 가능할 때, 본 연구의 母集團化 方法論은 충분히 응용될 수 있다.

다. 母集團化(grossing-up) 模型

여기에서 설명하는 母集團化(grossing-up) 模型은 특정한 특성에 따른 母集團의 독립적인 분포를 알고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특성들에 대한 母集團의 結合分布

(joint distribution)를 알 수 없을 때, 이들 두 가지 이상 특성들에 의해 표본을 母集團에 근접시키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母集團 家口의 '家口員數'와 '住宅所有形態'에 따른 독립분포는 발표된 센서스 자료를 통하여 각각 알 수 있으나, 家口員數와 住宅所有形態를 동시에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母集團 가구에 근접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두 특성에 따른 母集團의 結合分布를 알아야 한다. 그러나 이들 두 특성의 母集團의 결합분포를 알 수 없으므로 이럴 경우에 표본가구를 母集團 가구에 접근시키는 加重値를 구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방법론은 Atkinson, Gomulka, Sutherland(1988)가 영국의 가계지출조사(Family Expenditures Survey) 자료를 사용하여 영국 국민 전체를 母集團化한 방법이다.

표본 도시가구를 주택소유형태에 따른 그룹($i = 1, \cdots, 5$)과 家口員數에 따른 그룹($j = 1, \cdots, 8$)으로 나누어, i번째와 j번째 그룹에 속하는 가구수를 S_{ij}로 표시하고, 母集團의 i와 j에 대한 결합분포는 알 수 없다. 각 i그룹에 속한 母集團의 가구수를 $N_{i.}$로 표시하고 각 j그룹에 속한 母集團의 가구수를 $N_{.j}$로 표시할 때, 전체 母集團의 가구수, N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 때 $N_{i.}$와 $N_{.j}$에 대한 정보는 각각 〈表 4-4〉와 〈表 4-3〉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sum_{i=1}^{5} N_{i.} = \sum_{j=1}^{8} N_{.j} = N \quad \cdots\cdots (1)$$

표본가구의 i번째 및 j번째 그룹에 속하는 가구들을 母集團化시킬 수 있는 加重値를 P_{ij}로 표시할 때, 표본가구의 i번째 j번째 가구수(S_{ij})와 i그룹의 母集團 가구수($N_{i.}$)와 j그룹의 母集團 가구수($N_{.j}$)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sum_{i=1}^{5} S_{ij}\ P_{ij} = N_{.j} \quad \cdots\cdots (2)$$

$$\sum_{j=1}^{8} S_{ij}\ P_{ij} = N_{i.} \quad \cdots\cdots (3)$$

여기서 P_{ij}는 본 연구에서 구해야 하는 加重値이다. 이를 위해 두 가지 가정들이 필요하며, 먼저 P_{ij}에 가장 근접하는 初期値, Q_{ij}를 안다고 가정을 하자. 이때 P_{ij}는 가능한 Q_{ij}에 가장 가까운 수치를 가져야 하며, 즉 P_{ij}와 Q_{ij}의 차이를 나타내는 거리함수, d(P, Q)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거리함수, d(P, Q)의 형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른 가정들이 있을 수 있으나, 흔히 이차함수(quadratic function)가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7]. 본 연구에서 P_{ij}는 음(－)의 값을 가질 수 없으므로 이차함수 형태의 거리함수를 가질 수 없고, 이러한 제약점을 만족시킬 수 있는 로그함수 형태의 거리함수를 다음과 같이 가정한다[8].

$$d(P, Q) = \sum \sum P_{ij} \log(P_{ij}/Q_{ij})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4)$$

그러므로 표본도시가구를 母集團 도시가구로 母集團시키는 것은 d(P, Q)를 최소화시키며, 조건식 (2)와 (3)을 만족시키는 P_{ij}를 구하는 것이다. 이러한 최적치를 구하기 위한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은 式 (2), (3)과 다음의 式 (5)로 표시할 수 있다.

$$\log(P_{ij}/Q_{ij}) - S_{ij}\ (\lambda_{i.} + \lambda_{.j}) + 1 = 0 \cdots\cdots\cdots\cdots\cdots (5)$$

여기서 λ는 라그랑즈 승수(Lagrangian multiplier)이며, 초기치 Q_{ij}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값이어야 한다.

$$\sum \sum S_{ij}\ Q_{ij} = N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6)$$

초기치 Q_{ij}는 표본의 모든 가구(4,182가구)가 母集團 가구(816만 9,874가구)를 균

---

7) 이차 거리함수를 사용한 예로는 Hollenbeck(1976)을 들 수 있다.
8) 이차함수와 로그함수를 포함한 일반 거리함수의 형태를 Atkinson, Gomulka, Sutherland(1988)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다.

등히 대표할 때 가지는 값인 1,953.6을 사용한다. 式 (2), (3), (5)는 53개의 변수와 53개의 수식을 나타내므로 위 조건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加重値를 구할 수 있다[9].

이상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母集團化시키는 加重値를 구한 결과를 요약하면 〈表 4-4〉와 같다. 母集團化시키는 加重値는 평균 1,953.6으로 균등 加重値와 같게 나타났다. 最小 加重値는 789.1, 最高 加重値는 4,737로서 편차(701.7)가 비교적 크며, 이는 표본가구의 각각의 특성에 따라 母集團의 特性을 반영하는 데 있어 표본가구가 母集團의 분포와는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母集團 각각의 특성에 따른 표본가구의 분포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두 가지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본가구를 母集團 가구와 비교하면 하나의 특성에 따른 결과보다 훨씬 표본가구가 母集團의 分布와 차이를 보임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두 개의 특성에 따른 표본가구의 母集團化 方法은 표본이 가지는 두 개의 특성에 대한 母集團의 過小代表 혹은 過大代表性을 충분히 고려하여 교정시킬 수 있는 效果를 가져다 준다. 이러한 방법론을 통하여 標本을 母集團에 접근시키는 加重値의 산정없이 표본자료를 사용하면 분석결과에 오류를 범할 수 있다[10].

〈表 4-5〉 母集團化 加重値의 分布

자료수	최저치	최고치	평균	표준편차
4,182	789.1	4,737.0	1,953.6	701.7

2. 農村家計資料

본 연구에서 사용한 「농촌가계자료」는 1991년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농가경제통계자료」이다. 이 자료는 농가의 경제상태와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매월 조사한다. 농가가계조사 또한 도시가계조사처럼 매월 실시되

9) 본 연구에서는 비선형 방정식을 풀기 위해 Gams를 사용하였다.

10) 두 개의 특성에 의한 모집단화 가중치, 한 개의 특성만을 사용한 가중치, 균등 가중치 각각을 사용하여 세수규모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의 비교는 羅城麟 · 玄鎭權(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이 연구는 1987년 「도시가계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로서 모집단화는 가구원 수와 월 평균 지출액을 사용하였다.

지만, 도시가계처럼 월별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에서 오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그러므로 월별 자료를 사용하여 연간자료를 산정하는 데는 12개월 간의 합산을 통해 쉽게 연간자료로 환산이 가능하다. 1991년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조사대상 표본농가는 2,976가구이며, 본 연구에서는 전체 표본자료 중에서 無作爲 抽出에 의해 1,000가구를 사용하였다. 1991년 전체 농촌가구는 170만 2,302가구를 보여주므로 표본 농촌가구는 모집단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표본 농촌가구는 전체 모집단 가구수(1,198만 6,988가구)의 약 14.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두 표본은 우리나라 모집단 가구의 약 82.4%를 차지한다.

표본 농촌가구를 모집단화시키는 방법은 「도시가계자료」에서 사용한 것처럼 두 가지 이상의 특성에 대해 모집단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러나 표본 농촌가구에 대한 인구 및 사회변수 특성이 다양하지 않으므로 두 가지 이상의 특성에 대한 모집단화는 가능하지 않았다. 사용한 자료가 지닌 항목 중에서 인구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으로 가구원수에 대한 정보가 있고, 가구원수에 따라 모집단의 분포는 농림수산부의 농업기본통계에서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본 농촌가구를 가구원수 하나의 특성에 따라 모집단화를 시도한다.

〈表 4-6〉은 1991년 농촌가구의 모집단과 표본의 가구원수에 따른 분포의 비교로 각 항목에 대한 가중치의 산출결과를 보여준다. 표본 농촌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른 분포를 모집단 농촌가구와 비교하면 1인 가구와 9인 이상 가구에서 심한 차이를 보여준다. 1인 가구의 경우 모집단의 전체에서 7.5%를 차지하는 반면, 표본은 전체의 0.5%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9인 이상 가구의 경우는 모집단이 전체의 0.4%를 차지하는 반면, 標本家口는 전체의 0.1%를 차지하고 있다. 모집단의 분포와 비교할 때 이러한 두 항목이 심한 격차를 보여주고, 그외 항목은 심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표본의 모집단화에 대한 고려없이 단순한 표본자료의 사용은 농촌의 1인 가구와 9인 이상 가구를 과소 대표하게 되어 오류된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 가구원수에 따라 표본을 모집단화시키기 위해 모집단의 각 가구원수에 따른 자료수를 표본의 해당하는 가구원수의 자료수로 나눔으로써 모집단화의 加重値를 구할 수 있다. 표본이 모집단을 정확히 반영할 때 적용되는 균등 가중치가 1,702이므로, 구한 가중

치 값이 균등 가중치보다 클 때는 표본이 모집단을 過小代表함을 알 수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표본이 모집단을 특히 과소 대표하므로 가장 높은 25,499.4의 가중치를 갖는다. 9인 이상 가구도 표본이 모집단을 다소 과소 대표하고 있으므로 비교적 높은 가중치인 8,114를 갖는다. 반면 5인 가구의 경우는 표본이 18.6%, 모집단이 14.3%로 표본이 모집단을 다소 과대 대표하므로 가장 낮은 가중치인 1,310.6을 갖는다. 그러므로 가구원수에 따른 가중치의 산정은 1인 가구가 가장 높은 25,499.4의 가중치를 가지고, 5인 가구가 가장 낮은 가중치인 1,310.6을 가진다. 사용한 표본 농촌가구의 모집단화를 시도하는 가중치는 〈表 4-6〉에서 보여주는 9개의 다른 가중치를 가진다.

〈表 4-6〉 家口員數에 따른 母集團과 標本의 比較와 加重値

(單位 : 가구, %)

가구원 수	모 집 단		표 본		가중치
	자료수	비 율	자료수	비 율	
1인	127,497	7.5	5	0.5	25,499.4
2인	465,231	27.3	262	26.2	1,775.7
3인	316,678	18.6	197	19.7	1,607.5
4인	296,111	17.4	178	17.8	1,663.5
5인	243,775	14.3	186	18.6	1,310.6
6인	154,306	9.1	107	10.7	1,442.1
7인	69,061	4.1	51	5.1	1,354.1
8인	21,534	1.3	13	1.3	1,656.5
9인 이상	8,114	0.4	1	0.1	8,114.0
합 계	1,702,307	100.0	1,000	100.0	

3. 所得推定値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表 4-7〉은 도시가계의 근로소득, 사업 및 부업소득 및 재산소득의 총액을 國民計定과 비교한 것이다. 도시가계의 소득 종류별 총액은 우리나라 전체 모집단 가구의 68.2%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국민계정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가계의 국민계정 대비는 66%를 보여주고, 기타소득은

국민계정의 6.7%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원천과세 전 소득)의 총액을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被傭者 報酬와 비교하면 74.3%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4.2%를 차지하는 농촌가구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을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가 차지하는 근로소득 비율인 66%는 실제보다 다소 작은 수치를 나타낼 것이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조사는 사업소득에 비해 훨씬 정확도가 높으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항목은 비교적 정확한 것으로 간주하고,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사업 및 부업소득 총액의 국민계정에 대한 비율은 66.9%를 보여준다. 도시가계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68.2%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정확한 수치이다. 일반적으로 事業所得은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자료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뚜렷히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자료의 사업소득에 대한 항목이 비교적 정확히 측정되었다고 가정하고 모집단화를 시도하지 않는다. 재산소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利子 및 配當所得과 賃貸所得이다. 「도시가계자료」에서는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한 각각의 항목에 대한 정보가 없이 합산한 수치만이 있으므로 이자 및 배당소득의 합산치를 비교하고 있는데 도시가구의 이자 및 배당소득 합산액은 국민계정의 7.7%로서,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投資所得은 과소보고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러한 경향을 본 자료에서는 뚜렷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의 투자소득에 대한 모집단화없이 단순한

〈表 4-7〉 都市家計 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單位 : 10억원, %)

도시가계(A)		국민계정(B)		비율(A/B)
근로 및 기타소득	73,288.0	피용자 보수	98,697.8	74.3
ㅇ 근로소득	65,126.7			66.0
ㅇ 기타소득	8,161.3			8.3
사업 및 부업소득	29,067.6	영업잉여	43,438.2	66.9
재산소득	3,516.0	재산소득	15,013.7	23.4
ㅇ 이자 및 배당	1,087.3	ㅇ 이자 및 배당	14,202.7	7.7
ㅇ 임료	2,428.7	ㅇ 임료	811.0	299.5

자료의 사용은 투자소득을 과소평가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 賃貸收益의 경우, 도시가계의 총액이 국민계정의 299.5%를 차지하는 이상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는 도시가계의 경우 임대비용을 포함한 수치를 바탕으로 계산한 반면, 국민계정에서는 임대비용을 제외한 純賃貸收益을 말한다. 이러한 회계상의 차이점으로 인해 두 결과치는 비교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表 4-8〉은 농촌가계의 農業收益, 兼業收益, 財産收益을 국민계정의 통계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농촌가계의 농업수익과 겸업수익을 국민계정과 비교하면 각각 8%, 2.9%로, 이 두 가지 수익이 국민계정 영업잉여의 30.7%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가계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2%임을 고려할 때, 이들 수익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의 사업 및 부업소득과 농촌가계의 농업 및 겸업수익의 합산액이 국민계정의 영업잉여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고려할 수 없는 가구인 도시의 단독가구, 도시의 농가가구, 농촌의 근로자가구가 비교적 영업소득이 매우 적은 계층임을 감안할 때, 본 자료가 현실을 비교적 정확히 반영함을 의미한다. 농가가계의 재산수익을 살펴보면, 이자소득은 국민계정의 1.3%를 차지하고, 배당소득은 국민계정의 1.9%를 차지한다. 농촌가구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14.2%를 차지함을 감안할 때, 이자 및 배당소득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賃貸所得의 경우, 국민계정의 57.8%를 차지하여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고, 투자소득과 임대소득을 합산한 財産所得의 국민계정의 비율은 4.4%로 나타났다.

〈表 4-8〉 農村家計 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單位 : 10억원, %)

농촌가계(A)		국민계정(B)		비율(A/B)
농업수익	12,085.0	영업잉여	43,438.2	27.8
겸업수익	1,242.9	영업잉여	43,438.2	2.9
재산수익	713.3	재산소득	15,013.7	4.4
ㅇ이자 및 배당	244.1	ㅇ이자 및 배당	14,202.7	1.7
-이자	218.4	-이자	13,104.0	1.7
-배당	25.7	-배당	1,098.7	2.3
ㅇ임료	469.2	ㅇ임료	811.0	57.8

〈表 4-9〉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종류별 소득의 합을 국민계정과 비교한 결과이다. 도시가계를 나타내는 〈表 4-7〉과 농촌가계를 나타내는 〈表 4-8〉은 상세한 종류별 소득규모를 크게 세 부문으로 나누어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표본이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함을 고려하면서 국민계정의 총 소득과 비교한다. 근로 및 기타소득은 전체 국민계정의 74.3%, 사업 및 농업소득(도시가계의 부업소득과 농촌가계의 겸업소득을 포함한 소득임)은 97.6%를 보여준다. 이들 소득은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비교적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推定値가 과소 혹은 과대한지에 대한 판단은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않은 계층, 즉 도시지역 내의 농촌가계와 농촌지역의 근로자 가계의 구체적인 所得規模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판단내리기가 힘들다. 반면 재산소득은 국민계정의 27.8%만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추정치가 국민계정에 비해 많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이유는 이자 및 배당소득과 같은 투자소득은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재산소득은 정확한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 모든 소득을 합한 총 소득의 국민계정과의 비율은 76.3%로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하는 비율과 비교할 때, 본 연구의 총 소득의 추정치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4-9〉 全體所得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單位 : 10억원, %)

도시 및 농촌가계(A)		국민계정(B)		비율 (A/B)
근로 및 기타소득	73,288.0	피용자 보수	98,697.8	74.3
사업 및 농업소득	42,395.5	영업잉여	43,438.2	97.6
재산소득	4,180.5	재산소득	15,013.7	27.8
합계	119,864.0	합계	157,149.7	76.3

4. 投資所得의 母集團化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을 국민계정과 비교한 결과, 다른 소득에 비해 이자 및 배당소득이 실제보다 과소보고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농촌

가구의 과소보고된 투자소득을 實際値에 근접시키는 모집단화를 시도한다. 도시와 농촌가계의 과세 전 이자 및 배당소득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表 4-10〉과 같다. 연간 과세 전 평균이자 및 배당소득을 살펴보면, 도시가계가 13만 3,087원이고, 농촌가계가 14만 3,380원을 보여, 농촌가계가 더 높은 투자소득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는 계층별로 투자소득의 크기에서 높은 偏差를 보이는 반면, 농촌가계는 계층간의 투자소득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標準偏差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의 합계가 국민계정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9.1%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투자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낮음을 알 수 있다. 국민계정에 의해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을 모집단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정이 필요하다. 즉 본 자료는 전체가구의 82.4%만을 차지하고 있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17.6%의 가구(도시의 단독가구, 도시의 농가가구, 농촌의 근로가구)의 투자소득에 대한 정보는 알 수 없으므로, 도시 및 농촌가구 전체가 국민계정에서 나타난 투자소득의 얼마를 차지하는가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단순히 全體 家口數의 都市 및 農村家口數의 비율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국민계정에서 보여주는 투자소득의 82.4%를 본 자료의 도시 및 농촌가구가 차지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투자소득의 82.4%인 11조 9,303억원에 대해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의 합인 1조 3,314억원을 대비한다. 가구의 특성별로 투자소득에 대한 보고의 정도가 서로 다를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미비점으로 인해 도시 및 농촌가구 모두 똑같은 비율로 과소보고한다고 가정한다. 그러므로 국민계정 투자소득의 82.4%인 11조 9,303억원에서 도시 및 농촌가구의 투자소득의 합인 1조 3,314억원을 나눈 값인

〈表 4-10〉 都市와 農村의 利子 및 配當所得의 比較

	도시	농촌
평균(원)	133,087	143,380
표준편차(1,000)	26,757	15,655
총액(10억원)	1,087.3	244.1
국민계정 대비(%)	7.7	1.4

8.96을 투자소득의 모집단화 加重値로서 사용한다. 모든 가구의 투자소득에 8.96을 곱하여 각 가구의 실제 투자소득으로 간주한다.

5. 稅收 推定値의 比較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所得種類別 각 소득과 項目別 지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각 가구가 지불하는 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각 가구가 납부하는 세액의 계산에서 課稅單位는 家口로 가정한다. 현실에서는 과세단위가 자산소득의 경우는 家口單位로 합산이 되지만, 그외 소득은 個人別 單位로 과세가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가구단위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과세단위로 가구를 사용한다.「도시가계자료」에서는 조세에 관한 항목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자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시가계의 조세에 관한 항목은 조세 종류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전체 세액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득세제를 분석하는 데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조세액에 관한 항목은 소득에 관한 항목처럼 비교적 조사를 통해 신빙성 있는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의 소득종류별 소득액과 가구 특성(예를 들면, 家口員 數, 家口員 年齡, 어린이 數 등)을 사용하여 소득세액을 구하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세, 이자 및 배당소득세, 기타 소득세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이때 과세단위는 가구이며「도시가계자료」가 가지는 가구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세액을 구하였으나, 어떤 항목은 자료의 불충분으로 인해 필요한 가정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허용하는 한도에서는 최대한 所得稅法에서 규정하는 원칙을 모두 포함시켰다. 그러나 본 자료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부분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예를 들면, 人的控除에서 障碍者 控除를 고려할 수 없었고, 세액공제에서 국외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화재손실세액공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는 고려할 수 없었다. 세액공제에서 이들 고려할 수 없었던 세액공제의 총액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의 경우 총 세액공제액인 1,669억 9,100만원 중에서 882억원을 차지하여 52.8%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지 못한 만큼의 所得稅收의 차이는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세액은 기본적으로 모든 가구가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자영업자의 租稅回避가 일반적으로 문제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계산된 소득세액을 각 가구가 정확히 납부하며, 조세회피는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소득세액은 실지 징수한 소득세액과는 거리를 가지게 된다.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 관련세제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액과 농지세를 들 수 있다. 지방세인 農地稅의 경우 그 해당 항목에 대한 농지세액의 계산이 매우 다양하므로, 본 연구의 농촌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본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은 稅收이므로 지방세인 농지세는 계산의 어려움 때문에 고려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농지세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농지세의 세수규모가 매우 적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다. 1991년에 전체 농지세의 세수규모는 58억 3,200만원으로 전체 농가가계(약 170만 가구)에 대한 농지세액은 평균 3,400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구한 전체 稅收規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농지세를 고려하지 않는다[11]. 그러므로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源泉課稅額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가계의 국민계정에 따라 모집단화된 투자소득을 사용하여 원천과세액을 구하고, 이를 농촌가계의 소득세로 사용한다.

가. 都市家計의 所得稅 推定值 比較

〈表 4－11〉은 도시가계의 종류별 소득액과 가구 특성에 따라 소득원천별 소득세액을 구하여 국세통계에서 나타난 소득원천별 소득세액과 비교한 결과이다[12]. 여기서 이자 및 배당소득세액과 기타소득세액은 원천징수액을 나타낸다. 도시가계에서

11) 농지세에 관한 자세한 분석은 농지세에 관한 세액을 자세하게 얻을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때 향후 시도될 것이다.

12) 국세청에서 매년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에서는 신고분과 원천분 소득관련 세액에 대한 통계만 있고 근로자 및 사업자의 부문별 소득세액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재무부 세제실의 내부 통계자료를 병행하여 근로자 및 사업자의 소득세액을 산정하여 비교하였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원천분과 신고분의 소득세액을 합산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사업소득세로 가정하였다.

지불한 이자 및 배당의 총 원천징수세액은 9,74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가구들의 조사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바탕으로 산정한 것이 아닌, 국민계정과의 대조를 통한 모집단화에 의해 구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총액이다. 이 결과는 전체 1991년 총 이자 및 배당 원천징수액의 52.2%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기타소득의 경우, 총 원천징수세액은 3,430억원으로, 국세통계의 760억원과 비교할 때 450% 큰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기타소득의 많은 부분이 조세회피되는 현실을 감안할 때, 본 연구의 推定値는 각 가구는 산정된 세액을 성실히 납부하고 조세회피가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근로소득의 경우 도시가구의 총 근로소득세액은 2조 9천억원, 국세통계에서 총 근로소득세액은 1조 8천억원으로 나타나 도시가구의 총 근로세액이 국세 총계의 160.9%를 보여주었다. 이것은 勤勞稅額을 계산할 때 자료의 제약점으로 인해 세법상의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어 家口別 特性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의 경우 도시가계의 납부한 총 사업소득이 3조 5천억원이며, 국세통계의 총 세액은 1조 6,500억원으로 도시가계의 총 사업소득이 국세통계보다 217.5%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소득의 과소보고 등의 조세회피 행위를 통한 세액의 脫漏現象을 보이는 대표적 소득이므로 국세통계가 매우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전체적인 소득관련 세액을 비교하면, 도시가계가 납부한 총 소득세액은 7조 8,600

〈表 4－11〉 所得源泉別 所得稅額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單位 : 백만원, %)

	도시(A)	국세통계(B)	A/B
이자 및 배당	974,226	1,866,123	52.2
○이자		1,642,871	
○배당		223,252	
기타소득	343,638	76,402	450.0
근로소득	2,956,882	1,837,567	160.9
사업소득	3,590,198	1,650,800	217.5
합 계	7,864,944	5,431,808	144.8

억원이며, 국세통계에서 나타난 총 소득세액은 5조 4,300억원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가 납부한 총 소득세액이 국세통계의 144.8%를 차지하여, 도시가계의 납부액이 높은 수치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조세회피나 세정상의 조세 누락액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정확히 납부한다는 가정하에서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나. 農村家計의 所得稅 推定値 比較

농촌가계의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과세액만을 고려하며, 〈表 4－12〉는 전체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액의 규모를 국세통계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1991년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 과세액은 4,373억 8,200만원이며, 이는 국세통계에서 보여주는 1991년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전체 징수액의 23.4%를 차지한다. 도시가계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액이 전체 국세통계의 52.2%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의 투자소득에 대한 세액의 합은 국세통계의 75.6%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 및 농촌가계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82.4%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이자 및 배당의 원천과세액의 국세통계치와의 비율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表 4－12〉 農村家計의 利子 및 配當에 대한 所得稅額과 國稅統計의 比較

(單位 : 백만원, %)

	농촌(A)	국세통계(B)	A/B
이자 및 배당	437,382	1,866,123	23.4

다. 全體家計의 所得稅 推定値 比較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전체 소득세액은 도시 및 농촌가계의 소득세액을 합산하여 구한다. 〈表 4－12〉에서 보여주는 각 소득세액의 합을 國稅統計値와 비교하면 〈表 4－13〉과 같다. 도시가계의 총 소득세액이 국세통계치의 144.8%를, 농촌가계는 국

세통계치의 8.1%로 나타난다.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가 부담하는 총 소득세의 규모는 국세통계치의 152.9%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계산한 국세 중의 소득세 규모는 實際 徵收額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세수 규모액에 대한 정확한 추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세제의 변화에 따른 세수규모의 변화율에 대한 추정에 있으므로, 전체 세수규모가 실제액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1991년 세수규모를 본 연구의 推定値인 8조 3,023억 2,600만원(도시가계의 세수인 7조 8,649억 4,400만원과 농촌가계의 세수인 4,373억 8,200만원의 합계액)을 사용한다. 이 추정치를 기준으로 소득세제의 변화가 세수규모에 미치는 변화율을 계산하여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表 4-13〉 全體 所得稅額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單位 : 백만원, %)

	도시(A)	농촌(B)	국세통계(C)	A/C	B/C	(A+B)/C
소득세액	7,864,944	437,382	5,431,808	144.8	8.1	152.9

Ⅲ. 結果分析

본 연구에서는 소득세의 세부담을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즉 도시가계, 농촌가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한 자료가 그것이다. 기존의 實證的 硏究들은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촌가계와의 합산을 통한 실증적 분석은 없었다. 그러므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所得階層別로 比較하고,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전체가구의 소득계층별 소득세 부담을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인 근로 및 사업소득인 반면, 농촌가계의 농촌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들 두 가계간의 소득세 부담의 차이점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所得階層別 稅負擔을 비교하기 위해, 10분

위별 소득세 부담률,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S지수를 사용한다.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한 형평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소득세 전의 소득을 통한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비교한다. 이 지수들의 증감을 퍼센트로 환산하여 소득세의 소득계층간 형평성의 변화를 살핀다.

1. 所得稅 負擔의 分析結果

〈表 4-14〉는 도시가계, 농촌가계 및 모든 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衡平性 指數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먼저 10분위별로 나누어 각 계층의 所得稅 負擔率을 비교하면, 도시가계의 경우 최저소득 계층인 1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은 1.1%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소득계층 2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은 1.85이며, 소득이 높을수록 소득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경우 11.75%를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계의 세부담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累進的 구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 세제가 累進的 構造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세제를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농촌가계의 경우,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은 1.04%이며, 2분위와 3분위의 세부담률은 각각 0.31%, 0.41%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 계층의 소득세 부담률은 2분위에서 6분위 계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1분위 계층이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보이는 이유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서는 20% 원천세가 적용되어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다. 農村家計의 稅負擔은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이 높은 累進的 構造를 가지고 있으나, 1분위, 6분위, 8분위 계층은 이러한 누진적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소득세 부담률이 낮은 형태를 보여준다.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의 부담률은 3.68%로 전반적으로 낮은 소득세 부담률을 보여준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률을 비교하면,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훨씬 높은 부담률을 보여준다. 도시 및 농촌가계의 평균 소득세 부담률을 비교하면 도시가계는 6.64%이고, 농촌가계는 1.74%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의 3배 이상의 세부담률을 보여준다. 이는 농촌가계가 부담하는 소득세는 이자 및 배당에 대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만을 고려한 것이고, 농가소득의 대부분은 소득세의 적용대상이 아

니므로 소득세 부담률이 낮게 나타난다. 반면 도시가계는 근로 및 사업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러한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므로 도시가계의 소득세 부담률은 높게 나타난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所得階層別 所得稅 負擔率을 살펴보면,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부담률은 가장 낮은 부담률인 0.91%, 2분위 계층은 1.58%로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소득세 부담률이 累進的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상위 소득계층인 10분위의 소득세 부담률은 10.26%로 가장 높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는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률이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는 累進的 形態를 가지고 있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소득세의 평균 부담률은 5.79%를 나타내고 있다. [圖 4-1]은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

〈表 4-14〉 所得稅 負擔率의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
1분위	1.10	1.04	0.91
2분위	1.85	0.31	1.58
3분위	2.49	0.41	2.14
4분위	2.75	0.41	2.44
5분위	3.24	0.53	2.86
6분위	4.36	0.44	3.85
7분위	5.60	1.72	4.87
8분위	6.67	1.13	5.77
9분위	8.32	2.07	7.14
10분위	11.75	3.68	10.26
평균부담률	6.64	1.74	5.79
지니계수	0.2907	0.3241	0.2974
변화율	−6.3	−1.7	−5.2
Atkinson 지수			
$\varepsilon = 0.5$	0.0725	0.0851	0.0749
변화율	−11.2	−3.3	−9.5
$\varepsilon = 0.9$	0.1269	0.1472	0.1307
변화율	−10.4	−3.0	−8.8
B−S 지수			
누진도	0.9158	0.7328	0.8509
비례도	0.0173	0.0810	0.0182
역진도	0.0669	0.1862	0.1308
수평적 형평도	0.1336	0.1523	0.0878

계층별 10분위에 대한 소득세 부담률을 좀더 비교하기 쉽게 정리한 결과로, 위에서 설명한 비교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視覺的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소득세제는 所得再分配라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규명할 수 있다. 도시가계의 경우, 소득세후의 소득을 사용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을 측정하여 보면 지니계수는 0.2907이고, Atkinson지수는 ε의 값에 따라 각각 0.0725와 0.1269를 보여준다. 이를 소득세전의 소득을 사용한 형평지수와 비교해 볼 때, 소득세가 형평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니계수를 이용한 결과는 소득세제가 소득분배의 형평성을 6.3%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나타났다. Atkinson지수의 경우 ε의 값에 따라 소득세제의 형평성 향상효과는 각각 11.2%와 10.4%를 보여준다.

[圖 4-1] 所得稅 負擔의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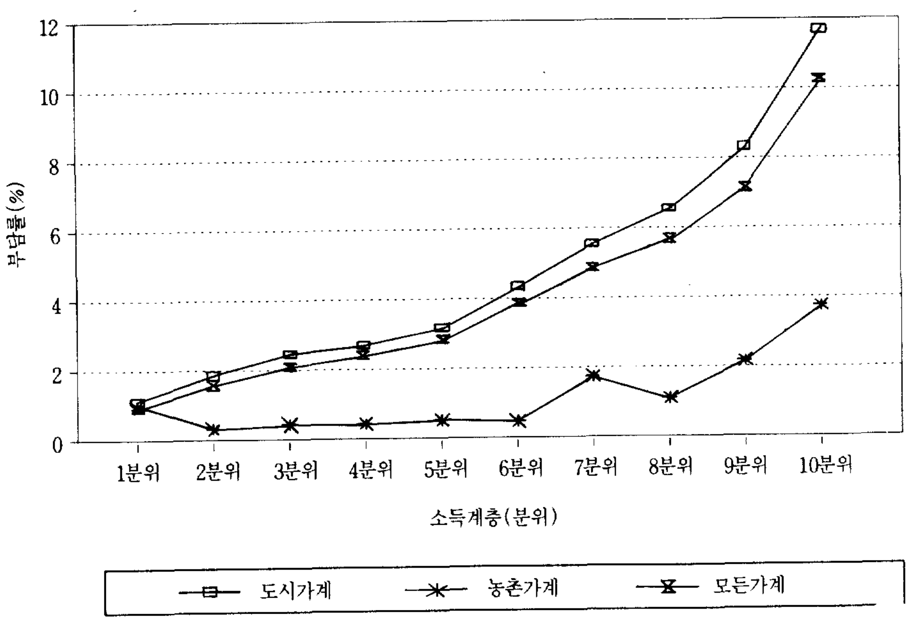

농촌가계의 소득세후 소득의 衡平性의 程度를 살펴보면 지니계수는 0.3241, Atkinson지수는 각각 0.0851과 0.1472를 보여준다. 이는 소득세전의 소득에 대한 형평성 지수와의 비교를 통해 소득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즉 지니계수를 이용하면 소득세제의 형평성 향상효과는 1.7%이고, Atkinson지수를 이용

하면 각각 3.3%와 3%의 衡平性 向上效果를 보여준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도시가계가 농촌가계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세가 농촌가계의 소득세보다 훨씬 높아서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도시가계에서 충분히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분석한 결과, 지니계수는 0.2974이고, 5.2%의 형평성 향상효과를 보여준다. 또한 Atkinson지수의 경우를 각각 보면 0.0749와 0.1307이고, 형평성 향상효과는 9.5%와 8.8%로 나타난다.

B－S지수를 사용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 所得稅制의 累進度는 0.9158로 매우 높은 누진구조를 나타낸다. 반면 농촌가계의 경우는 소득세제의 누진도가 0.7328로서 도시가계에 비해 낮은 累進度를 보여준다. 이는 앞에서 보여주었던 10분위 소득계층을 사용한 소득세 부담률을 하나의 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한 결과이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한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누진율이 0.8509로 나타났다. B－S지수를 사용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水平的 衡平性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는 수평적 형평도가 0.1336이고, 농촌가계의 경우는 0.1523으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조금 낮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0.0878로 매우 낮은 편이다.

Ⅳ. 要約 및 結論

소득세의 세부담 및 소득재분배 기능은 많은 財政學者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 우리나라 所得稅 負擔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소득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은 이론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취급되지만, 실제 소득세제의 정책입안에서는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확히 측정하는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실정이다. 소득세제에 관한 실증적 연구가 미비한 이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한 미시자료가 현실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가

계연보』에 의존하여 소득세제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거시자료의 사용은 가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득세의 세부담 상태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미시자료를 사용한 소득세의 부담분석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실정이며, 미시자료를 사용한 연구일지라도 「도시가계자료」만에 의존하여 실증적 결과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도시가계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가계만을 사용하여 얻은 실증적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전체 가계의 일부분을 설명할 뿐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을 所得階層別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소득계층별 세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는 10분위별 소득계층에 따른 소득세 부담률을 사용하였고, 소득세의 所得 再分配 效果를 측정하기 위해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득세제의 특징을 측정하기 위해 累進度와 水平的 衡平度 지수를 나타내는 B−S지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경제통계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두 가지 자료들은 각각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소득세 부담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전체가계를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이렇게 도시가계와 농촌가계 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한 연구는 우리나라에서는 저자들의 연구에서 처음 시도되었다. 합산한 자료를 사용함으로써 각 자료가 가지는 모집단을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대표하는 모집단으로 확대하여 母集團의 代表性 問題를 부분적으로나마 해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소득세 부담과 소득세제의 특징에 대한 실증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도시가계의 소득세 평균 부담률은 6.64%이며, 농촌가계는 1.74%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소득세 구조의 누진도가 높다. 이는 도시가계의 소득은 대부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농촌가계의 소득은 이자 및 배당소득만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므로 도시가계의 누진도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소득세 구조를 분석한 결과,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나는 累進的 構造를 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平均 負擔率은 5.79%이다.

(2) 도시가계의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훨씬 크므로 소득세의 所得再分配 效果는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소득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한 결과, 지니계수는 5.2%, Atkinson지수는 각각 9.5%, 8.8%의 소득 재분배의 向上效果를 보여준다.

(3)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는 누진도가 0.9158이고, 농촌가계의 누진도는 0.7328로 도시가계의 누진도가 농촌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모든 가계를 대상으로 한 所得稅의 累進度는 0.8509로서 우리나라 소득세의 누진도는 높게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제의 水平的 衡平性은 도시가계의 경우 0.1336, 농촌가계의 경우 0.1523을 보여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수평적 형평성이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수평적 형평성은 0.0878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1991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특성을 實證的으로 分析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방법론은 소득세제의 개혁시 응용하여 각 대안에 대한 소득 재분배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 이러한 실증적 결과를 통하여 정책 입안자들은 소득세제가 경제의 효율성, 所得分配 및 稅收規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 후 최선의 稅制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제개혁시 고려하여야 할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소득분배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方法論은 1991년 자료를 중심으로 매년 최신자료로 보충하거나 時差를 조정하여 향후 소득세제 개혁의 중요한 데이타 베이스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도시자료 및 농촌자료를 합산하여 분석하였으나 두 가지 자료를 합산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가계의 82.4%만을 모집단으로 포함할 뿐이다. 본 자료에서 고려할 수 없는 도시 내 농촌가계와 농촌 내 근로자 가계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전체가계를 대표한 분석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계를 포함하는 자료의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러한 계층을 포함한 자료는 없으므로 향후 가능한 시기에 본 연구는 보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投資所得에 대한 정보가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매우 과소보고된 결

과를 보여, 투자소득을 전체적으로 母集團化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과소보고하는 정도는 家計의 特性 및 所得程度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는 향후 이루어질 것이다.

參考文獻

羅城麟・玄鎭權,『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硏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硏究院, 1994.

______,「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2 : 母集團化 適用을 通한 租稅-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財政論集』, 第7輯, 1993.

沈相達・朴仁元,「財政과 所得再分配」,『財政論集』, 第3輯, 1989.

朱鶴中,『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上)』, 韓國開發硏究院, 1979.

______,『韓國의 所得分配와 決定要因(下)』, 韓國開發硏究院, 1982.

韓昇洙,『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關한 硏究』, 韓國經濟硏究院, 1992.

玄鎭權・羅城麟,「租稅 및 社會扶助의 所得再分配 效果」,『經濟論集』, 第32卷 第2號,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Atkinson, A.B., J. Gomulka and H. Sutherland, "Grossing-Up FES Data for Tax-Benefit Models," A.B. Atkinson and H. Sutherland(eds.), *Tax-Benefit Models*, 1988.

Pechman, Joseph, *Who Paid the Taxes, 1966~85*,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5.

Pechman, Joseph and Benjamin Okner, *Who Bears the Tax Burden*, The Brookings Institution, 1974.

均等犧牲假說에 따른 個人所得稅의 垂直的 衡平性에 관한 研究

林 周 瑩[1)]

目 次

* 본 논문은 한국조세연구원, 『財政金融研究』, 제2권 제2호(1995)에 게재된 논문임.

1) 本院 專門研究委員

Ⅰ. 序 論

근대국가의 성립 이후 租稅는 사회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경비를 분담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근대조세의 이념이 衡平性을 최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 근대조세의 본질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 費用分擔의 衡平性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사회구성원간의 합의가 파괴되어 아무도 租稅를 부담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양한 사회구성원간에 絶對的 衡平이란 존재할 수 없다. 각기 생계유지 수단이 다르고 소득수준 및 소유재산 정도가 다르므로 稅負擔能力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衡平性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세이론에서 그 실현방안이 제대로 발견되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衡平性은 일반적으로 水平的 衡平性과 垂直的 衡平性으로 나뉜다. 水平的 衡平性이란 효용함수가 동일하고 소득수준 및 부존재원이 같은 규모인 계층은 동일한 세부담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취향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개인간에 동일한 효용함수가 존재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사회 내에 한 대표적인 구성원(representative agent)이 존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과 동일한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水平的 衡平性은 검증가능하다. 근로소득을 가지는 사람과 사업소득을 가지는 사람이 같은 효용함수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일한 규모의 소득수준과 부존재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稅負擔이 다르다면 이는 바로 水平的 衡平性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 주지하다시피 이 같은 현상은 우리 稅制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垂直的 衡平性이란 무엇인가? 이는 바로 水平的 衡平性의 대칭이 되는 개념으로서 효용함수는 동일하나 소득수준 및 부존재원의 규모가 다른 계층은 그에 상응하는 다른 稅負擔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고소득층의 稅負擔이 저소득층보다 적다면 이는 명백히 垂直的 衡平性에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 때

문에 흔히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은 租稅에 의한 所得再分配 效果와 연결되어 언급된다. 소득활동 및 부존자원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부의 불균형을 稅負擔의 차이로 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垂直的 衡平性을 검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만일 어느 사회에 逆進稅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逆進稅에 의하여 고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만일 고소득층의 과세표준이 매우 높아 부담하는 세금의 절대액이 저소득층보다 크다면 垂直的 衡平性은 지켜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 다른 예로서 만일 어느 사회에 比例稅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 比例稅에 의하여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하여 비례적으로 많은 세부담을 진다면 稅負擔의 垂直的 衡平性은 지켜진 것인지도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현대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듯이 소득에 관한 累進稅가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고소득층에는 누진적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저소득층에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누진적으로 높아진다면 이는 과연 垂直的 衡平性을 어느 정도 만족시킨 것일까?

이와 같은 의문에 대하여 일정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이 바로 J. S. Mill (1848)에 의하여 제기된 均等犧牲假說(equal sacrifice hypothesis)이다[2]. 均等犧牲假說에서 의미하는 희생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그러나 소득이나 부존자원상의 均等犧牲이 존재할 수 없는 한, 效用上의 均等犧牲을 의미한다는 점에는 일반적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즉, 만일 어떤 稅制가 垂直的 衡平性을 만족시킨다면 그 稅制下에서의 각 계층은 자기가 부담하는 조세에 의하여 동일한 규모의 效用을 상실해야 한다는 원칙인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에 착안하여 H. P. Young(1990)은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세부담과 實質稅負擔을 비교하여 미국을 비롯한 몇 개 국가의 세율체계가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지, 즉 수직적 형평성을 만족시키는지를 검증하여 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Young의 모델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소득세제가 과연 수직적 형평성을

2) J. S. Mill은 그의 저서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에서 균등희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정부는 어떤 개인이나 계층에게 세금을 요구하는 데 있어서 차별이 있으면 안되므로 어떤 종류의 희생이라고 할지는 몰라도 그 희생은 반드시 모든 이에게 동일한 정도의 희생을 감수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므로 세금의 균등성은 바로 희생의 균등성을 의미한다."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이와 유사한 연구가 국내에서는 노기성(1991)에 의하여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동 연구는 실질세부담에 관한 실제자료를 사용하지 못하고 명목세율표에 의한 模擬實驗에 그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本稿에서는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고자 1994년 대우경제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한국가구패널조사』(Korean Household Panel Study : 이하 「대우패널」)를 사용하여 동 가설을 검증하여 보고자 한다. 개별 가계의 소득과 세부담에 근거하여 가구 혹은 가구 구성원의 實質稅負擔을 추정하고 난 후 이를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理論的 稅負擔과 비교함으로써 과연 우리나라의 소득세제가 수직적 형평성을 보장하고 있는지를 검증하여 보는 것이다.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부담 형평성에 관한 실증연구가 매우 희소하였다. 그러나 이와 밀접히 연관된 분야로서 계층별 세부담에 관해서는 적지않은 연구가 존재하고 있다. 直接稅의 계층별 세부담에 대한 대표적 연구로는 한승수(1982)가 있는데, 1970년과 1978년 현재 종합소득세 세부담을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의 거시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0년 종합소득세제하에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이 중간소득층보다 높고 누진구조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같은 逆進性은 1978년에 접어들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진권 · 나성린(1994)은 거시자료를 사용한 기존연구들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도시가계연보』와 『농가경제조사』상의 미시자료, 즉 개별 가구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의 세부담을 추정하고 있다. 동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1991년 현재 都市家計는 비교적 안정적인 稅負擔 累進度를 보여주고 있으나 農家家計는 저소득층과 중상위층에서 稅負擔의 逆進性이 나타나고 있다.

間接稅의 경우에도 몇 차례 세부담 분석이 시도된 바 있으나 대부분 거시자료에 의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계층별 세부담의 분석에서 거시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은 가계 혹은 개인의 소득수준 및 세부담을 정밀히 추정할 수 없어 계층간의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 같은 측면에서도 본 연구의 결과는 충분한 가치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3].

---

3) 세부담에 관한 실증분석이 드물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세부담분석의 특성상

이하 本稿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第Ⅱ章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실증분석의 이론적 모형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이 실증분석의 대상이 될 「대우패널」과 여기서 추출된 표본들에 대한 설명은 第Ⅲ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第Ⅳ章에서는 본 연구가 수행한 검증의 결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취급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찾아낸 우리 稅制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과 결론이 第Ⅴ章에서 제시될 것이다.

Ⅱ. 分析模型에 관한 說明

밀(Mill J. S.)에 의한 均等犧牲假說은 기본적으로 모든 납세자가 세부담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동일한 규모의 效用을 상실함을 의미한다. 만일 Y_i 만큼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혹은 개인 i의 효용함수를 $U(Y_i)$로 표현하고 이들의 세부담을 T_i라고 한다면 均等犧牲假說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U(Y_i) - U(Y_i - T_i) = S_i \quad \cdots\cdots (1)$$

여기서 S_i는 바로 가구 혹은 개인 i의 희생된 效用値로서 均等犧牲假說이 옳다면 모든 소득계층이 동일한 값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세제하에서의 가구 혹은 개인 i의 세부담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T_i = Y_i - U^{-1}[U(Y_i) - S_i] \quad \cdots\cdots (2)$$

거시자료로서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으며 입수가능한 미시자료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와 같은 均等犧牲의 기본적인 관계식을 실증분석할 수 있도록 전개시켜 보자. 式(1)의 양변을 T_i로 나눈다면

$$\frac{[U(Y_i)-U(Y_i-T_i)]}{T_i} = \frac{S_i}{T_i}$$

위 식의 좌변은 중간값정리(Mean Value Theorem)에 의하여 Y_i와 (Y_i-T_i) 사이의 어떤 값(w_i)에서 효용함수 $U(Y_i)$를 미분한 값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즉,

$$U'(w_i) = \frac{S_i}{T_i}$$

의 관계가 성립된다. 여기서 우리는 w_i의 적절한 값으로 Y_i와 (Y_i-T_i)의 기하평균인 $\sqrt{Y_i(Y_i-T_i)}$를 대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상의 式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U'(\sqrt{Y_i(Y_i-T_i)}) = \frac{S_i}{T_i}$$

만일 이 관계에서 均等犧牲이 성립된다면 우리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S_i가 모든 계층에 대하여 동일한 값을 가지는 상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분석의 편의를 위하여 S_i 값을 1로 가정하고자 한다. 이 경우 위의 관계는

$$U'(\sqrt{Y_i(Y_i-T_i)}) = \frac{1}{T_i}$$

로 전환된다. 이 식의 양변에 로그를 취한다면 우리는 다음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ln U'(\sqrt{Y_i(Y_i-T_i)}) = -\ln T_i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1)'$$

여기서 실증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바로 효용함수에 대한 정의일 것이다. 실제로 개인 혹은 가계는 趣向이 이질적이고 다양한 만큼 그들의 효용함수도 각기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 경우 효용함수의 도출에 근거한 均等犧牲의 추정은 불가능해 진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개인 혹은 가구는 동일한 趣向을 가진다고 가정하고자 한다. 즉, 한 사회 내에 하나의 대표적인 구성원(representative agent)이 존재하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 구성원과 동일한 趣向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소득에 의해서만 차별된다고 가정한다[4]. 따라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은 형태를 지니게 된다[5].

$$U(Y_i) = \beta(Y_i)^{1-\alpha} + \varepsilon_i$$

이 효용함수를 式(2)의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세부담식에 대입하면 우리는 다음의 결과를 얻게 된다.

$$T_i = Y_i - (Y_i^{1-\alpha} + S_i)^{\frac{1}{1-\alpha}} \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cdots (2)'$$

均等犧牲假說을 검증하기 위해 우리는 효용함수에서의 계수, 특히 相對的 危險忌避度인 α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α를 도출하는 일반적인 공식은

4) 일반적으로 가설 검증을 위해서는 특정한 형태의 효용함수를 가정하게 된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Young (1990)이 추구한 방법을 따라 均等犧牲假說이 특정효용함수에 대하여 성립된다고 전제하고 그 효용함수의 계수들이 세부담자료로부터 직접적으로 도출됨을 보여주는 절차를 따르고자 한다. 즉, 이 방식에 따르면 첫째, 효용함수의 추정계수치가 효용함수이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둘째, 이 효용함수로부터 도출된 균등희생을 만족시키는 세부담이 실제 세부담자료에 부합될 경우에만 均等犧牲假說은 채택되게 된다.

5) 「대우패널」에는 가구와 개인의 소득 외에도 소비지출과 그 외의 개인의 특성을 잘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변수들이 조사되어 있다. 따라서 효용함수를 소득이 아닌 전통적 효용함수이론에 입각하여 소비를 포함한 여러가지 변수들로 추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효용함수의 상대적 위험기피지수를 추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만큼 소득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지금까지의 많은 실증분석에 의하면 이 위험기피지수는 1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음과 같다[6].

$$\alpha = -\frac{U''(Y_i)}{U'(Y_i)} \quad Yi$$
$$= \frac{d(-\ln U'(Y_i))}{d(\ln Y_i)}$$

앞의 과정에서 우리는 효용함수의 추정치를 Y_i와 $(Y_i - T_i)$의 기하평균인 $\sqrt{Y_i(Y_i - T_i)}$인 점에서 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값을 대입한 후 式(1)′의 관계와 연결한다면 우리는 다음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alpha = -\frac{d(-\ln U'(\sqrt{Y_i(Y_i - T_i)}))}{d(\ln\sqrt{Y_i(Y_i - T_i)})}$$
$$= \frac{d(\ln T_i)}{d(\ln\sqrt{Y_i(Y_i - T_i)})}$$

이는 결국 α의 값이 $\ln\sqrt{Y_i(Y_i - T_i)}$를 종속변수로 보고 In T_i를 독립변수로 본 회귀분석의 결과로 도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별 납세자의 세부담자료와 소득자료를 사용하여 α의 값이 도출될 수 있다. 이후 本稿에서는 편의를 위하여 $\ln\sqrt{Y_i(Y_i - T_i)}$를 V_i로 표현하고 In T_i를 Z_i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면 분석의 기본 式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6) 이 공식의 도출과정을 단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U(Y_i) = -\beta Y_i^{1-\alpha} + \varepsilon_i$$
$$U'(Y_i) = (\alpha - 1)\beta Y_i^{-\alpha}$$
$$U''(Y_i) = -\alpha(\alpha - 1)\ \beta Y_i^{-\alpha-1}$$
$$\frac{U'(Y_i)}{U''(Y_i)} = -\frac{1}{\alpha}\ Y_i$$

$$Z_i = \beta + \alpha V_i$$

일단 α의 값이 추정된다면 式(1)으로부터 S_i, 즉 均等犧牲의 값을 계산해낼 수 있다. 이 값을 다시 式(2)′에 대입함으로써 가계 혹은 개인 i의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理論的 稅負擔을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도출된 이론적 세부담을 다시 實質 稅負擔과 비교함으로써 현행 稅制의 垂直的 衡平性 정도를 평가하여 볼 수 있는 것이다[7].

Ⅲ. 分析資料에 관한 說明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우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동 자료는 첫째, 가구 구성원의 경제활동이 가구 및 개인의 특성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가를 미시적인 관점과 동태적인 관점에서 분석가능하도록 하고 둘째, 정부정책을 포함한 각종 외생변수의 변화가 이들 경제주체들에게 미친 영향 및 이로 인해 변화되는 행동양식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있다[8]. 패널자료의 특징이자 가장 큰 장점이 그러하듯이 「대우패널」은 동일한 가구 및 개인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질문들을 매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은 1992년 소득 및 세부담에 관하여 1993년도에 조사되어 1994년도에 공표된 자료이다. 대상 집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일반가구 중 多段階 層化 確率標本(multi-stage stratified random sampling)이론에 근거

7) S_i의 값은 가계 혹은 개인에 따라 각기 다른 값이 추정된다. 그러나 가설이 희생의 균등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인 값의 차이는 의미가 없다. 또한 효용함수의 계수치에 따라 변화하므로 절대치 자체가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본 연구의 목적이 균등가설이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의 적정세부담은 무엇인가를 추정하는 것에 있으므로 本稿에서는 추정된 개별 S_i의 평균치를 사용하고자 한다.

8) 대우경제연구소(1994), p. 324.

하여 8,236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그 중 약 55.2%인 4,547가구의 1만 460명 개인에 대해 조사가 실시되어 있다. 조사대상 개인 1만 460명 중 常勤職과 定規被雇傭人을 포함한 勤勞所得者는 2,839명(전체의 27.1%), 自營業 혹은 自由業者는 1,450명(전체의 13.9%), 農林水産業者는 488명(전체의 4.7%), 其他 非定規職 및 未就業者가 5,683명(전체의 54.3%)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가운데 勤勞所得稅와 綜合所得稅의 적용대상 개인들을 각각 분석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응답거부자를 제외하여 2,32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세부담액이 0인 하위소득의 근로소득자는 579명인데, 회귀계수의 추정 및 이론적 세부담액의 계산은 이들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수행하였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우선 1,450명의 자영업 및 자유업자 중 응답거부자 202명과 근로소득세를 부담한 자 68명을 제외하였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분석대상자는 1,180명인데, 이 중 1992년 동안 소득이 없거나, 적자인 경우, 소득이 있지만 종합소득세 면세자인 경우는 494명에 이른다. 이들 494명을 포함한 경우와 제외한 경우로 각각 나누어 회귀계수의 추정 및 이론적 세부담액의 계산이 이루어졌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所得槪念은 자영업자의 경우 월평균수입을 연간소득으로 환산한 것이다. 봉급생활자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급여(기본급, 수당)와 변동적인 급여(성과급, 초과근무수당) 외에 상여금과 임금인상 소급분의 일시지급분을 포함한 것이다. 정률상여금의 지급기준으로 기본급과 일부수당을 가리킨 개인의 경우에는 기본급과 수당의 2분의 1에 대해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봉급생활자는 갑종 근로소득세를, 자영업·자유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대우패널」 자료상에는 소득세부담액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공제감면액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 과세구간구분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本稿에서는 總所得을 기준으로 課稅區間區分을 하였다[9].

9) 그러나 납세자별 가족수, 교육비·보험료·기부금 등 공제항목, 공제금액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은

Ⅳ. 分析結果에 관한 說明

본 연구에서의 첫번째 분석은 「대우패널」상의 근로소득자 2,321명 전원을 그 대상으로 삼고 있다[10]. 동 집단을 대상으로 한 危險忌避計數(α)의 추정치는 다음과 같다.

$$Z_i = -10.3 + 1.745\,V_i$$
$$(-26.3)\quad(31.3)\qquad R^2 = 0.298$$

괄호 안의 수치는 t값을 의미한다. 이 결과는 危險忌避計數가 2에 가까운 값일 것이라는 일부의 실증분석결과와 부합되고 있다[11]. 이 계수를 사용하여 추정된 均等犧牲의 平均値는 4.8449×10^{-5} 이다[12].

이 균등희생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다시 이론적 세부담, 즉 균등희생을 만족시키는 계층별 세부담이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 값들을 추정하여 보았다. 첫째 방법은 동일 과세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들의 이론적 세부담을 추정하여 그 평균치를 동 계층의 이론적 세부담액으로 산정하였다. 두번째 방법은 해당 과세구간의 소득의 평균치와 실질 세액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이론적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이 두 값 사이에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결과 구해진 勤勞所得 階層別 實質稅負擔과 理論的 稅負擔의 差異를 1992년도

상태에서의 가계 혹은 개인의 세부담을 분석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 분야에 대한 자료의 입수가능 여부에 따라 많은 진전이 가능할 것이다.

개인에 대한 공제감면액 자료가 없는 상황하에서 만일 동일 계층에 동일한 규모의 공제감면액을 적용시켜 실효세부담을 추정한다면 이것은 총소득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방법이 오히려 자료의 객관성을 살리는 방법인 것으로 보인다.

10) 근로소득세 납세액이 전혀 없다고 보고한 경우에는 ln T=0로 계산하였다.

11) I. Friend and M. Blume(1975)

12) 회귀분석의 결과 결정계수 R^2의 값이 낮은 것은 횡단면자료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횡단면자료는 동 계수가 매우 낮게 나오는데 이에 비하면 본 연구에서 추정된 값은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의 근로소득세 과세구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 〈表 5－1〉이다. 동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자 중 소득이 400만원 미만인 최저소득계층과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사이인 중간소득계층의 실질세부담은 균등희생가설을 만족시키는 이론적 세부담보다 약간씩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이 4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하위소득층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약간 낮은 실질세부담을 지고 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2,500만원 이상인 상위소득계층의 경우는 실질 세부담과 이론적 세부담의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론적 세부담보다 약 18% 정도 많은 실질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우리는 稅負擔 推定過程과 設問調査資料 自體의 偏差를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결과 가운데 이론과 실질세부담 사이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중간소득층 이하의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들은 실제 비교적 균등희생을 만족시키는 세부담을 진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드러지게 높은 실질세부담을 하고 있는 상위소득층의 경우에는 균등희생에 비하여 많은 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表 5－1〉 勤勞所得者의 稅負擔分析(課稅區間에 따른 分布, 免稅者 包含)

(單位 : 명, 만원, %)

소득구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 세부담(1)	이론적 세부담(2)
~ 400만원	50	348.94	2.28	0.66	1.791	1.772
400만원~1,000만원	833	715.48	5.64	0.76	6.394	6.186
1,000만원~2,500만원	1,382	1,474.94	24.40	1.53	22.485	21.744
2,500만원~5,000만원	55	3,026.86	89.14	2.98	76.861	75.551
5,000만원~	1	5,600.00	600.00	10.71	218.298	218.298

이상의 결과는 해석상 약간의 문제를 내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횡단면 설문조사자료의 특성상 동 집단의 과세구간별 분포가 고르지 못하여 추정치가 매우 편중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表 5－1〉의 과세구간별 분포에 따르면 연 소득 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1명에 지나지 않아 표본의 대표성을 부여하기 어려움을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同 硏究에서는 소득구간을 10分位로 나누어 다시 이론적 세부담과 실질세부담을 추정하여 보았다. 〈表 5-2〉에 수록된 이 결과는 〈表 5-1〉과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10分位로 나누었을 경우 최고소득계층인 1分位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근로소득 모든 계층은 대부분 균등희생가설을 만족시키는 세부담보다 낮은 실질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최고소득층인 1分位 계층만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매우 높은 實質稅負擔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결과 역시 추정상의 편차를 감안한다면 〈表 5-1〉의 결과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즉, 최고소득층의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계층이 균등희생을 보장하여 주는 세부담에 가까운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이다[13].

〈表 5-2〉 勤勞所得者의 稅負擔分析(10分位에 따른 分布, 免稅者 包含)

(單位 : 명, 만원, %)

소득분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세부담(1)	이론적세부담(2)
1	233	2,367.22	72.26	3.00	50.77	49.38
2	233	1,750.16	28.69	1.64	29.32	29.26
3	233	1,515.61	20.29	1.34	22.81	22.79
4	233	1,352.31	18.61	1.37	18.72	18.70
5	233	1,222.37	14.37	1.17	15.70	15.69
6	233	1,104.22	12.51	1.13	13.16	13.15
7	233	953.18	8.49	0.89	10.20	10.19
8	233	781.90	6.80	0.87	7.24	7.22
9	233	627.76	4.33	0.69	4.94	4.93
10	224	462.87	2.70	0.59	2.95	2.90

[圖 5-1]에는 10分位로 나눈 계층별 세부담률을 그래프로 표현하여 보았다. 세부담액으로 표현한 결과와 유사하나 이론과 실질세부담의 차이를 보다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은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근로소득세율이 비교적 수직적 형평성을 잘 보장

13) 579명의 소득세 면세자가 모두 8, 9분위 또는 10분위에 속하는 것은 아니다. 「대우패널」자료를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소득자 중 근로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상당수 나타나며 상대적 고소득자 중에도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表 5-2〉의 9분위와 10분위의 평균세액이 0이 아닌 것은 설문조사자료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소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단, 상위소득계층의 경우에는 이론적 세부담보다 높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외된 근로소득에 적용되는 控除減免을 감안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결과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공제감면이 全勤勞所得階層에 적용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상대적으로 더 높게 완화시켜 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圖 5-1] 10分位別 稅負擔率(俸給生活者 2,321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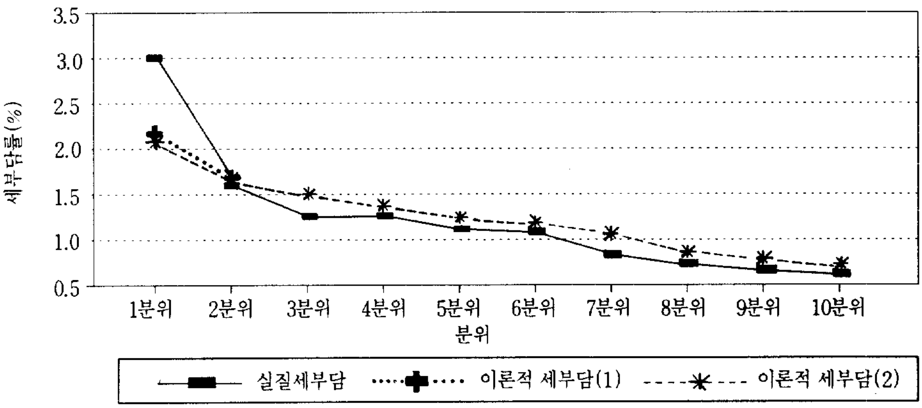

그러나 이와 같은 결과는 垂直的 稅負擔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식과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흔히 우리의 개인소득세제는 累進構造가 급격하여 免稅點 以下의 계층에 비하여 최저소득 과세계층의 세부담이 급격히 증대되고 상위소득층의 세부담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상위소득층의 세부담에 대해서는 예상대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예상과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表 5-1〉과 〈表 5-2〉의 결과가 控除減免이 감안되지 못한 채 이루어져 免稅點 以下의 소득계층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즉,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이 최저소득계층에 편입됨으로써 이 계층의 實質稅負擔을 급격히 완화시키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는 근로소득자 중에서 납부한 근로소득세가 없다고 말한 개인을 모두 면세점 이하계층으로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하고, 실질세부담이 있는 근로소득

자만으로 새로운 표본을 형성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분류결과 579명이 면세점 이하 소득계층에 속하여 제외되고 1,742명으로 새로운 표본이 구성되었다[14]. 이 표본으로부터 도출된 回歸分析 結果는 다음과 같다.

$$Z_i = -7.16 + 1.371\ V_i$$
$$(-18.2)\quad (24.8) \qquad R^2 = 0.261$$

동 표본에서 추정된 危險回避計數는 앞에서 살펴본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을 포함한 표본상의 危險回避計數보다 낮다. 이는 면세점 이하의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危險忌避計數가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계수값을 사용하여 추정된 均等犧牲의 평균치는 4.519×10^{4}로 나타나고 있다.

〈表 5-3〉 勤勞所得者의 稅負擔分析(課稅區間에 따른 分布, 免稅者 除外)

(單位 : 명, 만원, %)

소득구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 세부담(1)	이론적 세부담(2)
~ 400만원	12	341.58	9.50	2.74	3.611	3.597
400만원 ~ 1,000만원	504	740.15	9.32	1.25	10.483	10.360
1,000만원 ~ 2,500만원	1,170	1,504.01	28.32	1.80	27.450	27.306
2,500만원 ~ 5,000만원	55	3,026.86	89.13	2.98	71.450	70.972
5,000만원 ~	1	5,600.00	600.00	10.71	164.294	164.294

이상의 결과를 사용하여 도출된 이론적 세부담과 실질세부담의 추정치가 〈表 5-3〉과 〈表 5-4〉에 나타나 있다. 앞의 분석과 마찬가지로 〈表 5-3〉은 勤勞所得稅의 課稅區間에 따른 분포이며 〈表 5-4〉는 所得 10分位에 의한 분포를 나타낸다.

〈表 5-3〉의 결과에서 두드러진 것은 소득이 400만원 이하의 최저소득계층의 實質稅負擔이 均等犧牲을 만족시키는 理論的 稅負擔보다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

14) 물론 납부한 세금이 없다고 답변한 개인 중에는 실제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한 답변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도 모두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간주하여 표본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다는 사실이다. 즉, 이 계층의 실질세부담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300% 가까이 높게 나타나는 急激한 稅負擔 增大 現象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지되고 있는 우리나라 근로소득세제의 문제점이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표본에서도 상위소득계층은 이론적 세부담보다 비교적 높은 실질세부담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推定偏差를 감안한다면 중간소득층과 하위소득층은 비교적 이론과 부합되는 實質稅負擔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表 5-4〉의 10分位 분포에서도 이 사실이 나타나고 있다. 최하위 소득계층인 10分位 계층의 실질세부담은 이론적 세부담에 비하여 약간의 차이지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고소득계층인 1分位 계층도 매우 높은 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5].

〈表 5-4〉 勤勞所得者의 稅負擔分析(10分位에 따른 分布, 免稅者 除外)

(單位 : 명, 만원, %)

소득분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 세부담(1)	이론적 세부담(2)
1	175	2,486.7	81.85	3.27	54.8514	54.2676
2	175	1,867.3	37.67	2.00	36.7246	36.6994
3	175	1,611.8	25.98	1.60	30.0231	30.0163
4	175	1,457.4	24.43	1.67	26.1641	26.1586
5	175	1,316.3	20.27	1.54	22.7643	22.7597
6	175	1,208.4	18.46	1.52	20.2524	20.2492
7	175	1,084.7	15.32	1.41	17.4768	17.4705
8	175	920.7	12.12	1.31	13.9744	13.9627
9	175	731.8	9.07	1.24	10.2154	10.2005
10	167	532.5	6.71	1.29	6.6430	6.6048

[圖 5-2]에 나타난 동 표본의 이론과 실질간의 세부담률의 차이도 이러한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우리 個人所得稅制는 최하위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면세점 이하의 계층에 비하여 급격히 높아지고 최고소득계층의 세부담도 상대적으로 매우 높

15) 〈表 5-3〉의 2,500만원 이상 소득계층의 경우 그 구성원이 〈表 5-1〉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인원 및 평균소득 등을 비교하여 보면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인 세부담은 저소득층의 변화에 따른 상대적 변화에 의하여 그 절대값이 변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 垂直的 衡平性을 沮害하고 있는 것이다.

[圖 5-2] 10分位別 稅負擔率(俸給生活者 1,742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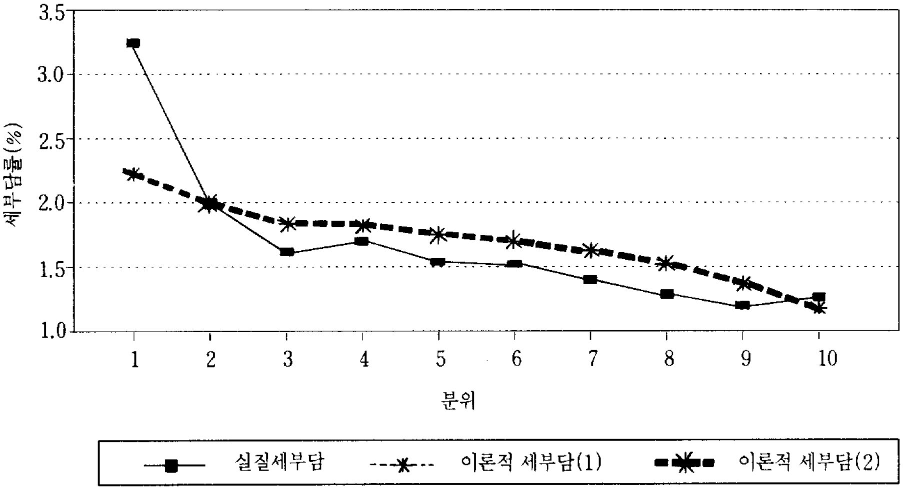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까지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개인소득세제가 垂直的 衡平性을 충족시켜 주고 있는지를 분석하여 보았다. 그러나 과연 근로소득자 이외의 개인소득자, 특히 자영업자와 같은 사업소득자의 경우는 세부담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매우 중대한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事業所得者에 대해서도 동일한 均等犧牲假說에 입각한 稅負擔의 분석을 실행하여 보고자 한다.

「대우패널」에는 1,180명의 자영업자가 조사되어 있다. 이 가운데에서 세금을 내지않았다고 한 494명은 앞의 근로소득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으로 간주하여 제외하고 나머지 686명으로 표본이 구성되었다. 추정된 危險回避計數는 다음과 같다.

$$Z_i = -4.06 + 0.925\ V_i$$

$$(-7.958) \quad (13.135) \qquad R^2 = 0.2014$$

동 표본에서 도출된 理論的 稅負擔과 실질세부담의 차이는 課稅區間에 따라 〈表 5-5〉와 10分位에 따라 〈表 5-6〉에 수록되어 있다. 垂直的 稅負擔의 분석에 앞서 〈表 5-3〉과 〈表 5-5〉에 나타난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실질세부담을 비교하여 본다면 우리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것은 근로소득자에 비하여 사업소득자의 실질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은 課稅捕捉率이 낮아 세부담이 낮고 근로소득은 源泉徵收되므로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表들의 비교에서 나타나듯이 실질세부담은 동일한 과세계급의 비교시 사업소득자가 근로소득자보다 더 높은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업소득자간의 세부담 불평등을 의미한다. 즉, 사업소득의 경우 과세포착률이 낮아 전체적인 세부담은 낮은 반면, 과세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지게 된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16].

〈表 5-5〉 事業所得者의 稅負擔分析 (課稅區間에 따른 分布, 免稅者 包含)

(單位 : 명, 만원, %)

소득구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 세부담(1)	이론적 세부담(2)
~ 400만원	32	296.25	9.72	3.10	7.479	7.500
400만원 ~ 1,000만원	164	760.61	11.75	1.59	17.930	17.958
1,000만원 ~ 2,500만원	414	1,660.52	34.74	2.11	36.903	37.004
2,500만원 ~ 5,000만원	60	3,508.00	113.42	3.32	73.920	73.963
5,000만원 ~	16	9,825.00	242.94	3.03	188.468	191.932

〈表 5-5〉에 나타나 있듯이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400만원 이하 소득의 최하위 소득계층의 실질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2,500만원 이상의 고소득계층도 실질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보다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나머지 하위와 중위소득계층의 경우 이론적 세부담보다는 낮은 실질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6)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이 정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평균소득과 세액에 대한 분포가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결과는 「대우패널」이 가지고 있는 설문조사자료로서의 문제에 의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해석에는 신중을 요한다.

〈表 5-6〉 事業所得者의 稅負擔分析(10分位에 따른 分布, 免稅者 除外)

(單位 : 명, 만원, %)

소득분위	인원	평균소득	평균세액	평균세율	이론적 세부담(1)	이론적 세부담(2)
1	69	5,026.09	150.46	3.44	101.524	103.185
2	69	2,459.13	65.48	2.69	53.222	53.231
3	69	2,119.13	31.79	1.56	46.353	46.379
4	69	1,795.65	27.33	1.52	39.784	39.785
5	69	1,389.57	27.79	1.98	31.365	31.377
6	69	1,200.00	33.28	2.77	27.392	27.392
7	69	1,192.70	25.95	2.16	27.238	27.238
8	69	946.09	14.15	1.50	21.976	21.980
9	69	708.70	11.79	1.79	16.811	16.820
10	65	424.62	8.29	2.18	10.422	10.467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10分位의 분포로는 잘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表 5-6〉에서 알 수 있듯이 최고소득계층인 1分位와 2分位의 경우에는 역시 이론적 세부담보다 높은 실질세부담을 하고 있으나 6分位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의 경우에는 낮은 세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17]. 6分位에 해당하는 계층은 평균세율이 2.77에 이르러 1分位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가장 높은 세율이며 實質稅負擔額도 상위소득계층인 3, 4, 5分位의 계층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어떤 統計的인 有意性을 가지기보다는 6分位 계층에 속하는 일부 사업소득자가 납부세액을 過多計上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상에서 우리는 均等犧牲假說에 입각한 垂直的 衡平性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계층이 가지는 이론적 세부담과 실제 세부담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본 연구에서 여러 번 지적되고 있는 稅負擔이란 개념은 기존의 계층별 세부담분석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기존의 계층별 세부담분석에서는 고소득층의 세부담이 높을수록 누진도가 있는 것이며 수직적 형평성이 높다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均等犧牲假說이라는 특수한 개념하에서 세부담을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누진도 자체에 대

17) 이 같은 분석의 결과에 대해서는 사실 사업소득자의 표본이 겨우 686명의 적은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절대적인 신뢰성을 부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듯하다.

한 數値化가 아닌 效用을 균등하게 상실해야 한다는 가설하에서의 누진도를 논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

V. 結 論

우리는 지금까지 均等犧牲假說에 입각하여 個人所得稅의 垂直的 稅負擔 衡平性을 분석하였다. 분석의 기본 모형은 H. P. Young(1990)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은 「대우패널」상의 1992年度 귀속 勤勞所得者와 事業所得者의 標本을 이용하였다. 분석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균등희생을 만족시키는 세부담의 수준과 설문조사된 실질세부담의 차이를 課稅區間 혹은 所得區間別로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이론적 세부담의 도출을 위해서는 납세자 개인의 상대적 危險忌避效用函數를 추정하여 이를 근거로 均等犧牲의 絶對値를 도출하고 이것으로부터 계층간 수직적 형평을 만족시키는 계층별 이론적 세부담을 추정하였다.

분석의 결과 개인소득세의 경우 1992년 당시 세율구조가 지나치게 累進的이어서 최고세율적용 계층의 실질세부담이 이론적 세부담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세율이 적용되는 계층의 실질세부담도 이론적 세부담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제는 최저소득계층과 최고소득계층에 이론적 필요보다 높은 실질세부담을 부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로소득자의 경우 비교적 명백히 나타나고 있으며 사업소득자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물론 표본에 속한 근로소득자에 비해 사업소득자의 숫자가 너무 적어 통계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의 결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소득세제의 문제점에 매우 부합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다 넓은 소득계층을 포괄하는 표본이 발견된다면 보다 명백히 검증될 수 있을 것으로 믿어진다. 또한 控除減免에 대한 개인별 정보가 존재한다면 實證分析의 有意性

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個人所得稅制의 改編方向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개인소득세제에서의 최저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면세점 이하 계층에 비하여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완만하게 조정하여야 할 것이다. 현행 세제하에서는 控除限度金額이 적용되는 收入金額과 과표가 낮아 이에 해당되는 免稅階層은 적은 반면 이를 초과하는 최저소득의 과세계층부터는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控除限度와 控除率을 多段階化하는 등 세부담의 누진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최고소득계층이 이론적 세부담보다는 매우 높은 實質稅負擔을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에 대한 개선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불필요하게 높은 累進稅率의 적용이 결국 納稅回避의 원인을 제공하여 脫漏를 조장함으로써 稅源을 縮小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세율의 전반적인 引下作業이 이루어진 1994년도의 稅制改編作業은 이와 같은 의미에서 최고세율 적용계층의 세부담 누진도 완화작업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최저세율적용 계층의 세부담 완화문제는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인소득세제의 수직적 세부담 형평성의 측정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 보다 適切한 模型의 開發, 특히 適切한 效用函數 推定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첫번째 과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상의 문제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가 동종의 실증연구로서는 드물게 橫斷面資料를 사용한 장점이 있으나 표본의 수가 극히 제한적인 문제점은 극복할 수 없었다. 또한 個人 혹은 家計別 控除減免資料가 부재함에 따라 정확한 세부담 주체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점도 문제점의 하나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측면에서의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는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세제개편의 정확한 방향제시를 위해서는 조세체계의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參 考 文 獻

노기성, 「직접세제개편에 관한 연구」, 정책연구자료 91－11, 한국개발연구원, 1991.

대우경제연구소, 『한국가구 경제활동연구』, 대우경제연구소, 1994.

한승수, 『조세부담의 측정과 적정부담률에 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1982.

현진권 · 나성린,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세부담분석」, 『경제학연구』, 제42권 제1호, 1994, pp. 189～208.

Friend, I. and M. Blume, "The Demand for Risky Assets," *American Economic Review*, December 1975, pp. 900～922.

Young, H. P., "Progressive Taxation and Equal Sacrifice,"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90, pp. 253～266.

都市 및 農村家計의 合算資料를 사용한 間接稅制의 稅負擔 分析

玄 鎭 權 · 羅 城 麟[1)]

目 次

* 본 논문은 한국재정학회, 『財政論集』, 제9집(1995)에 게재한 논문을 재구성하였음.

1) 本院 研究委員, 翰林大 經濟學科 敎授

Ⅰ. 序　　論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所得階層別 稅負擔 分析을 한 실증적 연구는 주로 間接稅 分野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현재 세부담 분석에 사용하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도시가계의 所得 및 支出資料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자료는 각 가구의 지출에 대한 조사항목이 비교적 자세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세 부담 분석에는 매우 유용한 자료이다. 李啓植·裵埈晧(1986)는 1984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 분석을 종합적으로 시도하였고, 郭泰元(1987)은 1978년, 1984년, 1985년 자료를 사용하여 特別消費稅의 所得再分配 效果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도시가계만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 연구결과를 우리나라 전체 가구로 해석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자료」는 농촌가계에 대한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가계자료」와의 합산을 통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재정학자 및 사회과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인식되어 온 과제이나, 아직까지 두 가지 자료를 서로 합산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다.

간접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분석은 미시자료를 사용한 李啓植·裵埈晧(1986)와 郭泰元(1987)의 연구결과를 많이 인용하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사용한 자료가 도시가계이므로 우리나라 전체의 간접세 부담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이들 간접세 부담 분포에 관한 실증적 결과들은 1970년대와 1980년대의 현실을 설명하므로, 보다 최근의 자료를 사용한 우리나라 間接稅 負擔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特別消費稅, 酒稅, 附加價値稅 및 이들 세 가지 세목을 합한 전체 간접세 부담의 소득계층별 분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사용한 자료는 1991년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이며, 도시 및 농촌가계의 간접

세 부담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또한 이들 두 자료를 合算(merge)하여 도시 및 농촌 가계를 포함한 전체 가계의 간접세 부담 분포를 분석하였다. 세부담 분포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가지 不平等 指數가 개발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득계층을 10분위로 나누어 각 계층의 세부담을 비교하고, 또한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간접세의 특징을 측정하였다[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처리 과정과 방법론은 저자들에 의한 기존 연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먼저 자료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 표본이 모집단을 반영하지 못할 때 母集團化할 필요가 있다. 羅城麟 · 玄鎭權(1993)은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하지 못할 때 標本資料를 母集團化하는 方法論을 보여주고, 1987년 자료를 사용하여 이들 방법론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玄鎭權 · 羅城麟(1993)은 같은 모집단화 방법론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1년 도시가계 자료를 모집단화한 구체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1991년 도시가계 자료를 모집단화한 구체적인 결과는 玄鎭權 · 羅城麟(1993)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모집단화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모집단화를 동시에 사용하여 총체적 자료를 통한 결과와 일치시킨다. 즉 投資所得에 관한 정보는 비교적 과소보고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국민계정과의 비교를 통해 본 자료의 각 가구의 투자소득을 모집단화시킨다.

본 연구가 가지는 중요한 寄與度는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의 실증적 분석을 비교적 최근의 자료인 1991년 자료를 사용하여 보여주는 데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都市家計와 農村家計를 합산하여 분석하였다. 합산한 자료를 사용한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행한 세부담 분석뿐만 아니라, 소득 및 지출 관련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준다.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불평등 지수는 이미 저자들의 기존의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羅城麟 · 玄鎭權(1993)은 1987년 도시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지니계수와 10분위별 소득분포를 통해 소득세, 사회부조, 부가가치세를 분석하였다. 玄鎭權과 羅城麟(1994b)은 1987년 도시가계 자료를 사용하여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계층별 형평성을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erliant－Strauss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玄鎭權 · 羅城麟(1993)은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1991년 도시가계의 조세 및 사회부조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와 Atkinson지수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한 10분위별 소득분포, 지니계수, Atkinson지수, Berliant－Strauss지수를 사용하여 세부담의 특징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실증적 연구결과는 먼저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은 여전히 逆進的 構造를 하고 있으며, 도시에 비해 농촌가계의 세부담이 더 역진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1984년에 비해 1991년에는 우리나라 間接稅의 逆進性이 많이 완화되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와 이들 자료를 모집단화시키는 방법론과 자료처리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우리나라 간접세의 實證的 分析結果를 보여주고,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간접세 부담의 변화를 살펴보고, 제Ⅳ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결론짓는다.

Ⅱ. 資料의 說明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1년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所得과 支出에 관한 자료이다. 도시가구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1년 「都市家計調査資料」를 사용하고, 농촌가구에 대한 자료는 농림수산부에서 실시한 1991년 「農村經濟統計資料」를 사용한다. 도시가계조사의 목적이 도시가구의 소득 및 지출에 관한 정보의 파악에 있는 반면, 농촌가계 조사의 목적은 농촌가구의 經濟狀態 및 經營實態의 파악에 있다. 각 자료는 서로 다른 목적에서 조사되었으므로 각 항목을 서로 比較하고 合算(merge)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고려가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玄鎭權·羅城麟(1994a)에서 적용하였고, 자료를 합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자세히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한다.

1. 支出 推定値의 國民計定과의 比較

〈表 6-1〉은 도시가계 및 농촌가계의 1991년도 총지출을 국민계정 수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우리나라 도시가계의 총지출액은 78조 6,010억원을 나타내고 있으며, 국

민계정에서 나타난 개인부문의 총지출액은 109조 6,545억원이었다. 도시가계의 총지출액은 국민계정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68.2%를 차지하는 도시가구를 감안할 때,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농촌가계의 총지출액은 15조 7,160억원으로 국민계정과 비교할 때 14.3%를 보여준다. 농촌가구의 수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의 14.2%를 차지함을 고려할 때, 이 비율은 매우 정확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구를 합한 총지출액이 국민계정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86%를 나타낸다. 우리나라 전체가구 수에 대해 도시 및 농촌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82.4%임을 비교할 때, 본 자료가 가지는 각 가구의 지출항목은 매우 정확한 정보를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도시가구와 농촌가구의 평균 지출액은 각각 962만원, 923만 2천원을 보여주어, 도시가구의 지출액이 높게 나타났다. 지출수준의 분포를 비교하면, 도시 및 농촌가구의 표준편차는 각각 2억 5,100만원, 2억 8백만원으로 도시지역의 지출수준은 격차가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도시 및 농촌가구의 지출수준 최소치와 최대치를 비교하여도, 도시지역의 支出水準 隔差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表 6-1〉 家計部門 支出의 統計値

	도시가계 (A)	농촌가계 (B)	국민계정 (C)	A/C (%)	B/C (%)	(A+B)/C (%)
합 계(억원)	786,010.0	157,165.0	1,096,545	71.7	14.3	86.0
평 균(천원)	9,620.8	9,232.5	–	–	–	–
표준편차(천원)	251,061.0	208,226.4	–	–	–	–
최 소 치(천원)	1,434.0	2,323.0	–	–	–	–
최 대 치(천원)	57,636.0	44,025.0	–	–	–	–

2. 稅收 推定値의 比較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가지고 있는 所得種類別 각 소득과 項目別 지출액 자료를 사용하여 각 가구가 지불하는 間接稅額과 稅負擔率을 계산한다. 각 가구가 납부하는 세액의 계산에서 과세단위는 家口로 가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가 가구단위

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과세단위로 家口를 사용한다. 각 가구가 지불하는 간접세액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각 지출항목에 대한 지출액자료를 사용한다. 이때 지출에 관한 항목은 지출액 외의 다른 정보는 없으므로 간접세액을 산정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정이 필요하였다. 예를 들면, 칼라TV에 관한 특별소비세를 계산할 때 대형 TV와 소형 TV에는 각각 다른 특별소비세율이 부과되나, 본 자료는 이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지출액을 소비한 가구는 대형 TV를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여 대형 TV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지출액을 소비한 가구는 소형 TV를 구입한 것으로 가정하고 소형 TV의 특별소비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간접세액을 산출하는 데는 여러 가지의 가정이 필요하였으며, 간접세는 특별소비세, 주세 및 부가가치세로 나누어 각각의 세액을 계산하였다.

〈表 6-2〉 間接稅收의 比較

(單位 : 억원, %)

	도시가계(A)	농촌가계(B)	국세통계(C)	A/C	B/C	(A+B)/C
부가가치세	37,364	3,907	87,714	42.6	4.5	47.1
특별소비세	8,139	571	22,361	36.2	2.6	38.8
주세	1,533	325	11,453	13.9	2.8	16.7
간접세 총액	47,037	4,803	121,633	38.7	3.9	42.6

〈表 6-2〉는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총세수규모를 국세통계와 비교한 결과를 보여준다. 소득세와는 달리 간접세는 가구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 부문에서도 간접세 해당품목을 지출하고 이들 계층으로 인한 간접세 규모의 비중을 나타내는 자료는 없으므로 국세통계 총액에서 가구부문의 지출에 의한 간접세 규모는 구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구한 총간접세의 규모는 국세통계의 세수규모보다 작을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도시가계가 지불한 총 세수규모는 3조 7,364억원이며 농촌가계는 3,907억원으로 국세통계 세수규모인 8조 7,714억원의 각각 42.6%, 4.5%를 차지한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도시가계가 지불한 총특별소비세 규모는 8,139억원이고, 농촌가계는 571억원으로 나타났

다. 이들 세수규모를 국세통계 세수규모와 비교할 때 도시 및 농촌가계는 각각 36.2%, 2.6%를 차지한다. 또한 주세의 경우, 도시가계의 총 주세규모는 1,533억원이며, 농촌가계는 325억원을 나타낸다. 국세통계 세수규모인 1조 1,453억원과 비교할 때 도시 및 농촌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3.9%, 2.8%를 보여준다. 이들 세 가지 세목의 합인 간접세 총 세수규모는 도시가계가 4조 7,037억원, 농촌가계가 4,803억원으로 국세통계의 총 간접세 규모인 12조 1,633억원과 비교하면 38.9%, 3.9%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하는 총 간접세 규모가 국세통계치의 전체 간접세 규모에 차지하는 비율은 42.6%를 보여준다.

가. 特別消費稅

〈表 6-3〉은 특별소비세 부과대상 개개 품목에 대해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특별소비세 總稅收 規模를 보여준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도시가계의 자료와 농촌가계의 자료는 서로 다른 기관에서 시행된 것이므로 지출항목에 대해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支出項目은 매우 세밀하게 조사되어 있으나, 농촌가계의 支出項目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특히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은 耐久財 性格의 품목이 많으나, 농촌가계 자료에는 이들 내구재 품목에 대한 항목은 매우 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도시와 농촌가계의 특별소비세 세수 규모의 비교는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총특별소비세 세수규모를 국세통계의 총특별소비세 세수규모와 비교한다[3]. 앞에서와 같이 특별소비세의 경우는 해당 물품을 가계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부문에서도 이들 물품에 대해 지출한다. 이들 부문으로 인한 특별소비세 세수를 모두 포함한 세수규모가 국세통계치에 반영되므로 가계만을 대상으로 한 특별소비세 규모는 비교적 작은 세수규모를 보여준다. 물품에 따라 총특별소비세액의 국세통계치와의 비율에 있어 많은 차이를 보여주어 一致性(consist-

3) 개개 품목별 총 특별소비세 규모에 대한 자료는 『국세통계연보』에서 보여주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구한 품목과의 비교에는 충분하지 않다. 『국세통계연보』에 없는 품목별 세부 특별소비세액은 국세청과 재무부 세제실의 내부자료를 사용하였다.

ency)을 보여주지 않는다.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은 전자제품 및 승용차를 나타내는 제2종 품목, 음료 및 기호식품을 나타내는 제3종 품목, 유류를 나타내는 제4종 품목의 세 그룹으로 나뉘고, 각 그룹의 특별소비세의 총세수규모를 國稅統計値와 비교한다. 제2종 품목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의 전체 특별소비세액은 각각 4,400억원, 450억원이며, 국세통계치는 9,280억원이므로 도시 및 농촌가구와의 비율은 각각 47.5%, 4.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구가 지불하는 총특별소비세 세수가 국세통계치에서 보여주는 세수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제3종 품목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는 각각 390억원, 50억원이며, 국세통계치는 1,240억원으로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특별소비세 세수의 비율은 각각 31.4%, 4%를 차지하고 있다. 제4종 품목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하는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는 각각 2,800억원, 300억원이며, 국세통계치는 9,520억원이다.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하는 특별소비세 세수가 국세통계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29.4%, 3.2%를 차지하고 있고, 도시 및 농촌가계의 특별소비세 세수는 전체 국세통계치의 32.6%를 차지하고 있다. 세 가지 그룹의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를 국세통계치와 비교하면,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한 총 특별소비세 세수는 각각 7,600억원, 800억원이며, 국세통계치의 37.9%, 4%를 차지한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가 지불하는 특별소비세 세수가 국세통계치 세수의 41.9%를 차지한다.

〈表 6-3〉은 본 연구에서 분석 가능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들의 總特別消費稅 稅收規模를 國稅 統計値와 비교한 결과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전부를 분석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품목들이 있다. 예를 들면, 1종에 해당하는 품목과 서비스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수규모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 품목에서 나오는 특별소비세 세수는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작으므로 본 연구의 분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의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에서 구한 특별소비세 세수를 특별소비세 전체 과세대상품목에서 구한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 대상품목들의 전체 특별소비세 품목의 代表性을 검토할 수 있다. 즉 특정 물품의 특별소비세율의 변화로 인해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할 때, 본 연구의 분석대상인 각 품목의 특별소비세 세수가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表 6-3〉 品目別 特消稅 稅收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單位 : 백만원, %)

	도시가계(A)	농촌가계(B)	국세통계(C)	A/C	B/C	(A+B)/C
2종 물품	440,945	45,024	928,349	47.5	4.8	52.3
냉장고	42,278	-	94,050	45.0	-	45.0
세탁기	7,750	-	13,802	56.2	-	56.2
TV	41,320	-	83,489	49.5	-	49.5
피아노	15,204	-	19,772	76.9	-	76.9
가스기구	4,370	-	4,879	89.6	-	89.6
기타 가정용기구	20,387	-	21,108	96.6	-	96.6
전축·녹음기	33,485	21,469	70,619	47.4	30.4	77.8
VTR 관련제품	107,496	-	116,665	92.1	-	92.1
승용차	168,655	23,555	503,965	33.5	4.7	38.2
3종 물품	38,910	4,962	123,932	31.4	4.0	35.4
설탕	3,263	754	28,193	11.6	2.7	14.3
커피	13,673	-	35,554	38.5	-	38.5
청량음료	13,463	4,208	48,749	27.6	8.6	36.2
기호음료	8,511	-	11,436	74.4	-	74.4
4종 물품	280,473	30,303	952,561	29.4	3.2	32.6
경유	12,297	-	155,680	7.9	-	7.9
LPG	19,482	2,903	16,986	114.7	17.1	131.8
휘발유	248,694	27,400	779,895	31.9	3.5	35.4
계	760,328	80,289	2,004,842	37.9	4.0	41.9

비율을 국세통계치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비율을 비교함으로써 대표성을 검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세수가 40%일 때, 국세통계치에서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세수가 전체세수의 40%에 가까울수록 휘발유가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다. 만약 국세통계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80%로 가정하면, 본 연구에서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 세수가 과소평가되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분석대상 특별소비세 품목의 특별소비세 세수가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국세통계치의 비율과 유사할 때 본 연구의 결과를 가지고 특별소비세제의 일반적인 결론을 유도할 수 있다.

〈表 6-4〉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特別消費稅 對象品目을 종류별로 나누어 전체 특별소비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國稅統計値와 비교한 결과이다. 특별소비세 부과대상인 개개의 품목에 따라 이의 비율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심한 偏差를 보이므

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크게 5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본 자료와 비교한다. 제1종 품목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에서 이에 해당하는 품목이 자료에는 없으므로 분석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1종 품목은 국세통계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에 불과하므로 이 대상품목을 본 연구에서 제외함은 전체 세수규모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2종 품목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의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8%, 56%로 나타나는데 이는 국세통계치인 47.2%보다는 큰 수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의 2종 품목이 전체의 구성비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3종 물품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가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5.1%, 6.2%이며, 국세통계치는 6.8%를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경우는 실제보다 낮은 비율로 나타나고 농촌가계의 경우는 조금 낮은 비율이거나 거의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 제4종 물품의 경우, 도시 및 농촌가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6.9%, 37.7%이며, 국세통계치는 42.8%로 나타났다.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에서 국세통계치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의 품목별 특별소비세 규모의 비율이 국세통계치의 비율과 조금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특별소비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은 주로 제2종과 제4종 품목으로 전체 특별소비세 세수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제2종의 경우는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가 실제보다 높은 비중을, 제4종의 경우는 실제보다 낮은 비중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1종 품목과 마찬가지로 과세장소에 특별소비세를 고려하지 못하였지만, 국세통계치에서 이 품목이 全體 特別消費稅 稅收規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로서 미미한 정도이다. 그러므로 제1종 품목과 과세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세수는 겨우 전체의 3.3%를 차지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表 6-3〉과 〈表 6-4〉의 해당품목의 세수규모를 국세통계치와의 비율을 서로 비교함으로써 알 수 있다. 〈表 6-3〉에서 보여주는 각 그룹별 국세통계치는 본 연구에서 분석한 특별소비세 대상품목의 實際 特別消費稅 稅收이나, 〈表 6-4〉에서는 각 그룹별 국세통계치가 본 연구에서 취급할 수 없었던 품목까지 포함한 특별소비세 세수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表 6-4〉의 국세통계치가 〈表 6-3〉보다 絶對的으로 크게

나타난다. 즉 제2종 품목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대상품목이 이들 대상품목의 국세통계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表 6-3〉에서 도시 및 농촌가계에 대해 각각 47.5%, 4.8%임에 반해, 본 연구의 對象品目의 稅數規模가 모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을 포함한 전체 특별소비세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表 6-4〉에서 41.8%, 4.3%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2종 품목에 있어서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特別消費稅 品目이 도시 및 농촌가계에서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제3종 물품의 경우는 도시가계의 경우 각각 31.4%, 25.5%를 보여주고, 농촌가계의 경우는 각각 4%, 3.3%로 나타났다. 그리고 제4종 물품에 있어서, 도시의 경우는 각각 29.4%, 29.3%를 보여주고, 농촌의 경우는 각각 3.2%, 3.2%를 보여준다. 이들 모든 물품을 모두 합한 全體 特別消費稅 規模가 차지하는 비율은 都市家計의 경우 37.9%, 34%를 보여주고, 農村家計의 경우 4%, 3.6%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이 전체 품목을 나타내지는 않지만, 누락되는 품목은 그리 많지 않으며 이들 누락된 품목은 본 연구의 특별소비세에 대한 일반적 결론을 유도하는 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表 6-4〉 特消稅收의 國稅統計와의 比較

(單位 : 억원, %)

	도시가계		농촌가계		국 세		A/C	B/C	(A+B)/C
	세수(A)	비율	세수(B)	비율	세수(C)	비율			
제 1 종	0	0.0	0	0.0	243	1.1	0.0	0.0	0.0
제 2 종	4,409	58.0	450	56.1	10,551	47.2	41.8	4.3	46.1
제 3 종	389	5.1	50	6.2	1,525	6.8	25.5	3.3	28.8
제 4 종	2,805	36.9	303	37.7	9,574	42.8	29.3	3.2	32.5
과세장소	0	0.0	00	0.0	467	2.1	0.0	0.0	0.0
합계	7,604	100.0	803	100.0	22,361	100.0	34.0	3.6	37.6

나. 酒稅

〈表 6-5〉는 都市 및 農村家計의 酒稅規模를 국세통계치와 비교한 결과이다. 농촌

가계의 경우, 탁주와 소주에 대한 자료만이 가능하고 다른 주류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분석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 도시가계 자료는 비교적 많은 주류에 대한 자료가 있으므로 농촌에 비해 상대적으로 충분한 자료가 가능하다. 먼저 도시가계에 의한 주세의 세수규모를 국세통계치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도시가계가 지불한 총 주세규모는 1,490억원으로 국세통계에서 나타난 총 주세규모인 1조 480억원의 14.2%를 차지하고 있다. 청주의 경우, 33.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그 외의 주류는 20% 이하의 낮은 비율을 보여준다. 농촌가계의 경우는 전체 주세규모는 108억원으로 국세통계치의 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가 지불하는 총 주세규모가 국세통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5.2%를 나타낸다. 탁주의 경우 농촌가계에서 나오는 주세규모가 국세통계치의 17.1%를 차지하여, 도시가계의 16.6%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세의 경우도 다른 간접세와 마찬가지로 가계부문뿐만 아니라 기업 및 정부에서도 지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 주세의 국세통계치 규모와는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조사자료에서 酒類 消費量에 대해서는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家計部門의 주류 소비량이 본 연구결과보다 클 수도 있다. 현재로는 각 經濟主體別로 소비지출의 규모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 구한 가계부문별 지출에 따른 酒稅規模의 正確度를 검정할 수 없다. 이러한 자료가 가능할 때 주류에 대한 지출의 과소보고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또 다른 母集團化를 시도하여 이러한 과소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表 6－5〉 酒類別 酒稅規模의 比較

(單位 : 백만원, %)

	도시가계(A)	농촌가계(B)	국세통계(C)	A/C	B/C	(A+B)/C
청 주	12,392	－	37,280	33.2	－	33.2
탁 주	1,626	1,669	9,783	16.6	17.1	33.7
소 주	17,218	9,179	128,674	13.4	7.1	20.5
맥 주	104,433	－	799,175	13.1	－	13.1
위스키	12,809	－	68,432	18.7	－	18.7
과실주	835	－	4,776	17.5	－	17.5
계	149,313	10,848	1,048,120	14.2	1.0	15.2

3. 都市 및 農村家計 資料의 合算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merge)하여 각각의 자료가 가지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대표성에 대한 한계점을 부분적으로 해결을 시도한다. 먼저 「도시가계자료」와 「농촌가계자료」는 서로 사용 목적과 조사항목이 다르므로 합산하여 하나의 자료로 만드는 데는 문제점이 따른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이 도시가계 자료나 농촌가계자료 하나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을 뿐, 합산하여 분석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들은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자료」의 합산(merge)에 대한 필요성은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다[4]. 본 연구에서는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를 합산하여 財政政策을 評價하기 위한 데이타 베이스로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都市家計資料」는 支出項目이 약 250개로 나뉘어 家口別 消費形態를 보여주고, 「農村家計資料」는 약 150여개의 支出項目을 가지고 있다. 지출항목수가 서로 다른 두 자료를 합산하는 데는 특정 자료를 기준으로 합산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가계자료」가 지출항목수가 많으므로, 「도시가계자료」를 기준으로 「농촌가계자료」를 합산한다. 이때 「농촌가계자료」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항목은 0으로 처리하고, 「도시가계자료」의 형태대로 필요한 경우 몇 가지 변수를 합산한다. 이러한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해 「농촌가계자료」는 항목이 없으나, 「도시가계자료」의 형태로 합산될 때는 0으로 처리된다. 그러므로 「농촌가계자료」의 實際 支出項目과 支出額은 자료가 가지는 정보보다 더 많을 것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한 지출액을 바탕으로 분석한 경우, 농촌가계는 과소평가될 소지가 매우 크다. 특히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비교할 경우에는 농촌가계의 많은 지출항목이 고려되지 않아 올바른 비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

4) 통계청에서 1991년부터 실시한 「가구소비 실태조사」는 모집단이 우리나라 전체가구로서 『도시가계연보』에서 조사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5년마다 주기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도시가계연보』처럼 매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연속성은 없지만, 현재 『도시가계연보』와 「농촌경제통계자료」가 가지는 모집단의 문제점은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1991년 처음 조사된 만큼 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연구는 없으나, 도시 및 농촌가계자료만을 사용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자료를 사용한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에 대한 현 상황의 비교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향후 1991년도 현실 분석뿐만 아니라 재정정책의 변화로 인한 稅收와 소득계층간의 不均衡度에 대한 변화를 예측하는 모형으로 발전될 것이다. 變化率이란 기존의 상태에서 앞으로 변화하는 비율을 의미하므로, 농촌가구가 가지고 있는 항목이 모집단의 성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으면 변화율에 대한 정확한 결과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합산한 자료는 우리나라 전체가구의 82.4%를 차지하고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은 도시의 단독가구와 도시 내의 농촌가구와 농촌의 근로자 가구이다. 이러한 계층을 반영하여 모든 자료를 합산하여 모집단의 代表性 問題를 해결하여야 하나 현재 이러한 계층에 대한 자료는 없으므로 모집단을 완전히 대표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농촌가계에 대한 항목이 도시가계만큼 다양한 항목을 가지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오차는 합산한 자료가 가지는 한계점이므로, 향후 좀 더 나은 자료가 생산될 때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합산한 자료는 財政 및 社會科學 分野에서 처음 시도되어 재정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데이타 베이스로 사용된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향후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多角度의 改善이 있을 것이다.

Ⅲ. 分析結果

본 연구에서는 間接稅의 稅負擔을 세 가지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다. 즉 도시가계, 농촌가계, 도시가계와 농촌가계를 합산한 자료가 그것이다. 기존의 실증적 연구들이 도시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농촌가계와의 합산을 통한 실증적 분석은 없었다. 그러므로 합산한 자료를 사용한 실증적 결과와 도시가계만을 사용한 결과와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 자료를 분리한 간접세 부담의 비교는 조심스러운 해석이 필요하다. 앞 장에서 설명했듯이 농촌가계 자료는 지출항목이 도시가

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지출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자료를 합산하는 데 필연적인 과정으로 합산에 따른 비용이라 할 수 있다. 농촌가계의 간접세 부담은 실제보다 작게 반영될 것이므로 도시가계와의 비교에는 무리가 따른다. 오히려 농촌가계의 간접세 부담은 所得階層間의 稅負擔의 分布를 설명하는 데 적절하다고 하겠다. 합산한 자료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기 위해 전체가구를 도시 및 농촌가계로 나누어 각각의 결과를 보여주나, 이러한 자료의 한계점을 충분히 숙지하고 해석을 하여야 한다.

間接稅의 稅負擔을 설명하기 위해 간접세의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즉 特別消費稅, 酒稅, 附加價値稅로 나누고, 이들 세 가지 세제를 모두 합한 간접세의 세부담을 분석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항목에 대한 세부담을 소득계층별로 10분위로 나누어 세부담의 분포를 살피고, 앞에서 설명한 지니계수, Atkinson 지수, B－S지수를 사용하여 간접세 각각의 세부담을 설명한다. 본 연구는 1991년 자료를 사용한 결과인 만큼, 1984년 자료를 사용한 李啓植・裵俊晧(1986)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 間接稅 負擔의 變化를 살펴본다.

먼저 간접세 각각의 세부담률의 분포를 통하여 간접세의 특징을 살펴본다. 〈表 6－6〉은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간접세의 세부담률을 6그룹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이다. 특별소비세의 경우 세부담률이 1% 이하인 계층이 전체가구의 86.5%를 차지하고, 2% 이하인 계층이 전체가구의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주세의 경우는 1% 이하인 계층이 전체가구의 98.7%를 차지하여 거의 모든 가구가 1% 이내의 주세 부담률을 보여준다.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1%에서 4% 이내에 있는 계층이 전체의 78%

〈表 6－6〉 間接稅 負擔率의 分布

(單位 : %)

세부담률	특별소비세	주 세	부가가치세	간 접 세
0 ~ 1	86.5	98.7	4.8	3.1
1 ~ 2	8.3	1.1	23.4	17.5
2 ~ 3	2.3	0.1	33.4	28.5
3 ~ 4	1.0	0.1	21.4	21.8
4 ~ 5	0.4	－	9.0	12.8
5 이상	1.4	－	8.0	16.2

를 차지하고 있어 특별소비세나 주세에 비해 분포가 큰 형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간접세의 세부담률의 분포는 2%에서 3% 이내에 있는 계층이 전체가구의 28.5%를 보이고, 3%에서 4% 이내에 있는 계층이 전체가구의 21.8%를 보여준다.

1. 特別消費稅

〈表 6-7〉은 특별소비세의 세부담을 소득계층별 10분위로 나누어 課稅 前 所得에 대한 특별소비세액의 비율을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또한 不平等 指數를 통한 특별소비세의 특징을 보여준다. 이때 不平等 指數의 변화에 따른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기 전 소득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를 지불한 후 소득을 통한 不平等 指數 값의 변화를 퍼센트로 환산하여 비교한다.

도시가계는 특별소비세의 평균 부담률이 0.69%로 나타나고, 농촌가계는 평균 부담률이 0.23%로 나타나 도시가계와는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도시 및 농촌가계를 합한 가계의 평균 부담률은 0.61%를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가계는 비교적 소득이 높은 계층이 특별소비세 부담률이 높게 나타난다. 반면 농촌가계는 비교적 소득에 관계없이 일관된 세부담률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는 도시가계의 지출구조에는 비교적 累進的으로 작용하고, 농촌가계의 지출구조에는 累進的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특별소비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도시가계의 형태를 따라,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률도 높은 분포를 보여준다.

不平等 指數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지니계수는 0.3094로서 課稅 前 지니계수와 비교하면 0.3%의 감소를 가져와 0.3%의 衡平性 向上效果를 보여주었다. 반면 농촌가계의 지니계수는 0.3298이며 형평성 향상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와 비교할 때 불평등도가 조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모든 가계의 지니계수는 0.3132로서 0.2% 형평성 향상효과를 보여준다. 이러한 不平等度의 차이는 Atkinson지수에서 $\varepsilon=0.5$일 때에도 같은 형태를 보여준 반면, $\varepsilon=0.9$일 때는 특별소비세의 Atkinson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특별소비

세가 不平等度를 높이는 결과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는 사용한 지수에 따라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지 않으므로 형평도를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

〈表 6－7〉 特別消費稅의 負擔率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
1 분위	0.37	0.20	0.31
2 분위	0.32	0.13	0.31
3 분위	0.34	0.26	0.33
4 분위	0.44	0.22	0.40
5 분위	0.55	0.21	0.52
6 분위	0.73	0.27	0.65
7 분위	0.66	0.26	0.59
8 분위	0.79	0.29	0.69
9 분위	0.97	0.24	0.85
10 분위	0.78	0.18	0.66
평균 부담률	0.69	0.23	0.61
지니계수	0.3094	0.3298	0.3132
변화율	−0.3	0.0	−0.2
Atkinson지수			
ε=0.5	0.0813	0.0880	0.0825
변화율	−0.4	0.0	−0.2
ε=0.9	0.1436	0.1517	0.1450
변화율	1.3	0.0	1.1
B－S지수			
누진도	0.2762	0.0448	0.2436
비례도	0.5413	0.9131	0.5910
역진도	0.1825	0.0421	0.1654
수평적 형평도	0.5748	0.9027	0.6160

B－S지수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의 특징을 살펴보면 所得階層別 稅負擔率에서 볼 수 있듯이, 도시가계는 累進度가 0.2762인 반면, 농촌가계는 累進度가 0.0448로 나타나 도시가계의 累進度가 농촌가계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도시가계는 比例度가 가장 높아(0.5413), 比例的인 稅負擔 形態를 보이고, 농촌가계의 比例度는

매우 높은 값(0.9131)을 보여 비례적인 세부담 형태를 보인다. 그러므로 도시 및 농촌가계의 특별소비세 부담은 비례적인 특징을 가지면서, 누진적 특성이 도시가계가 농촌가계보다 크게나타났다. 모든 가계의 累進度는 0.2436, 比例度는 0.5910, 逆進度는 0.1654를 보여주어 우리나라 특별소비세 제도는 비례적인 특징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特別消費稅의 累進度는 비교적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소득계층이 같은 세부담을 가지는가를 나타내는 水平的 衡平度는 도시가계가 0.5748을 보여주고, 농촌가계는 0.9027을 보여줘, 전체적으로 0.6160을 나타낸다. 농촌가계의 水平的 衡平度가 높은 이유는 특별소비세 부담률의 소득에 따른 변화율이 도시가계에 비해 작고, 소득에 따른 특별소비세 부과대상품목의 지출액의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2. 酒稅

〈表 6-8〉은 주세부담의 所得階層別 分布와 不平等 指數를 사용한 결과를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平均 負擔率은 0.13%이며, 농촌가계도 같은 수준을 보여준다. 본 자료의 농촌가계 주류 지출항목에서 고려하지 못한 항목에 따른 주세 규모를 고려하면 농촌가계의 주세 부담률은 0.13%보다 큼을 예상할 수 있다[5]. 그러므로 농촌가계의 주세 부담률이 도시가계보다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所得階層別 酒稅 負擔率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 소득이 높을수록 대체로 주세 부담률은 낮아지는 逆進的 構造를 보여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逆進的 構造는 不平等 指數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즉 지니계수 및 Atkinson지수의 酒稅 課稅 後 변화율은 도시 및 농촌가계 모두에서 매우 작은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세의 소득 재분배 효과는 미미하나마 不平等 指數를 악화시키는 작용을 함을 알 수 있다.

---

5) 도시가계의 경우 8개 주류항목에 대한 지출 자료가 있으나, 농촌가계는 탁주와 소주에 대한 지출자료만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보여주는 농촌가계의 주세 부담률은 이들 두 개 항목에 따른 세부담액을 통한 결과이다. 맥주에 대한 수요가 농촌에서도 많은 현실을 고려할 때 실제 주세 부담률은 이보다 큼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B-S지수를 통한 주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가계는 比例度가 가장 높아 0.6903을 보여주고, 농촌가계 또한 比例度가 가장 높아 0.8787로 나타났다. 累進度를 살펴보면 도시가계는 0.1556, 농촌가계는 0.048을 보여줘, 도시가계의 累進度가 크게 나타났다. 逆進度는 도시가계가 0.1541이고, 농촌가계가 0.0733을 보여 도시가계의 逆進度가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주세는 비례적 특성을 보이고 누진적인 구조는 도시가계에서 훨씬 높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전체가계의 주세 累進度는 0.1388, 比例度는 0.72를 보임으로써 알 수 있다. 水平的 衡平度를 살펴보면 도시

〈表 6-8〉 酒稅의 負擔率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
1 분위	0.24	0.23	0.22
2 분위	0.21	0.18	0.20
3 분위	0.20	0.23	0.23
4 분위	0.18	0.18	0.18
5 분위	0.15	0.14	0.16
6 분위	0.15	0.15	0.14
7 분위	0.13	0.13	0.13
8 분위	0.12	0.14	0.12
9 분위	0.09	0.12	0.10
10 분위	0.07	0.07	0.07
평균 부담률	0.13	0.13	0.13
지니계수	0.3105	0.3300	0.3141
변화율	0.0	0.1	0.1
Atkinson지수			
$\varepsilon=0.5$	0.0817	0.0881	0.0829
변화율	0.1	0.1	0.2
$\varepsilon=0.9$	0.1425	0.1519	0.1441
변화율	0.6	0.1	0.5
B-S지수			
누진도	0.1556	0.0480	0.1388
비례도	0.6903	0.8787	0.7200
역진도	0.1541	0.0733	0.1412
수평적 형평도	0.7255	0.8910	0.7439

가계는 0.7255이며, 농촌가계는 0.8910을 보여줘 농촌가계의 水平的 衡平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비해 비교적 소득규모에 따른 주류 소비량의 변화가 작기 때문이다.

3. 附加價値稅

〈表 6−9〉는 所得階層別 附加價値稅의 稅負擔 分布를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보여준다. 도시가계의 평균 부담률은 3.15%를 보여주고, 농촌가계는 1.56%를 보여주어 도시가계의 부담률이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

〈表 6−9〉 附加價値稅의 負擔律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
1 분위	3.77	2.45	3.33
2 분위	3.20	1.87	3.07
3 분위	3.05	2.24	2.97
4 분위	3.07	1.77	2.83
5 분위	3.21	1.73	3.02
6 분위	3.31	1.71	3.08
7 분위	3.23	1.63	2.96
8 분위	3.39	1.72	3.09
9 분위	3.45	1.43	3.09
10 분위	2.72	1.06	2.39
평균 부담률	3.15	1.56	2.88
지니계수	0.3113	0.3317	0.3152
변화율	0.4	0.6	0.4
Atkinson지수			
ε=0.5	0.0825	0.0891	0.0837
변화율	1.1	1.3	1.2
ε=0.9	0.1477	0.1534	0.1488
변화율	4.2	1.1	3.8
B−S지수			
누진도	0.3126	0.1777	0.3051
비례도	0.1336	0.1948	0.1252
역진도	0.5538	0.6275	0.5697
수평적 형평도	0.1684	0.2744	0.1545

다. 두 가계를 합한 모든가계의 부가가치세 부담률은 2.88%를 보여준다. 소득계층별 부가가치세 부담률의 차이를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 최하위 소득계층인 1분위의 세부담률이 3.77%로 가장 높고, 2분위와 3분위로 갈수록 稅負擔率이 減少한다. 4분위부터는 세부담률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가 가장 낮은 2.72%의 부담률을 보여준다. 반면 농촌가계는 비교적 소득이 높을수록 세부담률이 감소하는 역진적 구조를 보여주나,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와 3분위가 높은 세부담률을 나타낸다. 모든 가계를 통해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은 역진적 구조를 보여준다. 또한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가 가장 높은 세부담률을 보여주고, 최고 소득계층인 10분위가 가장 낮은 세부담률을 보여준다.

不平等 指數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세부담 특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후 소득 재분배 효과는 지니계수의 경우, 도시가계는 0.4%의 증가를 보여주고, 농촌가계는 0.6%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0.4%의 증가율을 보여준다. 이는 부가가치세의 所得 再分配 減少效果를 의미한다. Atkinson지수의 경우 에 따라 변화율의 크기는 서로 다른 수치를 보이지만, 전부 부가가치세의 소득 재분배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B-S 지수를 통해 부가가치세의 특성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 逆進度가 가장 높아 0.5538이고, 농촌가계의 경우도 逆進度가 0.6275로 가장 높아 농촌가계의 逆進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도시가계의 累進度는 0.3126, 농촌가계의 累進度는 0.1777로 나타나, 도시가계의 累進度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모든 가계를 통한 주세의 특징은 逆進度가 가장 높아 0.5697이며, 累進度는 0.3051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는 역진적 구조를 하며 그 정도에 있어서는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水平的 衡平性을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경우는 0.1684를 보여주고, 농촌가계의 경우는 0.2744를 보여줘, 농촌가계의 수평적 형평성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의 수평적 형평도는 0.1545로 나타났다.

4. 間接稅

〈表 6-10〉은 特別消費稅, 酒稅, 附加價値稅를 모두 합한 간접세 전체의 세부담을 소득계층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이다. [圖 6-1]은 所得階層別 間接稅 負擔을 도

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로 나누어 그 차이점을 보여준다. 都市家計의 평균 간접세 부담률은 3.95%이고, 農村家計의 평균 간접세 부담률은 1.92%를 나타내어, 도시가계가 농촌가계보다 높은 간접세 부담률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간접세 부담률은 3.61%이다. 소득계층별 간접세 부담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시가계의 세부담률은 일정한 규칙이 없이 매우 변화적이다. 농촌가계의 세부담률도 소득계층별로 변화가 많지만, 대체적으로 소득에 따라 稅負擔率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간접세 구조는 도시가계의 세부담 형태에 따라 소득계층에 따른 변화가 심

〈表 6-10〉 間接稅의 負擔率

(單位 : %)

소득계층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
1 분위	4.39	2.88	3.86
2 분위	3.71	2.16	3.58
3 분위	3.64	2.73	3.52
4 분위	3.68	2.17	3.42
5 분위	3.91	2.07	3.68
6 분위	4.19	2.11	3.88
7 분위	4.02	2.02	3.69
8 분위	4.17	2.15	3.91
9 분위	4.52	1.80	4.05
10 분위	3.57	1.31	3.12
평균 부담률	3.95	1.92	3.61
지니계수	0.3113	0.3320	0.3153
변화율	0.4	0.7	0.5
Atkinson지수			
ε=0.5	0.0826	0.0892	0.0838
변화율	1.2	1.4	1.3
ε=0.9	0.1478	0.1537	0.1489
변화율	4.3	1.3	3.8
B-S지수			
누진도	0.3591	0.1986	0.3417
비례도	0.1015	0.1576	0.0976
역진도	0.5395	0.6437	0.5607
수평적 형평도	0.1267	0.2226	0.1204

해 일정한 추세가 없다. 그러나 최고 소득계층인 1분위가 가장 높은 세부담률을 가지고, 최하 소득계층인 10분위가 가장 낮은 세부담률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간접세가 逆進的 構造임을 알 수 있다.

不平等 指數를 사용하여 간접세를 분석해 보면, 먼저 지니계수의 경우 도시가계는 0.4%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를 보이고, 농촌가계는 0.7%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를 보여, 농촌가계에서 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가 도시가계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간접세 구조는 0.5%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Atkinson지수를 사용한 결과, ε의 값에 따라 특별소비세 소득재분배 감소효과가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즉 $\varepsilon=0.5$일 때는 지니계수에서처럼 농촌가계에서 특별소비세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난 반면, $\varepsilon=0.9$일 때는 도시가계가 소득재분배 감소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ε이 큰 값일수록 저소득층에 높은 가중치를 주기 때문이다.

[圖 6-1] 所得階層別 間接稅 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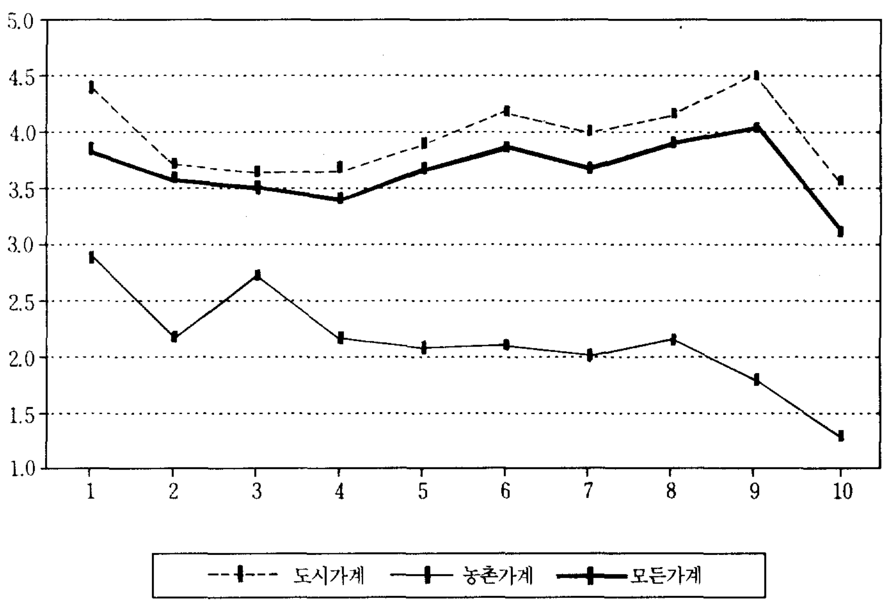

B－S지수를 사용한 간접세의 특징을 살피면, 도시가계는 逆進度가 0.5395로 가장 높고, 농촌가계도 0.6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累進度에 있어서는 도시가계는 0.3591, 농촌가계는 0.1986을 보여줘 도시가계의 累進度가 농촌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間接稅의 特徵은 逆進的 構造를 보여주고, 도시가계의 세부담 累進度가 농촌가계에 비해 높음을 알 수 있다. 전체가계를 사용한 간접세의 逆進度는 0.5607, 累進度는 0.3417을 보여주어 간접세의 역진적 특성을 알 수 있다. 水平的 衡平度는 도시가계가 0.1267이고, 농촌가계가 0.2226으로 농촌가계의 水平的 衡平度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간접세의 水平的 衡平度는 0.1204로 나타났다.

5. 硏究結果의 比較

본 연구는 1991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간접세의 세부담을 도시가계, 농촌가계, 모든 가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간접세의 세부담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李啓植·裵埈晧(1986)의 간접세 연구와 비교를 한다. 李啓植·裵埈晧(1986)의 연구는 1984년 도시가계만을 대상으로 간접세의 세부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 李啓植·裵埈晧(1986)의 연구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所得階層 10分位別 간접세 부담률을 비교한다. 이때 李啓植·裵埈晧(1986)의 연구가 도시가계만을 사용하였으므로, 본 연구의 결과 중에서 도시가계의 분석결과만을 비교한다.

〈表 6－11〉은 본 연구에서 분석한 1991년 간접세 부담률과 李啓植·裵埈晧(1986)의 연구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1984년에는 특별소비세 평균 부담률이 0.39%이고, 1991년에는 0.69%로 상승하였다. 소득계층별 특별소비세 부담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4년에는 저소득계층이 높은 세부담을 가지는 逆進的 構造를 가지는 반면, 1991년에는 고소득층이 높은 세부담을 가지는 累進的 構造에 가깝다.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각 소득계층별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저소득층인 1, 2, 3분위 계층은 오히려 1984년이 1991년에 비해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대체로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소득계층별 소비지출 형태를 비교적 잘 반영한 특별소비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酒稅의 平均 稅負擔率은 1984년에는 0.1%, 1991년에는 0.13%로 1991년에 조금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소득계층별 주세 부담률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4년과 1991년 모두 소득이 높은 계층이 주세 부담률이 낮은 逆進的 構造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91년에는 소득에 따른 주세 부담률의 감소가 1984년에 비해 완만한 형태를 보여준다. 각 소득계층별 주세 부담률은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최저 소득계층인 1분위는 1991년에 오히려 1984년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평균 부담률은 1984년에는 2.1%, 1991년에는 3.15%로 나타났다. 소득계층에 따른 부가가치세 부담률의 분포를 비교하면, 1984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세부담률이 낮은 역진적 구조를 보이는 반면, 1991년에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률의 변화가 완만하여 比例的인 構造를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각 소득계층별로 세부담률을 살펴보면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높은 부담률을 보여주지만,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는 오히려 1984년에 높음을 알 수 있다.

〈表 6-11〉 間接稅 負擔率의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특별소비세		주 세		부가가치세		간 접 세	
	1984년	1991년	1984년	1991년	1984년	1991년	1984년	1991년
1 분위	0.61	0.37	0.25	0.24	4.31	3.77	7.34	4.39
2 분위	0.36	0.32	0.13	0.21	2.46	3.20	4.27	3.71
3 분위	0.36	0.34	0.12	0.20	2.30	3.05	3.95	3.64
4 분위	0.42	0.44	0.11	0.18	2.27	3.07	3.89	3.68
5 분위	0.34	0.55	0.12	0.15	2.16	3.21	3.59	3.91
6 분위	0.36	0.73	0.10	0.15	2.10	3.31	3.47	4.19
7 분위	0.39	0.66	0.10	0.13	2.05	3.23	3.37	4.02
8 분위	0.37	0.79	0.09	0.12	2.02	3.39	3.25	4.17
9 분위	0.38	0.97	0.08	0.09	1.97	3.45	3.10	4.52
10 분위	0.41	0.78	0.07	0.07	1.88	2.72	2.85	3.57
평균	0.39	0.69	0.10	0.13	2.10	3.15	3.41	3.95

[圖 6-2]는 間接稅 負擔率의 比較를 보여준다. 간접세의 평균 부담률은 1984년에는 3.41%를 보여주고, 1991년에는 3.95%를 보여주어 1991년에 더욱 높은 세부담

률을 나타낸다. 소득계층별 간접세율의 분포를 살펴보면 1984년에는 소득이 높은 계층이 세부담이 낮은 역진적 구조를 보이나, 1991년에는 소득의 증가에 따른 세부담률의 변화가 적어 比例的인 構造를 나타낸다. 최하 소득계층인 1, 2, 3, 4분위의 경우,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세부담률이 낮고, 5분위 이상의 계층은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세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 간접세의 역진적 구조는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1984년에는 이러한 역진적 구조가 잘 나타난다. 특히 최하 소득계층인 1분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세부담률(7.34%)을 보여주어, 逆進度가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91년에는 간접세의 역진적 구조가 매우 달라졌다. 모든 계층의 간접세 부담률이 3.5%에서 4.5% 내에 있으므로 역진적 구조가 매우 완화되었다. 간접세의 역진적 구조는 세제의 소득 재분배 기능 측면에서 비판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間接稅 構造는 1991년이 1984년에 비해 逆進度가 많이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圖 6-2] 間接稅 負擔率 比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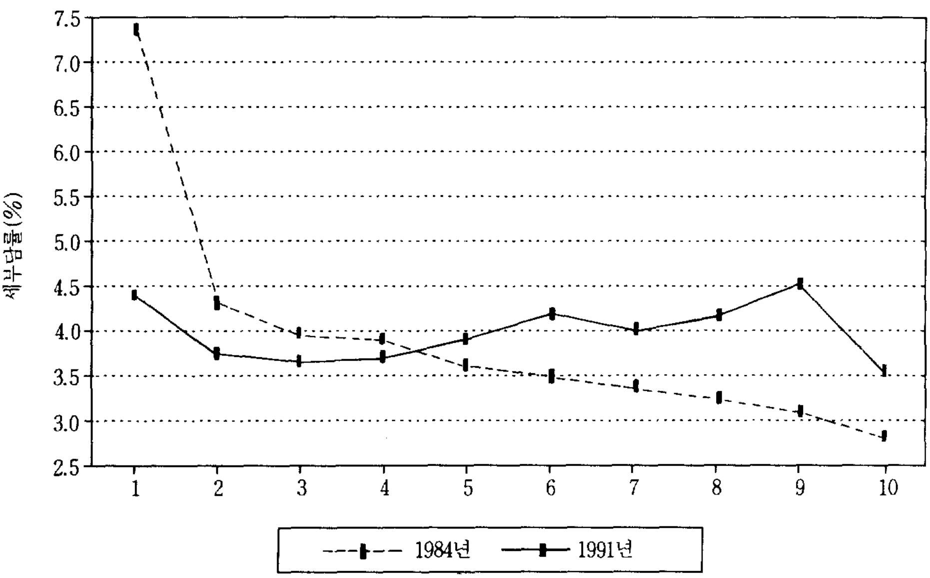

Ⅳ. 要約 및 結論

본 연구는 特別消費稅, 酒稅, 附加價値稅, 및 間接稅 전체의 소득계층별 세부담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한 세 가지 不平等 指數를 사용하여 이들 간접세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소득계층별로 세부담의 차이를 보이고, 도시 및 농촌의 간접세 부담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1년 통계청의 「도시가계자료」와 농림수산부의 「농촌가계조사자료」를 서로 합산(merge)하여, 전체 가구의 간접세 부담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세부담에 관한 실증적 연구들은 도시가계 자료만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지만, 도시가계가 우리나라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991년에 68%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도시가계만을 사용한 연구결과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하기는 어렵다. 미시자료를 사용한 간접세 부담의 분석은 각 가구의 支出特性을 반영하기 때문에 비교적 정확한 세부담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시가계에만 의존하는 기존의 연구에는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로 인해 유사한 종류의 자료를 서로 합산하여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都市家計와 農村家計資料를 서로 합산하여 모집단 代表性의 問題點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였다. 도시 및 농촌가계를 합산한 자료는 전체 모집단의 82%를 차지한다.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기에는 아직도 고려해야 할 계층이 있지만 농촌가계와의 합산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합산한 자료를 사용하여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및 간접세 전체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특별소비세의 平均 負擔率은 0.61%이며, 도시가계의 경우는 0.69%, 농촌가계의 경우는 0.23%를 보여주었다. 특별소비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특징은 比例的

構造(B－S지수의 比例度는 0.591)를 보여주고, 累進的 構造(B－S지수의 累進度는 0.2436)를 가미하고 있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세부담의 특징을 비교하면 농촌가계의 比例度(B－S지수가 0.9131)가 도시가계(B－S지수는 0.5413)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별소비세의 水平的 衡平度는 0.616을 나타났고, 도시가계보다 농촌가계의 수평적 형평성이 높게 나타났다. 특별소비세의 所得 再分配 效果는 사용한 不平等 指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일반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주세의 平均 負擔率은 0.13%이며, 도시 및 농촌가계가 똑같은 0.13%의 부담률을 보여준다. 농촌가계의 주류 지출에 관한 자료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농촌가계의 부담률이 도시가계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특징은 比例的인 構造(B－S지수의 比例度는 0.72)를 하고 있으며, 逆進的인(B－S지수의 逆進度는 0.1412) 특징도 가지고 있다. 주세의 水平的 衡平性은 0.7439를 보여주어 비교적 높은 편이며,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농촌가계의 수평적 형평성이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주세는 세부담률이 낮은 만큼 소득 재분배의 효과는 보이나 그 정도는 매우 낮다.

(3) 부가가치세의 平均 負擔率은 2.88%이며, 도시가계는 3.15%, 농촌가계는 1.56%를 보이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특징은 逆進的인(B－S지수의 逆進度는 0.5697) 構造를 보이는데 농촌가계의 逆進度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세의 水平的 衡平度는 0.1545로 다른 간접세보다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촌가계의 수평적 형평도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부가가치세는 소득재분배를 減少시키는 효과를 보여준다.

(4)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간접세 전체의 평균 부담률은 3.61%이며, 도시가계는 3.95%, 농촌가계는 1.92%로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간접세의 특징은 역진적 구조(B－S지수의 逆進度가 0.5607)를 하고 있으며, 逆進度는 도시가계보다 농촌가계가 높게 나타났다. 간접세의 水平的 衡平度는 0.1204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비해 수평적 형평도

가 높게 나타났다. 간접세 구조가 역진적인 만큼 소득재분배 기능은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지니계수의 경우는 0.5%의 소득재분배 감소효과를 보여주고, Atkinson지수의 경우는 각각 1.3%, 3.8%의 감소효과를 보여준다.

(5) 1991년의 도시가계 간접세 부담률을 1984년과 비교하면, 특별소비세는 0.39%에서 0.69%로 증가하였고, 주세는 0.1%에서 0.13%로 증가하였으며, 부가가치세는 2.1%에서 3.15%로 증가하였다. 이들 세 가지를 모두 합한 間接稅 負擔率은 3.41%에서 3.95%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간접세의 특징이 역진적 구조인 점은 널리 알려져 있으나, 1991년은 1984년에 비해 역진적 구조가 많이 완화되었다. 특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모두에서 1991년에는 1984에 비해 逆進度가 감소하였으며, 1984년에는 간접세 부담률이 소득계층에 따라 변화가 심한 반면, 1991년에는 대부분이 3.5~4.5% 사이에 있어 逆進度가 많이 완화되었다.

우리나라 간접세는 역진적이므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오히려 간접세 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84년의 간접세 부담 분포와 비교할 때 逆進度가 緩和되어, 도시가계의 消費支出 形態가 간접세 구조에 비교적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계와 농촌가계의 간접세 부담을 비교할 때 도시가계가 농촌가계에 비해 세부담률은 높게 나타났고, 間接稅의 逆進度는 농촌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간접세 구조가 농촌가계의 支出構造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반면 水平的 衡平度는 농촌가계가 도시가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간접세 구조는 수평적 형평도가 낮아, 같은 소득계층이 부담하는 간접세액은 서로 차이를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가지는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도시가계 자료만을 사용하여 실증적 분석을 한 연구들과는 달리, 도시 및 농촌가계 자료를 최초로 합산하여, 간접세 부담의 분포를 분석한 연구결과이다. 이렇게 합산한 자료의 사용은 모집단의 대표성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였으나,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하기에는 고려하지 않은 계층들이 있다. 즉 단독가구, 도시 내 농가가구, 농촌 내 근로자 가구들을 반영하여야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대표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자료가 현실적

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향후 시도될 것이다.

「농촌가계자료」를 「도시가계자료」에 대비하여 합산할 때 「농촌가계자료」는 지출항목이 도시에 비해 매우 한정되어 있으므로 고려하지 못한 항목이 많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농촌가계의 지출액과 간접세액에 대한 결과가 실제보다 작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시도한 도시 및 농촌가계의 세부담액의 비교는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 고려하지 못한 농촌가계의 지출항목에 대한 고려가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뒤따라야 한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合算資料를 통한 실증적 분석은 도시 및 농촌가계의 세부담 비교보다, 도시와 농촌가계를 합한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간접세 부담 분포를 연구한 결과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母集團 家口의 代表性과 농촌가계의 支出項目의 未備點을 해결할 수 있는 질 좋은 자료가 생산될 때, 본 연구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參 考 文 獻

郭泰元, 「우리나라 特別消費稅制의 所得 再分配 效果」, 『韓國開發硏究』, 第9卷 第3號, 1987.

金明淑, 「財産稅의 所得分配 效果」, 『韓國開發硏究』, 第9卷 第4號, 1987.

羅城麟, 『韓國의 租稅 社會扶助 模型 1』, 政策硏究資料 91－41, 韓國開發硏究院, 1991.

羅城麟·玄鎭權, 「韓國의 租稅－社會扶助 模型 2 : 母集團化 適用을 通한 租稅－社會扶助의 所得分配 效果」, 『財政論集』, 第7輯, 1993.

李啓植·裵埈晧, 「우리나라의 間接稅 負擔分布 分析」, 郭泰元·李啓植(編), 『租稅政策과 稅制發展』, 韓國開發硏究院, 1986.

張五鉉, 「韓國의 財産稅 歸着에 關한 實證硏究」, 『財政論集』, 第6輯, 1992.

韓昇洙, 「租稅負擔의 測定과 適正負擔率에 關한 硏究」, 韓國經濟硏究院, 1982.

玄鎭權·羅城麟, 「租稅 및 社會扶助의 所得再分配 效果」, 『經濟論集』, 第32卷 第2號,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3.

______, 「우리나라 所得稅制의 稅負擔 分析 : 都市 및 農村家計의 合算資料를 使用한 實證結果」, 『經濟學硏究』, 第42輯 第1號, 韓國經濟學會, 1994a.

______, 「우리나라 稅制의 衡平性 分析 : 勤勞者 家口와 自營業 家口의 稅負擔 差異를 中心으로」, 『經濟學硏究』, 第41輯 第3號, 韓國經濟學會, 1994b.

自動車 關聯 稅法改正의 效果

- 所得 階層別 稅負擔 分析을 中心으로 -

全 瑛 俊[1]

目 次

* 본 논문은 한국조세연구원, 『財政金融硏究』, 제2권 제2호(1995)에 게재된 논문임.

1) 本院 專門硏究委員

Ⅰ. 序 論

한국의 자동차 보유는 지난 10여년 동안 급격한 증가를 거듭하여, 1995년 8월 현재 총 등록 대수가 8백만대를 돌파하였다. 이에 따라 자동차 관련 稅收도 증가하여 1994년 말 현재 총 세수[2]의 15.4%를 차지하였고, 1995년 말까지는 15.8%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자동차관련 세수의 용도도 교통망 확충에서부터 교육관련 지출 그리고 농어촌 지원관련 지출 등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으며,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자동차 관련 조세의 성격도 다양하여, 그 구조가 등록세, 유류 특소세인 경우는 비례세인 반면, 자동차특별소비세(자동차특소세), 면허세, 자동차세 등은 배기량 및 판매가격에 따라 차등과세되어 누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세제의 개편은 중앙 및 지방의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또한 自動車 關聯 稅負擔의 所得 階層別 分布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되어 왔다.

한편 현재 진행중인 주행세 논의는 자동차관련 조세부담의 소득계층별 분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주행세의 내용은 자동차 보유의 대중화에 따라 자동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운행단계의 조세인 유류 특소세를 늘리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취득 및 보유단계의 세금인 자동차특소세, 자동차세 그리고 면허세는 위에서 지적했듯이 누진적인 구조를 가진 반면, 운행단계의 세금인 유류 특소세는 비례세이므로, 주행세의 시행이 가져올 조세부담의 재분배의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유류 관련 세제 개편과 관련하여 경유와 휘발유 사이의 상대가격의 왜곡이 지적되고 있다. 경유와 휘발유의 공장도 가격은 비슷한 반면, 경유에 대한 특소세는 1995년 8월 1일 현재 20%인 반면 휘발유특소세는 170%로, 경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

2) 여기서 말하는 總稅收는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대가격이 지나치게 低評價되어 있다. 따라서 디젤 엔진 차량의 과다 보급 및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공해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으며, 이의 시정이 요청되고 있다. 그러나 경유의 주요 용도가 산업용, 대중교통수단의 연료 그리고 난방연료인 것을 감안할 때, 경유에 대한 특소세의 상승은 저소득 및 중류층의 세부담의 증가를 야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혹은 「대우패널」)와 다른 여러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現行 自動車 關聯 稅法下에서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를 추정하고, 또한, 현재 논의중인 주행세 도입과 관련된 세법개정, 한미자동차통상협상의 합의사항 그리고 경유가격의 정상화를 위한 세법 개정 등을 포괄하는 여러 개정안의 효과를 소득계층별 부담의 재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세법개정의 직접적인 재분배를 측정할 뿐만 아니라, 세법개정에 의해 야기되는 자동차 및 유류가격의 변동이 여타 부문의 상품의 가격변동을 통한 소득계층별 지출수준의 변동으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도 살펴본다.

이 논문에서 행한 實證硏究로부터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발견되었다. 첫번째로,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현행 승용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은 대체로 소득계층별로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운행단계의 조세부담은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동차의 平均 保有比率이 所得의 所得階層別 比率과 대체로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고, 보유 자동차의 평균 배기량도 소득계층별로 균등하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두번째로, 자동차 구입단계의 稅法改正을 통해 유발되는 소득계층간 부담은 거의 비례적으로 나타나고, 운행단계에 대한 세법개정의 소득계층간 부담 분포는 역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현행 자동차의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 부담이 거의 비례적이고 자동차 가격의 가격승수가 낮고, 소득계층별 승용차 연료비 지출이 소득에 비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유류가격 변동의 가격승수가 높고, 자동차를 제외한 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성향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짐에도 기인한다. 이러한 발견은 구입 및 보유단계의 租稅負擔 輕減과 운행단계의 조세부담 상승을 내용으로 하는 주행세 도입의 재검토라는 정책적 함의를 끌어낸다. 마지막으로, 경유 특별소비세의 일시적이고 대폭적인 인상의 영향은 지대하여 높은 물가상승을 야기하고, 이 세율인상

의 부담분포는 극단적으로 역진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경유 특별소비세의 인상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가 필요함을 지적해둔다.

本 論文의 構成은 다음과 같다. 제2절에서는 소득계층별 조세부담의 분포를 추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제3절에서는 본 논문에서 사용한 통계자료인 「대우패널」에 수록되어 있는 데이타의 형태 및 내용과 그 처리 방법에 대해 설명한다. 추정방법과 데이터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혹은 향후 이루어질 연구와의 비교의 편의를 위해 비교적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제4절에서는 조세부담분포의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마지막으로 제5절에서는 논문의 논의의 결론을 맺는다.

Ⅱ. 分析 方法

본 논문의 분석방식은 크게 세수, 물가(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에 대한 영향, 차종별 조세부담 그리고 조세부담의 분포의 추정으로 대별된다. 세수추정의 기준이 되는 자동차관련 세율은 199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1. 自動車 關聯 稅收의 推計

〈表 7－1〉에서 보듯이 자동차에 관련된 조세는 구입단계 7種, 보유단계 3種 그리고 운행단계 2種으로 총 12種에 달한다. 여기에 準租稅的인 성격을 갖는 도시철도공채 구입을 포함시키고 특히 수입차의 경우, 관세까지 포함시킬 때 조세의 수는 총 14種에 달하게 된다. 세수추계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각 단계에서 免稅되는 승용차가 있으며, 이들 면세차량의 범위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승용차의 판매량과 현재 보유되고 있는 차량을 모두 포함시킬 경우, 稅收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구입단계

의 세수는 1993년도 特別消費稅收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매년 출판되는 『國稅統計年報』에는 자동차의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수가 발표되는데 이것을 1993년 자동차 판매대수와 배기량별 특별소비세율과 교육세율을 이용하여 1993년 당시의 배기량별 稅前價格을 逆算한다. 여기에 승용차 배기량별 生産者物價指數를 이용하여 1993년과 1995년 현재 배기량별 승용차의 상대가격을 구하고 이들을 이용하여 1995년 현재 승용차의 배기량별 稅前 가격을 구하였다. 여기에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량과 각 조세의 세율을 이용하여 구입단계의 세수를 추정하였다[3]. 구입단계세수 측정에는 자동차 관련조세의 세율변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자동차의 구입가격의 변화와 그

〈表 7-1〉 自動車 油類關聯 稅收 推計值

(單位 : 백만원)

구 입 단 계	자동차특소세	767,320
	자동차특소세 교육세	230,200
	부가가치세	649,800
	취득세	142,960
	농특세	14,296
	등록세	357,390
	등록세 교육세	71,478
	계	2,233,444
보 유 단 계	자동차세	1,386,500
	자동차세 교육세	415,940
	면허세	117,540
	계	1,919,980
운 행 단 계	유류특소세	1,919,980
	유류부가가치세	420,160
	계	2,340,060
교 육 관 련 재 원		717,610

註 : 자동차 구입단계의 稅收는 소형, 중형 및 대형 승용차 구입에 대한 조세수입을 포함하였고 유류관련조세도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조세수입만을 포함하였다.

資料 : 『국세통계연보』(1994), 『자동차통계월보』(1995년 10월), 행정쇄신위원회 자료.

3) 승용차의 배기량별 판매량은 『자동차통계월보』(1995년 11월)에 나타난 자동차 내수판매량을 이용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1995년 10월까지의 자동차 판매량이다. 이를 전년도 동기 대비 비율을 구하여 이 비율을 1994년 배기량별 내수 판매량과 곱하여 승용차 판매량을 구하였다.

에 따른 판매량의 변화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의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0.8258로 가정하였다[4].

보유단계의 세수는 1995년 8월 현재 자동차의 배기량별 보유현황을 기준으로 추정하였다. 건설교통부(1995)에 발표된 승용차 보유현황은 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 1000cc 이상 1500cc 미만, 1500cc 이상 2000cc미만, 2000cc 이상 2500cc 미만, 2500cc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유단계의 조세인 자동차세, 면허세의 구조에 맞게 다음과 같은 승용차의 배기량별 보유현황에 대한 가정을 하였다.

- 800cc 미만 : 1500cc 미만 차량의 5.1%
- 1400cc 미만 : 1500cc 미만 차량의 23.6%
- 1400cc 이상 1500cc 미만 : 1500cc 미만 차량의 76.4%
- 1500cc 이상 1600cc 미만 : 15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3.2%
- 1600cc 이상 2000cc 미만 : 1500cc 이상 2000cc 미만 차량의 96.8%
- 3000cc 이상 : 2500cc 이상 차량의 2.3[5]

면허세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기타 지역간에 면허세율이 다르므로, 승용차의 각 배기량별 대도시 분포비율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 1600cc 이상의 자가용의 65.2%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다.
- 1400cc 이상 1600cc 미만의 자가용의 55.5%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다.
- 기타 자가용의 46.3%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다.
- 영업용 승용차의 57.9%가 대도시에 등록되어 있다[6].

이와 같은 승용차의 배기량별 지역별 분포에 대한 가정을 기초로 자동차 보유단계의 세수를 추정하였다[7].

---

4) 鄭在建 (1992), pp. 30~32 참조.

5) 자동차 공업협회, 1995년 5월 말 자동차 등록현황 참조.

6) 행정쇄신위원회 자료 참조.

7) 면세차량의 존재를 감안한 보다 엄밀한 보유단계의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자동차세 및 면허세의 세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地方稅政年鑑』에 나타난 배기량별 보유현황이 자동차 공업협회, 1995년 5월말 자동차 등록현황에 나타난 수치와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음을 감안하여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다만, 여기서는 위의 방법을 사용한 결과는 보유단계의 세수를 다소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운용단계의 稅收는 휘발유 및 경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 단계의 세수는 국세통계연보에 보고된 휘발유 및 경유의 특별소비세 1993년도 세수와 각종 유류의 1993년도 내수판매량을 이용하여 각종 유류의 稅前가격을 계산하고[8], 1993년과 1995년 사이의 각종 유류의 세전가격의 상대가격을 추정하여 1995년도의 유류의 세전가격을 추정하였다[9]. 1995년의 각종 유류의 내수 판매량은 1995년 9월 현재의 내수 판매량과 1993년 동기 내수 판매량의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10]. 또한, 유류 관련 조세율의 변화에 의해서 야기되는 석유류의 가격변화에 의한 수요변화를 감안하기 위하여,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7, 경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1로 가정하였다[11].

2. 物價에 미치는 影響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직접적인 효과와 간접적인 효과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인 효과는 자동차 관련조세의 세율 변화에 따른 해당 상품의 가격변화를 의미하며, 간접적인 효과는 이러한 상품들의 가격상승이 다른 상품들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예를 들어, 경유의 가격이 상승하였을 때 이 경유의 가격상승이 전체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측정하는 것이 직접적인 효과이며, 이 경유가격의 상승이 기타산업의 비용상승을 통하여 기타 산업의 상품의 가격상승을 誘發하는 것이 간접적인 효과이다. 직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물가가중치표 1994」를 사용하였다. 간접적인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1990년도 産業聯關表를 이용하여 추정한 가격승수를 사용하였다[12]. 산업연관표와 이 논문에서 사용한 「대우패널」의 체제를 서로 일관성 있게 맞추기 위하여, 산업연관표에 있는 405 부문을

8) 통상산업부 자료 참조.
9) 이를 위하여 成明宰(1995), p. 54. 〈表 5－1〉 揮發油·輕油의 工場渡價格, 特別消費稅, 消費者價格의 變化推移를 참고하였다.
10) 통상산업부 자료 참조.
11)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경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成明宰(1993)에서와 같이 0.1을 사용하였는데 그 근거는 경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휘발유의 그것보다 낮을 것이라는 추측에 있다.
12) 산업연관표를 사용하여, 간접적인 물가상승효과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姜光夏(1991)와 韓國銀行(1993)을 참고하기 바란다.

〈表 7－2〉 綜合産業關聯表와 대우패널의 部門分類의 比較

30 통합산업연관표		대우패널자료	
1. 식료품(1-4, 5-6, 70-71, 17-22, 51-56, 30-34, 57-61, 62-69, 72-85 부문)		식료품비	(H 208, 102, 104, 106, 108)
2. 부동산, 건축보수	(366-368, 329 부문)	주거비	(H 209)
3. 섬유, 신발	(94-124 부문)	피복 및 신발	(H 210)
4. 인쇄, 출판, 종이 및 방송오락서비스	(392-398 부문)	교양오락	(H 211)
5. 음식점	(344 부문)	외식	(H 213)
6. 교육기관	(378-380 부문)	교육비	(H 214, 215, 216, 217)
7. 전력, 도시가스 및 열공급업	(318-321, 322-323 부문)	연료비	(H 221)
8. 숙박	(345 부문)	휴가	(H 220)
9. 의료 및 보건	(383-385 부문)	병원	(H 222)
10. 보험	(363 부문)	승용차보험	(H 351)
11. 승용차	(298 부문)	승용차 구입가격	(H 321, 322, 331, 332, 341, 342)
12. 휘발유	(178 부문)	자동차연료비	(H 349)
13. 등유	(179 부문)		
14. 경유	(180 부문)		
15. 중유	(181 부문)		
16. LPG	(182 부문)		
17. 세탁기	(277 부문)	세탁기	(H 228)
18. TV	(281 부문)	TV	(H233)
19. VTR	(282 부문)	VTR	(H 238)
20. 전축	(283 부문)	전축	(H 242)
21. 냉장고	(276 부문)	냉장고	(H 247)
22. 가정용전열기구	(279 부문)	전자렌지 (H 256), 가스렌지 (H 269), 가스오븐렌지	(H 274)
23. 기타전자부분품	(292-293 부문)	카세트	(H 260)
24. 컴퓨터, 주변기기 및 관련서비스	(265, 266, 371 부문)	컴퓨터	(H 265)
25. 악기	(314 부문)	피아노	(H 278)
26. 무선통신기기	(285 부문)	무선전화기 (H 282), 휴대폰(카폰)	(H 286)
27. 가정용전기기기	(280 부문)	에어컨 (H 252), 진공청소기	(H 290)
28. 장난감 및 운동용품	(312-313 부문)	오락기	(H 294)
29. 목재가구	(131 부문)	장롱 (H 298), 침대 (H 302), 소파	(H 306)
30. 해당 항목을 제외한 기타부문		기타	

資料 : 1990년 산업연과표 작성보고서, 「대우패널」(1993).

통합하여 30 부문 통합산업연관표를 작성하였다(〈表 7-2〉 참조). 이렇게 통합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승용차, 경유, 등유 및 경유 가격의 변화가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表 7-3〉에 나타난 가격승수들로 요약될 수 있다. 〈表 7-3〉에 의하면, 경유의 가격상승이 다른 부문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강함을 볼 수 있다[13].

〈表 7-3〉 價格乘數

(單位 : %)

대우패널항목	자동차	휘발유	등 유	경 유
1. 식료품비	0.0010	0.38	0.17	1.82
2. 주거비	0.0005	0.24	0.11	0.38
3. 피복 및 신발	0.0001	0.50	0.18	1.04
4. 교양오락	0.0010	0.59	0.13	0.81
5. 외식	0.0002	0.15	0.25	0.29
6. 교육비	0.0000	0.40	2.65	1.08
7. 휴가	0.0009	0.29	0.34	1.45
8. 연료비	0.0000	0.83	0.12	1.74
9. 병원	0.0012	0.46	0.12	0.82
10. 승용차보험	0.0008	0.34	0.09	0.88
11. 세탁기	0.0021	0.59	0.17	1.17
12. TV	0.0021	0.57	0.17	1.14
13. VTR	0.0016	0.45	0.13	0.89
14. 전축	0.0018	0.52	0.15	1.00
15. 냉장고	0.0017	0.45	0.13	0.93
16. 전자렌지, 가스렌지, 가스오븐렌지	0.0020	0.54	0.20	1.05
17. 카세트	0.0019	0.55	0.15	1.04
18. 컴퓨터	0.0018	0.71	0.16	0.97
19. 피아노	0.0015	0.51	0.13	0.95
20. 무선전화기, 휴대폰	0.0018	0.51	0.15	0.98
21. 에어컨, 진공청소기	0.0021	0.64	0.17	1.50
22. 오락기	0.0015	0.51	0.16	0.97
23. 장롱, 소파, 침대	0.0019	0.71	0.19	1.26
24. 기타	0.0030	0.71	0.23	1.54

資料 :「대우패널」(93), 산업연관표 (90).

13) 가격승수의 도출과정은 〈附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3. 自動車 關聯 租稅負擔 推定

자동차관련 조세부담이란 특정 개인이 자동차를 구입·보유하고 운행하여 최종적으로 처분할 때까지 부담해야 할 조세부담의 합계를 말한다. 여기에서는 1,500cc 이하의 소형차, 2,000cc 이하의 중형차 그리고 2,000cc 이상의 대형차의 대표 차종들의 조세부담을 예로 들어 볼 것이다(세피아 1.5D, 소나타I 2.0D, 뉴그랜져 3.0 골드). 또한 여기에서는 新車로 구입하였을 때와 중고차의 형태로 구입하였을 때의 경우를 나누어 고려하고 있다. 자동차의 수명은 8년으로 하고 新車의 평균 보유기간은 4년으로 가정한다[14]. 다시 말해서, 新車가 출고되고 나서 4년 동안 첫 주인에 의해 보유되다가 중고차로서 두번째 주인에게 판매되고 그후 4년 동안 보유되다가 폐차된다고 가정한다[15]. 이 과정에서 1995년 8월 1일 현재의 세법에 기초하여 조세부담을 측정하였으며, 특기할 사항은 준조세의 성격을 띠고 있는 도시철도공채에 대해서는 도시철도공채 구입액의 50%를 조세부담액으로 환산한다는 것이다. 이는 자동차 구입자들이 공채의 만기까지 공채를 보유하지 않고 구입하자마자 채권을 할인하는 것이 관행이며, 이때 할인액은 구입가격의 약 50%라는 데 착안한 것이다.

또한, 운행단계의 조세부담을 추정하기 위해서 1일 평균 운행거리를 소형차의 경우 62km, 중형차의 경우 75km 그리고 대형차의 경우 73km로 가정하였으며, 자동차의 휘발유 소비량은 각 차종의 연비를 기준으로 계산되었다[16].

4. 所得階層別 負擔分布 推定

自動車 關聯稅收의 所得階層別 負擔 分布를 추정하기 위하여 소득계층을 10단위로 나눈다. 각 소득계층의 부담은 승용차 관련 조세변화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의 변화, 경유 가격변화에 따른 가정용 연료비의 상승, 그리고 승용차의 판매가격, 휘발

---

14) 현진권(1995) 참조.

15) 출고된 지 4년 후 판매되는 중고차의 가격은 신차의 35. 5%로 가정하였다. 이는 현진권(1994)의 승용차의 경제적 감가상각에 대한 실증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16) 현대자동차 마케팅부 자료 참조.

유, 등유 및 경유의 가격변동의 여타 부문의 비용상승을 통한 가격상승으로 야기된 부문별 지출비의 변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자동차 관련 조세부담의 분포는 아래에서 설명할 샘플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구입가격, 각 차량의 배기량 등과 1995년 8월 1일 현재의 세법을 이용하여 자동차 관련 세수의 분포를 逆算하였다. 여기서 特記할 만한 사항은 여타 내구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구입은 투자의 성격을 띤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 구입시에 자동차 구입대금의 상당부분을 지불하지만 자동차라는 내구재에서 흘러나오는 용역의 소비는 자동차 보유 기간에 나누어서 행해지므로 자동차 사용에 대한 지불은 자동차 보유 기간에 균등하게 나누어서 지불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17]. 따라서 자동차의 平均保有期間(4년)을 기준으로 승용차 구입비 및 자동차 구입단계 조세부담을 보유기간 동안 분산시키는 조정을 행하였다. 보다 자세히 말하면, 만일 해당가구의 승용차 보유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는 자동차 구입단계의 조세부담을 4로 나누고 이를 연간 자동차 구입단계 조세부담으로 간주했으며, 만일 해당 가구의 승용차 보유기간이 4년을 넘는 경우에는 승용차 구입가격 및 구입단계 조세부담을 이 가구의 승용차 보유기간으로 나누고 이 값을 이 가구의 연간 구입단계의 조세부담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한 가구당 차량의 보유대수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승용차부터는 구입단계의 조세인 取得稅와 登錄稅의 세율이 2배인 점도 감안하였다.

保有段階의 租稅負擔 分布 推定은 샘플에 해당 승용차의 배기량이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용이하게 이루어 질 수 있으나, 免許稅의 경우 해당가구의 거주지가 「데이타셋」(Data Set)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18]. 이 논문에서는 편의상 모든 가구에게 대도시 가구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한다[19]. 운행단계의 조세부담의 분포는 세수추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승용

17) 구입단계의 조세는 구입시 1회 납부하여 그 이후 자동차를 이용하는 단계에는 구입단계 조세에 대한 부담을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구입단계의 조세의 부담을 보유기간 동안 균등하게 나누어 느낀다는 가정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합리적인 소비자를 상정할 경우, 이 가정은 큰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18) 「대우패널」에서는 해당가구의 거주지를 시, 도별로만 분류되어 있다.

19) 이 가정은 다소 자의적이며 면허세의 부담을 다소 과대평가하는 적용을 할 것으로 여겨지지만, 〈表 7-1〉에서 보듯이 면허세의 비중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편이므로, 이 논문의 결과의 전체적인 윤곽을 변화시키지는 않으리라 본다.

차 연료비로부터 油類特別消費稅와 油類附加價値稅를 역산하였다.

유류관련 조세의 변화에 의한 유류가격 변화에 따른 가정용 연료비의 추가적인 부담은 각 가구들의 가정용 연료비 지출 중 경유가 차지하는 부분에 경유가격 변화율을 곱하여 얻을 수 있으며, 자동차의 가격, 휘발유, 등유, 경유의 가격변화에 따른 여타 부문의 가격변화효과는 〈表 7−3〉의 가격승수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20]. 단지 여기에서 지적되어야 하는 것은 각 소득계층별 각 내구재 및 비내구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가격 탄력성은 零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하였음이다.

Ⅲ. 資　　料

본 논문은 大宇經濟硏究所에서 펴낸 1993년「한국가구패널조사」(KHPS)를 기초로 분석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이후의 연구와의 비교를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와 그 취급방법에 대해서 가능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한국 가계조사(혹은「대우패널」)는 분석 단위가 크게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는 이 논문의 목적에 맞게 가구를 분석단위로 한다.

1. 所　得

각 가구의 소득은 근로소득, 자산소득, 이전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성된다. 勤勞所得은 다시 정규 봉급생활자의 봉급, 자영업자의 수입, 농림수산업자의 순수입, 비정규직 종사자와 未就業者의 소득 그리고 부업소득으로 구분되며, 資產所得은 은행이자, 사채이자,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부동산 임대소득 및 매매차익으로 구성된다. 移轉所得은 연금과 보조금으로 나뉘어지며, 연금은 국민연금(노령연금, 장해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으로 구분되고, 보조금은 정부 및 사회단체로부터의 보조금과 친지로부터의 보조금으로 나

뉘어진다. 其他所得은 적금 탄 돈, 지급 받은 보험금, 유가증권 매각대금, 동산·부동산 매각대금, 빌려주었다 받은 돈, 복권 당첨금 및 기타 소득으로 구분된다. 「대우패널」은 모두 4,547가구에 대한 설문조사로 이루어졌으나, 위에 열거된 소득의 각 항목의 금액에 대한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가구들과 자영업자와 농림수산업자들 중 순수입이 負(－)의 값이라고 대답한 가구들이 이 샘플에서 제외되었다. 前者의 경우는 해당가구의 소득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고, 후자의 경우 질문에 대한 응답의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이 논문의 분석에서는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은 가구의 수는 4,415가구이다[21]. 또한 「대우패널」의 또 다른 문제점 중의 하나는 일부 가구들의 응답이 數量的(quantitative)이지 못하고 質的(qualitative)이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질문 15－2(자산소득의 정확한 금액을 모른다면 대략 얼마 됩니까?)는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하게 하고 있다. (1) 99만원 이하, (2) 100～299만원, (3) 300～499만원, (4) 500～999만원, (5) 1,000만원 이상, (6) 잘 모르겠다. 이에 대하여 (1)을 선택한 가구의 자산소득은 99만원, (2)를 선택한 가구의 경우는 200만원, (3)을 선택한 경우는 400만원, (4)를 선택한 경우는 700만원, (5)를 선택한 경우는 1,000만원으로 간주하였으며[22], (6)을 선택한 경우는 해당 가구를 샘플에서 제외시켰다[23].

2. 耐久財 消費(승용차 제외)

耐久財는 電子製品 및 家具와 乘用車로 나누어진다. 전자제품 및 가구에는 세탁기, TV, VTR, 전축, 냉장고, 에어컨, 전자렌지, 카세트, 컴퓨터, 가스렌지, 가스오븐, 피아노, 무선전화기, 휴대폰(카폰), 진공청소기, 오락기, 장농, 침대, 소파 등이

---

21) 이 외에도 샘플에서 제외된 가구들이 있는데 내구재 및 비내구재의 자료를 설명할 때 언급하기로 한다.
22) (1)과 (5)항목을 선택한 경우는 Tobit 추정방법을 이용하여 자산소득을 추정할 수 있으나 이들 항목을 선택한 가구의 수는 극히 미미하므로 위의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23) 이 질문 외에도 이러한 유형의 질문의 예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농림수산업자의 추정수입, 농림수산업자의 기타수입, 농림수산업자의 추정비용(농약, 비료, 지불노임, 농지임차료, 기계임차료 등에 대한 비용), 부동산 임대료 및 매매차익에 대한 추정치, 연금 및 보조금의 각 항목의 추정치, 내구재 구입가격에 대한 추정치에 대해 한 질문이 이에 속한다. 이들 질문에 대답해야 할 가구의 수는 극히 미미하므로, 이들 질문에 대한 응답의 처리는 위에서 제시된 방법을 따르기로 한다.

속한다. 이들 각 항목에 대하여 보유여부, 보유대수, 구입연도, 크기(용량), 구입가격이 보고되어 있다. 이들 내구재를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가구들의 경우, 이들 내구재를 1단위씩 보유하고 있고 또한 최근 몇 년 동안의 내구재에 대한 지출은 최종 구입한 내구재의 소비를 위한 것이고 또한 「대우패널」에도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내구재에 대한 지출에 대해서만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내구재에 대한 지출만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내구재 소비를 다루는데 있어 감안하여야 할 점은 내구재의 경우 구입할 당시에 구입대금을 지불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내구재에 대한 소비는 보유기간 동안 서서히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소비지출은 구입가격을 보유기간 동안 나누어 지출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구재 소비지출의 투자적인 성격을 감안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各 耐久財의 平均 壽命에 대한 資料가 필요하나, 이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먼저 각 가구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내구재의 平均 保有期間을 구한다. 만일 특정 가구의 내구재 보유기간이 이 평균보유기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각 내구재 구입가격을 이 평균기간으로 나눈 값을 이 가구가 해당 내구재에 대해 연간 지출한 금액으로 간주한다. 만일, 특정 가구가 가장 최근에 구입한 내구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간이 평균 보유기간을 넘어서는 경우는 각 내구재 구입가격을 이 가구의 보유기간으로 나누고 이 값을 이 가구의 해당 내구재에 대한 지출액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구재의 구입가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경우인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해당 耐久財를 購入年度와 容量에 따라 분류하고, 이 분류에 따른 平均 購入價格을 구한다. 그리고 구입가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가구의 내구재의 구입연도와 용량에 따라 위의 분류에 의한 평균 값을 이 가구의 내구재 구입가격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만일 이 가구의 구입연도와 용량과 같은 경우가 다른 가구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는 경우는 전체가구의 평균 구입가격을 이 가구의 내구재 구입가격의 추정치로 사용한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도 구입연도 혹은 용량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가구는 구입가격에 대한 추정치를 구할 수 없으므로 샘플에서 제외한다.

3. 乘用車

「한국가구패널조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자동차와 관련된 정보가 비교적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구입형태(신차, 중고), 구입연도, 구입기준, 용도, 배기량,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험금 등의 항목 등으로 자세하게 분류되어 보고되어 있다[21].

전체 표본의 가구들 중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는 전체의 약 25%이고, 2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가구도 0.3%에 달한다. 전체 차량 중 新車의 형태로 구입된 경우가 74.3%여서 중고차시장의 규모가 新車의 약 1/3에 달함을 보여 준다. 또 다른 구입형태로서 기타(선물 등)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구입연도, 구입가격 그리고 배기량 등 분석에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샘플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내구재에 대한 지출을 다룰때와 마찬가지로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은 차량의 구입가격, 연료비, 보험료의 지출금액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가구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승용차를 출고연도와 배기량별로 분류하고, 각 경우의 차량 구입가격, 연료비, 차량유지비 및 보험료의 평균값을 계산한 뒤 위의 항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 가구의 승용차의 출고연도와 배기량에 해당하는 평균값을 추정치로 사용하였다. 만일 이 가구의 경우와 동일한 경우가 없는 경우는 승용차 전체의 평균값을 추정치로 사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에도 출고 년도 혹은 배기량에 대한 정보가 없는 가구는 샘플에서 제외시키기로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샘플에 남아 있는 가구의 수는 4,328가구로서 전체가구의 95.2%에 해당된다.

4. 非耐久財

非耐久財의 소비는 식료품비, 주거비, 피복비 및 신발비, 교양 및 오락비, 외식비,

---

24) 「도시가계조사」가 「대우패널」의 대안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대우패널」에 비하여, 자동차와 관계된 정보가 부실한 편이다. 그러나, 그 이외의 내구재와 비내구재에 대한 지출에 대한 정보가 「대우패널」에 비해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경유가 인상에 따른 대중 교통수단 및 연료비에 대한 분석 등은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함으로써 더 잘 행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교육비(학교 교육비, 과외비, 특별 활동비, 기타), 휴가비 그리고 의료비로 구성된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각 항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경우에는 해당가구의 총소득과 가구원의 수에 맞게 각 항목의 추정치를 구하였다.

Ⅳ. 分析結果

1. 現行 稅法下에서의 租稅負擔分布

현행 자동차 관련 세법하에서의 소득계층별 조세부담 분포는 〈表 7－4〉부터 〈表 7－11〉까지 정리되어 있다. 〈表 7－4〉과 〈表 7－5〉에는 소득계층별 특성이 나타나

〈表 7－4〉 所得階層別 特性

(單位 : %)

	총소득	근로소득	자산소득	기타소득	이전소득	자동차수	연료비	차량유지비	보험
1	0.94	0.62	2.10	0.16	15.28	3.09	2.09	2.57	1.12
2	3.49	3.59	4.57	0.50	13.60	2.48	2.48	2.12	0.70
3	5.37	5.89	2.80	1.53	9.94	5.18	5.18	4.97	2.01
4	6.61	7.55	1.69	1.65	4.92	9.45	9.45	6.55	3.01
5	7.80	8.54	3.29	3.70	8.84	7.50	7.50	5.80	3.52
6	9.15	10.03	3.79	5.31	4.32	8.83	8.83	7.60	16.47
7	10.50	10.79	7.90	10.45	4.19	10.30	10.30	17.67	18.42
8	12.51	13.00	6.94	11.34	8.96	17.59	17.59	20.09	15.43
9	15.67	15.32	11.24	19.66	15.68	13.58	13.58	12.32	27.01
10	27.95	24.66	55.68	45.69	14.27	21.98	21.98	20.31	12.30

註 :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 이전소득과 친지로부터의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資料 : 「대우패널」(93).

〈表 7-5〉 所得階層別 平均

(單位 : 대, 천원, cc)

	총소득	근로 소득	자산 소득	기타 소득	이전 소득	자동차수	연료비	차 량 유지비	보험	구입가격	배기량
1	1,787	978	145.0	34.7	629.5	0.059	110.8	110.4	32.8	8,766	1595
2	6,603	5,621	314.7	107.9	559.5	0.077	89.2	90.4	20.9	6,214	1557
3	10,160	9,226	192.3	328.6	408.8	0.141	185.6	214.5	60.7	6,313	1556
4	12,470	11,800	115.8	352.6	201.9	0.233	337.8	278.2	88.2	7,237	1583
5	14,750	13,370	226.4	794.3	363.3	0.227	268.5	248.3	103.1	6,732	1537
6	17,250	15,680	260.4	1,137	177.4	0.266	315.7	323.1	476.3	6,805	1559
7	19,890	16,930	544.7	2,247	177.6	0.284	369.4	749.9	532.3	6,498	1516
8	23,680	20,400	478.1	2,439	369.2	0.456	630.7	855.2	450.3	7,089	1549
9	29,490	23,880	769.6	4,200	641.7	0.374	483.8	526.8	777.6	7,533	1551
10	52,800	38,590	3,828.0	9,798	586.6	0.548	786.1	864.9	358.2	8,965	1598
평균	18,890	15,650	687.4	2,144	411.6	0.266	357.8	426.2	290.0	7,339	1560

註 : 1. 이전소득은 정부로부터의 이전소득과 친지로부터 이전소득을 합한 것이다.
2. 구입가격과 배기량은 자동차 1대당 평균에 해당한다.
資料 :「대우패널」(93).

있는데,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소득의 분포와 승용차 평균보유의 소득계층별 분포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예외는 가장 고소득층인 제10계층과 가장 저소득 계층인 제1계층의 자동차 보유 대수 비중의 비율이 소득의 비율보다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제10계층과 제1계층의 평균소득비율은 약 29.7인 반면 자동차 보유대수의 비율은 약 9.1에 불과하다. 이러한 양상은 승용차 연료비의 경우에도 나타나고 있다(위 두 계층간의 비율은 약 10이다). 따라서 자동차 관련 조세의 부담은 제1계층을 제외하면 비교적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리라 예상된다. 이 表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보유자동차의 배기량이 소득계층별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제1계층의 경우 자동차 1대당 배기량이 제10계층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이와 관련해서 자동차의 평균 구입가격도 제1계층과 제10계층이 제일 높다. 이러한 예상 밖의 양상은 各 所得階層間의 資產의 分布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表 7-6〉에서부터 〈表 7-9〉에는 소득계층별 재산세 납부 비중과 요구불 예금과 저축성예금의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소득에 비해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

다. 특히,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보여주는 재산세 건물분과 토지분을 보면, 제1계층의 재산세 납부액 비중이 여타의 계층에 비해 낮지 않다는 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따라서 비록 해당 연도에 잡힌 소득수준은 낮지만, 이들 중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위의 表에서 발견될 수 있는 사실이다. 이러한 양상은 저소득층(제1계층, 제2계층)의 자산소득의 비중이 중산층에 비해서 크게 낮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25]. 따라서 자동차의 취득단계와 보유단계의 조세부담 분포는 보유차량의 배기량의 차이보다는 자동차의 보급률에 더 의존하리라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表 7－10〉에 잘 나타나 있다. 구입단계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분포는 자동차 보유대수의 분포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 다만 취득단계(예를 들어 자동차 특소세) 조세분포의 경우, 자동차의 구입가격이 제1계층과 제10계층의 경우 다른 계층에 비해 높으므로 租稅負擔이 保有段階(예를 들어 자동차세)의 租稅負擔 比重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運行段階(유류부가가치세, 유류특별소비세)의 경우, 취득단계 및 보유단계의 경우보다 저소득층의 조세부담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승용차 연료비지출 비중이 자동차 보유대수의 분포보다 더 고르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운행단계의 조세가 국세인 관계로 저소득층의 자동차 관련 국세비중이 지방세에 비하여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7－6〉 財産稅(建物分)

(單位 : %)

소득계층 / 납부액	1	2	3	4	5	6	7	8	9	10	계
0 ~ 100	15.61	14.51	8.55	8.65	8.15	9.44	9.34	8.55	8.95	8.25	100
101 ~ 200	4.65	10.47	6.98	2.33	10.47	11.63	10.47	6.98	11.63	24.42	100
201 ~ 300	0.00	5.00	15.00	0.00	5.00	15.00	15.00	15.00	20.00	10.00	100
301 ~ 400	0.00	16.67	0.00	0.00	0.00	0.00	0.00	0.00	33.33	50.00	100
401 ~ 500	0.00	0.00	0.00	20.00	0.00	0.00	0.00	0.00	0.00	80.00	100
500 ~	10.00	0.00	10.00	0.00	0.00	10.00	20.00	0.00	10.00	40.00	100

資料 : 「대우패널」(93).

25) 지불능력의 척도로서의 경상소득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항상소득가설(Permanent Income Hypothesis)의 관점에서 접근이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이러한 접근은 다기간 Panel Data가 존재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본다.

〈表 7-7〉 財産稅(土地分)

(單位 : %)

소득계층 / 납부액	1	2	3	4	5	6	7	8	9	10	계
0 ~ 100	15.11	13.42	7.49	7.63	9.46	9.18	9.75	10.03	8.95	9.04	100
101 ~ 200	7.27	9.09	5.45	5.45	10.91	5.45	10.91	5.45	14.55	25.45	100
201 ~ 300	6.67	0.00	6.67	6.67	6.67	13.33	13.33	0.00	20.00	26.67	100
301 ~ 400	25.00	0.00	50.00	0.00	0.00	25.00	0.00	0.00	0.00	0.00	100
401 ~ 5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00	50.00	100
500 ~	11.11	11.11	22.22	0.00	22.22	11.11	0.00	11.11	0.00	11.11	100

資料 :「대우패널」(1993).

〈表 7-8〉 要求拂預金

(單位 : %)

소득계층 / 액수	1	2	3	4	5	6	7	8	9	10	Total
0 ~ 500	7.60	8.22	9.63	10.81	9.79	10.73	11.04	11.43	11.67	9.04	100
501 ~ 1000	3.25	7.32	9.76	8.94	8.13	7.32	9.76	8.13	16.26	21.14	100
1000 ~ 1500	0.00	3.57	14.29	0.00	3.57	10.71	7.14	17.86	21.43	21.43	100
1501 ~ 2000	3.23	6.45	3.23	0.00	0.00	16.13	6.45	12.90	9.68	41.94	100
2001 ~ 2500	0.00	0.00	0.00	0.00	0.00	50.00	0.00	25.00	0.00	25.00	100
2500 ~	8.00	6.00	6.00	6.00	6.00	4.00	4.00	10.00	18.00	34.00	100

資料 :「대우패널」(1993).

〈表 7-9〉 貯蓄性預金

(單位 : %)

소득계층 / 액수	1	2	3	4	5	6	7	8	9	10	Total
0 ~ 1000	4.19	6.67	10.45	10.22	11.10	11.75	12.11	11.22	10.87	11.40	100
1001 ~ 2000	1.43	2.86	3.57	4.29	11.43	10.00	10.71	15.71	20.71	19.29	100
2000 ~ 3000	5.56	2.78	2.78	2.78	5.56	8.33	5.56	2.78	19.44	44.44	100
3001 ~ 4000	0.00	20.00	0.00	0.00	0.00	0.00	0.00	40.00	40.00	0.00	100
4001 ~ 5000	11.11	11.11	0.00	0.00	11.11	11.11	0.00	22.22	11.11	22.22	100
5001 ~	2.70	0.00	5.41	10.81	10.81	10.81	5.41	8.11	13.51	32.43	100

資料 : 대우패널 (1993).

〈表 7－10〉 所得階層別 租稅負擔 比重

(單位 : %)

소득계층	전체	국세	부가가치세	자동차특소세	자동차특소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유류특별소비세	지방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농특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도시철도공채
1	2.74	2.94	2.59	2.61	2.61	3.09	3.09	2.47	2.32	2.57	2.57	2.59	2.57	2.26	2.26	2.63
2	2.50	2.45	2.39	2.34	2.34	2.48	2.48	2.57	2.90	2.37	2.37	2.39	2.37	2.83	2.83	2.35
3	4.92	4.99	4.50	4.61	4.61	5.18	5.18	4.82	5.31	4.46	4.46	4.50	4.46	5.17	5.17	4.59
4	8.95	9.16	8.51	8.57	8.57	9.45	9.45	8.65	8.81	8.43	8.43	8.51	8.43	8.86	8.86	8.56
5	7.60	7.50	7.71	7.33	7.33	7.50	7.50	7.75	8.31	7.64	7.64	7.71	7.64	8.15	8.15	7.36
6	9.14	8.92	9.09	9.23	9.23	8.83	8.83	9.43	9.84	9.01	9.01	9.09	9.01	9.84	9.84	9.20
7	9.74	9.92	9.23	8.84	8.84	10.29	10.29	9.49	10.26	9.23	9.23	9.23	9.23	10.01	10.01	8.99
8	16.86	17.19	6.26	16.14	16.14	17.59	17.59	16.41	17.01	16.10	16.10	16.26	16.10	16.69	16.69	16.11
9	14.02	13.83	14.37	14.74	14.74	13.57	13.57	16.29	14.05	14.41	14.41	14.37	14.41	14.19	14.19	14.50
10	23.48	23.04	25.34	25.55	25.55	21.97	21.97	24.08	21.14	25.78	25.78	25.34	25.78	21.98	21.98	25.68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대우패널」(1993)

〈表 7－11〉 所得階層別 所得對比 租稅負擔

(單位 : %)

소득계층	전체	국세	부가가치세	자동차특소세	자동차특소세교육세	유류부가가치세	유류특별소비세	지방세	면허세	취득세	등록세	등록세교육세	농특세	자동차세	자동차세교육세	도시철도공채
1	9.11	5.65	0.65	0.68	0.21	0.56	3.55	3.45	0.10	0.14	0.36	0.07	0.00014	0.97	0.29	1.51
2	2.23	1.27	0.16	0.17	0.05	0.12	0.77	0.97	0.03	0.04	0.09	0.02	0.00004	0.33	0.10	0.37
3	2.87	1.68	0.20	0.21	0.06	0.16	1.04	1.19	0.04	0.04	0.11	0.02	0.00004	0.38	0.12	0.46
4	4.25	2.51	0.31	0.32	0.10	0.25	1.55	1.73	0.05	0.07	0.17	0.03	0.00007	0.54	0.16	0.70
5	3.06	1.74	0.23	0.23	0.07	0.17	1.04	1.31	0.04	0.05	0.13	0.02	0.00005	0.42	0.13	0.51
6	3.14	1.77	0.24	0.25	0.07	0.17	1.04	1.36	0.04	0.05	0.13	0.03	0.00005	0.43	0.13	0.55
7	2.90	1.71	0.21	0.21	0.06	0.17	1.06	1.19	0.04	0.05	0.12	0.02	0.00005	0.38	0.12	0.47
8	4.22	2.48	0.31	0.32	0.10	0.24	1.52	1.73	0.05	0.07	0.17	0.03	0.00007	0.54	0.16	0.70
9	2.82	1.61	0.22	0.23	0.07	0.15	0.93	1.21	0.04	0.05	0.12	0.02	0.00005	0.36	0.11	0.50
10	2.64	1.49	0.21	0.23	0.07	0.14	0.85	1.13	0.03	0.05	0.12	0.02	0.00005	0.31	0.10	0.50
평균	3.14	1.82	0.24	0.25	0.07	0.17	0.11	1.32	0.04	0.05	0.13	0.03	0.00005	0.40	0.12	0.54

資料 :「대우패널」(1993).

2. 自動車 關聯 稅法 改正의 效果

이 절에서는 5가지의 자동차 관련 세법개정안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다음의 개정안들은 정부와 자동차 관련 업계에서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거나, 혹은 외국과의 통상협상에서 타결되어 가까운 장래에 시행될 예정인 案들이다.

(1) 제1안

－자동차 특별 소비세

배기량 2000cc이상 승용차 : 현행 25%에서 20%로 인하한다.

－자동차세

○배기량 2000cc 이상 3000cc 미만 승용차 : 현행 배기량당 410원에서 310원으로 인하.

○배기량 3000cc 이상 승용차 : 현행 배기량당 630원에서 370원으로 인하.

이 案은 1995년 9월에 열린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에서 타결된 내용이다.

(2) 제2안

－유류관련 특별소비세

○휘발유 : 현행 170%에서 195%로 인상

○경 유 : 현행 20%에서 26%로 인상

이 案은 1995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있다.

(3) 제3안

－자동차 특별소비세

○1500cc 미만 : 현행 10%에서 6%로 인하

○1500cc 이상 2000cc 미만 : 현행 15%에서 11%로 인하

○2000cc 이상 : 현행 25%에서 21.5%로 인하

이 案은 제2안에서의 유류관련 특별소비세의 상승에 따른 세수증가분 만큼의 자동차구입단계의 세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4) 제4안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경우 제3안과 동일

－유류관련 세법 개정은 제2안을 수용

이 案은 현행 자동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이 과중하여 자동차의 대중적 보급에 맞추어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교통혼잡의 감소시키기 위해서 운용단계의 조세부담을 늘리자는 논의를 반영한 것이다. 위의 세율은 자동차 관련 전체 조세수입의 변화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조정되었다.

(5) 제5안

－경유 특별 소비세를 현행 20%에서 100%로 인상

이 案은 현행 경유의 휘발유에 대한 상대가격이 지나치게 낮아서 디젤 엔진 차량의 과다사용에 의한 공해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만약 경유의 상대가격을 일시에 큰 폭으로 인상하였을 때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위의 改正案들의 效果는 〈表 7－12〉에서 〈表 7－18〉에 요약되어 있다. 한미 자동차 통상협상의 결과인 제1안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기량 2,000cc 이상의 대형차의 경우 생산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가중치가 극히 미미하고, 〈表 7－3〉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자동차 가격상승의 가격승수가 극히 낮은 데 기인한다. 제1안의 세수효과도 현재 대형차가 전체 승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으므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7－16〉에서 보듯이 대형차의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형차의 보유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감안할 경우 세수 감소는 더욱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所得階層別 租稅負擔 分布의 變化分은 제1계층과 제2계층을 제외하면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으나, 또한 이러한 조세부담의 변화분을 소득에 대한 변화비율로 환산할 경우에는 제1계층과 제2계층을 제외하고는 고르게 나타났다.

최근에 적용되기 시작한 油類 關聯 特別消費稅의 인상을 반영한 제2안의 물가에 대한 영향은 제1안에 비하여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휘발유와 경유의 물가가중치가 대형차에 비하여 높을 뿐 아니라,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승수가 승

용차의 가격승수에 비하여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경유의 경우 자동차 및 휘발유에 비하여 가격승수가 월등히 높아서 경유가격 상승의 연료가격의 상승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여타 상품의 가격상승으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효과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하겠다. 소득계층별 조세부담분포의 현행 조세부담대비 그리고 소득수준대비 변화율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이는 소득계층별 연료비 지출 분포가 소득에 비하여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며,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상승에 의한 여타부문의 지출증가가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하여 크기 때문이다. 후자의 효과는 〈表 7－3〉의 價格 乘數表와 〈表 7－19〉인 所得階層別 支出比重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유의 경우, 가격승수가 높은 식료품비, 피복 신발비, 휴가비, 연료비와 세탁기 TV등의 내구재 지출 중 저소득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행 총 조세부담과 소득의 비중에 비하여 높다. 특히 〈表 7－20〉에서 보듯이 식료품지출의 경우에는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고,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위의 결과에 상당부분 기여했었을 것으로 본다. 휘발유의 경우도 경유에 비해서는 낮지만 가격승수가 자동차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편이다. 휘발유의 가격승수의 특징은 전 부문에 걸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表 7－20〉에서 볼 수 있듯이 소비성향이 저소득층으로 갈수록 높아짐을 감안할 때, 휘발유 특소세의 인상의 부담은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전가되리라 본다. 정부의 1996 會計年度 豫算案에 따르면 추가적인 교육관련 재정을 담배소비세와 유류관련 소비세에서 충당하게 되어 있는데 제2안에서 보여진 유류관련 특소세인상의 부담이 저소득층에 상대적으로 많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제3안은 제2안에서의 유류관련 세수증가분 만큼의 자동차 특별소비세의 세수의 감소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다[26]. 이러한 자동차 구입단계의 조세감소에 따른 조세부담의 경감은 구입자동차의 배기량이 비교적 크고 구입가격이 높은 계층들(제1계층, 제4계층, 제6계층, 제9계층, 제10계층)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적인 윤곽은 이들 조세부담의 경감이 소득계층별로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6) 이 부분에서 자동차 보유단계의 조세를 감안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의 소득계층별 부담 분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表 7－12〉 油類 價格

(單位 : 원)

	현 행	1안	2안	3안	4안	5안
휘 발 유	585	585	633	585	633	585
경 유	239	239	249	239	249	377
상대가격	100 : 40	100 : 40	100 : 40	100 : 40	100 : 40	100 : 65

註 : 현행가격은 1995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資料 : 재정경제원 소비세과 자료.

〈表 7－13〉 自動車 價格變化

(單位 : %)

	1안	2안	3안	4안	5안
소형차(~ 1500cc)	－	－	－4.02	－4.02	－
중형차(1500 ~ 2000cc)	－	－	－5.71	－5.71	－
대형차(2000cc ~)	－4.90	－	－8.58	－8.58	－

資料 : 韓國自動車工業協會 (1994).

〈表 7－14〉 物價效果 (生産者物價, 消費者物價)

(單位 : %)

	1안	2안	3안	4안	5안
전 체	(－0.032, 0.000)	(0.263, 0.166)	(－0.190, －0.120)	(0.075, 0.039)	(1.859, 0.673)
자동차 관련	(－0.032, 0.000)	(0.000, 0.000)	(－0.190, －0.120)	(－0.188, －0.127)	(0.000, 0.000)
유류관련	(0.000, 0.000)	(0.263, 0.166)	(0.000, 0.000)	(0.263, －0.166)	(+1.857, 0.673)

註 : 물가효과는 해당물품의 가격변화가 물가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와 가격승수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를 합한 것이다.
資料 : 물가가중치표 1994, 「대우패널」 (1993), 산업연관표 (1990).

〈表 7－15〉 稅收 效果

(單位 : 억원)

	1안	2안	3안	4안	5안
전 체	－508	3,175	－3,330	－155	10,448
구입단계	－341	0	－3,339	－3,330	0
보유단계	－167	0	0	0	0
운용단계	0	3,175	0	3,175	10,448

資料 : 「국세통계연보」 1994, 「자동차 통계월보」(1995년 11월), 정재근(1992), 자동차공업협회(1995b), 성명재(1995), 통상산업부 자료, 행정쇄신위원회 자료.

〈表 7-16〉 車種別 自動車 關聯 租稅負擔 變化(新車, 中古車)

(單位 : %)

		세피아	소나타	그랜져
제 1 안	구 입 단 계	(0.00, 0.00)	(0.00, 0.00)	(−13.5, −13.5)
	보 유 단 계	(0.00, 0.00)	(0.00, 0.00)	(−23.8, −23.8)
	운 행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13.5, −10.1)
제 2 안	구 입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보 유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운 행 단 계	(13.74, 13.74)	(13.74, 13.74)	(13.74, 13.74)
	합 계	(5.98, 9.48)	(4.97, 8.53)	(2.30, 5.02)
제 3 안	구 입 단 계	(−15.90, −15.90)	(−19.40, −19.40)	(−23.60, −23.60)
	보 유 단 계	(0.00, 0.00)	(0.00, 0.00)	(−23.84, −23.84)
	운 행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5.60, −3.19)	(−8.06, −4.96)	(−14.67, −11.47)
제 4 안	구 입 단 계	(−15.80, −15.80)	(−19.41, −19.41)	(−23.62, −23.62)
	보 유 단 계	(0.00, 0.00)	(0.00, 0.00)	(−23.84, −23.84)
	운 행 단 계	(13.74, 13.74)	(13.74, 13.74)	(13.74, 13.74)
	합 계	(0.37, 6.29)	(−3.08, −3.57)	(−12.37, −6.45)
제 5 안	구 입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보 유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운 행 단 계	(0.00, 0.00)	(0.00, 0.00)	(0.00, 0.00)
	합 계	(0.00, 0.00)	(0.00, 0.00)	(0.00, 0.00)

資料 : 한국자동차공업협회, 『한국의 자동차 산업』(1994), 현대자동차 마케팅부 자료, 행정쇄신위원회 자료, 현진권(1994), 현진권(1995).

〈表 7－17〉 稅法改正의 所得階層別 負擔 分布(現在 租稅負擔對比)

(單位 : %)

	소득계층	1	2	3	4	5	6	7	8	9	10
제1안	조세부담	0	0	－0.37	－0.48	－0.07	－0.16	－0.20	－0.11	－0.14	－0.41
	지출비용	0	0	0	0	0	0	0	0	0	0
	계	0	0	－0.37	－0.48	－0.07	－0.16	－0.20	－0.11	－0.14	－0.41
제2안	조세부담	6.31	5.57	5.89	5.89	5.51	5.40	5.92	5.84	5.39	5.23
	지출비용	2.86	4.02	2.62	1.61	1.95	1.90	1.85	1.16	1.45	1.05
	계	9.17	9.59	8.51	7.50	7.56	7.30	7.77	7.00	6.84	6.29
제3안	조세부담	－4.88	－4.77	－4.84	－4.93	－4.90	－5.18	－4.65	－4.91	－5.39	－5.67
	지출비용	0	－0.01	0	0	0	0	－0.01	0	0	0
	계	－4.88	－4.78	－4.84	－4.93	－4.90	－5.18	－4.66	－4.91	－5.39	－5.67
제4안	조세부담	1.41	0.79	1.04	0.96	0.61	0.21	1.26	0.92	－0.0003	－0.44
	지출비용	2.88	4.02	2.62	1.60	1.94	1.97	1.85	1.16	1.4503	0.664
	계	4.29	4.81	3.66	2.56	2.65	2.18	3.11	2.08	1.45	0.62
제5안	조세부담	0	0	0	0	0	0	0	0	0	0
	지출비용	24.99	35.16	23.12	14.44	18.77	17.57	17.00	10.62	13.17	9.77
	계	24.99	35.16	23.12	14.44	18.77	17.57	17.00	10.62	13.17	9.77

註 : 경유・특별소비세의 인상에 의한 추가적인 조세부담은 지출비용의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제4안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에 따라, 자동차의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을 줄이고 교통체증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운행단계의 세수를 증가시키자는 주행세 도입의 효과를 반영한 안이다. 이러한 走行稅 導入의 負擔은 低所得層에 편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제9계층과 제10계층의 경우에는 전체적인 조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위의 제2안과 제3안에서도 보았듯이 자동차 구입단계의 조세감면의 효과가 소득계층별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운행단계의 조세증대의 부담은 저소득층에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이러한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주행세의 재검토로 귀결된다고 하겠다. 주행세의 일종인 제4안에서 보듯이 조세부담이 저소득층에게로 전가되면서 나타나는 주행세의 부정적인 측면과 교통혼잡 감소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서의 유효성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27]. 또한 유류에 총괄적으로 조세를 부과할 경우, 교통혼잡의 지역별·시간대별 차이를 고려할 때 통행료징수 등의 방법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경유·특별소비세의 대폭적인 인상의 효과를 보기 위한 제5안의 결과에 의하면, 일시적인 경유의 대폭적인 인상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소득계층별 부담분포의 측면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다. 물가효과를 보면 생산자 물가가 2% 가까이 상승하고, 조세부담 증가의 폭도 크며, 또한 부담분포의 역진성도 이 논문에서 소개된 다른 어떤 案보다도 極明하게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경유가격의 정상화는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경유의 사용비중이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한시적인 보조금 지급도 검토되어야 하겠다.

〈表 7-18〉 稅法改正의 所得階層別 負擔 分布(所得對比)

(單位 : %)

	소득계층	1	2	3	4	5	6	7	8	9	10
제1안	조세부담	0	0	-0.0004	-0.0004	-0.000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1
	지출비용	0	0	0	0	0	0	0	0	0	0
	계	0	0	-0.0004	-0.0004	-0.0001	-0.0001	-0.0001	0.0000	0.0000	-0.0001
제2안	조세부담	0.0352	0.0084	0.0058	0.0047	0.0037	0.0031	0.0029	0.0024	0.0018	0.0010
	지출비용	0.0161	0.0061	0.0026	0.0013	0.0014	0.0011	0.0010	0.0005	0.0005	0.0002
	계	0.0513	0.0145	0.0084	0.0060	0.0051	0.0042	0.0039	0.0029	0.0023	0.0012
제3안	조세부담	-0.0273	-0.0072	-0.0047	-0.0040	-0.0033	-0.0030	-0.0023	-0.0021	-0.0018	-0.0011
	지출비용	0	0	0	0	0	0	0	0	0	0
	계	-0.0273	-0.0072	-0.0047	-0.0040	-0.0033	-0.0030	-0.0023	-0.0021	-0.0018	-0.0011
제4안	조세부담	0.0073	0.0062	0.0010	0.0007	0.0004	0.0001	0.0006	0.0004	0	0
	지출비용	0.0167	0.0011	0.0026	0.0014	0.0014	0.0011	0.0009	0.0005	0.0005	0.0001
	계	0.0240	0.0073	0.0036	0.0021	0.0018	0.0012	0.0015	0.0009	0.0005	0.0001
제5안	조세부담	0	0	0	0	0	0	0	0	0	0
	지출비용	0.139	0.053	0.022	0.012	0.012	0.010	0.008	0.005	0.005	0.002
	계	0.139	0.053	0.022	0.012	0.012	0.010	0.008	0.005	0.005	0.002

註 : 경유·특별소비세의 인상에 의한 조세부담의 증가는 지출비용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

27) 운용단계 조세상승에 의한 교통혼잡의 감소효과는 휘발유 수요의 가격 탄력성으로 개략적인 윤곽을 잡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수치는 0.17로서 대단히 비탄력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사실만 보면 주행세의 효과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다.

〈表 7－19〉 所得階層別 支出比重

(單位 : %)

소득계층	식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교양,오락	외식	교육	휴가	연료비	병원비	보험료	세탁기	가스·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1	5.30	6.27	5.26	5.71	2.92	2.29	11.29	2.67	6.94	1.12	6.92	6.09
2	7.55	7.72	6.20	5.72	6.24	3.90	10.35	3.10	9.61	0.70	8.50	6.23
3	8.64	11.47	7.50	7.57	8.05	6.64	9.18	5.93	14.10	2.01	9.15	8.00
4	9.76	10.51	8.77	8.48	9.01	8.40	8.80	7.89	8.42	3.01	10.40	7.98
5	10.02	9.22	8.98	9.30	10.67	10.87	9.05	10.13	8.12	3.52	10.26	9.46
6	10.45	10.82	10.24	9.89	10.57	10.39	9.25	12.38	8.58	16.47	10.53	10.63
7	11.26	9.37	10.55	10.06	11.02	10.53	9.39	11.91	10.48	18.42	10.50	11.33
8	11.42	10.90	11.62	11.88	12.45	13.21	10.23	13.59	12.28	15.43	10.85	11.93
9	11.95	9.97	13.15	12.95	12.78	13.64	10.52	13.88	10.48	27.01	11.03	12.13
10	13.64	13.76	17.73	18.46	16.28	20.13	11.95	18.51	10.99	12.30	11.87	16.21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VTR	전축	냉장고	TV	카세트	컴퓨터	피아노	오락기	무선전화기, 휴대폰	에어컨, 진공청소기	장롱, 침대, 소파
1	4.62	4.94	8.44	7.96	5.58	3.81	2.89	1.78	4.62	3.12	5.64
2	6.67	5.17	8.85	8.53	7.25	3.18	3.42	3.16	5.29	4.43	6.14
3	8.37	7.84	9.25	8.98	9.06	7.29	2.47	4.21	5.40	3.70	7.65
4	9.52	8.69	9.71	10.20	8.57	5.44	3.28	11.58	10.25	7.63	7.34
5	10.29	9.52	9.79	9.84	9.78	7.06	11.07	9.64	7.89	6.94	9.02
6	11.34	11.24	9.93	9.62	9.93	10.29	13.33	14.61	11.30	12.55	9.77
7	12.24	11.13	10.12	10.51	11.81	12.64	11.34	12.66	13.25	9.88	10.99
8	11.72	13.05	10.76	10.62	11.81	15.25	10.74	15.72	13.20	13.54	12.71
9	11.63	13.19	10.81	11.45	12.89	14.40	18.49	12.51	12.24	15.19	12.51
10	13.59	15.23	12.36	12.26	13.33	20.64	22.99	14.14	16.56	23.02	18.23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資料 :「대우패널」(1993).

〈表 7-20〉 所得對比 支出比率

(單位 : %)

소득계층	식품비	주거비	피복 및 신발	교양, 오락	외식	교육	휴가	연료비	병원비	보험료	세탁기	가스·전자렌지 가스오븐렌지
1	96.76	41.22	25.82	22.65	26.60	4.73	26.72	1.48	17.23	1.83	2.81	1.45
2	37.32	13.71	8.24	6.13	15.37	2.18	6.63	0.47	6.45	0.31	0.93	0.40
3	27.74	13.25	6.47	5.27	12.88	2.41	3.82	0.58	6.15	0.58	0.65	0.34
4	25.48	9.86	6.15	4.80	11.73	2.49	2.98	0.63	2.99	0.70	0.60	0.27
5	22.15	7.33	5.34	4.46	11.76	2.72	2.59	0.68	2.44	0.69	0.50	0.27
6	19.71	7.34	5.19	4.05	9.94	2.22	2.26	0.71	2.20	2.77	0.44	0.26
7	18.49	5.53	4.66	3.59	9.03	1.96	1.99	0.59	2.34	2.70	0.38	0.24
8	15.74	5.41	4.31	3.56	8.56	2.06	1.83	0.57	2.30	1.90	0.33	0.21
9	13.15	3.95	3.89	3.09	7.01	1.70	1.50	0.46	1.57	2.65	0.27	0.17
10	8.42	3.05	2.94	2.47	5.01	1.41	0.96	0.35	0.92	0.68	0.16	0.13
전체	17.25	6.20	4.64	3.75	8.60	1.95	2.23	0.52	2.34	1.54	0.38	0.43

	VTR	전축	냉장고	TV	카세트	컴퓨터	피아노	오락기	무선전화기, 휴대폰	에어컨, 진공청소기	장롱, 침대, 소파
1	1.38	1.61	3.54	3.61	0.37	1.07	0.40	0.04	0.85	0.44	4.03
2	0.54	0.45	1.01	1.05	0.13	0.24	0.13	0.02	0.26	0.17	1.19
3	0.44	0.45	0.68	0.71	0.10	0.36	0.06	0.02	0.17	0.09	0.96
4	0.41	0.40	0.58	0.66	0.08	0.22	0.07	0.04	0.27	0.15	0.75
5	0.37	0.37	0.50	0.54	0.08	0.24	0.19	0.03	0.17	0.12	0.78
6	0.35	0.38	0.43	0.45	0.07	0.30	0.19	0.04	0.21	0.18	0.72
7	0.33	0.32	0.38	0.43	0.07	0.32	0.14	0.03	0.22	0.12	0.70
8	0.26	0.32	0.34	0.36	0.06	0.32	0.11	0.03	0.18	0.14	0.68
9	0.21	0.26	0.27	0.31	0.05	0.24	0.16	0.02	0.13	0.13	0.54
10	0.14	0.17	0.18	0.19	0.03	0.20	0.11	0.01	0.10	0.11	0.44
전체	0.28	0.31	0.40	0.42	0.06	0.27	0.13	0.02	0.17	0.13	0.67

資料 :「대우패널」(1993).

V. 結　　論

본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통계자료, 특히 「대우패널」을 이용하여 자동차 관련 세법 개정의 효과를 소득계층별 부담분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실증연구에 의하면 현행 자동차 관련 세법하에서 승용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은 최하위 계층을 제외하면 대체로 비례적이며, 운행단계의 경우는 구입 및 보유단계의 조세부담에 비하여 저소득층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법개정의 부담분포는 거의 비례적인 반면, 운용단계의 세법개정의 부담분포는 역진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경유의 일시적인 그리고 대폭적인 가격인상의 부담분포가 극단적으로 역진적인 형태를 띠는 것도 목격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추출되는 政策的인 含意는 走行稅 導入의 再檢討와 輕油價格의 段階的인 引上이었다.

또한 최근의 한미통상협상에도 볼 수 있듯이, 자동차 구입 및 보유단계의 세법이 협상의 대상이 되었을 때 어떤 세목을 대상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냐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 경우, 소득계층별 부담분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자동차 특별소비세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오히려 稅源의 中央 및 地方의 再配分 등 다른 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도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로, 자동차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추정치의 개선이 필요하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자동차의 차급별 가격탄력성 및 수요의 대체탄력성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선 각 차급별 가격탄력성이 동일하다고 가정했으나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해서는 향후 이점의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두번째로, 「대우패널」의 특성에서 기인한 문제점이다. 「대우패널」은 자동차 부문의 설문조사는 국내의 어느 데이터베이스보다 엄밀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나, 餘他 耐久財와 非耐久財의 경우는 부문의 분류의 측면에서 미비한 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보다 細分된 支出項目의 區分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미비점의 보완을 통해 향후 자동차 관련 세법의 여타 지출 수준의 변화(가격승수를 통한)에 대한 보다 엄밀한 고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년간 패널 데이터베이스의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승용차 구입단계의 조세부담을 측정하기 위해서 이 단계의 조세 납부액을 자동차의 평균 보유기간으로 나누어 이것을 年平均 租稅負擔額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소득계층별로 자동차 보유기간이 다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보다 엄밀한 연구를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의 패널 데이터 축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參考文獻

姜光夏,『產業聯關分析論』, 比奉出版社, 1991.

건설교통부,『자동차 통계표』, 1995. 8.

經濟企劃院 物價政策局,『物價加重値表』, 1994.

國稅廳,『國稅統計年報』, 1994.

內務部,『地方稅政年鑑』, 1993. 12.

대우경제연구소,『1993년 한국가구패널조사(KHPS)』, 1994. 8.

成明宰,『石油類課稅體系의 改善方向』, 政策報告書 95－06, 韓國租稅硏究院, 1995. 6.

______,『個別消費稅制의 政策課題와 改善方向』, 硏究報告書 93－08, 韓國租稅硏究院, 1993. 12.

에너지경제연구소,『에너지통계연보』, 1994.

鄭在建,『國內自動車 需要分析과 展望』, 硏究報告 256, 產業硏究院, 1992. 10.

韓國銀行,『1990년 산업연관표 작성보고서』, 1993.

韓國自動車工業協會,『自動車統計年報』, 1995.

______,『95년 5월말 자동차 등록현황』, 1995. 6.

______,『1994 韓國의 自動車 產業』, 1994.

玄鎭權,「시장가격자료를 사용한 운수자산의 경제적 감가상각률 측정」,『재정금융연구』, 제1권 제1호, 한국조세연구원, 1994. 12, pp. 105～136.

______,「운수자산의 생존형태분석」, 미발표자료, 한국조세연구원, 1995.

〈附 錄〉

이 부록에서는 가격승수를 구하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한다. 각 산업의 생산물의 가치는 생산에 투입된 중간생산물의 가치와 부가가치의 합계와 일치한다는 항등관계는 아래의 식으로 표현된다.

$$P_j X_j = \sum_i P_i X_{ij} + V_j X_j \qquad (j=1, 2, \cdots, n) \cdots\cdots (1)$$

이때, P_j : j재의 가격

X_j : j재의 총생산

V_j : j부문에서의 부가가치율

X_{ij} : j부문에 사용되는 i재의 양

a_{ij} : j부문 제품 한 단위 생산에 사용되는 i재의 투입량 (투입계수)

투입계수의 정의에 의하여 $X_{ij} = a_{ij} X_j$의 관계를 가지므로 式(1)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_j = \sum_i P_i a_{ij} + V_j \cdots\cdots (2)$$

만일 $P = \begin{bmatrix} P_1 \\ \vdots \\ P_n \end{bmatrix}$ $\qquad A = \begin{bmatrix} a_{11} & a_{12} & \cdots & a_{1n} \\ a_{21} & a_{22} & \cdots & a_{2n} \\ \vdots & \vdots & & \vdots \\ a_{n1} & a_{n2} & \cdots & a_{nn} \end{bmatrix}$

$V = \begin{bmatrix} V_1 \\ V_2 \\ \vdots \\ V_n \end{bmatrix}$ 로 정의하면, 式(2)는 아래 式(3)과 같이 표현된다.

$$P = A^t P + V \qquad (A^t\text{은 A의 transpose}) \cdots\cdots (3)$$

그리고 균형가격은 $P^* = (I - A^t)^{-1} V$로 표현된다.

만일 $P_{i+1}, \cdots, P_{i+k}$ 의 변화가 $P_1, \cdots, P_i, P_{i+k+1}, \cdots, P_n$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式(3)을 전미분하면, 아래 式(4)를 유도할 수 있다.

$$dP_j = \sum_i dP_i \, a_{ij} + dV_j \ (j=1, \cdots, n) \cdots\cdots (4)$$

만일 부가가치율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dP_j = \sum_i dP_i \, a_{ij}$ $(j=1, \cdots, n)$의 관계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를 모든 부문의 경우와 함께 생각하면, 아래의 관계를 유도할 수 있다.

$$\begin{bmatrix} dP_1 \\ dP_2 \\ \vdots \\ dP_i \\ dP_{i+k+1} \\ \vdots \\ dP_n \end{bmatrix} = \begin{bmatrix} a_{11} & \cdots & a_{i1} & a_{i+k+1,1} & \cdots & a_{n1}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a_{1i} & \cdots & a_{ii} & a_{i+k+1,i} & \cdots & a_{ni} \\ a_{1,i+k+1} & & a_{i,j+k+1} & a_{i+k+1,j+k+1} & \cdots & a_{n,i+k+1}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a_{1n} & \cdots & a_{i,n} & a_{i+k+1,n} & \cdots & a_{nn} \end{bmatrix} \begin{bmatrix} dP_1 \\ dP_2 \\ \vdots \\ dP_i \\ dP_{i+k+1} \\ \vdots \\ dP_n \end{bmatrix}$$

$$+ \begin{bmatrix} a_{i+1,1} & \cdots & a_{i+k,1} \\ a_{i+1,2} & \cdots & a_{i+k,2} \\ \vdots & & \vdots \\ a_{i+1,n} & \cdots & a_{i+k,n} \end{bmatrix} \begin{bmatrix} dP_{i+1} \\ \vdots \\ dP_{i+k} \end{bmatrix}$$

이때 여러 행렬들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면, $P_{i+1}, \cdots, P_{i+k}$ 의 변화가 $P_1, \cdots, P_i, P_{i+k+1}, \cdots, P_n$에 미치는 영향은 아래 式(5)로 나타낼 수 있다.

$$A^{ik} = \begin{bmatrix} a_{11} & \cdots & a_{i1} & a_{i+k+1,1} & \cdots & a_{n1}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a_{1i} & \cdots & a_{ii} & a_{i+k+1,i} & \cdots & a_{ni} \\ a_{1i+k+1} & & a_{i,j+k+1} & a_{i+k+1,j+k+1} & \cdots & a_{ni+k+1} \\ \vdots & & \vdots & \vdots & & \vdots \\ a_{1n} & \cdots & a_{i,n} & a_{i+k+1,j+k+1} & \cdots & a_{nn} \end{bmatrix} \quad P^{ik} = \begin{bmatrix} dP_{i+1} \\ \vdots \\ dP_{i+k} \end{bmatrix}$$

$$B^{ik} = \begin{bmatrix} a_{i+1,1} & \cdots & a_{i+k,1} \\ a_{i+1,2} & \cdots & a_{i+k,2} \\ \vdots & & \vdots \\ a_{i+1,n} & \cdots & a_{i+k,n} \end{bmatrix} \qquad \overline{P}^{ik} = \begin{bmatrix} dP_1 \\ dP_2 \\ \vdots \\ dP_i \\ dP_{i+k+1} \\ \vdots \\ dP_n \end{bmatrix}$$

$$\overline{P}^{ik} = [\, I_{n-k} - A^{ik} \,]^{-1} B^{ik} P^{ik} \quad \cdots\cdots (5)$$

그리고, 만일 투입산출표가 금액단위로 표시되었다면, 균형가격들이 모두 1이므로[28] $[I_{n-k} - A^{ik}]^{-1} B^{ik}$는 $P_{i+1}, \cdots, P_{i+k}$의 가격 변화에 따른 $P_1, \cdots, P_i, P_{i+k+1}, \cdots, P_n$의 가격변화율을 나타내는 가격승수의 의미를 가진다.

28) 姜光夏(1991) 참조.

土地所有의 偏重實態와 綜合土地稅의 稅負擔 分析

玄 鎭 權[1]

目 次

* 본 논문은 1995년 한국조세학회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하였음.

1) 本院 硏究委員

Ⅰ. 序 論

土地偏重이 심각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土地偏重 問題를 부분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 토지관련 세제라고 할 수 있다. 토지편중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가 매우 한정되어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주로 非公式的인 資料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편중에 대한 실증적 결과는 土地公概念委員會가 발표한 1988년의 자료로서 民有地 전체토지에 대한 편중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다. 그러나 이 자료가 갖는 단점은 토지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면적에 대비한 편중의 실태를 보여준 것이다. 토지는 지역에 따라 가격의 편차가 심하므로 단순히 面積對比의 偏重分析은 현실을 정확히 설명한다고 할 수 없다.

토지편중에 대한 자료가 이처럼 한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토지관련 세제의 계층간 세부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활발하지 못하였으며, 대표적인 연구로 金明淑(1987, 1994), 張五鉉(1992)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실증연구들은 『都市家計年報』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있으나, 이 자료는 토지관련 세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토지 관련세의 계층간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토지와 관련한 대표적인 세제로 1990년에 도입된 綜合土地稅를 들 수 있으며, 이 세제는 토지 소유자의 모든 토지를 합산하여 累進課稅를 하므로 토지의 投機的 需要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입안되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과표가 公示地價의 30% 이내 수준에서 부과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土地의 偏重實態를 파악하고 종합토지세의 계층간 세부담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內務部의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표본자료이다. 이 자료의 장점은 각 필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자료와 연결하여 공시지가를 대비한 토지편중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토지편중은 심하며, 개인에 비해 법인의 편중현상이 훨씬

심각하게 나타났다. 또한 종합토지세는 명목적으로는 累進的 構造를 하고 있으나, 실제 계층간 세부담은 逆進的 特性을 일부 보여준다. 본 연구의 기여도는 토지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공시지가를 대비하여 토지편중의 실태를 보여주고, 종합토지세의 계층간 세부담을 측정하였다는 데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Ⅱ장에서 본 연구과 관련한 기존연구를 고찰하고 본 연구와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제Ⅲ장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자료의 선정 및 분석과정을 보여주고, 제Ⅳ장은 토지편중과 종합토지세의 계층간 세부담에 대한 실증결과를 보여주고, 마지막으로 제Ⅴ장에서는 본 연구를 요약하고 정책시사성을 살펴본다.

Ⅱ. 土地偏重과 綜合土地稅

1. 土地偏重 硏究

토지편중에 대한 실태는 많은 사회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토지편중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매우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실증적 연구들도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土地偏重 現象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토지편중에 대한 토론은 概略的 資料에 의존한 直觀的 論議가 대부분이었다.

토지편중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실증적 분석결과로 土地公概念硏究委員會(1989)에서 처음으로 제시되었다[2]. 이 결과는 1988년 개인별 토지자료를 이용하여 토지편중의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이 자료는 개인별 자료를 통한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토지편중 현상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이 있다. 이 자료의 문제점은 토지편중의 실태분석에서 토지면적을 사용하였다. 토지는 특성상 位置的 要素가 토지가격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므로 면적이 작다고

2) 토지공개념위원회의 결과는 康奉均(1989)에서 많이 인용하여 보여준다.

하더라도 대도시 도심에 위치한 토지는 농촌에 있는 넓은 면적의 토지보다 가격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토지편중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거래되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토지의 시장가격에 가장 근접하는 것으로 標準地의 標本을 통해 지가를 산정한 공시지가가 있다. 공시지가 자료는 현실화율이 비교적 높으므로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정될 전망이다[3].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이상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료상 몇 가지 갖추어야 할 요소가 있다. 첫째, 土地所有의 把握은 개인단위보다는 가구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구 내에 같은 가구원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 소유는 같은 단위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별 분석은 가구별 분석보다 토지편중 현실을 완화시키는 결과를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토지와 같은 富의 偏重은 소득의 편중현상과 연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토지편중을 소득편중과 별개로 분석할 경우 개인의 소득형태가 여러 가지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 예를 들면 소득이 전혀 없으나 토지를 많이 보유해 결과적으로 상위층 그룹에 속하고 있을 때, 이 개인의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분석할 때는 중류층 계층이지만, 토지만을 사용하여 분석할 때는 상위층으로 구분될 위험성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과 부를 모두 고려하여 종합적인 편중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토지를 포함한 個人別 資料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료의 전제조건은 토지의 편중현상을 이상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이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자료는 없으므로 실증적 연구에 한계가 있다.

토지편중에 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자료로 權純源 外(1992)에서 사용한 KDI 자료를 들 수 있다[4]. 이 자료는 1988년에 시행한 우리나라 가구별 표본조사 자료로서 所得과 富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귀중한 자료이며 토지는 實質資產의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이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權純源 外(1992)는 우리나라

---

3) 종합토지세의 과표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한 연구로 孫在英(1993)이 있으며, 이 연구는 공시지가 표준지 자료를 사용하여 현행과표의 현실화율과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종합토지세의 과표로 공시지가를 사용할 때의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은 李性旭·玄鎭權(1993)을 참조하기 바란다.

4) 權純源 外(1992)에서 사용한 이 자료를 일반적으로 KDI 자료로 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도 이에 따라 KDI 자료라고 한다.

에서 所得과 富의 所有偏重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보여준다. KDI 자료가 가지는 의의는 개별가구의 소득과 부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데 있으며, 이는 소득과 부를 포함한 편중실태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5]. KDI 자료가 소득분배 관련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하였지만 조사대상 선정에서 최고 소득계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는 표본 조사자료가 가지는 일반적인 문제점이며 KDI 자료만이 가지는 문제점은 아니므로, Leipziger et al.(1992)에서는 최고 소득계층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여러 가지 統計的 技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있다.

2. 綜合土地稅의 稅負擔 硏究

종합토지세는 1990년에 도입되었는데 이전의 土地分 財產稅와 土地超過保有稅를 종합토지세로 일원화하였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토지를 토지 용도별로 綜合合算對象, 別途合算對象 및 分離課稅對象으로 구분하고 개인별로 소유한 토지를 합산하여 累進課稅를 하고 있다. 종합토지세는 遊休土地 및 非業務用土地는 종합합산대상토지로 重課稅하고, 기준면적 이내의 영업용 건축물 부속토지는 別途合算對象土地로 輕課稅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6].

종합토지세가 도입된 기본목적이 토지편중이 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의 수익률을 낮추어 토지에 대한 假需要를 억제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종합토지세는 행정비용이 엄청나게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人別로 累進課稅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종합토지세가 토지 가수요를 억제하는 데 얼마나 유효했는가에 대한 실증결과는 없으나, 이론적으로는 누진구조하에서 토지에 대한 초과수요는 감소한다. 그러나 현재 종합토지세가 가지고 있는 累進度가 어느 정도 정책목표에 유효했는가는 구체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이 요구되는 만큼 검증되어 있는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5) KDI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조사표는 權純源 外(1992)에서 자세히 보여주고 있다.
6) 종합토지세의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대한 세율의 비합리적 체계에 대한 비판은 金正浩(1991)에 잘 설명되어 있다.

租稅歸着(tax incidence)에 관한 많은 실증적 연구는 주로 所得階層別로 稅負擔程度를 측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토지세의 경우 토지세가 누구에게 귀착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이론은 전통적 견해와 새로운 견해로 나눌 수 있다[7]. 두 가지 이론은 모두 토지세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귀착된다고 설명하므로 建物分 財産稅에 비해 비교적 논란의 여지가 적다. 토지세의 세부담에 대한 실증적 분석으로 대표적인 연구가 金明淑(1987, 1994), 張五鉉(1992)이 있다. 이들 연구들은 모두 통계청에서 발간하는 『都市家計年報』를 사용하여 소득계층별 소득과 재산세액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도시가계연보』는 도시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토지관련 세액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토지세의 세부담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들 연구들은 소득계층에 따라 토지세 부담이 누진적이라는 결론을 추론할 뿐 토지세의 계층간 세부담에 대한 구체적 실태를 보여줄 수 없었다.

종합토지세 정책을 多角度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소득계층별 종합토지세 부담정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종합토지세에 관한 연구는 집계된 자료를 사용하여 개괄적으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정책대안에 대한 模擬實驗을 한 實證硏究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내무부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模擬政策實驗을 한 연구로 李性旭 · 玄鎭權(1993)을 들 수 있으며 個別匹地의 公示地價와 綜合土地稅를 연계하여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李性旭 · 玄鎭權(1993)과 같은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소득과 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하기에 이상적인 자료는 아니지만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별 자료이고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토지편중의 실태와 종합토지세의 계층간 세부담 분석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 특히 토지의 공시지가를 사용한 토지편중의 분석은 우리나라에서 富의 分配 연구가 미진한 만큼 실증연구에 커다란 시사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

7) 재산세의 두 가지 이론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Mair(1991)를 참조하기 바란다.

Ⅲ. 資料說明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 전체 토지에서 추출한 표본이다. 전체 종합토지세 모집단 자료는 개인과 법인별로 나누어 각각 표본을 추출하였다. 標本 抽出方法은 높은 과표단계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분석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 課標段階別로 서로 다른 표본수를 추출하는 層化 無作爲 抽出方法(stratefied random sample)을 사용하였다. 層化 無作爲 抽出方法을 통하여 낮은 과표의 토지에 대해서는 낮은 비율을 추출하고 높은 과표의 토지에 대해서는 표본수를 증가시켰다. 특히 최고 과표구간의 토지에 대해서는 全數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전체 토지이지만 낮은 과표에 있는 토지는 비교적 편차가 작으나 과표가 높을수록 편차가 크므로 單純 無作爲 抽出(simple random sample)을 통한 표본은 높은 과표에 있는 표본토지가 모집단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의 구체적 분포와 母集團化를 시키는 加重値의 분포를 개인과 법인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母集團化 方法

〈表 8－1〉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표단계별 전체분포를 보여준다. 1993년에 종합토지세 대상토지를 가진 개인은 839만 9,472명이며 이중 과표단계가 1천만원 이하인 토지를 가진 개인은 전체의 58.7%로 전체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과표가 증가할수록 해당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수는 감소하여 1억원 이상의 과표를 가진 개인은 전체의 약 3%만을 차지하고 있다. 과표가 1천만원 이하인 토지는 비교적 편차가 적으나 전체의 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과표가 1억원에서 300억원 사이의 토지를 가진 개인은 오로지 전체의 약 3%만을 차지하므로 單純 無作爲 抽出을 통한 표본은 1억원 이상 과표의 토지를 가진 계층에 대해서는

전체 모집단을 반영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과표에 따라 서로 다른 표본수를 추출하여 모집단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다. 즉 과표구간이 좁고 낮은 수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작은 표본수를 추출하고 과표구간이 넓고 높은 수준에 있는 계층에 대해서는 많은 표본수를 추출하였다.

〈表 8-1〉 1993年 綜合土地稅 土地의 課標段階別 分布

(單位 : 명, %)

과표단계	인 원	비 율	누적비율
1천만원 이하	4,933,505	58.7	58.7
2천만원 이하	1,610,175	19.2	77.9
3천만원 이하	729,703	8.7	86.6
4천만원 이하	358,105	4.3	90.9
5천만원 이하	197,992	2.4	93.3
6천만원 이하	123,340	1.5	94.8
7천만원 이하	83,266	1.0	95.8
8천만원 이하	59,595	0.7	96.5
9천만원 이하	44,163	0.5	97.0
1억원 이하	34,643	0.4	97.4
2억원 이하	140,611	1.7	99.1
3억원 이하	38,609	0.5	99.6
4억원 이하	16,683	0.2	99.8
5억원 이하	9,071	0.1	99.9
6억원 이하	5,269	0.1	99.9
7억원 이하	3,579	0.0	99.9
8억원 이하	2,344	0.0	99.9
9억원 이하	1,737	0.0	99.9
10억원 이하	1,283	0.0	99.9
20억원 이하	4,396	0.1	99.9
30억원 이하	838	0.0	99.9
40억원 이하	267	0.0	99.9
50억원 이하	109	0.0	99.9
60억원 이하	57	0.0	99.9
70억원 이하	41	0.0	99.9
80억원 이하	24	0.0	99.9
90억원 이하	11	0.0	99.9
100억원 이하	13	0.0	99.9
200억원 이하	38	0.0	99.9
300억원 이하	5	0.0	100.0
합 계	8,399,472	100	1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을 모집단에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모집단의 특성을 반영하여 加重値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모집단화를 위한 방법으로 모집단의 두 가지 특성, 즉 課標區間別 分布와 土地所有者의 나이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과표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른 특성도 반영한 이유는 본 표본자료를 추출할 때 나이계층에 따른 일정률의 규칙성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즉 나이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추출하였을 경우에는 나이에 따른 모집단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특정 나이계층에 대해 일정률의 표본을 선정하였으므로 나이에 대한 모집단화를 동시에 고려하지 않고서는 표본은 偏倚된 자료가 된다. 그러므로 본 자료는 과표단계와 나이의 두 가지 특성에 대해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 즉 과표단계와 나이에 따른 모집단 수를 표본수로 나눈 값인 加重値를 사용하여 각 표본이 전체 모집단을 대표하는 정도를 달리하였다. 종합토지세 대상토지를 가진 개인의 총 표본수는 1만 5,652개이며 각 가중치를 통하여 전체 839만 9,469명을 대표하게 되며 표본수는 모집단의 0.19%를 차지한다. 가중치의 종류는 총 157개이며 가장 낮은 가중치는 1이며 가장 높은 가중치는 1만 2,773.9로 큰 폭의 차이를 보여준다[8].

종합토지세 대상토지를 소유한 법인수는 총 13만 3,419개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수는 1,719개이며 이는 모집단의 1.29%에 해당한다. 각 과표단계는 서로 다른 가중치를 가지게 되며, 이 加重値는 母集團과 標本의 分布에 따라 정해진다. 가중치 종류는 총 38개이며 최고 가중치는 279.1이며 최저 가중치는 1을 보여준다. 과표가 낮을수록 모집단 수는 큰 반면 표본 수는 작으므로 과표가 낮을수록 가중치는 높은 값을 보여줌을 알 수 있다[9].

2. 標本 推定値와 母集團의 比較

표본자료를 모집단화시키기 위한 가중치를 사용한 推定値를 모집단과 비교하여 본 표본자료의 정확도를 검증하여 본다. 〈表 8-2〉는 개인별 표본자료에 대해 각 해당토지의 總面積, 總課標, 總稅額을 모집단과 비교한 결과이다. 종합토지세 대상토

8) 과표와 나이에 따른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附表 8-1〉을 참조하기 바란다.
9) 법인의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附表 8-2〉를 참조하기 바란다.

지의 총면적을 통해 살펴보면 표본을 사용한 추정치는 4만 27km²이며, 모집단은 5만 6,705km²로 본 표본자료가 29.4% 과소추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總課標는 표본자료가 169조 2천억원이며 모집단이 164조 8천억원으로 2.7% 過大評價되었다. 또한 總稅額은 표본자료가 5,300억원이며 모집단이 5,115억원으로 3.6% 過大評價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총면적을 통한 추정치가 총과표나 총세액을 통한 추정치보다 정확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본 표본자료가 과표를 대상으로 모집단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는 총면적을 포함한 모든 중요한 변수들에 대해 모집단화할 필요가 있지만 모집단에 대한 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표본은 과표에 대해서만 모집단화를 시도하였다. 본 표본에서는 課標가 본 연구목적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이므로 분석내용에 커다란 偏倚는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表 8-2〉 母集團과 標本 推定値의 比較 : 個人

	표본(A)	모집단(B)	(A−B)/B(%)
종합토지세 대상토지			
총면적(㎢)	40,027	56,705	−29.4
총과표(조원)	169.2	164.8	2.7
총세액(10억원)	530.0	511.5	3.6

〈表 8-3〉은 법인별 해당토지의 표본자료를 통한 추정치를 모집단과 비교한 결과이다. 먼저 총면적을 통해 살펴보면 표본이 모집단에 비해 46.4% 과소추정되었다. 반면 총과표의 경우는 약 4% 과대평가되었으며, 총세액의 경우는 8.7% 과소추정되었다. 총과표의 추정치가 다른 추정치에 비해 正確度가 높은 것은 위의 개인별 추정치와 같은 이유이다.

〈表 8-3〉 母集團과 標本 推定値의 比較 : 法人

	표본(A)	모집단(B)	(A−B)/B(%)
종합토지세 대상토지			
총면적(㎢)	4,113	7,667	−46.4
총과표(조원)	40.2	38.7	3.9
총세액(10억원)	341.8	374.3	− 8.7

Ⅳ. 分析結果

본 연구에서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土地所有의 偏重現象을 분석하였다. 토지가격은 公示地價를 사용하고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각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합산하였다. 그러므로 각 개인 및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총 공시지가를 土地偏重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개인 및 법인별 총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전체 모집단을 階層別 10分位로 나누어 각 계층이 전체토지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이때 토지의 소유는 특히 최고계층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정보를 세밀히 반영하기 위해 최고계층인 상위 5%의 경우는 1% 간격으로 세분화하여 所有實態를 구하고, 상위 6~10%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을 구하였다.

個人別 土地偏重을 분석하기 위해 두 가지 경우의 모집단을 정의하였다. 첫째, 토지를 가진 개인만을 모집단으로 사용할 때 모집단의 수는 1993년 기준으로 838만 2,337명이며 이들 간의 土地偏重을 분석하였다. 둘째, 土地偏重은 토지를 전혀 소유하지 않는 계층을 포함하여야 하므로,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모집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점은 전체 국민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하는 것이다. 즉 20세 이상 성인을 모집단으로 하느냐 혹은 전체 가구수를 모집단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가 個人別 資料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는 계층을 반영하기 위해 모집단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토지가 상당한 高價이므로 가구단위로 구입하고 20대 성인이 독립적으로 구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므로 전체 가구수를 사용하였다. 물론 여기서 묵시적인 가정은 한 가구에서 한 사람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를 추정하기 위해 인구센서스의 1985년과 1990년 전체 가구수에서 年間 增加數를 구하고 이를 1993년 가구수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였다[10]. 그 결과

---

[10] 참고로 1985년과 1990년 우리나라 가구수는 957만 1,361가구와 1,135만 4,540가구이며, 매년 일정한 가구수로 증가한다고 가정할 때 연간 35만 6,635가구가 증가하게 된다.

1993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242만 4,447가구이며 토지를 보유한 個人數인 838만 2,337명과 비교할 때 총 32.5%가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가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992년 건설부에서 발표한 주택보급률이 76%이므로 현실적으로 커다란 무리가 없는 가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1. 土地所有偏重의 實態

〈表 8－4〉는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총 규모를 公示地價와 面積을 사용하여 구한 결과이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볼 때 총 규모는 974조원이며 개인이 이 중 80%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이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이를 면적으로 계산하면 총 규모가 6만 6,068km²이며 이 가운데 개인이 88%, 법인이 1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8－4〉 綜合土地稅 對象土地의 規模

(單位 : 조원, km², %)

	총합계	개인		법인	
		합계	비율	합계	비율
공시지가	974	779.2	80	194.8	20
면　　적	66,068	58,088	88	7,980	12

〈表 8－4〉에서 보여준 1993년 綜合土地稅 대상 전체토지가 個人別 그리고 法人別로 어떻게 분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면, 〈表 8－5〉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974조원 규모의 전체 토지가 토지 소유자들 간에 분배되어 있는 실태를 보여준다. 분석을 위한 계층구분은 公示地價를 對比하였으며, 각 계층이 소유한 土地面積을 全體 面積과 對比하여 계산하였다. 그러므로 공시지가가 높다고 해서 면적도 넓은 것이 아니므로 공시지가를 대비로 한 각 계층의 소유 토지면적의 비율은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여

11) 공시지가 총액 중에서 개인과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정보는 없으므로 총 과표 중에서 개인과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을 대신 사용하여 구하였다.

준다. 먼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토지를 가장 많이 가진 계층인 전체의 1%가 전체 토지의 23.7%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상위 5%의 계층이 전체 토지의 44.2%를 차지하고, 상위 10% 계층이 전체 토지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하위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비중을 보면 하위 50%가 전체 토지의 약 10%를 차지하고 최하위 계층 10%가 전체 토지의 0.3%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土地所有의 不均衡度를 측정한 결과 0.8032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表 8－5〉 土地偏重의 實態 : 個人

(單位 : 천원, m^2, %)

공시지가대비 계층	공시지가				면적		
	평균치	최소값	비율	누적비율	평균치	비율	누적비율
상위 1%	2,339,747	992,331	23.7	23.7	1,426	12.9	12.9
1 ~ 2%	756,186	607,526	7.7	31.4	9,163	6.1	19.0
2 ~ 3%	523,104	453,850	5.3	36.7	8,839	4.4	23.3
3 ~ 4%	405,608	364,316	4.1	40.8	7,686	3.7	27.0
4 ~ 5%	332,523	305,787	3.4	44.2	5,731	3.3	30.3
6 ~ 10%	230,057	180,000	11.7	55.9	2,165	12.7	43.1
11 ~ 20%	136,974	107,876	13.9	69.7	6,219	13.0	56.1
21 ~ 30%	89,612	73,738	9.1	78.8	3,541	7.4	63.5
31 ~ 40%	62,952	53,370	6.4	85.2	2,600	5.4	68.9
41 ~ 50%	46,281	40,521	4.7	89.9	2,099	4.4	73.3
51 ~ 60%	36,631	32,637	3.7	93.6	1,809	3.8	77.1
61 ~ 70%	28,186	24,090	2.9	96.5	1,742	3.6	80.8
71 ~ 80%	19,756	15,036	2.0	98.5	3,302	6.9	87.7
81 ~ 90%	11,525	7,481	1.2	99.7	3,968	8.3	96.0
91 ~ 100%	3,291	32	0.3	100.0	1,916	4.0	100.0
지니계수	0.8032						

계층별 토지소유 현황을 토지면적으로 그 형태를 살펴보면, 최상위 1%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12.9%이다. 이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의 公示地價 對比로는 23.7%임에도 불구하고 面積 對比로는 12.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최상위 1%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는 대체로 단위가격인 높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상위 5%가 차지하는 토지면적이 전체의 30.3%를 나타내고,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43%를 나타내어 같은 형태를 보여준다. 반면 하위 50%가 차지하는 토지면적은 전체의 27%이며, 최하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은 4%로 나타나 공시지가로 대비할 때보다 점유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위계층이 소유한 토지의 단위 가격이 비교적 낮은 것임을 보여준다.

〈表 8-6〉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구를 포함하여 土地偏重 現象을 분석한 결과이다.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이 전체의 32%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하위계층은 이 32% 계층을 포함하게 된다. 階層別 土地所有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최고 1%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비율은 약 28%이며, 상위 5% 계층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 계층이 전체의 63%를 차지하고 있어 〈表 8-5〉에서 보여준 결과보다 土地偏重 實態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계층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를 하위계층을 통하여 살펴보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즉 하위계층 50%가 차지하는 전체토지에 대한 비율은 단지 2.6%로 나타났다.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土地所有의 不均衡度를 측정한 결과 0.860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表 8-6〉 土地偏重의 實態 : 土地 未保有 個人包含

(單位 : 천원, m², %)

공시지가대비 계층	공시지가				면적		
	평균치	최소값	비율	누적비율	평균치	비율	누적비율
상위 1%	1,855,988	744,180	27.9	27.9	52,088	16.2	16.2
1 ~ 2%	575,572	457,469	8.7	36.6	22,886	7.1	23.3
2 ~ 3%	389,602	333,592	5.9	42.4	17,712	5.5	28.8
3 ~ 4%	298,710	269,748	4.5	46.9	14,513	4.5	33.3
4 ~ 5%	247,198	224,928	3.7	50.6	12,084	3.8	37.0
6 ~ 10%	170,781	134,850	12.8	63.4	9,016	14.0	51.0
11 ~ 20%	100,660	74,839	15.1	78.6	3,987	12.4	63.3
21 ~ 30%	59,305	46,658	8.9	87.5	2,623	8.2	71.5
31 ~ 40%	39,270	33,252	5.9	93.4	1,738	5.4	76.9
41 ~ 50%	26,791	20,700	4.0	97.4	2,360	7.3	84.2
51 ~ 60%	14,366	8,917	2.2	99.6	3,543	11.0	95.2
61 ~ 67%	3,758	32	0.4	100.0	2,054	4.8	100.0
68 ~ 100%	0	0	0.0	100.0	0	0.0	100.0
지니계수	0.8607						

이러한 土地偏重 實態를 토지면적으로 살펴보면 최고 1% 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이며, 최고 5% 계층이 37%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소유한 면적을 공시지가 대비로 비교하면 〈表 8−5〉에서와 같이 상위계층이 소유한 토지의 단위가격은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하위계층 50%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의 약 16%를 차지하여 이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는 상대적으로 單位價格이 낮음을 의미한다.

〈表 8−7〉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들 간의 土地偏重 現象을 분석한 결과이다. 법인의 경우 개인에 비해 토지의 편중현상이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다. 상위 1% 계층이 전체토지의 68%를 차지하고, 상위 5% 계층이 전체의 약 8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 계층이 전체 토지의 92%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한 실태를 알 수 있다. 반면 하위 50% 계층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단지 전체의 0.5%에 불과하다.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법인의 土地所有 不均衡度를 측정한 결과 0.9586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表 8−7〉 土地偏重의 實態 : 法人

(單位 : 천원, m^2, %)

공시지가대비	공시지가				면적		
계층	평균치	최소값	비율	누적비율	평균치	비율	누적비율
상위 1%	106,110,523	18,118,082	68.4	68.4	1,091,096	34.9	34.9
1 ~ 2%	12,417,364	8,552,050	8.0	76.5	787,263	25.3	60.2
2 ~ 3%	6,639,864	5,360,911	4.3	80.7	52,496	1.7	61.8
3 ~ 4%	4,535,918	3,875,901	2.9	83.7	38,405	1.2	63.0
4 ~ 5%	3,381,268	2,903,240	2.2	85.9	15,251	0.5	63.5
6 ~ 10%	1,918,370	1,275,263	6.2	92.1	38,326	6.1	69.7
11 ~ 20%	691,949	371,218	4.5	96.5	20,765	6.6	76.3
21 ~ 30%	254,040	170,784	1.6	98.2	8,569	2.7	79.0
31 ~ 40%	130,209	93,154	0.8	99.0	15,015	4.8	83.8
41 ~ 50%	71,562	53,361	0.5	99.5	5,782	1.9	85.7
51 ~ 60%	40,167	30,404	0.3	99.7	19,628	6.3	92.0
61 ~ 70%	24,067	18,120	0.2	99.9	12,588	4.0	96.0
71 ~ 80%	11,933	8,562	0.1	100.0	7,633	2.5	98.4
81 ~ 90%	5,605	3,058	0.0	100.0	3,514	1.1	99.6
91 ~ 100%	1,250	150	0.0	100.0	1,330	0.4	100.0
지니계수	0.9586						

소유한 토지면적을 중심으로 실태를 비교하면 최고 1% 계층이 전체 토지면적의 35%를 차지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차지한 비율인 68%와 비교할 때 커다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고 1% 계층의 법인이 차지하고 있는 土地의 單位價格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태는 下位階層을 살펴봄으로써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즉 하위 50% 계층이 차지하는 면적은 전체의 약 14%를 차지하여 공시지가 대비인 0.5%와 많은 隔差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하위계층이 있는 법인이 차지하는 토지의 단위가격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土地의 偏重現象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계층이 차지하는 토지의 보유는 매우 높았으며 법인의 경우 개인보다 한층 심각한 토지 편중을 보여준다. 또한 상위계층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는 비교적 단위가격이 높으므로 이들 계층이 단위가격이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음을 보였다.

2. 研究結果의 比較

우리나라에서 토지편중에 대한 자료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매우 미비하다. 본 연구에서 보여준 土地偏重度는 公示地價를 基準으로 분석하였으므로 현실을 비교적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土地偏重에 대한 실증적 결과로는 土地公槪念研究委員會(1989)에서 발표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面積對比로 土地의 偏重度를 분석하였다. 면적대비로 토지의 편중도를 분석하는 것은 지역에 따라 토지가격의 차이가 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각 토지의 公示地價와 面積에 대한 정보가 모두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면적대비 土地偏重度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다. 土地公槪念研究委員會의 보고서가 면적대비로 분석한 한계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土地偏重度를 실증적으로 파악한 만큼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보여준 공시지가 대비 토지의 편중도를 면적대비 편중도와의 차이점을 규명함으로써 土地公槪念研究委員會의 결과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土地公槪念委員會에서 발표한 토지편중의 실태는 1988년 자료를 사용한 결과이

며, 그 이후에는 공식적인 발표가 없으므로 토지소유의 편중에 대한 時系列的 分析에는 한계가 있다. 본 자료가 같은 형태의 자료는 아니지만 1993년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이므로 土地公概念委員會에서 사용한 面積對比의 偏重實態를 사용하여 時系列的 변화를 파악해 본다. 〈表 8-8〉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를 면적대비로 환산하여 토지의 편중도를 재구성한 결과이다. 면적크기 順으로 상위 5%에 있는 계층이 전체 토지면적의 약 7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面積對比 累積比率을 앞에서 분석한 公示地價 對比 累積比率과 비교해 보면 면적대비 토지의 편중도가 공시지가 대비 토지의 편중도에 비해 훨씬 심함을 알 수 있다.

〈表 8-8〉 面積對比 土地 偏重度의 實態

(單位 : %)

면적대비계층	비 율	누적비율
상위 5	70.8	70.8
6 ~ 10	15.1	85.9
11 ~ 20	10.3	96.2
21 ~ 30	2.5	98.7
31 ~ 40	0.8	99.3
41 ~ 50	0.2	99.5
51 ~ 60	0.2	99.7
61 ~ 70	0.1	99.8
71 ~ 80	0.1	99.9
81 ~ 90	0.1	100.0
91 ~ 100	0.0	100.0

두가지 실증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 본 자료와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자료의 차이점을 먼저 살펴본다. 먼저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자료는 1988년 자료이고, 본 자료는 1993년 자료이므로 5년간의 時差를 가지고 있다. 또한 본 자료는 綜合土地稅 대상토지만을 표본으로 추출한 반면,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 자료는 全體 土地를 대상으로 한 全數調査이다. 이러한 자료의 차이점은 연구결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해석하는 데 장애가 되겠지만 土地偏重度에 대한 연구결과가 한정되어 있는 만큼 기존자료를 충분히 활용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表 8－9〉는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에서 보여주는 토지 편중도와 본 자료를 사용한 면적대비 토지 편중도를 비교한 결과이다. 상위 5% 및 10%의 면적대비 占有比率을 살펴보면 본 자료는 71%, 86%이며, 土地公概念硏究委員會에 의하면 65%, 77%를 보여 본 자료의 土地偏重度가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의 결과에 비해 심함을 알 수 있다. 물론 두 가지 자료는 같은 출처의 자료가 아니므로 1988년에 비해 1993년에 토지의 편중이 표에서 보여주는 만큼 심화되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두 시점의 土地偏重度 차이가 매우 크므로, 자료의 출처가 달라 조심스런 해석이 필요하나 토지편중이 더욱 심화되었다는 결론을 유도하기에 별다른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表 8－9〉 土地公開念硏究委員會의 硏究結果와 比較

(單位 : %)

면 적 대 비	本 硏究		土地公概念硏究委員會	
소 유 계 층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상위 5	70.8	70.8	65.2	65.2
6 ~ 10	15.1	85.9	11.7	76.9
11 ~ 20	10.3	96.2	10.8	87.7
21 ~ 30	2.5	98.7	5.4	93.1
31 ~ 40	0.8	99.3	3.2	96.3
41 ~ 50	0.2	99.5	1.9	98.2
51 ~ 60	0.2	99.7	1.0	99.2
61 ~ 70	0.1	99.8	0.5	99.7
71 ~ 80	0.1	99.9	0.3	100.0
81 ~ 90	0.1	100.0	0.2	100.0
91 ~ 100	0.0	100.0	0.0	100.0

註 : 土地公開念硏究委員會는 1988年의 實態임.

본 자료에서 面積과 公示地價를 각각 대비하여 土地偏重度를 살펴본 결과 면적대비 토지편중 정도가 공시지가 대비보다 심함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실증결과는 면적대비로 토지편중을 분석한 만큼 공시지가 대비의 토지편중은 이보다 낮음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자료로 權純源 外(1992)에서 사용한 자료를 들 수 있다. 이 자료는 토지에 대한 실제자료가 아닌 所得과 富에 대한 設問調査를 1988년에 시행하

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偏重實態를 구한 것이다. 분석대상은 金融資産과 實物資産으로 나누며, 실물자산은 住宅, 土地, 自動車 및 其他財産을 포함한 것이다. 본 연구가 토지를 대상으로 편중실태를 분석한 만큼 토지분에 대한 분석과 비교하여야 하나 토지를 포함한 實物資産에 대한 연구결과만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비교해 본다. 본 자료와는 5년간의 時差를 가지고 있으며, KDI 자료는 표본자료인만큼 자료의 정확도는 본 자료에 비해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두 연구결과를 비교한 결과는 〈表 8－10〉과 같다.

〈表 8－10〉 權純源 外(1992) 硏究와의 比較

(單位 : %)

소득계층	본 연구		權純源 外	
	비율	누적비율	비율	누적비율
상위 10	63.4	63.4	44.0	44.0
11 ~ 20	15.1	78.6	17.0	61.0
21 ~ 30	8.9	87.5	12.0	73.0
31 ~ 40	5.9	93.4	9.0	82.0
41 ~ 50	4.0	97.4	7.0	89.0
51 ~ 60	2.2	99.6	5.0	94.0
61 ~ 70	0.4	100.0	3.0	97.0
71 ~ 80	0.0	100.0	2.0	99.0
81 ~ 90	0.0	100.0	1.0	100.0
91 ~ 100	0.0	100.0	0.0	100.0

註 : 權純源 外(1992)는 KDI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1988년이 분석대상임.

상위 10% 계층이 차지하는 토지의 점유율은 본 연구가 63%인 반면, KDI 자료는 44%를 보여 顯著한 差異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상위 11% 이하 계층의 점유비율은 KDI 결과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 KDI 자료는 최고 10% 소득계층의 실물자산이 실제보다 낮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표본조사를 통한 소득조사에서 최고 소득계층이 과소보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12].

12) KDI 자료는 주택을 포함하고 있고, 주택의 분포는 토지에 비해 균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지게 된 하나의 요인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3. 綜合土地稅의 階層別 稅負擔

종합토지세의 소득계층별 稅負擔 實態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소유한 각 개인의 所得 및 土地保有에 대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개인별 소득을 바탕으로 계층별로 나누고 綜合土地稅의 稅負擔을 측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자료는 개인의 소득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고 각 계층의 세부담을 분석한다.

〈表 8-11〉 綜合土地稅의 階層別 稅負擔 實態

(單位 : %)

공시지가대비 계 층	개 인(A)	개 인(B)	법 인
상위 1	0.114	0.108	0.202
1 ~ 2	0.071	0.065	0.109
2 ~ 3	0.063	0.057	0.114
3 ~ 4	0.056	0.051	0.106
4 ~ 5	0.054	0.051	0.089
6 ~ 10	0.049	0.047	0.086
11 ~ 20	0.045	0.042	0.086
21 ~ 30	0.041	0.040	0.086
31 ~ 40	0.040	0.039	0.065
41 ~ 50	0.040	0.041	0.053
51 ~ 60	0.039	0.044	0.056
61 ~ 70	0.041	0.054	0.064
71 ~ 80	0.043	0.000	0.063
81 ~ 90	0.045	0.000	0.137
91 ~ 100	0.058	0.000	−
평균세부담률	0.062	0.062	0.168

註 : 개인(A)는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개인(B)는 토지 미소유자도 포함함. 법인의 91~100% 계층은 표본수가 충분하지 않아 신뢰할 수 없는 결과(0.588%)를 보여 주었다.

〈表 8-11〉은 개인과 법인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階層別 稅負擔 實態를 보여준다. 토지를 소유한 개인의 경우(개인 A) 세부담률을 살펴보면 전체 계층의 평균 세부담률이 0.062%로 나타난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1%가 1.14%로 가장 높고 소득수준

이 낮아질수록 세부담률도 떨어지는 累進的 構造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61% 이하로는 세부담률이 오히려 높아져 逆進的 特性을 가미하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을 포함한 경우(개인 B), 所得階層別 稅負擔率을 살펴보면 소득수준이 떨어질수록 세부담률이 떨어지는 累進的 構造를 보여주지만 소득계층 41~67%의 경우 오히려 逆進的 特徵을 보인다.

法人의 稅負擔率을 살펴보면 전체 계층의 평균 세부담률은 0.168%이다. 소득계층별로는 상위 1%가 가장 높은 세부담률을 보이지만,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의 세부담은 변화가 심해 특정 계층은 세부담률이 높으나 다른 계층은 세부담률이 낮다.

[圖 8-1]은 이상의 표에서 설명한 個人과 法人의 所得階層別 稅負擔率을 보여준다. 개인의 세부담 형태는 전체적으로 누진적 구조를 보여주지만 하위계층에서는 역진적 특성을 조금씩 나타내며, 法人의 세부담도 비슷한 형태를 나타낸다. 종합토지세가 누진적 구조를 가지는 세제이나 이처럼 부분적으로 역진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첫째, 종합토지세 대상토지가 綜合合算, 別途合算, 分離課稅로 나뉘고 각각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둘째,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이 공시지가가 아닌 內務部의 課標이며, 이는 공시지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圖 8-1] 綜合土地稅 階層別 稅負擔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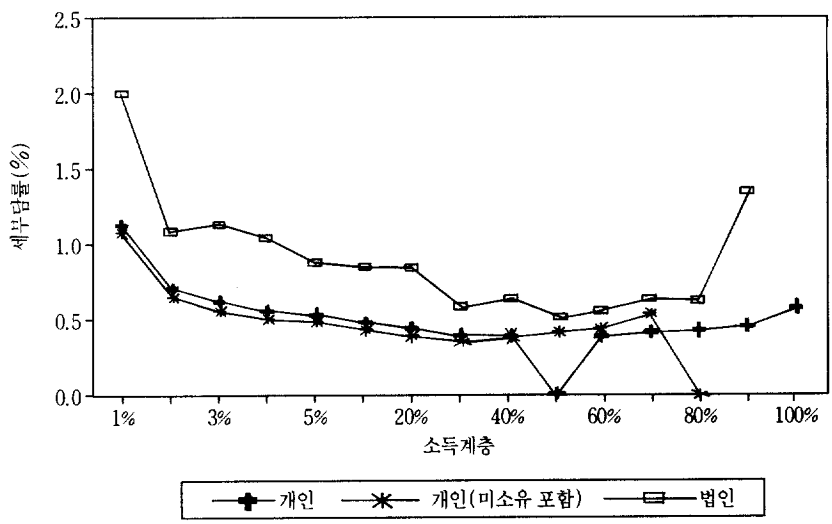

4. 綜合土地稅의 歸屬賃料 再分配 效果

종합토지세의 소득재분배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個人別 所得과 土地所有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여기에서는 토지를 소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歸屬賃料(imputed rent)의 수준과 종합소득세 부담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론인 종합소득세 전의 귀속임료와 종합소득세 후의 귀속임료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종합소득세의 귀속임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土地所有에 따른 歸屬賃料는 토지의 공시지가에 이자율을 곱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때 이자율은 편의상 10%를 사용한다.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과 별도합산 대상토지로 나뉘며,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므로 이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토지를 나누어 분석한다.

종합토지세의 귀속임료 소득의 재분배 효과를 살펴보면 〈表 8－12〉와 같다. 먼저 개인의 경우, 전체토지의 편중도는 0.8032이며 종합토지세 후에는 토지의 편중도가 0.8028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을 포함하여 분석하면 종합토지세 전후의 偏重度가 각각 0.8607, 0.8603으로 별다른 차이점이 없었다. 다음으로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토지의 편중도는 0.9586이며, 종합토지세 후에 0.9583으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表 8－12〉 지니係數를 使用한 所得再分配 效果의 測定

		지 니 계 수	
		종합토지세 전	종합토지세 후
개인	전체토지(A)	0.8032	0.8028
	전체토지(B)	0.8607	0.8603
	종합합산토지	0.7701	0.7695
	별도합산토지	0.8585	0.8585
법인	전체토지	0.9586	0.9583
	종합합산토지	0.9218	0.9196
	별도합산토지	0.9347	0.9342

註 : 1. 전체토지(A) :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함.
　　2. 전체토지(B) : 토지 비소유자를 포함.

綜合合算과 別途合算 대상토지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비교해 보면 개인의 경우는 종합합산토지는 0.7701에서 0.7695로 偏重度의 약간의 減少效果를 보인다. 반면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지니계수가 모두 0.8585로서 종합토지세 후에도 편중도에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0.9218에서 0.9196으로 편중도는 조금 감소한다. 別途合算 對象土地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거의 보이지 않는다. 현행 종합토지세제는 종합합산 대상토지가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비해 중과세되므로 종합합산 대상토지에서 소득 재분배 효과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13].

V. 結論 및 政策示唆性

우리나라에서 土地所有에 대한 偏重의 深刻性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지만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실증적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1988년 개인별 토지자료를 바탕으로 土地公概念委員會에서 발표한 土地偏重 實態는 토지관련 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는 土地面積을 基準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토지편중 실태를 정확히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즉 토지는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며, 토지가격은 위치에 따라 매우 다양한 偏差를 보이게 된다.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의 실태를 분석할 경우 농촌에 있는 토지와 도시에 있는 토지가 면적이 같을 경우 같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토지편중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土地價格을 中心으로 분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1990년에 종합토지세가 도입되었으며, 이 제도는 토지편중이 심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토지에 대한 假需要를 抑制하기 위해 행정적인 부담이 큼에도 불구하고 累進構造를 가지고 있다. 종합토지세의 소득계층별 세부담에 대한 논의는 많으나 실제로

13) 종합토지세의 법정세율을 살펴보면 종합합산 대상토지가 0.2~5%이며, 별도합산 대상토지는 0.3~2%이다. 이를 실효세율로 환산하면 종합합산 대상토지가 0.04~1%이며, 별도합산 대상토지가 0.06~0.4%를 보여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대해 중과세하는 구조를 알 수 있다.

그 효과를 측정한 연구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金明淑(1987, 1994), 張五鉉(1992)의 연구들은 통계청의 『도시가계연보』를 사용하여 土地稅의 歸着分析을 시도하였으나 자료의 한계로 인해 측정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는 1993년 종합토지세 대상토지에 대한 표본자료를 사용하여 土地偏重의 實態를 실증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개인별로 합산한 필지를 공시지가로 환산하여 토지편중 실태를 분석하였다는 데 있다. 공시지가가 시장가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현재 市場價格에 가장 근접하므로 단순히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보다 더욱 정확한 실태를 보여줄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소득계층별 종합토지세 부담 실태를 보여준다. 아울러 토지가격 수준에 비해 종합소득세 부담의 수준을 비교하기 위해 歸屬賃料 所得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재분배 효과를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의 실증적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토지를 소유한 개인들간의 土地所有 偏重實態는 상위 1% 계층이 전체의 24%, 상위 5% 계층이 전체의 44%를 보여주고 있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을 포함할 경우 상위 1%와 5% 계층이 전체의 28%, 51%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법인의 경우는 상위 1%와 5% 계층이 전체의 68%, 86%를 소유하고 있어 개인보다 훨씬 심각한 편중실태를 알 수 있다. 이를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소유의 편중실태를 요약하면 토지를 소유한 개인은 0.8032,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개인을 포함할 경우 0.8607을 보여주고, 법인의 경우는 0.9588을 보여준다.

(2) 土地公概念委員會의 1988년 자료가 面積을 基準으로 분석한 만큼 비교를 위해 본 자료를 면적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 5%와 10% 계층이 전체 토지면적의 71%, 86%를 차지하여 土地公概念委員會에서 보여주는 65%, 77%에 비해 토지편중 실태가 더욱 심각함을 보여준다. 또한 1988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KDI 결과는 상위 10%와 20% 계층이 전체의 44%, 61%로, 본 연구의 56%, 70%에 비해 심각성이 덜 했다. 그러나 KDI 결과는 標本調査 資料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큼 상위 계층이 과소 보고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綜合土地稅의 所得階層間 稅負擔을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는 누진적인 특성을 보이나 하위계층에서는 역진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나타낸다. 종합토지세제는 累進的 構造를 하고 있지만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비해 중과세되는 二元的 構造를 가지고 있고, 歸屬賃料 소득수준에 비해 누진적 요소가 낮아 결과적으로는 누진도가 낮음을 보여준다. 이를 지니계수로 살펴보면 종합합산 대상토지에서 조금의 재분배 효과를 가질 뿐 별도합산 대상토지에는 뚜렷한 再分配 效果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토지에 대해 종합토지세의 歸屬賃料 所得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1. 政策示唆性

종합토지세제가 누진구조를 가지고 있는 만큼 누진정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종합토지세의 누진정도는 우리나라의 土地所有 偏重實態와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즉 토지소유의 편중이 심각한 경우에는 누진율을 강화하여 토지소유에 대한 假需要를 抑制하여야 한다. 또한 세제의 기본기능 중의 하나가 소득 재분배인 만큼 종합토지세제는 토지소유의 편중실태와 연관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보듯이 현행 종합토지세의 누진구조는 歸屬賃料 所得에 대한 再分配 效果가 매우 미미함을 알 수 있다. 명목적으로는 높은 세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표가 공시지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고 공시지가의 수준에 비해 누진세율은 낮아 재분배 효과가 매우 낮다. 특히 別途合算 對象土地는 종합합산 대상토지에 비해 세부담이 낮아 재분배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합합산 대상토지는 미미한 수준의 재분배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현행 종합토지세제를 별도합산과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나눔으로써 稅制의 衡平性을 沮害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土地所有에 대한 偏重實態는 심각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종합토지세의 누진구조가 결정되어야 한다. 종합토지세를 통해 토지에 대한 投機的 需要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누진구조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별도합산 대상토지에 대한 세율은 귀속임료 소득에 대한 재분배 효과

가 거의 없으므로 세율과 누진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종합토지세 대상토지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二元化함으로써 토지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一元化하여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다[14].

14)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으로 二元化함으로써 토지를 많이 소유한 자가 오히려 평균세율이 낮게 적용되는 모순도 발생한다. 二元化에 따른 세율의 다양한 구성으로 인한 이러한 폐단은 金正浩(1991)에서 잘 설명되어 있다.

參 考 文 獻

康奉均,『韓國의 經濟開發戰略과 所得分配』, 政策研究資料, 1989.

金明淑,『財產保有稅의 歸着 : 財產稅의 所得分配效果에 대한 再考察』, 政策研究資料 94-05, 韓國租稅研究院, 1994.

______,「財產稅의 所得分配效果」,『韓國開發研究』, 第9卷 第4號, 韓國開發研究院, 1987.

金正浩,『不動產 保有課稅의 問題點과 改善方案』, 研究調査資料, 韓國經濟研究院, 1991.

權純源・高日東・金寬永・金善雄,『分配不均衡의 實態와 主要政策課題』, 韓國開發研究院, 1992.

羅城麟・玄鎭權,『租稅 및 社會扶助政策의 效果分析』, 研究報告書 93-09, 韓國租稅研究院, 1993.

孫在英,『現行 土地課標의 水準과 衡平性 分析』, 韓國開發研究院, 1993.

______,「土地保有課稅強化의 當爲性에 대한 檢討」,『韓國開發研究』, 第14卷 第3號, 가을, 1992.

李性旭・玄鎭權,『土地課標 公示地價 轉換에 따른 土地關聯地方稅制 改編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張五鉉,「韓國의 財產稅 歸着에 관한 實證研究」,『財政論集』, 第6輯, 韓國財政學會, 1992.

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土地公概念研究委員會 報告書』, 1989.

Leipziger, D., et al.,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in Korea*, The World Bank, 1992.

Mair, D., "The Incidence of the Property Tax : A Survey," ***British Review of Economic Issues***, Vol. 13, No. 31, Oct. 1991.

〈附表 8－1〉 個人別 標本資料의 加重值

(單位 : 명)

과표단계	생 년	모집단수	자료수	가중치
1천만원 이하	00~10	94,635	154	614.5
	11~20	281,761	148	1903.8
	21~30	555,583	140	3968.5
	31~40	868,453	136	6385.7
	41~50	1,005,908	140	7185.1
	51~60	1,433,941	139	10316.1
	61~70	603,807	139	4343.9
	71~99	89,417	7	12773.9
2천만원 이하	00~10	10,604	154	68.9
	11~20	61,324	143	428.8
	21~30	185,043	141	1312.4
	31~40	376,660	140	2690.4
	41~50	460,293	140	3287.8
	51~60	419,854	139	3020.5
	61~70	85,780	140	612.7
	71~99	10,617	7	1516.7
3천만원 이하	00~10	3,711	154	24.1
	11~20	24,213	139	174.2
	21~30	81,473	140	582.0
	31~40	185,952	140	1328.2
	41~50	238,698	138	1729.7
	51~60	166,546	139	1198.2
	61~70	25,073	139	180.4
	71~99	4,037	7	576.7
4천만원 이하	00~10	1,762	153	11.5
	11~20	11,830	141	83.9
	21~30	41,574	140	297.0
	31~40	98,687	140	704.9
	41~50	121,679	141	863.0
	51~60	70,293	141	498.5
	61~70	10,357	140	74.0
	71~99	1,923	7	274.7
5천만원 이하	00~10	1,022	153	6.7
	11~20	6,598	137	48.2
	21~30	23,638	139	170.1
	31~40	56,486	140	403.5
	41~50	68,343	140	488.2
	51~60	35,390	140	252.8
	61~70	5,357	141	38.0
	71~99	1,158	7	165.4

〈附表 8－1〉의 계속

과표단계	생 년	모집단수	자료수	가중치
6천만원 이하	00～10	577	153	3.8
	11～20	4,248	142	29.9
	21～30	15,069	141	106.9
	31～40	36,653	141	260.0
	41～50	42,028	140	300.2
	51～60	20,759	140	148.3
	61～70	3,246	138	23.5
	71～99	760	9	84.4
7천만원 이하	00～10	410	179	2.3
	11～20	3,023	198	15.3
	21～30	10,597	178	59.5
	31～40	24,950	175	142.6
	41～50	28,415	204	139.3
	51～60	13,122	196	66.9
	61～70	2,214	206	10.7
	71～99	535	157	3.4
8천만원 이하	00～10	323	137	2.4
	11～20	2,204	139	15.9
	21～30	7,797	140	55.7
	31～40	18,106	143	126.6
	41～50	20,035	127	157.8
	51～60	9,157	127	72.1
	61～70	1,566	144	10.9
	71～99	407	124	3.3
9천만원 이하	00～10	230	104	2.2
	11～20	1,626	96	16.9
	21～30	5,811	105	55.3
	31～40	13,656	104	131.3
	41～50	14,829	102	145.4
	51～60	6,524	108	60.4
	61～70	1,165	85	13.7
	71～99	322	93	3.5
1억원 이하	00～10	177	71	2.5
	11～20	1,263	72	17.5
	21～30	4,793	87	55.1
	31～40	10,865	87	124.9
	41～50	11,489	74	155.3
	51～60	4,932	80	61.7
	61～70	893	75	11.9
	71～99	231	73	3.2

〈附表 8－1〉의 계속

과표단계	생　년	모집단수	자료수	가중치
2억원 이하	00~10	813	267	3.0
	11~20	5,732	257	22.3
	21~30	20,440	261	78.3
	31~40	44,856	260	172.5
	41~50	45,273	259	174.8
	51~60	18,914	260	72.7
	61~70	3,617	259	14.0
	71~99	966	176	5.5
3억원 이하	00~10	237	91	2.6
	11~20	1,752	100	17.5
	21~30	6,167	88	70.1
	31~40	12,627	102	123.8
	41~50	11,954	109	109.7
	51~60	4,641	93	49.9
	61~70	960	101	9.5
	71~99	271	26	10.4
4억원 이하	00~10	98	38	2.6
	11~20	853	41	20.8
	21~30	2,859	50	57.2
	31~40	5,621	37	151.9
	41~50	4,815	34	141.6
	51~60	1,934	44	44.0
	61~70	425	38	11.2
	71~99	78	7	11.1
5억원 이하	00~10	58	47	1.2
	11~20	503	61	8.2
	21~30	1,597	60	26.6
	31~40	3,068	78	39.3
	41~50	2,571	63	40.8
	51~60	1,017	65	15.6
	61~70	212	64	3.3
	71~80	32	31	1.0
	81~99	13	8	1.6
6억원 이하	00~10	29	22	1.3
	11~20	318	48	6.6
	21~30	985	50	19.7
	31~40	1,733	31	55.9
	41~50	1,453	48	30.3
	51~60	580	46	12.6
	61~70	140	46	3.0
	71~80	19	19	1.0
	81~99	12	6	2.0

〈附表 8-1〉의 계속

과표단계	생 년	모집단수	자료수	가중치
7억원 이하	00~10	22	14	1.6
	11~20	191	28	6.8
	21~30	686	31	22.1
	31~40	1,250	30	41.7
	41~50	935	26	36.0
	51~60	398	30	13.3
	61~70	82	30	2.7
	71~80	11	11	1.0
	81~90	4	3	1.3
8억원 이하	00~10	11	11	1.0
	11~20	158	54	2.9
	21~30	464	47	9.9
	31~40	787	48	16.4
	41~50	626	62	10.1
	51~99	298	17	17.5
9억원 이하	00~10	8	7	1.1
	11~20	112	39	3.7
	21~30	337	36	9.4
	31~40	558	28	19.9
	41~50	459	30	15.3
	51~99	263	11	23.9
10억원 이하	00~10	7	7	1.0
	11~20	75	22	3.4
	21~30	263	26	10.1
	31~40	461	33	14.0
	41~50	309	18	17.2
	51~99	168	11	15.3
20억원 이하	00~10	26	25	1.0
	11~20	294	107	2.7
	21~30	971	110	8.8
	31~40	1,460	111	13.2
	41~50	1,067	111	9.6
	51~99	578	36	16.1
30억원 이하	00~10	2	2	1.0
	11~20	61	37	1.6
	21~30	186	49	3.8
	31~40	238	11	21.6
	41~99	351	2	175.5
300억원 이하	00~99	562	562	1.0
합 계		8,399,469	15,652	

〈附表 8－2〉 綜合土地稅 對象土地의 課標別 母集團과 標本 : 法人

(單位 : 명)

과표단계	모집단수	표본수	가중치
1천만원 이하	64,871	233	278.4
2천만원 이하	17,048	88	193.7
3천만원 이하	9,023	53	170.2
4천만원 이하	5,553	29	191.5
5천만원 이하	3,848	17	226.4
6천만원 이하	2,863	19	150.7
7천만원 이하	2,384	14	170.3
8천만원 이하	1,954	7	279.1
9천만원 이하	1,655	6	275.8
1억원 이하	1,457	18	80.9
2억원 이하	7,881	150	52.5
3억원 이하	3,489	73	47.8
4억원 이하	2,158	49	44.0
5억원 이하	1,486	52	28.6
6억원 이하	1,076	47	22.9
7억원 이하	775	32	24.2
8억원 이하	635	38	16.7
9억원 이하	553	29	19.1
10억원 이하	422	24	17.6
20억원 이하	1,939	189	10.3
30억원 이하	708	110	6.4
40억원 이하	361	71	5.1
50억원 이하	229	29	7.9
60억원 이하	157	29	5.4
70억원 이하	151	30	5.0
80억원 이하	86	20	4.3
90억원 이하	54	9	6.0
100억원 이하	61	11	5.5
200억원 이하	278	101	2.8
300억원 이하	95	42	2.3
400억원 이하	42	16	2.6
500억원 이하	34	19	1.8
600억원 이하	15	5	3.0
700억원 이하	13	10	1.3
800억원 이하	9	3	3.0
900억원 이하	5	1	5.0
1천억원 이하	10	5	2.0
9천억원 이하	41	41	1.0
합 계	133,419	1,719	

多住宅保有 現況과 財産稅 稅負擔 分析

魯 英 勳[1]

目 次

* 본 논문은 韓國租稅硏究院,『財政金融硏究』, 제2권 제1호(1995년)에 게재한 논문을 재구성하였음.

1) 本院 專門硏究委員.

Ⅰ. 序　論

개개의 인간이 모여 가구를 형성하고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거주공간을 주택 또는 주거용거처에 마련(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消費行爲의 하나이다. 또한, 실물자산의 하나인 주택을 구입하여 보유하는 행위는 경제체제 내에서의 富를 보유·축적하기 위한 投資行爲이다. 주택이라는 건물에 대한 財産稅賦課는 주택소유주가 보유한 주택에 대해 정부의 응능, 응익, 재분배의 원칙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정부의 고유권한이지만, 이것이 미치는 경제적인 효과는 주거서비스시장, 주택자산시장을 통해 대체·보완관계에 있는 모든 재화(서비스) 및 자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住宅所有 및 住居(서비스소비) 現況을 住宅-家口(世帶)間 關係를 중심으로 센서스 통계자료를 통해 살펴 본 후, 신경제5개년 계획상의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방안 검토를 위해 수집된 재산세 課稅資料를 이용하여 家口別 住宅所有 偏重度 및 재산세부담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과세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世帶別 多住宅保有內譯은 다주택보유재산세 중과논의 목적 이외에도 정부의 임대주택정책, 임대소득세제, 양도소득세제 등 주택관련조세정책 및 소득재분배정책 전반에 걸쳐 귀중한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만으로도 분석을 필요로 한다.

Ⅱ. 住宅의 保有現況

1. 住宅의 保有 및 居住現況

먼저 통계청이 1992년 말에 발간한 『1990 人口住宅總調査報告書』[2] 를 통해 1990년 말의 가구와 주택의 소유·거주상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주택의 種類別로 주택당 居住家口數 분포가 큰 차이를 나타낸다(〈表 9-1〉 참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851만 가구가 473만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1주택당 평균 1.8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는 97%의 경우 그 구조적 특성상 아파트 한 채가 한 가구를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 단독주택 1채의 재건축으로 인한 주택문제는 1.8가구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신규 아파트 1채의 건설은 1가구에게만 공급될 뿐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둘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총 1,131만가구 중 54%인 614만 가구들이 201만주택에서 주택당 평균가구밀도 3 이상으로 과밀하게 한 주택을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이다(〈表 9-1〉 참조). 즉, 나머지인 517만 가구만이 自家이든 借家이든 한 주택을 점유하고 있고, 이를 가구대상 센서스상의 자가점유가구수인 567만과 비교하여 보면, 자가점유하고 있다고 답한 일반가구 중에 상당부분이 賃借家口와 한 주택을 함께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表 9-2〉를 보면, 住宅의 類型別로 입주(점유)형태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소유주가 거주하지 않으면서 임대에 제공되는 아파트는 총 아파트 중 34%나 되지만, 단독주택의 경우 15%에 불과하다. 즉, 단독주택 472만 채 중 85%에 해당하는 402만여 단독주택에 소유주가 自家居住하고 있었지만, 1가구만이 거주한 경우는 단

2) 1992년 말에 발간한 동 보고서는 최종집계결과가 발표되었으므로, 그전까지 사용되었던 잠정보고서나 표본추출 집계결과 보고서상의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독주택의 63%인 297만 채뿐이어서 단독주택 중 적어도 22% 이상은 소유가구가 거주하면서 단독주택의 일부분을 유 · 무상임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1〉 住宅의 種類 및 居住家口數別 分布

(單位 : 棟, %)

주택의 종류 / 주택당 거주가구수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3]	계
1 가구	2,971,277	1,580,278	396,016	101,375	119,488	5,168,434
2 가구	(62.8)	(97.1)	(81.2)	(87.9)	(59.0)	(72.2)
3 가구	809,045	45,767	77,680	10,530	37,104	980,126
4 가구	453,979	1,960	11,899	2,324	21,065	491,247
5 가구	235,960	112	1,909	1,120	11,420	250,521
6 가구 이상	121,586	–	2	–	5,911	127,499
	135,066	–	–	–	7,493	142,559
계(주택수[1])	4,726,933	1,628,117	487,506	115,349	202,481	7,160,386
(가구수[2])	8,511,151	1,678,505	594,806	133,933	390,077	11,308,472

註 : 1) 주택수에는 空家(전국 총수 19만 6,901호)를 제외함.
2) 가구수에는 주택 내 거주하는 7,466집단가구를 포함하며, 주택 내 거주 일반가구만은 1,130만 1,006가구임.
3) 비거주용은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복합사용되는 건물의 주택부분임.
資料 : 통계청, 『1990 人口住宅總調査報告書』, p. 676에서 재구성.

〈表 9-2〉 住宅의 種類 및 占有形態別 分布

(單位 : 棟, %)

주택의 종류 / 주택의 점유형태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비거주용	계
자가	4,024,816	1,075,816	375,791	83,332	94,156	5,653,911
	(85.1)	(66.1)	(77.1)	(72.2)	(46.5)	(79.0)
전세	390,698	317,368	74,983	25,430	40,957	849,436
보증부월세	68,300	147,113	9,047	2,138	26,103	252,701
월세(사글세)	119,285	15,429	6,522	2,799	23,273	167,308
무상	123,834	72,391	21,163	1,650	17,992	237,030
계	4,726,933	1,628,117	487,506	115,349	202,481	7,160,386

註 : 1. 주택수에는 空家(전국총수 19만 6,901호)를 제외함.
2. 비거주용은 주거 이외의 용도로 복합사용되는 건물 내의 주택으로, 주택 이외의 거처가 아님.
資料 : 통계청, 『1990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p. 649.

한편, 本稿의 제3장에서 상술할 주택분 재산세부과 기초자료로부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1993년 5월 시점에서의 재산세부과대상 주택총량(stock)을 소유세대별로 그 분포를 파악했으므로, 모집단의 세대수는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하고 있는 세대수이지 무주택가구까지를 포함하는 전국총세대수(1993년말 건설부 통계 : 1,212만 2천가구)가 아니다. 즉,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주택의 所有偏重度를 조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소유세대 중 상위 0.03%에 있는 세대들이 주택수의 3.01%를 소유하고 있음을 〈表 9-3〉은 보여 주고 있다.

둘째, 본 자료가 주택을 관찰단위로 하여 그 所有關係를 세대별로 파악하였을 뿐이고 居住家口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택소유가구의 현재 주거지나 입주형태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센서스 등의 家口調査에서 알 수 있는 自家占有率(owner-occupying household ratio) 또는 自家所有率 등을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2. 住宅分 財產稅

현재 우리나라의 주거용 부동산 保有[3]와 관련된 조세는, 주택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보유과다세를 1990년부터 통합하여 인별 누진합산 과세하는 人稅로서의 「綜合土地稅」와 종래의 物稅인 財產稅가 있다. 도시계획세, 교육세가 이들 과표에 준하여 부과되며, 건물에는 공동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러한 지방세 외에 宅地超過所有負擔金이 도시계획구역상의 상한선을 초과하여 소유되고 있는 택지(주택의 부속토지, 나대지, 개발택지 포함)에 대해 부과되고 있다.

本稿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택에 대한 보유과세는, 지방세법(제104조 제4호)에 의거하여 정의된 각종 용도의 건물(주택, 점포, 사무실, 공장, 창고 등), 구축물, 그리고 부대설비 중 1종(주거시설)과 6종(농·어가 및 광산주택)의 주거용 건물을 그

3) 부동산의 取得 등 去來·移轉과 관련된 地方稅로서의 취득세·등록세, 國稅로서의 양도소득세, 그리고 보유과세이지만 유휴토지에 있어서의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인 「土地超過利得稅」는 住宅에 대한 財產保有課稅가 아니므로 본고의 주된 논의대상이 아니다.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세이다. 공정한 재산세 과세를 위해서는 과세대상물건의 재산가치를 과세시점기준으로 정확히 평가하여야 하나, 대상부동산의 시장가치를 매년 반복하여 재평가(reassessment)하여 보유세과표로 사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4].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이 토지를 제외한 건물(improvement)만이므로 건물만의 가치를 전체 부동산가치(property value)에서 추출해 내는 인위적 조작을 필요로 한다. 현재, 재산세 과표로 사용하고 있는 課稅時價標準額은 건물이라는 자본재의 대체비용(replacement cost)개념에 입각한 평가방법에 기초하고 있다. 즉, 당해 연도의 단위면적(m^2)당 신축건물기준가액에 구조지수·지붕지수·용도지수·지역지수·과세해당면적(m^2)을 곱하여 신축가격을 구하고, 감가상각을 고려하기 위한 경과연수별 잔가율을 곱한 후, 가감산특례를 통한 최종 과표조정을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稅率[5]은 일반건물에 대해서는 0.3%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주택에 대해서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현행 주택분 재산세율은 〈附表 9-1〉에서 볼 수 있듯이 세법상의 명목세율이 0.3%에서 7%로 계단적 누진구조를 갖고 있으나, 상위명목세율은 하위과표구간의 최고액수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超過累進稅率體系를 취하고 있으므로, 최저과표구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平均稅率은 항상 법정명목세율보다 낮고 연속적인 구조를 갖는다. 건축물분 재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 개정은 1974년, 1986년, 그리고 1990년에 있었고, 각 기간의 세율체계와 그 변화는 〈附表 9-1〉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87년~1990년 기간과 1991년 이후 기간의 총 6단계에 걸친 초과누진세율

4) 전통적인 지방세인 재산과세는 소득세나 소비세와 달리 소득 및 물가상승에 따른 자연적인 세수증대가 없으므로, 지방정부의 기능축소로 인한 지방재정의 감소가 없는 한 정기적으로 재산에 대한 再評價나 稅率構造改編을 필요로 한다. 兩者 모두 조세저항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課標現實化率(assessment ratio)은 항상 1 이하이다. 미국의 경우, 웨스트버지니아,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州 등이 과표산정시 매매가 기준방법(assessment on sale method)을 채택하고 있으나, 연방대법원은 최근의 앨러게이니(Allegheny)석탄회사 대 웨스트버지니아州 웹스터郡 판결을 통해 신규 재산취득자와 최근 거래가 없었던 기존재산 소유권자를 재산세부과시 차별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4조의 「법으로부터의 동등보호」조항을 위배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다.

5) 우리나라의 재산세는 그 세율체계가 지방자치단체간의 차이가 허용되지 않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고, 과표산출방식 또한 중앙정부가 전국공통으로 정한 지침에 따라 지방정부가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지역간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은 과표산출공식상의 지역지수(80~114)인데, 이는 100을 기준으로 상하 14%, 20%의 지역간 차이를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그 차이도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차이와 자동적으로 연계되어 있어 지방정부의 재량권이 없다.

체계는 그 적용법정세율까지 동일하며, 각 단계의 과표구간만이 조정되어 왔다. 하위 3단계 과표구간(적용세율)이 700만원 이하(0.3%), 700~1,000만원(0.5%), 1,000~1,800만원(1%)에서 1,000만원 이하(0.3%), 1,000~1,300만원(0.5%), 1,300~1,800만원(1%)으로 변경되어 하위세율적용대상은 확대되었으나, 상위 3계급 구간은 1,800~2,600만원, 2,600~3,500만원, 3,500만원 이상으로 변화가 없었고 적용세율 또한 종전과 마찬가지였다. 과표산정에 사용되는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m^2당 1990년의 11만 2천원에서 1991년의 12만 2천원, 1992년의 13만 3천원으로 매년 8.9%, 9.0% 상승한 점을 고려하면 구간 내의 中位點(mid-point)을 기준으로 동일세율을 적용 받는 하위 3개 구간들이 명목 과표인상분 이상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6]. 하위 3개 세율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과표 1,800만원 이하 소형주택은 輕課하고 그 이상의 과표를 갖는 주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과표인상분에 한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Ⅲ. 基礎資料에 대한 說明

실증분석에 사용한 자료의 특성을 槪觀하기 위하여, 母集團에 대한 정의, 母集團으로부터의 표본추출방법, 최종「데이타셋」(dataset) 구성과정을 설명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재산세 전산자료 표준화 과정에서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던 세대별 주택보유자료를 母集團으로 하여, 本院의 표본추출방법(sampling design)에 의거하여 표본추출한 후, 현행 부과대상인 課稅物件別로 즉, 원래의 개인별 자료형태대로 제공된 전산자료에 근거한다. 따라서 모집단이 정확하게 구성되었고, 표본추출방법이 적정하며, 추출이 층내에서 무작위로 이루어졌다는 가정

6) 과표구간 재조정에 따른 정확한 세부담 증가를 보기 위하여는, 동일한 과세대상물이 소속과표구간 간에 어떻게 이동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축건물단가의 상승으로 인한 과표인상분이 과표구간 간의 이동을 초래하였다면 상위계급에 적용되는 세율 증가로 인한 추가적인 부담까지 있게 된다.

하에서 자료분석을 하였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각 시도별로 달리 운영되고 있던 재산세 전산자료를 지방세정 綜合電算化計劃의 일환이며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의 선결과제인 「財產稅 電算資料 標準化 推進計劃」에 따라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전산시스템으로 자료변환하는 과정에서 전국규모의 세대별 주택보유합산이 최초로 이용 가능하게 되었다. 즉, 市·郡·區單位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건물분 재산세부과 기초자료였던 財產稅課稅臺帳을 기초로 建物資料를 표준화양식에 입력하고, 財產稅課稅臺帳上의 납세자 주소, 성명을 토대로 행정전산망상의 주민등록세대주 파일[7] 과 연결하여 납세자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등을 새로 입력하여 納稅義務者資料를 부가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모집단의 분포는 〈表 9-3〉과 같다. 과세대장상의 주택을 한 채라도 소유한 세대는 총 711만 5,055世帶로서, 그들이 소유한 주택수는 총 812만 8,390棟이었다. 이 중 무주민등록주택(세대)은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누락 및 이로 인한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었던 경우들이지 무주택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모집단인 812만여 棟 중 180만 棟을 차지함으로써 22.2%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 주택들의 세대주가 1주택소유인지, 다주택소유인지를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므로 확인된 보유채수별 세대분포에 비례하여 무주민등록주택들도 각 층에 분류된다는 가정하에 모집단화(gross-up)하였다[8]. 즉, 본 연구에 쓰인 표본자료는 이들 계층으로부터는 추출되지 않았지만, 가중치계산에 있어서는 이들이 포함된 모집단세대들로부터의 추출비율의 역수를 이용하였다. 따라서, 모집단분포에 관한 정보불완전성을 극복할 더 나은 차선책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러한 가정은, 주택분 재산세 總 세수추계 등에 있어서 미확인 세대의 각 층별 분류양상에 따라 偏倚(biasedness)의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

7) 현행 住民登錄法上의 世帶 개념(狹義의 世帶)에 입각하여 세대주별 주택보유분포를 구성하고 이를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추출하였으므로, 만일 현재 고려하고 있는 세대개념-세대분리된 배우자 및 30세 미만의 직계비속을 포함하는 세대-을 이용하여 과세대상을 정할 경우 다주택보유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수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본 연구에 사용된 표본자료의 모집단이 변하게 되므로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8) 1992년의 1주택보유자수가 610만 6천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주민등록층 내의 대부분의 주택이 1주택보유자소유로 분류될 것으로 추측된다 (〈附表 9-2〉 참조).

〈表 9-3〉 母集團 : 1993年 世帶別 保有住宅數 分布

(單位 : 世帶, 棟)

주택보유수	세대수	주택수
무주민등록	1,803,140	1,803,140
1	4,671,055	4,671,055
2	550,564	1,101,128
3	64,351	193,053
4	14,154	56,616
5	4,327	21,635
6	2,227	13,362
7	1,301	9,107
8	995	7,960
9	721	6,489
10 이상	2,220	244,845
합계	7,115,055	8,128,390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1993년 주택분 재산세부과 기초자료.

1992년도 內務部 市郡稅課 자료인 〈附表 9-2〉와 〈附表 9-3〉상의 소유자수 665만 6,827名과 주택수 747만 8,328棟을 1993년도 자료인 〈表 9-1〉과 〈表 9-3〉상의 수치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이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1년간의 차이인 65만여 동의 주택수 증가는, 건설부추계[9] 1991년과 1992년의 주택건설실적 61만호, 58만호와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있는 증가분이다. 또한 1990년 말의 인구·주택총센서스상의 공가를 제외한 주택수인 716만 386채와 비교해도 2년간의 증가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1992년도 자료는 人別 즉, 납세의무자인 所有主別 주택소유 분포이고, 〈表 9-3〉은 世帶主別 住宅所有 分布이므로 다주택보유층들의 소유주택수들은 같은 시점에서 집계하더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초로 다주택보유현황이 집계되기 시작한 것은 1991년부터인데, 이는 6대 도시 및 경기도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여 人別로 집계되었으며 〈附表 9-4〉상에 나타나 있다. 즉, 1991년과 1992년은 人別로, 6대도시지역과 전국규모로, 건설부와 내무부에서 각각 집계되었고, 1993년에는 세대별로 전국을 대상으로 내무부에서 집계하였다.

9) 建設部, 住宅建設現況表.

다주택보유자(또는 세대)가 전체 주택소유자(또는 세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29%, 8.26%, 9.00%로 증가하고, 이들이 소유하는 주택수가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13.81%, 18.34%, 20.35%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각 연도별 다주택보유자(또는 세대)당 평균소유주택수는 2.39호, 2.49호, 2.58호로 증가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세대주를 표본추출단위로 하여 〈表 9-5〉와 같이 보유주택수를 층으로 한 層化任意抽出標本을 얻었고, 그 분포는 〈表 9-6〉의 셋째칸에 나타나 있다. 제공된 자료가 課稅時價標準額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건

〈表 9-4〉 1993年 全國 世帶別 住宅保有 現況

(單位 : 世帶, 棟, %)

	세 대 수[1]	주 택 수
무주민등록[2]	1,803,149 (23.30)	1,803,140 (22.18)
1주택 보유	4,671,055	4,671,055
2주택 이상 보유	640,860 (9.00)	1,654,195 (20.35)
전국합계	7,115,055	8,128,390

註 : 1) 현행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주민등록번호로 정의됨.
2) 납세의무자 또는 그 세대주의 주민등록번호 미확인.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電算資料.

〈表 9-5〉 世帶別 住宅保有 母集團 및 標本資料(1993年)

(單位 : 世帶, %)

	모집단			표본			표본비율
	세대수(A)	비율[1]	누적비율	세대수(B)	비율[2]	누적비율	(B/A)
무주민등록[3]	1,803,140	22.18	22.18				
1	4,671,055	57.47	79.65	11,561	14.58	14.58	0.25
2	550,564	13.55	93.19	8,762	22.11	36.69	1.59
3	64,351	2.38	95.57	4,114	15.57	52.26	6.39
4	14,154	0.70	96.26	2,397	12.10	64.36	16.94
5	4,327	0.27	96.53	1,143	7.21	71.57	26.42
6	2,227	0.16	96.69	745	5.64	77.21	33.45
7	1,301	0.11	96.81	407	3.59	80.80	31.28
8	995	0.10	96.90	237	2.39	83.19	23.82
9	721	0.08	96.98	166	1.88	85.07	23.02
10 이상	2,220	3.01	100.00	721	14.92	100.00	32.48
합 계	7,115,055	100.00		30,253	100.00		

註 : 1) 전체 모집단 주택수 812만 8,390棟에서 각 층별세대들이 소유한 주택수의 비율.
2) 표본 내 주택수 7만 9,267棟에서 각층별 세대들이 소유한 주택수의 비율.
3) 무주민등록세대는 소유주의 주민등록번호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세대.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1993년 주택분 재산세부과 기초자료.

물과세시가표준액 조정지침(1993. 1. 1)』에 의거하여 개별주택에 대해서 일일이 산정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그 산정방법은 1993년 신축건물기준가액(133,000원/m²), 구조지수, 지붕지수, 용도지수, 지역지수, 경과연수별잔가율, 과세해당면적(m²), 가감산특례조정률을 곱하여 산출하게 되어 있으나 세율증감을 위한 자료의 부정확성[10]으로 인해 마지막단계의 가감산특례에 의한 조정은 생략하였다. 〈表 9-6〉의 과세표준 총계와 현행 재산세액 총계는 이상의 방법으로 계산한 주택별 과표와 純財産稅額[11]을 소유세대주가 속한 층내에서 가중합산한 결과 얻어졌다.

〈表 9-6〉 階層別 住宅分 財産稅負擔 推計(現行 個別累進과 世帶別 合算累進)

(單位 : 10억원, %)

	세대수	주택수	과세표준 총계[1]	현행재산세액 총계[1] (A)	합산누진세액 총계[1,2] (B)	비율(B/A)
1	11,561	11,561	28,649.5 (74.3)	183.3 (70.9)	183.3 (48.6)	1.0
2	8,762	17,524	7,454.0 (19.6)	56.1 (21.7)	123.7 (32.8)	2.2
3	4,114	12,342	1,276.6 (3.3)	9.9 (3.8)	27.7 (7.3)	2.8
4	2,397	9,588	424.9 (1.1)	3.7 (1.4)	12.8 (3.4)	3.5
5	1,143	5,715	149.9 (0.4)	1.4 (0.5)	4.8 (1.3)	3.4
6	745	4,470	95.8 (0.2)	1.0 (0.4)	3.5 (0.9)	3.5
7	407	2,849	61.4 (0.2)	0.5 (0.2)	2.4 (0.6)	4.8
8	237	1,896	54.5 (0.1)	0.5 (0.2)	2.3 (0.6)	4.6
9	166	1,494	42.8 (0.1)	0.3 (0.1)	1.8 (0.5)	6.0
10 이상	721	11,828	262.0 (0.7)	2.1 (0.8)	14.7 (3.9)	7.1
계	30,253[3]	79,267[3]	38,563.2 (100.0)	258.7 (100.0)	376.7 (100.0)	

註 : 1) 標本抽出比率에 따른 加重合計.
2) 개별과표합산하여 世帶別 課標를 구한 후 現行 누진세율체계를 적용.
3) 總 3만 331世帶 소유 7만 9,548住宅이 자료처리 전 표본총수.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1993年度 재산세부과 기초자료.

10) 과대세상건물이 세율증감대상(가산대상 18종, 감산대상 21종)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상·지하층수, 특수 부대시설 존재여부, 건물높이(m), 전통한옥 여부 등이 정확히 입력되어 있어야 하나, 제공된 자료는 이러한 정보가 누락되어 있거나 오류치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건물의 효용성 및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과표에 반영한다는 측면에서의 이러한 고려는 따라서 본 연구에는 다루지 않았다. 그러나, 과세 해당면적을 통한 과표가감은 과세액의 큰 차이를 나타내므로 반영하였다.

11)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 비포함.

Ⅳ. 住宅分 財產稅 負擔水準

1992년도 귀속분 총량통계를 보면, 지방세입 22조원의 약 46%인 지방세 10조원 가운데, 3,610억원이 재산세이고 중기·선박·항공기를 제외한 건축물분 재산세는 3,482억원이다. 이 중 주택에 대해서 과세한 것은 1,972억원으로 재산세 대비 54.6%이고, 건축물분 재산세 대비 56.6%이다. 주택분 재산세 과표총액은 36조 5,154억원으로 건축물 총과표 총액의 51.7%이다. 1993년 귀속분은 표본자료에 기초하여 추계해 본 결과 주택분 과표총액 38조 5,623억원에 주택분 재산세 2,587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예상된다. 1993년 예산기준의 타세목과 비교하면, 재산세 총액은 같은 보통시·군세이면서 재산세인 자동차세의 40%, 종합토지세의 45% 정도 수준이다.

주택보유세대 중 9%를 차지하는 다주택보유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최소한 주택 총수의 20.4%에 해당하고 과표합계 중 25.7%를 차지하며, 이들이 납부하고 있는 재산세액은 754억원으로 주택분 재산세액 중 29.1%를 차지한다.

이러한 총량적인 부담을 주택의 保有棟數를 層으로 한 계층별 과표구간에서 평균세율의 분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하자. 〈表 9-7〉과 〈表 9-8〉의 교차제표(Cross-Tabulation)상에 나타나는 각 셀(cell) 안에는 셀빈도(cell frequency), 百分率(percent), 行百分率(row percent)이 차례로 들어가 있다. 예를 들어, 5주택보유세대들이 소유한 주택들 중 과표가 1,000만원에서 1,300만원까지의 구간에 속한 주택은 1,499棟으로 전체 612만 주택 중 0.02%이고 5주택 보유계층 소유 주택 중 6.9%를 차지한다.

먼저 층내 개별주택들의 과표분포를 〈表 9-7〉을 통해 보면, 층내에 속한 개별주택들의 과표계급분포가 소유주의 보유채수와는 상관관계가 적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1주택 보유세대들이 보유한 개별주택들이 각 과표구간 내에 78%, 9%, 8%, 3%, 1%, 0.4%의 순으로 층내분포를 보인 것과 예를 들어 5주택 소유세대들이 보유한 주택들이 78%, 7%, 7%, 5%, 2%, 1.5%의 순으로 층내분포를 보인 것과는 有意的

〈表 9-7〉 層內 個別 住宅들의 課標分布

(單位 : 棟, %)

층 \ 과표구간	1	2	3	4	5	6	주택수 합계
1	3,643,997 59.57 78.01	422,217 6.90 9.04	393,127 6.43 8.42	160,806 2.63 3.44	34,343 0.56 0.74	16,565 0.27 0.35	4,671,055 76.36
2	812,839 13.29 73.82	92,431 1.51 8.39	98,652 1.61 8.96	63,589 1.04 5.77	25,197 0.41 2.29	8,419.9 0.14 0.76	1,101,128 18.00
3	146,972 2.40 76.13	15,001 0.25 7.77	14,125 0.23 7.32	11,153 0.19 5.78	4,160.8 0.07 2.16	1,642.4 0.03 0.85	193,053 3.16
4	41,647 0.68 73.56	4,239.7 0.07 7.49	4,871.5 0.08 8.60	3,519.3 0.06 6.22	1,529.4 0.03 2.70	808.97 0.01 1.43	56,616 0.93
5	16,789 0.27 77.60	1,499.1 0.02 6.93	1,484 0.02 6.86	1,154.6 0.02 5.34	382.35 0.01 1.77	325.57 0.01 1.50	21,635 0.35
6	10,474 0.17 78.39	872.86 0.01 6.53	923.68 0.02 6.91	621.77 0.01 4.65	266.04 0.00 1.99	203.272 0.00 1.52	13,362 0.22
7	7,329.7 0.12 80.48	684.06 0.01 7.51	457.11 0.01 5.02	389.98 0.01 4.28	134.26 0.00 1.47	111.88 0.00 1.23	9,107 0.15
8	6,583 0.11 82.70	499.6 0.01 6.28	398.84 0.01 5.01	256.1 0.01 3.22	54.578 0.00 0.69	167.93 0.00 2.11	7,960 0.13
9	5,481.3 0.09 84.47	503.83 0.01 7.76	256.26 0.00 3.95	160.7 0.00 2.48	34.747 0.00 0.54	52.12 0.00 0.80	6,489 0.11
10 이상	30,606 0.50 84.04	2,041.4 0.03 5.61	1,413.3 0.02 3.88	1,397.9 0.02 3.84	492.65 0.01 1.35	468.02 0.01 1.29	36,419 0.60
합계	4,722,718 77.21	539,989 8.83	515,708 8.43	243,049 3.97	66,594.8 1.09	28,765.6 0.47	6,116,824 100.00

註 : 1. 층별로 표본추출비용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2. 과표구간 1 : 1,000만원 이하 4 : 1,800 ~ 2,600만원
2 : 1,000 ~ 1,300만원 5 : 2,600 ~ 3,500만원
3 : 1,300 ~ 1,800만원 6 : 3,500만원 이상

3. 각 셀(cell) 내의 3개 수치는 각기 빈도(frequency), 표본확률(percent), 행표본확률(row percent)을 나타냄.

〈表 9－8〉 層內 世帶別 課標分布

(單位 : 世帶, %)

과표구간 / 층	1	2	3	4	5	6	세대수 합계
1	3,643,997 68.60 78.01	422,217 7.95 9.04	393,127 7.40 8.42	160,806 3.03 3.44	34,343 0.65 0.74	16,565 0.31 0.35	4,671,055 87.94
2	283,828 5.34 51.55	47,881 0.90 8.70	68,616 1.29 12.46	63,652 1.20 11.56	44,676 0.84 8.11	41,911 0.79 7.61	550,564 10.36
3	21,242 0.40 33.01	6,898.1 0.13 10.72	9,604.2 0.18 14.92	9,932.6 0.19 15.44	6,585.3 0.12 10.23	1,008.9 0.19 15.68	64,351 1.21
4	2,674.9 0.05 18.90	1,074.7 0.02 7.59	1,706.5 0.03 12.06	2,391.5 0.05 16.90	1,960.4 0.04 13.85	4,346 0.08 30.71	14,154 0.27
5	526.21 0.01 12.16	242.28 0.00 5.60	450.49 0.01 10.41	821.49 0.02 18.99	749.56 0.01 17.32	1,537 0.03 35.52	4,327 0.08
6	152.45 0.00 6.85	59.785 0.00 2.68	182.34 0.00 8.19	361.7 0.01 16.24	424.48 0.01 19.06	1,046.2 0.02 46.98	2,227 0.04
7	79.914 0.00 6.14	19.179 0.00 1.47	60.735 0.00 4.67	166.22 0.00 12.78	223.76 0.00 17.20	751.19 0.01 57.74	1,301 0.02
8	46.181 0.00 4.64	12.595 0.00 1.27	29.388 0.00 2.95	79.768 0.00 8.02	163.73 0.00 16.46	663.33 0.01 66.67	995 0.02
9	4.3434 0.00 0.60	17.373 0.00 2.41	4.3434 0.00 0.60	47.777 0.00 6.63	56.464 0.00 7.83	590.7 0.01 81.93	721 0.01
10 이상	6.1581 0.00 0.28	0 0.00 0.00	9.2372 0.00 0.42	18.474 0.00 0.83	73.897 0.00 3.33	2,112.2 0.04 95.15	2,220 0.04
합계	3,952,556 74.41	478,422 9.01	473,790 8.92	238,278 4.49	89,256.6 1.68	79,612.4 1.50	5,311,915 100.00

註 : 1. 층별로 표본추출비용이 다르므로 가중치를 부여하였음.

2. 과표구간 1 : 1,000만원 이하 4 : 1,800 ~ 2,600만원
2 : 1,000 ~ 1,300만원 5 : 2,600 ~ 3,500만원
3 : 1,300 ~ 1,800만원 6 : 3,500만원 이상

3. 각 셀(cell) 내의 3개 수치는 각기 빈도(frequency), 표본확률(percent), 행표본확률(row percent)을 나타냄.

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12]. 이는 다주택보유자들이 소유한 개개의 주택들이 적어도 건물의 과표라는 면에서는 특별히 高價이지는 않고 비교적 고루 분포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층내 개별주택에 대한 평균세율[13]과 전체주택에 대한 평균세율은 〈表 9-9〉에서 볼 수 있듯이 0.31～0.40의 범위와 0.32의 값을 각각 갖는다. 이는 총개별주택의 77%가 최저과표구간인 1천만원 이하에 속하여 법정명목세율인 0.3%를 적용받고 있음을 상기할 때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모든 층에서 중앙값(median)은 0.30%이었다. 1992년도 내무부 발표 新建築物基準價額을 한국감정원이 산정한 建物新築單價로 나누어 계산한 과표현실화율은 36.44%이므로[14], 전국 개별주택의 가중평균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수준인 0.12%로 나타났다. 층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0.11～0.15%의 범위로, 보유채수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등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개별주택에 대해 현재 부담하고 있는 평균 재산세액은 4만 2천원이고 6주택 보유세대층까지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2) 표본 내의 모든 관찰된 주택에 대해 소유주의 보유채수와 과표계급이라는 두 변수간의 빈도를 나타내는 Cross Tabulation 표를 〈表 9-8〉과 같이 만든 후, 양 변수간 연관성(association)의 존재여부와 그 정도를 나타내는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나 스피어만 순위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살펴 보면, 각기 0.03과 0.04이라는 낮은 수치를 보였음.

13) 층내의 개별주택에 대한 평균세율은 층내 평균과표를 층내 평균세액으로 나눈 것이 아니고 개별주택에 대한 평균세율을 층내에서 평균하여 구한 것이다. 보유채수를 층으로 하여 상이한 추출률로 층화표본추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층내의 모든 주택들은 동일한 추출비율을 가지므로 가중을 하든 안하든 같은 결과를 갖는다. 그러나 전국의 개별주택에 대한 평균세율을 계산할 때에는 추출률의 역수를 가중치로 한 가중평균을 구했다. 세대별 분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되어, 층별평균은 비가중평균이나 전체평균은 가중평균이다. 단지 층별세수합계는 개별주택을 대상으로 하건 세대별을 대상으로 하건 가중합계이다.

14) 토지와 달리 건물에 대한 과표현실화율을 정의하는 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따른다. 첫째, 토지·건물의 분리평가와 관련된 문제로, 과표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건물의 가치를 토지·건물의 일체의 가치로부터 任意的으로 分離하는 문제이다. 둘째, 한국감정원의 건축비자료도 실제 지출된 용도별·구조별·단위면적당 건축비가 아니고, 투입요소량 및 요소가격 분석에 기초한 示方書上의 추정치이다. 셋째, 신축건물의 경우에는 신축비용이 건물의 가치라고 보아, 한국감정원이 수집한 건축비자료로부터 유사구조 및 용도 건물의 과표현실화율을 계산할 수 있지만, 중고주택의 경우 건물과표산출공식 중 경과연수별 잔가율표상의 내구연수가 거래관행상의 경제적 가치연수에 비해 길게 책정되어 있어 중고건물의 경우 과표현실화율이 보다 높을 것이다.

〈表 9－9〉 階層別 平均 課標・稅額・稅率

(單位 : 천원, %)

층	개별주택			세대				
					현행		세대별합산누진	
	평균과표	평균세액	평균세율	평균과표	평균세액	평균세율	평균세액	평균세율
1	6,133	39	0.31	6,133	39	0.31	39	0.31
2	6,853	51	0.36	13,706	102	0.39	225	0.73
3	6,613	51	0.36	19,838	154	0.45	430	1.08
4	7,504	65	0.40	30,017	259	0.52	904	1.73
5	6,928	63	0.38	34,640	313	0.53	1,116	1.98
6	7,170	72	0.39	43,021	430	0.53	1,585	2.42
7	6,738	56	0.38	47,165	392	0.53	1,809	2.80
8	6,849	65	0.38	54,794	517	0.54	2.297	3.16
9	6,595	45	0.34	59,353	407	0.46	2,551	3.64
10이상	7,193	57	0.39	118,000	932	0.50	6,606	4.78
전체	6,304	42	0.32	7,260	49	0.32	71	0.38

註 : 전체 평균 과표・세액・세율은 가중평균임.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表 9－6〉의 제4열 과세표준합계와 제5열 현행 납부재산세액합계 내의 각 계급별 구성비율을 보면, 1주택 소유세대들은 과세표준상으로는 총계의 74.3%를 차지하지만 납부재산세액으로는 총계의 70.9%를 차지하는 반면, 2주택 이상 소유세대들은 모든 층에서 소유 주택들의 과표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재산세가 부담되고 있으므로 미약하나마 累進的인 세부담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현행 건물분 재산세의 과표가 전용면적과 잔가율에 따라 결정됨에도 불구하고 낮은 (단위면적당)신축가액을 책정함으로써 대부분의 주택이 최하 과표구간에 속하게 되고, 상위의 명목세율을 적용받는 주택의 경우에도 해당과표구간의 하한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구조에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한 가구가 소유한 전국 내의 모든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납세의무자를 세대주로 하는 재산세체계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현재 가구별로 세부담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세대별 과표합산의 분포를 보여주는 〈表 9－8〉을 보

게 되면, 531만여 세대들[15]이 각 과표구간에 74.41%, 9.01%, 8.92%, 4.49%, 1.68%, 1.50%씩 속하는 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表 9-7〉의 개별주택 과표분포와 비교할 때, 세대별 과표합산 후에도 여전히 최저과표구간에 압도적으로 많은 가구들이 몰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택보유세대들 중 76.36%가 1주택 보유세대이므로 세대별 과표합산 후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층별분석을 하면 주택보유채수가 증가하는 층으로 갈수록 합산과표가 상위과표구간에 속하는 비율이 증가하여 6주택 보유세대층만 해도 거의 절반의 세대들이 3,500만원 이상의 과표구간에 속하게 되고 10주택 이상 보유세대층의 경우에는 95%가 이 구간에 속하게 된다. 보유채수와 합산과표구간간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피어슨상관계수는 0.35로, 감마값은 0.58로 나타났다.

현행의 각 가구별 세부담을 〈表 9-9〉상의 세대별 평균세율을 통해 보면 세대별 합산 후에도 전체로는 여전히 0.32% 수준이나 층별로는 0.3%에서 0.5%의 평균세율 분포를 보임으로써 다주택보유세대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들 중에는 일부 高課標 주택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8주택 보유층까지는 평균세율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등 일률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는 않았다. 층내 평균세율의 중앙값은 모든 층에서 0.3%이었다.

마지막으로 세대별 보유주택들을 모두 합산하여 현행 누진세율체계를 그대로 적용할 때 평균세액 및 평균세율상으로 주택보유층수가 올라갈수록 급격한 부담증가가 이루어짐을 볼 수 있다. 합산누진으로 인한 층내 평균세율 증가비율은 층내 부담세액합계(또는 세대당 평균세액) 증가비율을 나타내는 〈表 9-9〉의 마지막 列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4주택 보유세대층까지는 세액대비증가율이 크지만 5주택 이상 보유세대층부터는 평균세율대비 증가율이 더 커진다.

---

15) 총 주택보유세대수 711만 5,055세대에서 무주민등록세대를 제외한 모집단 내의 531만 1,915세대를 전수로 한다. 〈表 9-3〉의 세대수열(column)과 〈表 9-8〉의 (세대수)합계열을 비교해 보면 층내 표본관찰세대수에 가중치를 곱하여 모집단화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表 9-7〉의 (주택수)합계열은 〈表 9-3〉의 주택수열과 10주택 이상 보유층에서 차이가 난다. 그 이유는 층을 나눌 때 10주택 이상이라고만 최상위층(Top Bracket)을 정의함으로써 10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들이 모집단 내에서 총 632만 5,274棟이 있음은 알 수 있지만 추출된 개별표본세대가 정확히 몇 동씩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이다.

Ⅴ. 結論 및 政策示唆點

다주택보유현황 및 추이는 〈附表 9-2〉~〈附表 9-4〉와 〈表 9-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보유편중도가 미미하나마 심화되어 왔다. 이는 주택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결정하는 가격상승기대, 임대소득,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특히, 1세대 1주택 소유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과 2주택 이상 소유자만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임대소득 신고의무[16]는 주택보유정도에 따른 소득세제상의 差等課稅裝置(differential tax treatment)이다. 그러나 이러한 차등과세 제도들도 1주택 보유자에 비해 다주택보유자의 주택당 투자수익률을 높히기는 하지만, 주택가격인플레의 정도 및 임대소득 발생규모를 감안할 때 다주택보유를 억제하는 기능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파악한 실증분석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재산세부담수준은 개별주택에 대한 물세로서의 주택분 재산세는 평균세율이 개별주택별로 0.32%, 그리고 세대별로도 최고부담계층이 0.54%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17]. 세대별로 누진합산한 과표를, 對物課稅를 전제로 설정된 현행의 과표구간별 세율체계에 적용하더라도 5주택 이하 보유세대까지는 가구당 평균세율이 2%를 넘지 않는다. 과표현실화율을 감안한 실효세율은 이들 값의 1/3 수준으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0.12%, 보유층별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0.11~0.15%의 범위이다.

둘째, 다주택보유자들이 소유한 개별주택들의 과표계급분포는 보유채수와는 상관

---

16)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최근의 과세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과세대상인원이 2만 3,567명에, 과세액이 118억 4,800만원으로 다주택보유세대수 64만명의 1/30 정도만을 포착하고 있고, 평균납부임대소득세액은 53만원으로 다주택보유세대의 주택당 평균 재산세액의 10배 가까이 되므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과세강화는 지방세로서의 재산세에서만 접근할 수는 없는 것이다.

17) 비록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를 합하지 않았고, 취득·등록세 등의 이전과세를 합하면 외국과 비교하여 적지 않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으나, 전반적인 재산세 개편차원에서는 이전과세의 하락과 재산세 본연의 보유과세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관계가 적었다.

또한, 현행의 주택관련 세제하에서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조세제도상 정책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자본에 대한 투자자인 다주택보유자를 중과하여 소유를 억제함으로써 신규주택공급을 축소할 경우 주거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이라는 주택정책의 기본방향에 배치될 수 있다.

둘째, 재산세 중과정책이 그래도 실효성을 가지려면, 기존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 후의 최종 세후투자수익률이 충분히 낮아져야 한다. 그러나, 다주택보유자만을 상대로 한 재산세 중과를 통해 보유편중도를 낮추기에는 현행 재산세부담이 임대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비해 너무 낮은 수준에 있어 이를 기준으로 한 중과는 실효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주택자산의 소유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택금융시장을 활성화시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유효수요를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차원에서의 주택관련 세제개편은 현재의 주택보급률 수준에서의 무주택자와 주택보유자간 형평성을 감안할 때,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제도를 자가거주주택의 대체취득에 한해 일정연령 이후 일생일회정산방식으로 전환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세 체계하에서 철저히 시행하는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參 考 文 獻

建設部,『建設統計便覽』, 1990.

內務部, 市郡稅課의 각종 자료.

______,『地方稅政年鑑』, 각 연도.

李性旭,『土地公概念關聯制度의 合理的 定着을 위한 提言』, 國民經濟教育研究所, 1992.

李性旭・韓相國・崔明根,『土地稅制의 評價와 向後 政策方向』, 韓國租稅研究院, 1993.

統計廳,『1990 人口・住宅總調査 最終全數集計結果』, 1992. 12.

韓國住宅銀行,『住宅金融』, 1987~1933. 7.

韓國地方行政研究院,『建物分 財產稅制의 發展方案 研究』, 1990. 2.

韓國土地開發公社,『土地統計年鑑』, 각 연도.

〈附 錄〉

분석에 사용한 내무부 시군세과 제공 표본자료는 다음과 같은 특성들이 발견되었고 아래의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데이타셋」을 구성하였다.

1. 舊코드값의 構造指數이며 新코드집에는 정의되지 않은 1, 2, 3, 4, 5, 6, 7, 8값을 갖는 레코드들은, 코드변경작업이 완결되지 않은 市·道·郡으로부터 제출되었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신규코드값인 11, 21, 31, 41, 51, 61, 71, 81로 각각 대체하였다.

2. 마찬가지로 지붕지수값 1, 2, 3, 4와 5는 11, 21, 31, 41과 99로 각각 수정되었다.

3. 用途指數가 누락된 관찰치는 총 553개로 모두 서울지역에서 발견되었으므로, 구체적인 용도가 단독주택인지 아파트, 기타 연립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지수값인 1을 배정하였다. 참고로 서울지역 주택 중 불과 0.27%만이 농·어가 주택 및 환경위생시설이며, 각기 0.7과 1.25의 값을 가지므로, 큰 차이를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4. 用途指數가 코드북에 정의되어 있지 않은 0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12곳은 모두 제주도에서 관찰되었다. 별도로 지붕지수가 정의되지 않은 81의 값을 갖는 2곳도 제주도에서 발견되었다.

5. 地域指數가 기록되지 않은 관찰치는 5개가 있었는데, 지역지수는 동일한 市·區·洞이라 할지라도 개별공시지가가 필지마다 다를 수 있고, 과세대상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건물별 지역지수를 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므로, 일괄적인 지역지수값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하에 제외(delete)하였다. 지역지수는 14등급으로 나뉘어 같은 건물이라도 소재지에 따라서 최고 108% 최저 80%의 값을 가지므로, 1993년부터는 소재지역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고 건물부속토지의 가격지수와 1992년 지역지수 중 높은 것을 적용하고 있다.

6. 新築年度 코드값 중 5배수 연도에 해당하는 해의 값에 유난히 빈도가 높았다.

추측컨대 자료수집단계에서 신축연도와 경과연수를 혼동하여 기재한 경우가 많이 있는 듯하다.

7. 제주도 지역의 자료 중 세율증감 종류와 도시계획세 해당면적에 해당하는 자료 입력난에서 「널」(null)값들이 많이 발견되었다. 총 2,693건 중 1,739건, 그 외 지역에서는 세율증감 면적, 소방공동시설세 해당면적에서 「널」값이 발견되었다.

8. 부산 및 대구지역에 대한 자료는 전혀 표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전국적인 지역대표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9. 保有住宅數別 層化標本(stratified sampling)비율이 本院의 요청과는 달랐다. 또한 표본이 가져야 할 변수로 납세의무자 입력자료전부를 요구하였는데, 성명 또는 명칭 그리고 법인코드가 제공되지 않음으로써 유난히 많은 주택을 보유한 세대주가 법인인 관계로 그러한지, 아니면 재산세 대장 화일과 주민등록세대주 화일의 연결과정(match－merging)에서 나타난 오류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다.

10. 표본의 觀察單位는 주택이지만 抽出單位는 세대(주)이므로 각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관련 건물입력자료 변수값이 누락(missing)되어서 과표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거나, 명백한 오류치를 포함하고 있어서 과표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는, 당해 주택뿐만 아니라 소유주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갖는, 즉 그 세대주가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모든 주택을 제외시켰다. 이에 따라 표본추출비율 그리고 가중치를 조정하였다.

11. 7만 9,548棟의 (층화)표본추출된 주택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 수는 3만 331名으로 과표가 산출되지 않는 20건의 관찰치와 관련된 17세대～95棟의 주택을 제외하면 7만 9,453棟이다.

12. 과표값이 零으로 계산된 63개의 관찰치중 28건은 해당면적이 零(인천이 그중 26건)이었고, 두 경우는 陰(Negative)의 값(－181.2), 그리고 33건은 지역지수가 零으로 기재된 경우였다. 제2단계 제외과정(deletion)을 거치고, 마지막으로 본 면적합계가 89만 81.9m^2인 2주택 보유가구를 제외한 최종 데이타셋의 관찰치는 7만 9,453에서 7만 9,267로 줄어들어 주택수로는 186동, 세대수로는 61세대가 추가로 감소하였다.

13. 주택별 자료를 세대주별 자료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대주별 소유주택수는

分數(fractional value)를 가질 수도 있으나, 공동소유비율을 기록하게 되어 있는 欄(field)의 값들이 零이나 누락치여서, 예를 들어 2.4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가 몇이나 되는지를 파악할 수 없었다.

14. 건물분 재산세산출액이 1천원 미만일 경우에는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절사하게 되고 따라서 부과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감안하였다. 10자리 아래의 숫자 또한 절사하였다.

〈附表 9－1〉 建物分 財産税의 税率構造 變化

(單位 : 만원, %)

	과표구간	법정 세율	납부세액	실효세율
1991년 이후 (1990년 개정)	X≤1,000	0.3	X × 0.003	0.30
	1,000<X≤1,300	0.5	3.0+(X−1,000)×0.005	0.30~0.35
	1,300<X≤1,800	1.0	4.5+(X−1,300)×0.010	0.35~0.53
	1,800<X≤2,600	3.0	9.5+(X−1,800)×0.030	0.53~1.29
	2,600<X≤3,500	5.0	33.5+(X−2,600)×0.050	1.29~2.24
	3,500<X	7.0	78.5+(X−3,500)×0.070	2.24~7.00
1975~1986년 (1974년 개정)	X≤ 500	0.3	X × 0.003	0.30
	500<X≤1,000	0.5	1.5+(X− 500)×0.005	0.30~0.40
	1,000<X≤2,000	1.0	4.0+(X−1,000)×0.010	0.40~0.70
	2,000<X≤3,000	3.0	14.0+(X−3,000)×0.030	0.70~1.47
	3,000<X	5.0	44.0+(X−3,000)×0.050	1.47~5.00
1987~1990년 (1986년 개정)	X≤ 700	0.3	X × 0.003	0.30
	700<X≤1,000	0.5	2.1+(X− 700)×0.005	0.30~0.36
	1,000<X≤1,800	1.0	3.6+(X−1,300)×0.010	0.36~0.64
	1,800<X≤2,600	3.0	11.6+(X−1,800)×0.030	0.64~1.37
	2,600<X≤3,500	5.0	35.6+(X−2,600)×0.050	1.37~2.30
	3,500<X	7.0	80.6+(X−3,500)×0.070	2.30~7.00

註 : 實效税率이란 納付税額을 課標로 나누어서 구한 比率임.

〈附表 9－2〉 1992年 人別 多住宅 保有現況

(單位 : 名, 棟, %)

	소유자수	주 택 수
1주택	6,106,975(91.74)	6,106,975(81.66)
2주택	473,007(7.10)	946,014(12.65)
3주택	54,030(0.81)	162,090(2.17)
4주택	10,697(0.16)	42,788(0.57)
5주택	3,612(0.05)	18,060(0.24)
6주택	2,017(0.03)	12,101(0.16)
7주택	1,296(0.02)	9,072(0.12)
8주택	1,108(0.02)	8,864(0.12)
9주택	844(0.01)	7,596(0.10)
10주택 이상	3,241(0.05)	164,767(2.20)
합계	6,656,827(100)	7,478,328(100)

註 : 所有者數에는 法人 및 賃貸住宅事業者가 포함된 숫자임.
資料 : 內務部 市郡税課.

〈附表 9－3〉 1992年 全國 人別 多住宅保有現況

(單位 : 名, 棟, %)

	소유자수	주 택 수
1주택보유	6,106,975	6,106,975
2주택이상 보유	549,852(8.26)	1,371,353(18.34)
전국합계	6,656,827	7,478,328

資料 : 內務部 市郡稅課.

〈附表 9－4〉 1991年 6大都市 및 京畿道 人別 多住宅保有 現況

(單位 : 名, 棟, %)

	소유자수	주 택 수
1주택보유	2,907,194	2,907,194
2주택이상 보유	195,214(6.29)	465,623(13.81)
전국합계	3,102,408	3,372,817

資料 : 建設部, 李性旭(1992)에서 재인용.

〈附表 9－5〉 標本抽出設計(Sampling Design)

(單位 : 世帶, 棟)

층	세대수	주택수
1	10,000	10,000
2	10,000	20,000
3	5,000	15,000
4	3,000	12,000
5	1,000	5,000
6	600	3,600
7	300	2,100
8	100	800
9	100	900
10 이상	900	9,000＋
합계	31,000	78,400＋